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책임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김진숙(부경대학교 · 강사)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안재희(숙명여대 여성HRD연구센터 · 책임연구원)

이경자(경상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남승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6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3차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하고 청소년 인권정책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청소년 생존권 실태

청소년들의 생존권에 대한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건강에 대한 주의도, 건강진단 여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아침식사, 수면시간,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와 학교주변의 안전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 특히 여학생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질적생존권을 측정한 자살에 대한 생각에서도 상당비율의 청소년들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보호권 실태

한국청소년들의 보호권 실태를 보면, 체벌에 대한 심각성을 볼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시 근무조건(특히 근무시간과 임금관련)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청소년들은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성별,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외모에 따른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탈행동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한국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언어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 인터넷에서의 언어폭력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인권교육이 필요함.

● 청소년 발달권 실태

정서적 발달권을 보면 한국 청소년이 5개국 청소년 중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었음. 5개국 청소년 대부분이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동성친구와 어머니였음. 5개국 청소년 모두 학업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국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TV 시청과 게임으로 보내고 있음.

정서적 안정면에서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편이었고 한국과 중국 청소년은 미래보다 현재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짙었음.

인지적 발달권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청소년이 학교공부를 부담스러워했으며 한국 청소년의 65.5%가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있음. 학교공부는 적성 및 특기개발이나 진로·직업선택보다는 입시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사회적 발달권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은 주로 학교 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었고 군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음.

● 청소년 참여권 실태

5개국 비교 결과, 한국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매우 미흡하였으나 참여의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줌.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특성이 일관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스웨덴과 중국의 참여권 수준과 의식이 높았으며 한국과 일본은 낮게 나타남.

한국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가 5개국 중 가장 낮게 나

타나 가정에서의 참여수준이 매우 낮았음. 학교에서 징계과정의 소명절차로 표현의 자유 수준과 학교 자치활동 참여의향도 낮은 편이었으며, 학교 규칙이 학생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한국이 가장 많이 나타나 학교에서의 참여수준 또한 낮았음. 참여권 보장수준과 전반적인 권리수준 만족도에 있어서도 5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함.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 가능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5개국 중 중간 정도 수준에서 긍정적인 의식을 보여줌. 학교운영에 학생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정책변화를 위한 개인의 참여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보임.

3. 정책제언

●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과제

- 첫째, 아동·청소년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둘째, 국제인권협약 수준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법령 제·개정
- 셋째,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총괄 및 범부처적 협력네트워크 강화
- 넷째, 독립적인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설치와 운영
- 다섯째,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
- 여섯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인권지표 생산
- 일곱째, 인권의식과 감수성 확대를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활성화
- 여덟째, 하위집단별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다각적 노력
- 아홉째, 인권조례 제정 등 지역단위 풀뿌리 아동·청소년 인권개선활동
- 열 번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신장과 협약이행과정에서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 인권영역별 정책과제는 V장 2절 참조)

● 청소년인권지표 보완 및 효율적 생산·활용을 위한 과제

- 첫째, 주기적·지속적인 지표조사체계 구축
- 둘째, 지표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셋째,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및 지표항목의 첨가
넷째, 청소년인권지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섯째, 청소년인권지표 조사전담기구 설치·운영
여섯째,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13
1. 청소년 인권영역별 개념	15
2.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국제비교지표	25
1) 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구성	25
2) 청소년인권지표 국제비교 조사항목	34
III. 각국의 청소년인권 환경 개관	43
1. 한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45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45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50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57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68
2. 중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70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70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71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84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93
3. 일본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95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96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101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114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121
4. 미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123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124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128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131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136
5.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139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139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141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155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160
IV.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 비교	163
1. 조사개요	165
2. 청소년 생존권 실태	175
1) 신체적 생존권	175
2) 질적 생존권	191
3) 요약	195
3. 청소년 보호권 실태	198
1) 학대 및 착취 경험	198
2)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204
3) 비행·일탈행동으로부터의 피해	206
4) 요약	217
4. 청소년 발달권 실태	220
1) 정서적 발달권	221
2) 인지적 발달권	245
3) 직업적 발달권	258
4) 사회적 발달권	262
5) 요약	265
5. 청소년 참여권 실태	269
1) 자기결정권	269
2) 표현의 자유	276
3) 집회·결사의 자유	278
4) 사회참여 및 참정권	282
5) 참여권 수준 및 만족도	296
6) 요약	304

V. 결론 및 제언	309
1. 연구결과 요약	311
2. 정책제언	315
1) 청소년 인권정책 활성화를 위한 일반이행조치	315
2) 청소년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328
3) 청소년인권지표의 보완 및 효율적 생산·활용 과제	340
 참 고 문 헌	 345
부 록	357
1. 전문가 의견조사지	359
2. 2008년 국제비교조사용 설문지	364
3. 아동·청소년 참여권 학술대회 일정표	378
4. 설문분석결과 부표	381

표 목차

<표 I-1> 2008년 국제비교를 위한 협동연구기관	8
<표 II-1> 청소년 생존권 지표항목	26
<표 II-2> 청소년 보호권 지표항목	28
<표 II-3> 청소년 발달권 지표항목	30
<표 II-4> 청소년 참여권 지표항목	32
<표 II-5>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항목	34
<표 II-6> 2007년도 청소년인권 현황 조사항목	35
<표 II-7> 2008년 청소년인권지표 영역별 국제비교조사 항목	39
<표 III-1> 아동청소년관련 연령기준	46
<표 III-2> 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56
<표 III-3> 청소년관계법의 체계와 권리유형	58
<표 III-4>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61
<표 III-5> 아동강요 주요목표 완성상황	73
<표 III-6> 일본의 학교제도	98
<표 III-7> 일본 청소년의 비만 비율	102
<표 III-8> 2004년 현재 미국 주별 성인연령구분	127
<표 III-9>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참여(2008)	143
<표 III-10> 초등학교 학생수 및 성별, 공립사립별 구분	144
<표 III-11> 학생수 변화추이	146
<표 III-12> 학생 100명당 교사수	147
<표 III-13> 10,000명 단위 아동사망자수	148
<표 III-14> 10,000명 단위 아동사망자수	149
<표 III-15> 2-10세 아동 부모의 특별교육 참가율	150
<표 III-16> 9학년 학생의 알코올 경험률	150
<표 III-17> 9학년 학생의 알코올 1년 소비량	151
<표 III-18> 중3 학생들의 마약 경험률	151
<표 III-19> HIV/AIDS 감염	152
<표 III-20> 아동정치망명자의 추이	153

<표 III-21> 아동포르노 범죄신고 건수의 연도별 추이	153
<표 III-22> 성관련 범죄	154
<표 III-23> 청소년 범죄율 변화	155
<표 IV-1-1> 모집단 현황	165
<표 IV-1-2> 중·고등학교 조사 대상의 각 층별 표본크기 현황	167
<표 IV-1-3> 한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8
<표 IV-1-4> 중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9
<표 IV-1-5> 일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1
<표 IV-1-6> 미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2
<표 IV-1-7> 스웨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4
<표 IV-2-1> 건강에 대한 주의도	176
<표 IV-2-2> 건강에 대한 주의도·성별 비교	177
<표 IV-2-3> 건강에 대한 주의도·교급 비교	177
<표 IV-2-4>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	179
<표 IV-2-5> 한국·스웨덴청소년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	180
<표 IV-2-6>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181
<표 IV-2-7> 한국·스웨덴청소년의 운동하는 정도·성별·교급별 비교	182
<표 IV-2-8>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교급 비교	183
<표 IV-2-9>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빈도	185
<표 IV-2-10>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빈도·교급별 비교	185
<표 IV-2-11>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와 아침식사 정도 상관분석	186
<표 IV-2-1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186
<표 IV-2-13>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88
<표 IV-2-14> 거주지역과 학교주변 안전도	190
<표 IV-2-15>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192
<표 IV-2-16>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성별·생활수준·학업성취별 비교	194
<표 IV-3-1>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체벌 경험	199
<표 IV-3-2> 한국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	199
<표 IV-3-3> 한국청소년의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200
<표 IV-3-4>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01
<표 IV-3-5>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하면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203

<표 IV-3-6>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	205
<표 IV-3-7>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	208
<표 IV-3-8>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교급별 비교	209
<표 IV-3-9> 한국청소년의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지역별 비교 ...	210
<표 IV-3-10> 비행 및 일탈행동 경험(복수응답)	211
<표 IV-3-11> 비행 및 일탈행동에 대한 의식	213
<표 IV-3-12>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 경험	215
<표 IV-3-13> 온라인에서의 욕이나 짓궂은 말을 들었을 때 대처방법 ·	216
<표 IV-4-1> 상담할 사람 유무-성별·교급 비교	222
<표 IV-4-2> 각 대상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비율-성별 비교	223
<표 IV-4-3> 고민 개수-성별 비교	224
<표 IV-4-4> 고민 유형	225
<표 IV-4-5> 한국청소년의 여가시간-성별·교급별·지역별 비교	226
<표 IV-4-6> 청소년의 여가시간-성별 비교	227
<표 IV-4-7> 청소년의 여가방법-성별 비교	228
<표 IV-4-8> 청소년의 희망 여가활동-성별 비교	228
<표 IV-4-9>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30
<표 IV-4-10>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234
<표 IV-4-11> 미래에 대해 불안감-성별·교급별 비교	235
<표 IV-4-1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236
<표 IV-4-13>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성별·교급별 비교	237
<표 IV-4-14> 한국청소년의 자신의 능력 인지정도-지역별 비교 ...	238
<표 IV-4-15> 미래보다 현재에 가치 부여	238
<표 IV-4-16> 미래보다는 현재에 가치 부여-성별·교급별 비교	239
<표 IV-4-17> 현재 수용정도	240
<표 IV-4-18> 자신감 정도	241
<표 IV-4-19> 주변사람의 영향 정도	241
<표 IV-4-20> 주변사람의 영향 정도-성별·교급별 비교	242
<표 IV-4-21> 행동결정 시 본인의 의지 중요	243
<표 IV-4-22> 행동결정시 본인의 의지 중요-성별·교급별 비교	244
<표 IV-4-23> 평일 공부시간-성별 비교	247
<표 IV-4-24> 평일 공부시간-교급별 비교	248

<표 IV-4-25> 한국청소년의 평일공부 시간-지역별 비교	248
<표 IV-4-26>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성별 비교	250
<표 IV-4-27>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교급별 비교	250
<표 IV-4-28> 한국청소년의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지역별· 학업성취별 비교	251
<표 IV-4-29> 학교거부에 대한 경험-성별 비교	252
<표 IV-4-30> 학교거부에 대한 경험-교급별 비교	253
<표 IV-4-31> 한국청소년의 학교거부에 대한 경험-지역별·학업성취별 ·	254
<표 IV-4-32>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과 학교거부 경험 상관분석 ·	254
<표 IV-4-33>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255
<표 IV-4-34> 유학 선호 여부	256
<표 IV-4-35> 한국청소년의 유학선호도-부모의 학력별 비교	257
<표 IV-4-36> 유학 선호 이유(복수응답)	258
<표 IV-4-37>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학교내용 유용성 분야에 대한 인식	260
<표 IV-4-38> 한국청소년의 학교내용 유용성에 대한 인식 -성별·교급별 비교	260
<표 IV-4-39> 스웨덴청소년의 학교내용 유용성에 대한 인식	261
<표 IV-4-40> 한국·스웨덴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여부	263
<표 IV-4-41>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유형(복수응답)	263
<표 IV-4-42> 한국·스웨덴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유무 -성별·교급·지역별 비교	264
<표 IV-4-43> 한국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여부-지역별 비교	264
<표 IV-5-1> 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평균 비교	270
<표 IV-5-2> 한국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지역별 비교	274
<표 IV-5-3> 진로·진학문제 결정시 한국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 -학업성취·부모학력별 비교	275
<표 IV-5-4> 징계절차에서 소명권 부여 여부	277
<표 IV-5-5> 자치활동 참여 의향	278
<표 IV-5-6> 자치활동 참여 의향-성별·교급별 비교	280
<표 IV-5-7> 한국청소년의 자치활동 참여의향 -학교계열별·지역·학업성취별 비교	281

<표 IV-5-8>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변화 가능	283
<표 IV-5-9> 가정 내 참여경험과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상관분석	284
<표 IV-5-10>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285
<표 IV-5-11> 개인은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 줄 수 없다	286
<표 IV-5-12>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288
<표 IV-5-13>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성별·교급별 비교	290
<표 IV-5-14> 한국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학업성취별 비교	290
<표 IV-5-15>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 활동 경험	291
<표 IV-5-16>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292
<표 IV-5-17> 한국의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294
<표 IV-5-18> 학교발전에 학생의견 반영	295
<표 IV-5-19> 청소년참여권 보장 수준	297
<표 IV-5-20> 청소년참여권 보장 수준-성별·교급별 비교	299
<표 IV-5-21>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300
<표 IV-5-22>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한 만족도	302
<표 IV-5-23>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한 만족도-성별·교급별 비교	303

그림 목차

[그림 II-1]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	25
[그림 IV-2-1] 건강에 대한 주의도	175
[그림 IV-2-2]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	178
[그림 IV-2-3]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	183
[그림 IV-2-4]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여부	184
[그림 IV-2-5]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87
[그림 IV-2-6] 거주지역과 학교주변 안전도	190
[그림 IV-2-7]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192
[그림 IV-3-1]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차별 경험	198
[그림 IV-3-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202
[그림 IV-3-3]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	204
[그림 IV-3-4]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 I	206
[그림 IV-3-5]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 II	207
[그림 IV-3-6] 비행 및 일탈행동에 대한 인식	212
[그림 IV-3-7]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 경험	215
[그림 IV-4-1] 하루 평균 여가시간	225
[그림 IV-4-2] 청소년의 여가시간 충분여부	227
[그림 IV-4-3] 평일 공부 시간 비율	246
[그림 IV-4-4]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	249
[그림 IV-4-5] 학교거부에 대한 경험	252
[그림 IV-4-6] 유학 선호	256
[그림 IV-4-7] 한국·스웨덴청소년의 학교내용 유용성 분야에 대한 인식	259
[그림 IV-5-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I	271
[그림 IV-5-2]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II	272
[그림 IV-5-3] 징계절차에서 소명권 부여 여부	277
[그림 IV-5-4] 자치활동 참여 의향	279
[그림 IV-5-5]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	287

[그림 IV-5-6]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289
[그림 IV-5-7]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293
[그림 IV-5-8] 학교발전에 학생의견 반영	296
[그림 IV-5-9]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298
[그림 IV-5-10]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301
[그림 IV-5-11]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한 만족도	302

1.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I.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2006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3차년도 과제로서, 한국과 주요 외국 청소년의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하고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152개 항목의 청소년인권 지표체계를 개발하였고,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정성지표 항목을 중심으로 63개 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한국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3차년도인 2008년에는 1,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하는 국제 비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활성화되어 왔으나 각종 인권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김영지 외, 2003; 국가인권위원회, 2005; 이재연 외, 2005; 길은배 외, 2005; 이종원 외, 2007), 한국아동권리 현황의 종합평가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권리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김승권, 2008). 이러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체계적·객관적 파악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도구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는 아동권리협약(CRC),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PAY), 의제21(Agenda 21), 아동특별총회 결의안,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선언 등 협약과 결의문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적 협약과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회원국의 적극적인 실행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가진다.

한국정부는 2008년 12월 19일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05년 10월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적인 행동프로그램(WPAY) 이행과 청소년정책 평가를 권고 받는 등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 인권환경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2차례에 걸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유엔은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채택 10주년을 맞은 제60차 총회에서 15개 우선영역의 청소년정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권고사항의 적극 이행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청소년인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권실태의 체계적·주기적 파악을 위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백서 발간, 각종 인권실태 조사연구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대부분 기초연구나 시범적용에 그치거나 설문조사 중심의 부분적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어왔다.

본 연구는 1, 2차년도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체계적 파악 및 진전 상황 평가를 위한 도구로서 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청소년 인권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개년 간의 연구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실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주요 외국과 한국의 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한국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 인권수준을 가늠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1) 국제비교를 위한 인권지표항목 및 조사도구 검토

2006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청소년인권지표는 대분류(5개)-관심영역(20개)-세부관심영역(56개)의 분류체계에 총 152개의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지표 개발기준은 타당성(valid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국제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었으며, 2차년도인 2007년에는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할 대표지표항목을 선정하였다.

2008년도에는 국가별 비교조사라는 목적에 따라 2007년도에 개발된 설문조사 도구를 재검토하고 특히, 조사대상 국가간 협의를 통해 비교가 가능한 공통지표 및 조사도구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법·제도적 특성에 따라 문항 보완 및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고 최종 설문지에 대한 역번역을 통해 국가별 설문지 내용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2008년도 한국청소년 인권실태 파악

국제비교를 위해 조사대상 국가 간에 합의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 2,000여 명이다. 한국 조사결과와 외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청소년의 인권현황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3) 국가별 청소년 인권환경 분석

조사대상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각국 청소년 인권실태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으로서 청소년의 정의 및 사회적 지위, 청소년인권 관련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 각 국가의 청소년 인권 환경 및 주요 법, 제도, 정책 등을 개괄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

황 및 청소년 인권이슈와 활동현황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는 실태조사 결과 해석과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4)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청소년 인권실태 국제비교를 위해 각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협력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협력연구체계를 구축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 5개 국가가 연구협의를 통해 확정된 공동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별 데이터를 취합한 후 한국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청소년 인권현황 및 모니터링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민간단체 보고서, 옴부즈맨 의견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의견서 등 주요 국가의 청소년인권 실태와 정책현황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특히 3개년도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논의와 인권지표체계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2008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청소년 인권 및 지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내용과 방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국제비교 조사를 위한 지표항목과 설문조사 도구 확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를 통해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 관련 정보·자료 및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수렴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학계 전문가 5명, 정책현장 공무원 1명, 현장 전문가 2명이었다.

2008년 12월 초에는 최종 연구결과와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

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담당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3) 자체 협동연구 추진

외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등 국제비교 조사를 위해 해당 국가별 전문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통해 국가별 조사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섭외하여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연구 계약을 통해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비의 제약으로 국가별로 완결된 분석보고서를 받는 형태로 추진하지 않고, 각국이 설문조사 실시 후 생산한 데이터를 공유하며 본 연구진이 5개국 데이터 통계처리를 통해 결과를 종합 비교분석하는 형태로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협동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오랫동안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해오던 일본, 중국, 미국의 조사기관이 올해는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추진될 수 있었다.¹⁾ 여기에 국제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의 연구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적 비교기준을 다양화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국제비교조사를 위한 연구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아시아권, 북미권, 유럽권 국가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1) 한국청소년연구원과 중국 아동·청소년연구센터, 일본 청소년연구소, 미국 아이디어 리서치시스템 등 4개 기관은 정기적으로 4개국 공동조사를 수행해 왔다.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 조사(200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2006)’,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2007)’ 등이 그것이다. 2008년도에는 일반적인 생활의식 실태에서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주제로 ‘청소년 인권’문제를 선정한 셈이다.

<표 I -1> 2008년 국제비교를 위한 협동연구기관

국가	조사기관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중국	아동청소년연구센터(China Youth and Children Research Center)
일본	청소년연구소(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미국	미국 아이디어리소스시스템(Idea Resource systems)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 리서치포럼(University of South Stockholm, Research Forum, 연구책임자 : 최연혁교수)

협동연구 추진과정은 협동연구기관 탐색 및 선정(1-3월),²⁾ 협동연구기관 간 연구협의를 통해 조사도구 협의 및 확정(4-6월), 국가별로 설문조사 추진(한국 6-7월, 중국·일본·미국·스웨덴 9-10월), 국가별 조사데이터 취합·정리(10-11월), 본 연구진이 종합적인 비교분석 실시(11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비교조사 대상국가인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 4개국의 선정근거 및 비교의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 일본, 미국과는 2000년대 초부터 공동조사를 통해 각국의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를 비교해 왔듯이, 이들 세 개 국가는 한국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국과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국가들이다. 각국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구조적인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이종원, 2003). 즉, 문화적 전통에서는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3국과 서구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미국으로 나뉘지만, 현대 대중문화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시장경제 초입단계의 중국과 성숙된 시장경제사회인 미국, 일본, 중간적 입장의 한국으로 구분되며, 정치이념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자유민주주의의 한·일·미 3국이 대비되고 있다.

2) 2008년 1~3월 협동연구기관 탐색 및 선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선진국인 영국과 호주의 연구전문기관과도 협동연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단시간에 조사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시 거쳐야 하는 윤리기준 절차가 엄격하여 한국이 제시한 연구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편, 4개 국가 중에서 중국의 경우 선진국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있고 분단국가인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중요한 외교 파트너이자 대표적인 한류 수출국으로 문화교류 파트너이기도 하다. 더욱 긴밀해져가는 양국 관계를 볼 때,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와 비교 연구는 의미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 영향 하에 있는 중국의 경우 청소년의 참여권 관련 인식이나 정치의식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선진적인 경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권위적 부모-자녀 관계나 청소년에 대한 장유유서적 사회인식 등은 한국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경제선진국으로서 경제위기 속의 무기력한 청소년 문화의 징후를 앞서 보여주고 있어 미래 한국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오랜 지방자치제도의 경험으로 아동인권조례 제정 등 지역단위의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볼 때, 5개 국가 중에서 미국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으로서 다양한 공공정책과 민간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협약 비준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스웨덴은 세계적인 복지국가 모델로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제도 등 아동과 청소년 인권정책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 실천 수준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측면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것보다 이미 더 높은 수준에서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옴부즈퍼슨(Ombusperson)이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시정되는 등(김영지 외, 2004: 319) 높은 인권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이다.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는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협약 수준의 목표치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조사 대상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은 아시아권인 한국, 중국, 일본, 북미권인 미국, 유럽권인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와 의

식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현 단계를 진단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개국 실태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대상 선정과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등이 최대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표본추출과 조사방식을 엄격하게 일치시키지는 못하였다. 제한적 여건 내에서 각 국가마다 최대한 객관적인 조사방법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각 국가별 조사개요는 IV장 1절에서 제시하였다.

(4) 한국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2008년 한국청소년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항목은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120여개 내외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국제비교를 위한 조사대상 국가 모두가 합의한 공통문항과 한국 상황에만 의미있는 문항을 일부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2008년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제주특별자치도 제외)으로 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2,421명의 청소년을 표집하였고,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학급단위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 간이었으며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표본수는 2,276명이다.

(5) 국외출장 및 전문가워크숍, 학술대회 개최

청소년인권지표 후속연구 방향 모색 및 청소년 인권연구 분야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선진국의 인권정책과 활동 현황 파악을 통한 시사점 모색을 위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EU의 아동권리지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리버풀대학교 아동·가족·법연구소를 비롯하여 청소년인권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들을 방문하여 정보를 교류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부처 신설(2007. 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2008. 9) 등의 상황이 한국과 유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

한 사회적·정책적 노력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008년도 한국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권 신장 정책개발을 위해 10월 17일 4개의 인권영역별로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1월 28일에는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으로 아동과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비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가졌다. 학술대회 제목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며 세부주제는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실태’였다(학술대회 세부일정은 부록 3. 참조).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인권영역별 개념
2.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국제비교지표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인권영역별 개념

2008년도에 시행되는 3차년도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1차년도의 이론적 논의와 지표체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그 연결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속연구이다. 3개년 연구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차년도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또 나라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뜻하는 개념(한상범, 1991)’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라는 점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인권은 국가, 사회 이전의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의 천부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권은 나라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다. 이 인권의 개념에는 사회 국가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목록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각국의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생래적인 권리와 개인이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이수광, 2000; 윤수미, 2005 재인용).

그동안 청소년 인권은 많은 곳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그동안 이들을 한 생명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보통 어른들의 소유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1988년에는 체육부 안에 ‘청소년국’이 설치되었으며, 1990년에는 청소년현장이 선포되는 등 당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유래 없이 높아졌다. 1980년대 이후로 자본에 의

해 청소년의 학교 밖 놀이공간들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졌으며, 그런 자본이 만든 새롭고 광활한 소비 공간의 유혹을 받아, 낙후된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바로 소비자로서의 청소년이 등장하게 되었다. 근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소비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차이를 느끼게 되고 이들은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원하게 되었다(문진경, 2001). 이렇게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형성된 후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윤수미, 2005).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되어 보호대상의 청소년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은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도 불과 40여 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도 청소년들은 그들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청소년 자율’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상호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다.

현재에는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용화, 2005). 호리오 테루히사(1999)는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을 시사하면서 아동(청소년)권리의 특성을 다음의 두 가지로 표현하였다.

첫째 청소년권리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고유의 권리이다. 동시에 인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생애 전체를 놓고 계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청소년 시절에 그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곧 인권을 인간의 생애 전체에 입각하여 아동의 권리부터 노인의 권리까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의 권리라는 것은 대부분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사회, 그 사회의 구성원, 문화 등 모든 것에서 청소년 인권이 생겨나고 발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호리오 테루히사, 1999).

첫 번째를 종적인 시점에서 보는 인권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횡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이 왜 필요한가의 당위성과 청소년인권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을 기성세대가 인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을 인지하게 하는 일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나아가 권리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타인과 공동체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윤수미, 2005 재인용).

그러나 청소년인권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와 사회의 인식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유교적 사상과 경쟁사회로 인해 청소년들의 인권인식은 낮은 수준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잔재인 전근대적인 수직적이고 서열적인 인식과 규범체계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회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다(이용교, 2004).

‘세계인권선언’전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은 ‘보편성(universality)’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위해 바로 지금,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보편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재는 현실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얼마나 허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당한 채, 다른 누군가의 권력에 종속된 삶을 살아간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인 개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체대

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인권의 역사에서도, 흔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장 뒤늦게 등장한 권리 주체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의 주체’로, ‘복지 시혜의 대상’에서 ‘정의로움(justice)을 요구하는 주체’로 분명하게 규정하기 시작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서야 채택되었다. ‘보호에서 자율로’의 변화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운동의 성장이 낳은 열매이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사회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보호주의에 머물러 있다.³⁾

사회운동의 영역을 돌아보더라도 어린이·청소년의 주변부적 위치는 여전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일반적 조건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타인에 의해 대변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 만큼 세력화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현재 대부분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그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한 예외로 남겨진 존재가 아동과 청소년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참여기회와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김영지·김경준·이혜연, 2004)라는 관점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청소년들은 교육과 훈련의 대상으로서의 배려나 관심이 클 뿐 권리 행사의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낮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평등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을 단순히 연령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은 청소년 인권문제가 제도적 차별과 평등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그 지적·정리적 능력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출생연도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 그 자체가 청소년 인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원·장근영·김형주, 2007).

3) 최초의 국제적 아동인권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 선언,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의 전반적 기초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아동관에 기초해 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도 보호주의적 잔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청소년 인권은 한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성장과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특별한 권리이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청소년헌장이 새롭게 제정되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새로운 ‘청소년헌장’의 제정 이후 인권일반으로서가 아니라 고유한 영역으로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배경내(1998)는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조항들을 보편적 인권과 청소년의 고유한 인권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는 신체·정신적 능력에 상응하는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와 특수한 상황아래 놓인 청소년의 권리가 포함된다. 즉, 생존·발달·참여권적 요소들이 보편적 인권에 해당되고, 보호권적 요소들이 고유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최창욱·박영균 외, 2006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인권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개념은 2차년도 연구(이종원·장근영·김형주, 2007)에서 제시되었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한다.

(1) 청소년 생존권의 개념

1989년 제정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약칭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모든 인권의 토대로 생명,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를 두 번에 걸쳐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제 6조는 생존권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하는데 여기서 이 협약 가입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

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의한다.

이에 덧붙여 제24조에 규정한 4가지 일반 원칙에도 생존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생존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부규칙까지 정의함으로써 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⁴⁾.

아동 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로서 생존권이 제기된 이유는 아동권리협약 당시 너무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입각한 것이었다(Hodgson, 1994; 이용교 외, 2006 재인용). 생존권은 또한 생명권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동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생존’은 성장 모니터링(*monitoring*), 질병 통제, 설사로 인한 탈수증 완화(*oral rehydration*), 모유수유(*breastfeeding*), 예방접종, 식량 및 여성 문맹 등을 포함한다(이용교 외, 2006). 이에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전 연구(최창욱·박영균 외, 2006)에서는 청소년 생존권을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 요약한 바 있다.

4) 아동권리협약 2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 관련 세부원칙은 아래와 같다.

-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2) 청소년 보호권의 개념

보호권은 청소년들 고유의 취약성과 청소년 생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다. 발달단계상 청소년기는 우선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성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관한 권리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해당 연령대에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참여하는 ‘지위비행’의 주체가 되거나, 청소년의 주변인적 특성을 이용하는 노동력과 성적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약성을 가진다. 산업혁명 초기에 아동을 공장직공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급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매우 적게 지급한 사례가 있듯이, 이러한 청소년 착취의 역사는 깊다.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청소년 특유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유해환경이 바로 그것으로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부추기는 환경이나 성·노동 착취를 유발하는 조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완전한 성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권(혹은 학습권)을 방해하는 요소들 역시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이로 인해 청소년이 입게 되는 위기의 결과가 보호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에 대한 위협요인들로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흑사, 차별대우를 적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 성적 상품이 된 청소년, 거리의 청소년, 재난을 당한 청소년(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아동) 등이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선행연구(최창욱·박영균 외, 2006)에서는 청소년 보호권을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보호권을 각종의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보호,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로 분류하였는데, 각종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과 경제적 착취의 내용이 포함되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위기와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에는 범죄, 가출, 이주민 가정 청소년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개념이 담겨있다.

(3) 청소년 발달권의 개념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발달을 위한 학습과정의 중요성은 UN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을 제시한 1989년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사회가 구성원에게 삶의 초기단계에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요구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중섭 외, 2006).

1986년에는 UN에 의해 발달에 관한 권리가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서 발달권은 모든 인간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달에 참여하고 공헌하며 향유하기 위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Sengupta, 2000)라고 규정한 바 있다.⁵⁾ 다시 말해 “능동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발전에 대한 참여와 그것으로부터 결과하는 공정한 급여의 재분배에 대한 참여에 기초하여 모든 개인과 완전한 인간의 복지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발달권의 정의에 따르면, 발달권은 기

5) UN에 의해 1986년 채택된 발전에 관한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he Development:DRD)에 대한 해석을 일부는 발전을 위한 권리선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일부는 발달을 위한 권리선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전과 발달은 그 의미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발전을 위한 권리선언의 제1조 2항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내용에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발달보다는 경제적 발전의 측면에서 이익에 대한 권리와 재분배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강조된다. 하지만 발전을 위한 권리선언에서의 권리주체로 모든 인간(every human person)과 모든 인민(all Peoples)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을 위한 권리선언의 내용에서 인간의 발달권을 개념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 발전권 선언은 UN에 의해 압도적인 다수로 1986년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인권을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규정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있고 난 이후 거의 38년이 지난 이후에 채택된 것이다(이중섭 외, 2006).

본적인 인권이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전에 대한 참여와 기여 그리고 향유에 대한 권리의 실현이 필수적이다.⁶⁾

발달권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 먼저 프리만(Freeman, 2000)은 아동권리협약을 크게 다섯 가지 권리로 분류하고 그중 발달과 복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에 합리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과 기본서비스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교육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용교(2004)도 발달권을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제시하고 있고, 김경준 외(2005)에도 발달권의 내용에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여가와 문화에 관한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최창욱 등의 2006년 연구에서는 청소년 발달권을 포괄적으로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발달권에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6)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발전권 선언은 이전의 전통적 인권개념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권의 주체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모든 인민’으로 규정되어 처음으로 ‘복수화’ 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인의 발전이 공동체(집단, 집단으로서의 인민)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발전을 ‘경제성장’과 동의어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인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인간을 발전의 참여자인 동시에 수혜자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발전의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중심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실현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여’의 필수성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과 인민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넷째,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발전권의 저해요인에 대해 선언은 ‘아파트헤이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주권과 국가적 통일·영토보존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을 명확히 짚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세계평화와 안보,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된 자원이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발전이라 함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나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류은숙, 2005, 인권하루소식 제2775호).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4) 청소년 참여권의 개념

청소년 참여권은 여기서 언급된 4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인권의 영역이다. 행위의 주체가 주로 양육자나 국가기관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는 달리 참여권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행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UN아동권리협약이 포함하고 있는 아동의 4가지 권리영역(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 참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참여민주주의에서의 참여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참여는 기본적으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심리적 개입(involve)이나 동조(sympathy)만으로는 참여라고 볼 수 없다(김정주 외, 1999: 13, 강현아, 2006 재인용).

아동의 참여권은 특히 시민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은 지리적·사회적 지역의 명확한 구분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 자유, 평등, 거주권, 참정권 등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납세나 국방 등의 책임도 제도적, 법적으로 규정한다. 즉, 시민권은 국가와의 관계 내에서 정의되는 것이다(최원기 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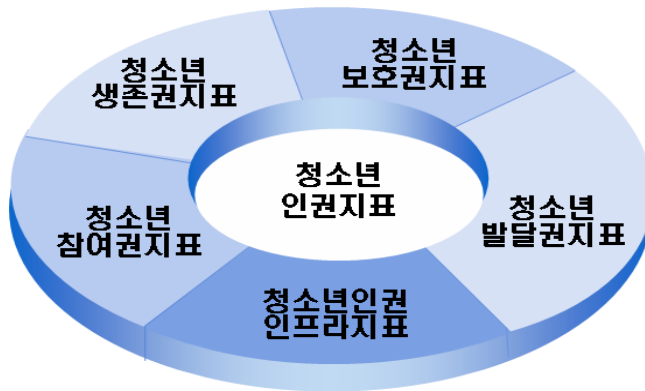
선행연구(최창욱·박영균 외, 2006)에서는 청소년 참여권을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정리하였다.

2.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국제비교지표

1) 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구성

본 연구는 2006년에 수행된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 연구 I-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의 후속연구이기 때문에,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체계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청소년인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청소년인권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통계치”로 조작적으로 정의된 바 있다. 청소년인권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내용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의 인프라(인적·물적 자원과 체제 등)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그림 II-1]).



[그림 II-1]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안)』은 대분류(5개)-관심영역(20개)-세부관심영역(56개)의 분류체계 아래 총 152개의 개별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영역은 청소년생존권, 청소년보호권, 청소년발달권, 청소년참여권, 청소년인권 인프라 등 5개의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것이며, 청소년인권 인프라영역은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된 사회적·제도적 기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다. 이들 5개의 하위영역별 지표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생존권 지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안)』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청소년생존권의 관심영역을 고유의 생명권, 신체적 생존권, 질적 생존권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고유의 생명권은 출생, 생명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신체적 생존권은 수명, 빈곤, 질병, 영양, 신체충실도, 건강, 치료, 안전, 사고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질적 생존권은 자살, 가족, 사회보장으로 분류하였다.

<표 II-1> 청소년 생존권 지표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1-1. 고유의 생명권	1-1-1 출생	1-1-1-1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
	1-1-2 생명	1-1-2-1	청소년 인공 임신중절률
		1-1-2-2	청소년 타살률
	1-1-3 사망	1-1-3-1	청소년 사망률
1-2. 신체적 생존권	1-2-1 수명	1-2-1-1	15세 청소년 기대여명
	1-2-2 빈곤	1-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1-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의 비율

	1-2-3 질병	1-2-3-1	청소년 유병률
		1-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1-2-3-3	청소년 HIV/AIDS 감염률
	1-2-4 영양	1-2-4-1	청소년 1일당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비율
		1-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
	1-2-5 신체충실도	1-2-5-1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저체중률
		1-2-5-2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비만을
	1-2-6 건강	1-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
		1-2-6-2	청소년 흡연율
	1-2-6-3	청소년 음주율	
	1-2-6-4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	
	1-2-6-5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	
	1-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1-2-7 치료	1-2-7-1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수진율	
	1-2-7-2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수진율	
	1-2-7-3	청소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	
1-2-8 안전	1-2-8-1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	
	1-2-8-2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1-2-8-3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1-2-9 사고	1-2-9-1	청소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율	
	1-2-9-2	청소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1-2-9-3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	
	1-2-9-3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1-3-1-1	청소년 자살률
	1-3-2 가족	1-3-2-1	소년소녀가정 비율
		1-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
		1-3-2-3	가출청소년 비율
	1-3-3사회보장	1-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
1-3-3-2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둘째, 청소년보호권 지표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

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안)』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의 규정, 청소년 보호관련 법령의 내용, 청소년 보호관련 정책 등에 기초하여 청소년보호권의 관심영역을 ‘각종의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보호’,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들 4개의 하위영역은 ‘~한 위기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보호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인권의 하위 영역 간 중복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권의 관심영역은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보호, 위기 및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는 신체적 학대, 성매매 및 성적착취, 경제적 착취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성차별, 민족차별, 지역차별, 연령차별, 고용차별, 장애차별, 종교차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위기 및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는 대안적 양육, 범죄로부터의 보호, 가출로부터의 보호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II-2〉 청소년 보호권 지표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2-1.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2-1-1-1	학교폭력발생률
		2-1-1-2	체벌경험률
	2-1-2. 성매매 및 성적착취	2-1-2-1	청소년의 성폭행피해발생률
		2-1-2-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
		2-1-2-3	미혼부모의 발생률
	2-1-3. 경제적 착취	2-1-3-1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사업취업률
		2-1-3-2	평균근로시간
2-1-3-3		성인 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청소년 임금비율	
2-1-3-4		최저임금미보장 근로청소년비율	
2-1-3-5		근로여건 만족도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차별	2-2-1-1	양성평등의식지수

	2-2-2.민족차별	2-2-2-1	인종별 취학률
		2-2-2-2	혼혈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2-2-2-3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2-2-3.지역차별	2-2-3-1	지역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2-2-4.연령차별	2-2-4-1	연령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2-2-5.고용차별	2-2-5-1	청소년의 직종별 취업 인구
	2-2-6.장애차별	2-2-6-1	장애 청소년의 취학률
		2-2-6-2	장애청소년취업률
		2-2-6-3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
2-3.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2-3-1. 대안적 양육	2-3-1-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
		2-3-1-2	대안적 양육시설 운영예산
	2-3-2. 범죄로부터의 보호	2-3-2-1	청소년 범죄율: 유형별/연령별/동기별/교육수준별
		2-3-2-2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2-3-2-3	누범률
		2-3-2-4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접수건수 대비 처리율
		2-3-2-5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2-3-2-6	범죄청소년 1인당 교정예산액
	2-3-3. 가출로부터의 보호	2-3-3-1	가출청소년 비율
		2-3-3-2	가출청소년보호시설수
		2-3-3-3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 수용비율
	2-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2-4-0.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2-4-0-1
2-4-0-2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실적
2-4-0-3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셋째, 청소년발달권 지표는 청소년이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권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요구되는 영역들은 신체적 영역에서부터 정서적·행동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이러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제반여건과 환경의 개선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의 개념과도 중복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발달권의 관심영역을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 등 발달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발달은 인지발달 기회, 인지능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서적 발달은 정서발달 환경, 정서적 안정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발달은 사회성 발달기회, 사회성 발달정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 직업능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발달은 신체발달기회, 신체적 능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II-3〉 청소년 발달권 지표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3-1-1-1	취학률
		3-1-1-2	중퇴율
		3-1-1-3	대학진학률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3-1-2. 인지능력	3-1-2-1	창의성 지수
		3-1-2-2	문제해결능력 지수
		3-1-2-3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1-2-4	지능지수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3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3-2-1-4	청소년 여가시간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3-2-2. 정서적 안정	3-2-2-1 3-2-2-2 3-2-2-3	우울증 지수 스트레스 지수 행복(심리적 안녕감) 지수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1-1 3-3-1-2 3-3-1-3 3-3-1-4 3-3-1-5	청소년 1인당 평균 단짝 친구 수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횟수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 시간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 동아리 수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3-3-2. 사회성 발달 정도	3-3-2-1 3-3-2-2 3-3-2-3	갈등이해능력 지수 문화감수성(타문화수용능력) 지수 리더십 능력 지수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3-4-1-1 3-4-1-2 3-4-1-3	월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수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3-4-2. 직업능력	3-4-2-1 3-4-2-2	진로성숙도 지수 직업기초능력 수준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3-5-1-1 3-5-1-2	청소년의 주당 평균 운동시간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3-5-2. 신체적 능력	3-5-2-1 3-5-2-2 3-5-2-3 3-5-2-4	50미터 달리기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굽혀매달리기)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넷째, 청소년참여권 지표는 청소년이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안)』에서는 청소년참여권의 관심영역을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종교결정권,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교육 및 진로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의 세부관

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사적취향의 표현, 학생으로서의 의견표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학교내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외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보접근권은 도서에 대한 접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사회참여, 참정권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II-4〉 청소년 참여권 지표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4-1.자기 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	4-1-1.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4-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2-2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비율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4. 문화·여가 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2.표현의 자유	4-2-1. 사적취향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4-2-2. 학생으로서의 의견 표현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 내에서의 집회·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4-3-1-2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4-3-2. 학교 외에서의 집회·결사	4-3-2-1	청소년관련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
		4-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4-4. 정보접근권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4-5-1-3	청년 실업률
		4-5-1-4	청소년 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참여율
	4-5-2. 참정권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 제한(성적 등을 통해) 하는 학교비율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4-5-2-4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다섯째,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는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기반 및 여건, 시설, 조직, 정책, 제도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체제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안)』에서는 청소년인권 인프라의 관심영역을 청소년인구, 법·제도 구축, 비정부조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인구는 청소년인구, 특수청소년인구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법·제도 구축은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노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비정부조직은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

조직의 활동노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II-5〉 청소년인권 인프라 지표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5-1. 청소년인구	5-1-1. 청소년 총인구	5-1-1-1	총 인구수
	5-1-2. 특수 청소년인구	5-1-2-1	장애 청소년 인구수
		5-1-2-2	한부모가정 청소년 인구수
		5-1-2-3	이주노동자 자녀 청소년 인구수
		5-1-2-4	다문화가정 자녀 청소년 인구수
5-2. 법·제도 구축	5-2-1.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	5-2-1-1	청소년인권관련 법의 정비 실태와 기능
		5-2-1-2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종류
		5-2-1-3	실제 청소년인권 향상 효과
	5-2-2. 중앙행정조직 의 정비 및 활동노력	5-2-2-1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
		5-2-2-2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 정도
		5-2-2-3	중앙정부의 청소년인권 향상 노력
		5-2-2-4	중앙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
		5-3. 비정부조직	5-3-1. 청소년인권관 련비정부조직
5-3-2. 청소년인권관 련비정부조직 의 활동 노력	5-3-2-1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
	5-3-2-2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
	5-3-2-3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인지도	

2) 청소년인권지표 국제비교 조사항목

본 연구의 2차년도(2007년)에는 1차년도(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와 152개의 개별지표항목 중에서 정성지표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선별작업을 통해 2007년도에 시행될 설문조사의 조사문항과 척도를 확정하였다. 지표선별의 기준은 향후 국제비교 조사를 염두에 두어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조사 실용성 등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불가능한 우리사회의 독특한 인권현상이나 국제적 인권기준으로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산출 불가능한 지표항목들은 조사항목에

서 제외되었다. 또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거나 수많은 하위 조사항목들의 조합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지표항목들도 제외되었다. 이러한 선별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사문항은 총 63개 문항(청소년생존권 19개 문항, 청소년보호권 13개 문항, 청소년발달권 17개 문항, 청소년참여권 14개 문항)이며, 그 내용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2007년도 청소년인권 현황 조사항목

대분류	조사문항	문항 번호	해당/관련 지표항목
I. 생존권 (19)	최근 1년간 신체적 질병을 앓은 경험	6	1-2-3-1
	몸이 아플 때 등교 여부	11	1-2-6
	몸이 아플 때 검진/치료 여부	14	1-2-7
	지난 1주일간 아침식사를 거른 날	3	1-2-4-2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지의 여부	4	1-2-4
	패스트푸드로 식사하는 빈도	1	1-2-4
	자신의 비만수준에 대한 평가	2	1-2-5-2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9	1-2-6-4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	10	1-2-6-5
	평일날 하루 평균 수면시간	7	1-2-6
	지난 1년간 흡연경험/빈도	8-1	1-2-6-2
	지난 1년간 음주경험/빈도	8-2	1-2-6-3
	학교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정도	12	1-2-6
	학교친구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지의 여부	13	1-2-6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	17	1-3-1-1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 정도(2)	15	1-2-8-2
	학교 급식 여부 및 안전(위생)에 대한 의견	16	1-2-8-3
	급식비나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	5	1-2-2-1
	다른 나라 비교 우리나라 발전수준 정도	18	1-3

대분류	조사문항	문항 번호	해당/관련 지표항목
Ⅱ.보호권 (13)	지난 1년간 체벌 경험(2)	19	2-1-1
	체벌에 대한 의견	20	2-1-1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태도	23	2-2-2-3
	친구 교체시 중요 요소 (3)	22	2-2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6)	24	2-2
	비행/일탈행동 경험(6)	29	2-3-2
	비행/일탈행동 피해경험(4)	26	2-3-2-3
	심각한 고민/걱정거리의 유무 및 내용	27	2-3
	고민/걱정거리의 상담상대	28	2-3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21	2-1-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	21-1	2-1-3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차별을 당한 경험	21-2	2-1-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친구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25	2-2-6-3
Ⅲ.발달권 (17)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30	3-1-1
	대졸학력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의견(3)	31-1, 31-2, 31-3	3-1-1
	대학진학과 사교육/가정배경의 관계(2)	31-4, 31-5	3-1-1
	진학을 위한 과외교습 수강 경험	32	3-1-1-4
	학교 공부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3)	44	3-4
	부모님과 대화 빈도(2)	33-1, 33-2	3-2-1-1
	학교선생님과 대화 빈도	33-3	3-2-1-2
	하루 평균 여가시간	35	3-2-1-4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37	3-2-1-4
	지역사회의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의견	38	3-2-1-5
	생활영역별 만족도(4)	34	3-2-1
	전체적인 행복감	36	3-2-2
	자신에 대한 평가(6)	39	3-2-2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40	3-3-1-1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41	3-3-1-2
	동아리 가입/활동 여부와 그 종류	42	3-3-1-4
	자신을 외톨이로 느낀 경험	43	3-2-2

대분류	조사문항	문항 번호	해당/관련 지표항목
IV.참여권 (14)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지의 여부	45	4-1-2-1
	진로/진학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47	4-1-3-1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48	4-1-4-1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46	4-1-2-1
	학교의 규율/교칙에 대한 의견	58	4-5-2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 여부	49	4-2-1-1
	학교의 규칙/규정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50	4-2-1-1
	자신의 두발/복장에 대해 부모님 간섭 여부	51	4-2-1-2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52	4-2-2-2
	선생님께 자유롭게 의견표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53	4-2-2-3
	학교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 여부	54	4-3-1-1
	조건없이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57	4-5-2-1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55	4-3-2-2
	학교에서 교외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지의 여부	56	4-5-1-2

주 : ()안의 수치는 세부문항 수임.

그러나 2차년도 연구에서 확정된 조사문항은 국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발되어야 할 의미있는 지표항목들이 조사문항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으며, 비교대상국의 특수한 상황들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작업은 3차년도에 후속작업으로 진행되도록 남겨두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의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2007년도에 개발된 조사문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비교 대상국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지표항목의 타당도와 중요도, 그리고

측정가능성과 비교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2007년에 개발된 조사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국제비교 대상국가인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조사기관들과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공통 설문지가 확정되기까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수차례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인권관련 주제가 민감한 측면이 있고 각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항 중요도에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5개 국가가 모두 만족하는 공통설문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각자의 사회적 환경이나 연구관심에 따라 인권영역별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느 수준에서 절충과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하위문항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총 124개 문항 중에서 21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할 수 있었다.⁷⁾ 이에 대해서는 <표 II-7> ‘조사문항’란의 해당문항에 별도 표시를 해두었다.

최종 확정된 5개국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항목을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구성하면 다음의 <표 II-7>과 같다.

7) 모든 문항에 대해 5개 국가가 조사하지 못한 것은 짧은 기간에 민감한 이슈인 ‘인권’을 주제로 국제비교 조사를 수행하는 데서 온 한계로 인식된다. 현실적으로 정해진 일정 내에 5개 국가가 공통 설문지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후 일정 수준에서 각자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4개 국가와 계속 협의·설득하는 작업을 더 했더라면 결과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올해 내에 연구를 완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진도 조사문항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지만 연구진행을 위해 차선책 수준에서 결단을 내린 결과임을 밝히며 추후 보다 충분한 연구기간과 여건을 갖고 보다 발전된 국제비교조사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표 II-7> 2008년 청소년인권지표 영역별 국제비교조사 항목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조사문항	문항 번호
I. 생존권	1-2 신체적 생존권	1-2-4 영양	아침식사 결식 빈도와 그 이유(2)	5 5-1
		1-2-6 건강	평일 평균 기상 및 취침시간	4
			흡연경험	13
			음주경험	1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3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1
			건강검진 여부	2
	1-2-8 안전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 정도(2)	6-1 ~6-4 7-1 7-2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	8
	II. 보호권	2-1 학대 및 착취로부 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지난 1년간 체벌 경험(2)*
2-1-3 경제적 착취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1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차별을 당한 경험(6)*	11-1-1 ~11-1-6
2-2 차별로부 터의 보호		2-2-1 성차별 외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4) (학업성적, 가정형편,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는지 여부 포함)	9-1 ~9-4
2-3 위기·응급 상황으로 부터의 보호		2-3-2 범죄로부 터의 보호	비행/일탈행동 피해경험(7)	12-1 ~12-7
			비행/일탈행동 경험	13
			비행/일탈행동에 대한 의식(15)	14-1 ~14-15
			인터넷, 이메일에서의 피해경험(2)	15 15-1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조사문항	문항 번호
Ⅲ. 발달권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하루 평균 공부시간 (3)	24-1 ~24-3
			학교공부에 대한 의견	25
			외국 유학(2)	27 27-1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고민 상담(2)	16 16-1
			고민거리의 유형별 경험유무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	17 17-1
			부모님과의 관계(16)	23-1 ~23-16
			하루 평균 여가시간	18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19
			휴일을 보내는 방법(2)	20-1 20-2
		3-2-2 정서적 안정	자신에 대한 평가(7)	22-1 ~22-7
	학교에서의 생활태도(2)		26 26-1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21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기회준비	자신의 적성/특기개발 및 진로직업선택에 대한 의견(3)*	28-1 ~28-3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조사문항	문항 번호	
IV. 참여권	4-1 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가정 규칙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29-5	
			가정의 중대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29-7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29-1	
			진로·진학문제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29-3	
		4-1-4 문화·여가활동 결정권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결정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29-2	
			생활용품 구입 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29-4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결정 시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29-6		
	4-2 표현의 자유	4-2-2 학생으로서의 의견표현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32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내에서의 집회·결사	학생회 등 자치활동 참여 희망 여부	30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34-2
				사회문제는 복잡하므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	34-3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4-4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35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	39		
		4-5-2 참정권	학교 규칙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31	
	학교 운영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33		
우리사회의 청소년참여권 보장 수준				36	

대분류	조사문항	문항 번호
V. 권리일반·인프라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수준	37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38
VI. 인적사항	성별	1
	출생년도	2
	교급	3
	학년	4
	학교 성적*	5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6
	부모님의 최종학력(2)*	7-1 7-2
	가정의 경제수준*	8

주 : ()안의 수치는 세부문항 수이며, * 표시된 문항은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된 문항임.

Ⅲ. 각국의 청소년인권 환경 개관

1. 한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2. 중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3. 일본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4. 미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5.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III. 각국의 청소년인권 환경 개관

1. 한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처음 2년 이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 5년마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현황과 진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정부는 1994년에 1차, 2000년도에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할 제3, 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정부정책과 인권현황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모니터한 결과를 담은 민간단체 보고서는 1996년과 2002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어 국내 인권활동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법적·정책적 규정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다양한 연령범주로 언급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4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아동·청소년 정책부처 통합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연령에 대한 법적 규정 또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관련 연령기준과 호칭은 다음과 같다.

8) 법적 근거와 별개로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관습적으로 초등학교 연령을,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연령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도 ‘아동’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네이버 백과사전, 국어사전)로 풀이된다. 정책 담당부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학교 이후 연령의 아동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가 관련정책과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고경화, 2007: 110)’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아동·청소년관련 연령기준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만19세 미만
유아교육법	유아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⁹⁾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	14세 미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이러한 관습적인 연령구분을 고려하여 1995년 3월 민간차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위해 결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 정부 측의 번역어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신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라 칭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조약에서 말하는 Child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는 이 대상을 포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25).”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과 정부가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아동인권 부문의 정책과제를 ‘아동·청소년’ 부문으로 표기하여 당시 아동정책 주무부처(보건복지부)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국가청소년위원회) 모두를 인권정책 수행 주체로 적시하는 효과를 가져 온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대한민국정부, 2007).

- 9) 2008년 10월 7일 법무부가 민법상 성인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발표하여 향후 이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모자보건법	영유아	6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부양의무자가 없는 18세 미만
선거법	선거권자	19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17세 이상
근로기준법	취업가능 최저연령	15세
민법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

출처 : 대한민국정부(2008.11).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안). p.23
내용 보완

2008년 현재 한국의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11,120천명, 10,494천명으로 총인구의 22.9%, 21.6%를 차지하고 있어, 2007년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0~18세는 0.5%p, 9~24세는 0.4%p 낮아졌다(통계개발원, 2008). 0~18세 인구구성비는 1965년 51.3%를 정점으로 하여 1990년 33.8%, 2000년 27.5%, 2008년 22.9%로 낮아지고 있고, 9~24세 인구구성비도 1978년 36.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아동인구는 21.5%로, 청소년 인구는 21.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과 청소년 인구감소는 미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청소년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08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10,221천명이며, 그 중 6~11세(초등학교) 인구의 비중이 35.6%, 12~14세(중학교) 20.3%, 15~17세(고등학교) 19.9%, 18~21세(대학교)가 24.2%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이후,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99.6%에 이르고 있어 거의 전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7년 82.8%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이는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학교의 인권친화적 변화

가 중요한 인권정책 과제로 개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의 인권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학교생활규정, 두발규제, 체벌, 과도한 입시위주 경쟁적 교육시스템, 여가시간 부족, 건강권 등의 문제는 대부분 학교공간 및 교육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 인권환경으로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은 인구구조, 가족구조, 교육환경, 직업·진로환경, 빈곤·양극화, 문화·여가생활, 생활환경 등 사회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모색해 왔다. 주요 사회환경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10-35).

먼저 한국은 결혼연령 상승, 자녀출산 기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개방화,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국제결혼가정 아동이 늘어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초·중고 학생수는 2007년 13,445명으로 2005년도 6,12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핵가족 확대와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이혼가족 및 재혼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환경은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학습동기, 흥미 등 정의적 태도는 매우 취약하고 학교 소속감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은 28만8천원), 참여율은 77.0%, 참여시간은 주당 7.8시간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증가와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는 다시 소득 양극화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청소년의 직업·진로환경 또한 청소년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실업률, 청소년의 높은 입직연령 등 직업 세계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취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활동의 미흡 등으로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 양극화 심화와 빈곤 아동·청소년의 증가는 저소득층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5일제 학습제도 정착으로 주말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가시간이 사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투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2006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사교육으로 중·고교생 77%가 밤 10시 이후 귀가). 청소년의 주된 여가활동은 TV 시청이나 컴퓨터 관련 활동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커뮤니티가 증가하고 인터넷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동시에 인터넷 중독, 인터넷을 통한 비행 등 정보화 역기능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산업구조 조정으로 서비스산업이 비대화되면서 향락산업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급증하고 있고, 미디어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유형의 청소년 유해환경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범죄는 감소경향을 보이지만 청소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감소하고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는 등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다. 스트레스와 사회부적응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경쟁적 분위기 등으로 자살시도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을 이해하고 인권신장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 이러한 청소년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환경 변화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1) 국제협약 기준에서 본 인권수준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2차 권고의견은 2008년 34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진단과 정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현황과 인권신장 활동을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인권영역별 우려사항과 권고의견은 다음과 같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을 중심으로 이종원·장근영·김형주, 2007: 31-34 내용 보완).

생존권에 관련하여 전체 예산대비 보건예산의 비율이 1% 미만이며, 90%의 보건의료기관이 민영이라는 점 등 열악한 보건인프라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모유수유율이 많이 하락한 점, 흡연과 필로폰 등 불법약물 사용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생존권과 관련된 권고사항으로는 보건예산 증대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기관 설립,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규범 채택, 수유여성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에이즈·성병·10대 흡연·약물사용에 대한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 건강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실시 등이 있다.

보호권에 대해서는 체벌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아동학대와 방임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과 법률적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청소년 성착취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충분한 법적 보호절차 없이 범법 청소년들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호권과 관련하여 체벌금지, 그룹홈과 위탁양육 확장, 가능한 가정환경으로 재통합, 사회복지사의 증원과 역량 강화, 협약 제21조에 부합하도록 입양관련 법령 개선 및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학대·방임 사건의 아동 친화적 기소제도 수립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훈련, 전국적인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학대·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통계수집 체계 마련, 이혼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국

가기금 설립 등의 제도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성학대·성착취 피해자들 대상 치료 및 재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 보장, 성착취 관련 법률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 운영, 검사선의주의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발달권에 대해서는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경쟁적인 교육제도로 인한 잠재력 개발 저해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분리교육, 이주노동자 자녀 등 외국인 아동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된 권고사항으로는 공교육 수준 향상, 취학전 교육 및 중등교육의 완전한 무상교육 실시 계획수립, 여학생의 고등교육기회 촉진 및 양성평등교육 조치, 교육 경쟁 감소 및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시키는 교육정책 실시 등이 있다. 또한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부모·아동·교사·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조치, 장애아동의 실태 파악 및 수요조사, 학교·수련시설의 접근성 향상, 통합교육 프로그램 확대, 모든 외국아동들이 국민인 아동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법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참여권에 대해서는 우선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운영규칙이 청소년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아동의 견해 존중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징계절차에서의 의견존중 보장 관련 입법조치 마련, 아동 참여권에 대한 성인대상 교육 실시, 아동의견존중 정도와 그 영향 검토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학교 내외 정책 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주무부처 지침, 학교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청소년 인권실태 진단

국제적 권고를 받은 이후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수행되었고 국제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진단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인식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은 아직 미흡함을 보여준다(길은배 외, 2005: 이용교 외, 2005; 이재연 외, 2005; 국가인권위원회, 2006b; 이종원 외, 2007).

국가인권위원회(2006b)는 국가의 종합적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을 검토한 결과,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교육 기회나 질의 차이,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교육 본래의 목적 달성,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권리 보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1996년, 2003년) 등을 이행하는데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2007년 전국조사를 통해 중고등학생 인권실태를 파악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보여준 청소년 인권실태는 다음과 같다(이종원·장근영·김형주, 2007: 217-220).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청소년인권지표 항목에 기반하여 조사문항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시도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생존권 실태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나 체격조건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과반수가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며, 수면시간도 대부분 부족한 상태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었으며, 저녁식사를 집에서 하는 청소년도 절반에 못 미쳤는데, 과중한 학업부담이 그 주된 요인으로 추측된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영양섭취의 불균형 현상이 보다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영양섭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질병에 대

한 태도이다. 아프더라도 일단 등교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3/4 이상이었고,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기보다는 과반수가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낫기를 기다린다고 응답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학교 보건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과중한 학업부담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고, 4명 중 1명꼴로 학교친구를 경쟁 상대로 의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보호권 실태를 보면,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이나 구타, 협박, 성적인 놀림/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할을 넘었으며, 5명 중 1명은 돈이나 물품을 빼긴 경험이 있었다. 또한 전체 청소년의 과반수가 부모님으로부터, 2/3 정도가 교사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체벌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고, 적극적으로 체벌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실태를 보면, 성에 따른 차별,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이 각각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전체의 2할) 중 1/3 가량이 나이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사회의 유교적 가치관과 성적 위주의 경쟁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인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는 데 대해서 1/3 정도가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국적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의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교성적과 진학/진로 문제였는데,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부모님과 상의하는 경우는 소수에 머물렀고 과반수 이상이 친구와 상담한다고 응답하여 부모-자녀간 대화단절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0명 중 1명이 상담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발달권 실태를 보면, 청소년들의 진학에 대한 의지와 학업 성취동

기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 자체에 대한 흥미와 열망보다는 학력차별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내면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로 전체의 과반수가 직장과 배우자를 얻는 데 유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가정환경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한편 사교육은 2할 수준에 머물러 많은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전체의 7할)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대부분 3시간 남짓한 수준이었지만,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소수인 반면,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7할 정도가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업부담 경감을 통한 여가시간 확대 못지않게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문화·여가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권과 관련하여, 먼저 가족 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가족원 모두가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응답률은 1/4 수준으로 청소년들의 과반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무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학·진로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1/3에 달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세대와의 대화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특히 복장보다는 두발 규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반발감을 나타내었다. 부모님이 자신의 두발이나 복장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과반수에 달하였다. 학생회장 후보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1/3 미만이었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4 정도,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학교는 1할 미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학교도 1할 수준에

불과하여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학교는 소수에 머물렀는데(전체의 1/4), 청소년기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학생청소년 관련 주요 인권이슈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99%를 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하루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인권문제는 학생과 학교의 인권문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학생인권 수준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사회에서 학생청소년은 여전히 입시준비를 위해 기본적 권리를 유보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스스로의 인권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기성세대 및 사회의 대한 이들의 저항도 생겨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인권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들은 우리사회의 학생인권 관련 이슈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학생인권 관련 진정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권침해를 받은 청소년이 직접 진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두발제한과 학교생활규정 관련 인권침해, 성별·장애·학생/비학생 등과 관련한 차별문제, 학교폭력과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 부당한 징계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교과서의 반인권적인 내용에 대한 수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소지 내용에 대한 개선,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개선 권고 등 학교와 교육제도의 반인권적 요소에 대한 권고도 이루어졌다.

〈표 III-2〉 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번호	내용	비고
1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	2002.9.9.
2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권고	2002.10.28.
3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권고	2003.5.12.
4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2003.5.21. 03진인 26 결정
5	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	2003.9.15. 03진차127 결정
6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2005.3.14. 04진인 3256
7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표명	2005.3.25
8	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2005.6.27. 05진차204외 2건
9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5.8.31. 05진인 1055
10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2005.9.28. 05진차 517
11	부당한 퇴학처분관련 인권침해	2005.9.28. 05진차 250
12	여학생 생리시 결석관련 인권침해	2005.12.26.
13	퇴학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2006.5.18. 06진인136
14	성별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차별	2006.5.29. 06진차 37
15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	2006.6.28. 06진인 1030
16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	2006.11.28. 06진차 449
17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6.12.11. 06진차 411
18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 침해	2007.1.15. 06진인 3067
19	학생간 폭행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2007.1.15. 06진인 943
20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1.31. 06진인 2030
21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7.3.28. 06진차 418
22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07.4.16. 06진인 836
23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2007.9.7. 07진인 898
24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2008.1.28. 08진차 13
25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2008.5.19. 07진차 1031
26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등권 침해	2008.5.19. 07진차 459
27	학생 수업 중 경찰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7.3. 08진인 1739
28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9.25. 07진인 4150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주요 결정례 검색 · 정리

최근 들어 학생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이 등장하고 있어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행

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결정됨에 따라 그 동안 학교에서 당연시 되었던 성적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1) 청소년 인권관련 법률¹⁰⁾

청소년 인권관련 법률로는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각 분야 법률들의 청소년 인권보호 조항,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 관련법 내의 인권관련 조항 등이 있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 형법,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관련법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넓은 의미에서 핵심적인 청소년 인권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2003년 제·개정된 청소년 관련3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과 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10)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법률은 2008년 11월 현재, 아동·청소년기본법(안),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안), 아동·청소년복지법(안)으로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I-3〉 청소년관계법의 체계와 권리유형

체 계	구 성	아동권리협약 권리유형
최고 규범	• 헌법	생존권/보호권/ 발달권/참여권
기 본 법	• 청소년기본법	생존권/보호권/ 발달권/참여권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	발달권/참여권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근로기준법 등	생존권/보호권/ 발달권/참여권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보호권

출처 : 김경준 외(2005).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p. 60. 보완

청소년기본법 제2조는 청소년 정책이념 구현을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 ‘청소년 참여보장’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 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방향을 선언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가 적절한 노력을 강구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할 것,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 과정에의 청소년 참여를 위한 ‘청소년특별회의’와 시설운영 과정에의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제도화하고(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인권교육과 홍보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주요 청소년 참여·인권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안정된 가정환경 보장 등의 기본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동법 제4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내용과 이러한 조치를 할 때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제10조 제3항의 내용은 아동의 주체적 인권 실현을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조항 중 하나는 아동권리정책의 조정과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이다. 동법 제4조의 2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행령 제1조의 1에서 7조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청소년 인권정책 현황

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관련부처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노동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3월 아동청소년정책 부처 통합이전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과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여인권팀은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행의 주무부서로서 각각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틀 내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권리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진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관련 정책, 법령, 관행과 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인권정책분부는 인권정책 중장기전략과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정책과제 개발과 실태조사를 기획·총괄하며, 국제인권조약과 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조사·분석 및 국내이행 촉진, 인권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침해구제분부와 차별시정본부에서는 진정에 대한 조사나 직권조사를 통한 구제활동을 하며, 인권교육본부에서는 학교, 공공부문, 시민관련 인권교육을 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을, 교육복지지원국에서는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등 학생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권익증진 관련 업무를, 노동부에서는 연소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권옹호를 주요 업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는 인권국 여성아동과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며 소년보호과에서 보호소년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표 III-4> 참조).

<표 III-4>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 업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권리과 :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권리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센터 및 아동청소년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지원, 아동청소년 권익침해와 관련한 조사 및 구제·지원,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시민사회운동 지원,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등의 운영 지원,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총괄팀 : 인권정책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및 연간 업무계획 수립,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등 ·국제인권팀 :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등 ·인권연구팀 : 사회권 분야 및 중장기 인권과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구제총괄팀 : 침해구제관련 기본계획 수립·총괄·조정, 침해구제 관련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침해구제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침해구제1팀 : 검찰·경찰·국정원·특별사법경찰·군헌병대, 군검찰, 국군기무사령부, 군 교도소, 그 밖에 군 내부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업무 ·침해구제2팀 : 교정·구금시설(다만, 제2항에 의한 군 관련 구금시설은 제외한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업무 ·침해구제3팀 : 외국인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 포함)를 제외한 다수인 보호시설 및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관련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업무

국가 인권 위원회	차별시정 본부	·차별시정총괄팀 : 차별시정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성차별팀 :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 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성 진정사건 관련 업무 ·장애차별팀 : 장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업무 ·신분·나이차별팀 : 학력,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업무 ·이주인권팀 : 출신국가·민족, 인종,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업무 등
	인권교육 본부	·학교교육팀 :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공공교육팀 : 공공부문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공부문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시민교육팀 : 시민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민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교육 과학 기술부	학교 정책국	·학교제도기획과 : 초·중등학교 교육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교육복지 지원국	·교육복지기획과 :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학생건강안전과 : 학생 건강·안전 및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폭력예방대책 총괄, 성폭력예방대책 수립·추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등
여성부	권의 증진국	·권익기획과 :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성매매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등 ·인권보호과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등
노동부	근로 기준국	·근로기준과 :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근로조건지도과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	·소년보호과 :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년보호행정 관련 법령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 감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지도 감독,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 기타 처우, 교과교육소년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직업훈련소년원의 직업전문학교과정 운영,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인권옹호과 :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구조지원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여성아동과 :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 등
-----	-----	---

② 통합 이전 아동과 청소년 인권정책

아동과 청소년정책 통합 이전, 분리되어 추진되어 오던 아동과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이해를 돕는다. 2008년 3월 이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수행의 핵심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였다. 당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각각의 체계 내에서 인권사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뿐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나 파급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 인권정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체계에 근거하여 9·24세를 대상으로, 서로 중복된 대상에게 분절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증진 및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¹¹⁾을 직제상 기능으로 하고 있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¹²⁾을 기능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두 부처는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아동권리지표,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7. 5. 15. 대통령령 제20057호) 제15조 3항 제20호의 다목

12) 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 1. 23 총리령 제802호) 제4조 5항 제12호

청소년인권지표, 아동백서, 청소년백서 등 중복되는 연령 대상의 연구를 각기 실시함으로써 연구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였고, 청소년인권센터,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도 아쉬움이 있었다. 결국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있었지만 인권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³⁾

특히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기대를 모았으나 ‘국가아동권리위원회’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갖는 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자문기구 기능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담당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인권정책 모니터링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기존에 복지정책의 틀 내에서 실행되어 오던 사업 외에 새롭게 개발·시행된 인권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아동참여와 인권교육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잔여적 아동복지정책 틀 속에서 취약계층 아동인권 보호와 안전문제 중심의 인권사업에 주력하고, 연령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대의 아동인권 활동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여인권팀은 2005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청소년 인권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사업과 인권교육 자료 개발, 청소년인권분과위원회 및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접수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인권이슈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다양한 자치기구 운영

13)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는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청소년기본법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한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 협조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4조의 2).

을 통해 청소년 참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이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실제 시행되지 못하였고 인권사업 뱅크로서 의미만 갖게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청소년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노력을 펼친 결과,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원심야교습 시간제한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옴으로써 인권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내기도 하였다. 대상으로 볼 때 청소년 인권정책은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인권신장 사업에 주력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담당부서로 아동청소년권리과가 탄생하였다.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과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아동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통합된 주무부서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생애 전기(前期)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또한 새롭게 수립될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의 큰 틀과 맞물려 아동청소년 인권영역들을 한 축으로 두고 연령단계별, 그리고 대상집단별 세부 인권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③ 통합 이후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2008년 새롭게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권리과는 기존 아동과 청소년정책 담당부서에서 각기 나누어 실시되어오던 인권정책사업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지만 특히 아동청소년권리과에서 인권신장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⁴⁾ 관련 내용은 아동청소년정책실의 ‘2008년 주요 업무현황’ 자료

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주무부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사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리증진을 통해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및 권리증진’과 ‘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권리센터 설치·운영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운영 기관(4개 시·도)을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16개 시·도)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2008년 시범운영기관은 광주YMCA, 홍사단,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월드비전강원지부 등 4곳이다. 이들 센터는 권익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인권상담·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08년 가장 큰 사업의 하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시민권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통분야, 초등생용,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용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운영 내실화 및 체계 정비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군·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모든 생활권 수련시설까지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14) 아동·청소년정책실의 하위부서 중 아동과 청소년관련 부서에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권리과,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매체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등이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외에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하겠다. 인권위는 2007년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인권위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전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정책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검토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2008년에도 인권위는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요보호아동 인권, 가족관계에서의 아동인권을 개선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및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 학생관련 법제 개선 검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 보급 및 실천 강구, 교사 인권교육 강화, 학생인권 주간 선포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 등 요보호아동 인권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 등 피학대방임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인권교육 강화 및 담당 공무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관계에서의 아동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입양절차 등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입양시 아동의 의사표명권 확대 검토, 아동 해외입양시 국적상실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입양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혼시 아동이익 우선을 위해 이혼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처분과 변경시 아동의 참여권 확대, 이혼시 아동 양육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00여종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중 10여종의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해 왔다.¹⁵⁾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인권

15)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200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2003), 아동권 기초현황 조사(2004),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장려하여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인권교육실천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¹⁶⁾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30여건의 권고를 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때로 매우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사회의 아동청소년은 빈곤과 같은 전통적 위험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세계화 등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위험에 의해 어려운 인권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은 인권의 주체가 아닌 소외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를 받은 이후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차 권고 이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이 진전되어 21개 권고사항 중 18개 항목이 이행되거나 이행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연 외, 2005).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민법 개정을 통해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와 활동 증진, 보육, 성폭력 예방 등에 관련된 예산은 2003년 약 18조원에서 2007년에는 약 28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도 확대되는 등 진전된 사항들을 볼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8: 1-2).

적 차별 연구(2005),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 실태조사(2005), 중고등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2006), 아동학대 실태조사(2006), 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2007) 등 다양한 인권주제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16) 인권교육실천시범학교는 1기 5개교, 2기 11개교, 3기 8개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아동·청소년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이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새정부 출범 이후 복지예산의 삭감,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둔화 등의 현상은 아동과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도는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과제가 설정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이 정책 전반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단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민간단체와 자치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 아동과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언은 V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¹⁷⁾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중국에서 미성년자는 18세미만의 공민이라 정의하고 있다. 「중국헌법」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라고 규정하고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인, 18세 미만의 공민은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다(선거권은 18세 이상부터 부여). 이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정의와 일치하며, 미성년자는 연령 특징에 따라 0-3세는 영아기(嬰兒期), 3-6세는 유아기(幼兒期), 6-12세는 동년기(童年期), 12-15세는 소년기(少年期), 15-18세미만은 소년후기(少年后期)로 나눈다. 이외에 0-1세를 영아기에서 분리하여 유아기(乳兒期)로 구분하기도 한다. 「중국미성년자보호법」에서도 보호의 대상을 18세 이하의 중국공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미성년자수는 2000년 중국 제5차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3.45억명으로 전체인구 12.43억명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통계국 2005년 전국인구 1% 표본조사 발표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약 3.41억명으로, 그 중에서 1세부터 14세가 2.65억명, 15세에서 18세미만이 0.76억명으로 전체인구 13.08억 명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 유엔에서 개최한 세계아동문제정상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고, 1991년에 정식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전에 관한 세계선언」과 「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에 관한 세계선언 행동계획」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였고, 1991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비준하여, 1992년 4월 본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5년 최초로 아동협약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제2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중국은 2001년부터 2010년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시기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의 현대화와 경제 및 사회진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소질의 고양과 인적자원의 개발을 중요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

17) 이 절은 이근진실장(경기도 현암고등학교 교육행정실)이 집필하였다.

민경제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강요」(이하 줄여서, 十五)에 중국아동의 발전을 위한 「중국아동발전강요(2001-2010년)」(이하 줄여서, 「아동강요」)을 포함시켜 아동사업을 국가급 행동강령으로 삼고 아동과 건강, 아동과 교육, 아동과 법률보호, 아동과 환경이라는 4개영역에서 18개 주요목표와 53개의 하위목표를 정하여 중국 아동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유엔아동회의의 전 세계 아동발전 목표와 「과리서약」의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실천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급 계획 이외에도 중국 대부분의 성(省)과 지(地)와 현(县)에서도 각각의 아동발전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5년 8월 중국국무원은 제 4차 전국부녀자아동공작회의를 열어 「아동강요」의 전 부문에 걸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15개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전국 31개 성의 아동사업 발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2007년 국무원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이하 줄여서, 부녀자아동공위)에서 발표한 「중국아동발전강요(2001-2010년) 중기평가보고」에 따르면, 4개 영역의 50개 항의 발전목표 중에서 2005년까지 30개 항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고, 2개 항은 곧 목표달성 예정이며, 11개 항은 목표 미달성, 7개 항은 수치측정 불가라고 발표하였다.

- 목표달성지표(30개 항) : 농촌임산부 입원분만율, 고위험임산부 입원분만율, 농촌 소독조산율, 도시임산부 보건관리율, 농촌임산부 보건관리율, 영아사망률, 5세이하아동사망률, 신생아 질식사망률, 5세이하아동 폐렴사망률, 5세이하아동설사사망률, 면역예방접종률, B형간염백신 접종률, 저체중출생 발생률, 0-6개월영아모유수유율, 비타민A결핍 아동률, 요오드염식용률, 농촌아동 보건관리율, 초중학생 「국가체육단련표준」 합격률, 16세이하미성년자 약물중독률, 초등학교 학령아동 순입학률, 초등학교 5년과정률, 초중학교 총입학률, 각종 학부모 학교수, 소년 법정개설수, 법률기구의 원조를 받는 미성년자수, 농촌음용수 안전보

- 급률, 농촌위생화장실 보급률, 도시 오염수 처리율, 산림면적, 녹지면적
- 목표달성예정지표(2개 항) : 임신부중 심각한 철 결핍성 빈혈발병률, 5세 이하 아동 중 심각한 영양불량 발병률
 - 목표미달성지표(11개 항) : 혼전 의학 검사율, 출생결함발생률, 임신부 사망률, 신생아과상풍발병률, 영유아부모의 과학적 양육지식 보급률, 도시아동 보건 관리율, HIV/AIDS감염자수, 입학 전 3년 유아원 총 입학률, 아동강요에 적합한 아동복지원을 갖춘 도시 수
 - 수치측정불가지표(7개 항) : 아동 부모에 대한 가정교육지식 이해율, 미성년자범죄율, 미성년자재범죄율, 농촌 물 부족지구 급수 혜택을, 도시쓰레기 무해처리율, 아동의 교외활동 장소 수, 장애아동 회복률

번호	주요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목표	목표도달 판단	수치근거	
17	B형간염 면역검종률	%	91.83	93.21	94.86	96.62	98.73	98.96	전체	●	동계국연보	
18	5세이하 아동중, 감각한영양불량률(비비율)	%	3.09	3.01	2.83	2.70	2.56	2.34	2.32	★	동계국연보	
19	저체중출생률(비율)	%	2.40	2.35	2.39	2.26	2.20	2.21	<5	●	위생부	
20	영유아부모 과학적양육지식(비율)	%					65.8	(2006)	>85	▼	위생부조사	
21	0-6개월영아 모유수유률	%					88.7	(영,구,시단위)	85	●	위생부	
22	비타민A결핍아동(비율)	%	11.2	(1998)			9.1	(2006)	감소	●	위생부조사	
23	요오드염 사용률	%	88.9	88.9	88.8	93.47	90.2(계)5차 전국요오드 관련조사(수치)	>90		●	동계국연보	
24	도시아동 보건관리률	%	81.98				82.3		>90	▼	위생부	
25	중국어보통어관리률	%	68.32				69.71		>60	●	위생부	
26	중국어「국가체육단련표준」합격률	%					95.76	96.08	>90	●	교육부	
27	전체야목종독자중 미성년자종독자수(16세 이하)	%	1.1	1.2	1.05	1.1	0.9	0.6	예만	●	동계국연보	
28	전국당년HIV/AIDS감염자수	건	5201	8219	9732	21691	47606	36614	예만(물체)	▼	동계국연보	
			22517	30736	40468	62159	106990	144089				
29	중등학교학령아동(인)학률	%	99.11	99.05	98.58	98.65	98.95	99.15			●	동계국연보
			94.54	95.3	98.8	99	95	학력				
30	중등학교5학년진학률	%	94.54	95.3	98.8	99	95			●	동계국연보	
31	중등학교졸업학률	%	88.60	88.70	90.00	92.7	94.1	95.0		●	동계국연보	

자료 : 중국국무원부녀자어동문좌위원회(2007), 중국어동문좌강요(2001-2010년) 통계평가보고, pp.24-28

번호	주요 지표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목표	부표도판	수치근거
32	입학전3년 유아원입학률	%	37.70	35.90	36.80	37.40	40.75	41.00	기본적인 입학전교육 실시	▲	교육부
33	운동입학전1년 유아원입학률	%	75.40	70.00	68.30	64.30	71.80	72.70	비교적 높은양상	▲	교육부
34	고등학교운동입학률	%	38.20	38.60	38.40	42.10	46.50	50.90	>80	▲	교육부
35	각중학부모호학교수	만개			30	29	33	36	증가	●	올계국연보
36	이동부모의 가정교육지식이해률	%							향상	■	
37	미성년자범죄율	%							감소	■	
38	미성년자범죄피율	%							감소	■	
39	소년범죄정개천수	건	2500	2500	2500	2420	2420	2420	개천	●	올계국연보
40	법률기구위원조를받는미성년수	명	27439	37206	37664	45981	54421	66667	이동률 위한 법률원조 제공	●	올계국연보
41	운동문부주기구문수해법률	%							향상	■	
42	운동문용수안전보법률	%	59.2	61.5	62.6	64.5	65.6	66.9	향상	●	수리부
43	운동위생화장선보법률	%	44.80	46.09	48.66	50.92	53.10	55.31	향상	●	올계국연보
44	도시소태기무해범죄율	%							향상	■	올계국연보
45	도시오염수처리율	%	34.25	36.43	39.97	42.12	45.67	51.95	향상	●	올계국연보
46	산림면적	10,000 ha.	15894	15894	15894	17491	17491	17491	향상	●	건설부
47	도시산림녹지면적	10,000 ha.	47.50	67.80	86.50	121.20	132.20	146.82	증가	●	올계국연보
	1인당 운동녹지면적	m ²	3.69	4.60	5.40	6.50	7.40	7.89			
48	현(시)의 아동교외활동장소	%							현(시) 90%에서 최소1개 이상	■	
49	장애아동회복률	%							향상	■	
50	아동강요에 걸린한 아동복지원들 것을 도시는 개	개	137	137		185	190	197	도시마다 기본적으로 1개	▼	민정부

(1) 아동과 건강

① 혼전의학검사율은 전반기 상승 후 후반기 하락, 결함 있는 출생률 상승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혼전의학검사율이 매년 상승하여 2002년에는 68.03%에 도달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대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5년에는 2.93%까지 떨어졌다. 결함 있는 아동 출생률은 계속 상승하여 2000년에는 109.79/만명, 2005년에는 138.96/만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아동강요」에 따른 2010년 혼전의학검사율의 도시 80%, 농촌 50% 목표달성과 결함 있는 출생 발생률 감소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면역접종 보급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 국부적으로 전염병 발생 및 유행
2001년 이래로 아동에 대한 4대 백신-BCG, 소아마비, DPT, 홍역-면역접종률은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각각 98.99%, 99.0%, 98.97%, 98.55%로 이미 「아동강요」 목표인 2010년 진(구)단위 이상 90% 이상을 초과 달성하였다. 2002년부터는 신생아B형간염 면역접종사업을 시작하였고, “十五”기간 동안 중앙재정에서 1.8억 위안을 투입하여 중서부의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B형간염백신을 보급하였다. 2005년 B형간염 아동접종률은 98.96%로 2000년도에 비해 7.13%p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부적으로 전염성 질병이 유행하여 2005년 일부 지역의 홍역 발병건수는 12만건, 발병률은 9.4/10만에 달하였다. 전염병 유행지역은 면역체계가 빈약한 서부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동부지역이었다.

③ 모자보건의 개선, 영아사망률 감소

2005년 농촌임산부의 입원 분만율은 81.0%, 농촌 소독 접종률은 96.6%로 2000년보다 각각 15.8%p, 1.7%p 향상되어 2010년 목표치 65%, 95%를 초과하였다. ‘영아사망률과 5세 이하 아동사망률 감소사업’도 순리적으로 진행되어 2005년도에는 각각 19.0‰, 22.5‰로 2000년에 비해 41%와 43%가 감소하였다. 영아사망률은 2000년도 53/10만 명에서 2005년 47.7/10만명으로 5.3/10만 명이 감소하였으나, 최종 목표인 39.75/10만명보다는 여전히 7.95/10만명이 높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추세로 볼 때, 2010년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2005년 신생아 파상풍 발병률은 1000개의 시범 현 중에서 29개 현에서

1%이상으로 나타났다.

④ 아동영양 주요 기본목표는 실현, 요오드부족관련 질병 퇴치노력

2005년 전국의 5세 이하 아동 중 심각한 영양불량 발병률은 2.34%로 2000년보다 0.75% 감소하여 「아동강요」의 2010년 목표인 2.32%에 근접하였다. 0세부터 6개월 영아의 모유 수유율은 2005년에 2010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88.7%에 달하였다. 농촌 아동의 보건 관리율은 2005년 69.7%, 초중학생의 「국가체육단련표준」 합격률도 90%를 초과하여 2010년 목표를 완성하였다. 2005년 제5차 전국 요오드 관련 질병 조사연구에 따르면, 2005년도 전국 주민의 적정 요오드염 식용률은 90.2%이고, 요오드염 사용률은 95.2%로 나타났다. 8세부터 10세 아동 소변의 요오드염 함량은 246.9 r/l, 갑상선비대증 5.0%로, 전국적인 요오드부족질병퇴치의 부분적인 목표는 달성하였다.

⑤ HIV/AIDS 감염자수의 빠른 성장, 모자 전염 위험의 증대

전국 HIV/AIDS감염자 누계 보고에 따르면, 감염자수는 2000년 22,517건에서 2005년 144,089건으로 증가하였다. 관련기관 보고에 따르면, 2005년 말, 전국 HIV/AIDS감염자 및 환자의 수는 약 65만명, HIV/AIDS병으로 인한 18세 이하 고아는 약 3.9만명, 특히 여성 HIV/AIDS감염자수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6.3%에서 27.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 HIV/AIDS감염자의 증가는 모자 간 HIV/AIDS전파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2) 아동과 교육

① 9년 의무교육 및 청소년과 성인의 문맹자퇴치운동의 안정적 추진

2005년까지 전국의 의무교육과 문맹자퇴치 참여율은 95%를 넘어 2000년보다 10%p 향상되었다. 2001년 이래로 전국 초등학교 학령아동의 입학률은 99%정도로 안정적이며 2005년에는 99.15%에 도달하였다. 초등학교 5년 과정은 2005년 99%에 도달하였고, 초중학교 총 입학률은 2000년 88.6%에서 2005년 95%로 향상되어 「아동강요」 목표를 달성하였다. 2005년 전국의 의무교육 학생 수는 17,079만명이며, 의무교육 기간 중 진학률도 많이 향상되

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진학률이 각각 98.4%와 69.7%로 2000년보다 각각 3.5%p, 18.5%p 높아졌다.

② 특수교육의 안정적 발전, 장애아동교육의 확대

2005년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593개소로 2000년보다 54개소가 늘어났다. 의무교육단계의 장애아동은 36.44만명으로, 일반학교의 장애인 특별반에 입학한 장애학생과 특수학교의 장애아반에 입학한 학생 수는 각각 전체의 61.34%와 63.13%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많은 특수학교에서 입학 전 교육반을 개설하고 있으며, 보통의 유아원 내에도 장애아동반이 생겨나고 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은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전국 200여개의 특수학교에는 직업계 중고반과 일반계 고등반이 개설되고 있다.

③ 입학 전 교육의 보급 향상

입학 전 3년 유아원 총 입학률은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2005년 말까지 41%로 2000년에 비해 3.3% 증가했으며, 입학 전 1년 유아원 입학률도 72.7%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2005년 전국도시유아원수는 19.78만개로, 2000년도에 비해 3.68만개가 늘어났으며 유아원의 재학생수도 569.2만명으로 2000년보다 3.68만명 증가했다. 현재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유아원입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0세부터 3세 아동의 조기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원에서 받아들이는 유아연령을 3세 이하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일부 도시는 유아원과 기타 사회공공자원을 결합하여 지역의 조기교육 기지로서 0세부터 3세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학부모에 대한 육아지식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5년 간 부녀자연합회에서는 모자클럽 5,714개소와 0-3세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지원센터 5,767개소를 설립하였다.

④ 고등학교 교육규모의 확대, 총 입학률 지속적으로 향상

2005년 전국 고등학교(성인을 위한 고등학교와 성인전문 중학교 제외)의 학생 수는 3,896.58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651.14만명 증가하여 73.53%p가 향상되었고 2005년 전국 고등학교 총 입학률은 50.9%로 2000년보다 12.7%p

향상되었다. 최근 비교적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동강요」의 2010년 목표 80%와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다.

⑤ 가정교육의 중시, 학부모 학교 수 증가

2005년까지 전국 29개 성, 332개 지, 1,929개 현 및 12,897개 향에 가정교육지도기관이 설립되었다. 전국의 성급 시범학부모학교 2,907개소, 학부모학교사업소 11,420개소, 유동인구학부모학교 1,410개소, 초중등 및 유아원 학부모학교는 348,958개소가 설립되었으며 25,558개의 구역에도 111,128개소의 다기능 지역가정교육지도센터가 설립되었다.

(3) 아동과 법률보호

① 미성년자 범죄

2001년 이래로 전국 공안기관에서는 부녀자아동의 유괴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괴예방을 위한 사회홍보와 집중적으로 유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공안기관의 부녀자아동 유괴건수는 2.8만 건, 검거범죄자수는 2.5만여명이며, 유괴된 부녀아동의 구제인원은 5.5만여명이다. 전국의 유괴범죄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부녀자아동에 대한 유괴범죄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5년 형사범죄의 침해를 받은 미성년자는 9.6만명으로 2004년보다 9.1% 감소되었다.

② 미성년자범죄 상승추세, 예방대책의 중요성 증대

2005년 전국 각지의 인민법원에서 판결한 미성년자 범죄인 수는 82,692명으로 전체 범죄인수의 9.81%를 차지한다. 이는 2004년에 비해 17.9%가 상승한 수치이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에 14세에서 16세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1.42%, 12.21%, 14.62%, 15.31%, 15.09%다. 2005년 공안기관 발표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미성년범죄 피의자는 전체 형사범죄 피의자수의 13.6%를 차지하여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의 90%의 시에는 미성년자 범죄예방 지도팀이 설립되어 있고, 성과 지에도 ‘청소년권리보호센터’가 130여

개소 설립되어 있으며, 28개 성에는 청소년권리보호와 심리 상담을 위한 전화가 개통되어 청소년의 법률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③ 법률원조 기구의 증가,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확대

각급 사법행정기관과 법률원조기구에서는 부녀자와 미성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와 법률원조를 중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전국 각지의 법률원조기구의 부녀자아동을 위한 법률원조 처리건수는 552,247건으로 241,939명의 미성년자가 법률지원소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또한, 각지의 공청단에서 위탁하여 설립한 미성년자전문 법률원조 서비스기구도 1,132개소가 있다.

(4) 아동과 환경

① 아동생존을 위한 자연환경 개선

2005년 전국인구평균 녹지면적은 7.89㎡로 2000년보다 4.2㎡가 늘어났다. 지표수수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의 오염 수 처리율은 2005년 51.95%로 2000년보다 17.7%p가 향상되었다. 2005년 농촌 수질개선으로 인한 혜택인구는 8.89억명, 누계 혜택률은 94.1%로 2000년보다 1.7%p가 향상되었으며, 농촌의 위생화장실 보급률은 55.31%로 10.51%p가 향상되었고 대소변 무해화 처리율은 59.5%로 28.3%p가 향상되었다.

② 아동발전을 위한 사회 환경 개선

2000년 이래로 전국의 청소년체육클럽은 2,379개소가 설립되었고 매년 클럽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수는 1억명 정도 된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정부는 복권 공익금을 사용하여 1,092개소의 교외 활동센터를 설립하였고, 지방정부도 복권 공익금 반환액으로 712개소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1,804개소의 교외활동장소가 설립되어 396개의 현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05년도 말 전국 공공도서관수는 2,736개소로 2000년보다 59개소가 증가하였고, 박물관은 1,556개소로 164개소가 증가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정부는 보조금 4.8억위안과 지방정부자금을 합하여 1,078개의 도서관 및 문화관을 신축 또는 개축하여 현급 도시의 문화관, 도서관 건설목표를 기본적으로 실

현하였다. 2004년 「중국공산당중앙국무원의 미성년자 도덕사상건설에 대한 강화 의견」 발표 후 문화부와 국가박물관은 전국의 각급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입장료 우대 규정을 마련하였다. 문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부서에서도 국가산하의 공익성 문화시설에 대한 미성년자의 입장료 면제 및 우대에 대한 실시의견을 마련하여 미성년자의 도덕사상교육에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라디오와 TV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촌촌통공정(村村通工程)¹⁸⁾’과 ‘서장신장공정(西藏新疆工程)¹⁹⁾’, ‘2131공정(2131工程)²⁰⁾’을 통해 방송시청각 기초설비조건과 종합적인 전파수용력을 향상시켜 농촌 특히 국경지대 아동들의 문화생활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다.

③ 아동성장의 문화 환경 정화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들이 많은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국무원은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PC방의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출입문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푼말을 설치토록 하였다. 그리고 신문출판총서와 공상총국에서는 CD와 전자출판물, 인터넷출판물에 대한 관리규범을 강화하여 소비자 특히 부녀자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부는 음란물사이트 철폐 등 인터넷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부근의 PC방 설치 및 영업도 엄격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④ 아동안전보호의 강화

중국은 아동의 심신건강을 위해 의복, 식품, 약품, 장난감, 문구, 아동의 활동장소와 관련 있는 설비에 대한 기술규정을 마련하였다. 2004년 아동장난감에 대한 국가 강제성 표준을 마련하였고, 2005년에는 영유아 식품에 대한 국가표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안기관에서는 학교주변의 치안질서

18) 1998년 중앙당과 국무원에서 실시한 농촌의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

19) 2002년 9월부터 시작된 중국 서장지역과 신장지역의 TV방송 확대를 위한 방송설비사업

20) 1998년부터 문화부와 5개 기관이 공동 실시하는 행정촌에 매월 1회 영화상영하는 농촌문화발전 중점사업

유지를 위한 “8조실시안”을 내놓고 학교주변 순찰제도, 초중학생에 대한 법치안전교육 실시, 학교의 소방감독 및 교통안전관리 지도 등 초중학교의 안전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부녀자공작위원회와 유니세프에서도 2003년부터 의외의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안전학교, 안전가정, 안전사회’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전개하여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곤경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2005년 전국에는 아동복지전문기구가 224개소가 있고, 이외에도 600개소의 종합복지기구에서 7.8만명의 아동들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국의 고아 및 영치아동 5.1만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2005년, 전국의 AIDS에 걸린 아동은 8,644명으로 그 중 학령아동이 4,730명, 이미 학업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 4,385명으로 수업료면제 혜택률이 92.7%에 달한다. 장애아동의 회복훈련은 강화되고 있으며, 2005년 회복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수는 5.47만명으로 전국누계 26.4만명이다. 중국장애인연합회의 청력장애학생을 위한 청력언어 회복 기구는 1,700여개소가 있고,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아동의 회복센터와 구역 회복 기구는 일만여 개소로 10여만명의 뇌성마비와 지적장애, 청력장애아동이 회복 훈련 중이다. 유랑아동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2005년 말까지 중앙정부는 5,100만위안 복권공익금과 지방정부자금을 투입하여 130여개의 유랑아동 임시보호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생활근거지가 없는 유랑거리 아동을 위한 구제관리방법을 실시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32.5만여명의 유랑아동이 도움을 받았다.

(5) 아동과 참여활동

중국은 청소년이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청소년은 약자이고 아직까지 세계관이나 인생관, 가치관이 확고히 성립되지 않았기에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공산당교육을 비롯한 기초사상교육과 특기훈련, 흥미훈련 등 사회교육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중국 청소년의 대표적인 사회 자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청단(중국공산당청년단)의 지도아래 중국소년선봉대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청소년의 교외교육 활동기구로서, 자치적인 청소년 활동기구라기 보다는 지도자의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에 가깝다. 현재는 ‘어린 독수리 표창’을 주요활동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는 각급의 청소년궁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상교육훈련과 실천활동, 흥미반, 특기반, 기능반과 학교특색반 등 교내활동과 교외활동을 종합평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기초반 즉 사상교육은 필수코스이며, 흥미반과 특기반 등은 선택코스이다. 청소년들은 상호 협동하여 과제를 완성한 후 자기평가와 친구평가, 지도자평가를 통해 학교 내 소질교육과 연계되어 공청단과 소년공작위원회,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수여받게 되며 이러한 표창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년선봉대는 공산당 내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사상교육을 위주로 하여 민족정신교육, 이상신념교육, 법치교육, 과학정신교육, 인문교양과 문명함양교육, 심리건강교육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조직내에서는 대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선봉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대원들은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조직의 결정에 복종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조직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조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중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우수한 소년선봉대원은 조직의 추천을 통해 공청단에 들어갈 수 있으며, 가입연령은 7세부터 14세까지이고, 14세 이상의 선봉대원은 조직에서 나가야 한다. 특색활동으로는 대원회의 개최, 조직 참관, 방문, 야영, 여행, 이야기회, 문화과학전시회 참관, 오락게임, 군사체육 등의 흥미활동과 공익노동사업과 사회활동이 있다.

중국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공산당의 주도아래 사상교육과 사회실천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외의 자치활동도 학교의 소질교육 평가와 연계되어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래 들어 각급의 청소년활동센터를 통해 사상교육과 더불어 소질개발교

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흥미와 기능, 특기의 개발 및 개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중국은 1990년 세계아동문제 정상회의 참석 후 「90년대 중국아동 발전규획 강요」를 제정하여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세계적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였고, 1995년 최초로 아동협약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적인 아동인권관련 단체인 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난 10년 동안 예방위주의 정책을 통해 농촌을 중심으로 한 부녀자와 아동의 보건서비스 향상과 중국아동의 영양개선, 여아의 권익 보호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간·도농간 발전 격차의 완화, 농촌의 위생문제해결, 9년 의무교육의 보급을 중요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아동권리협약」의 2차 이행보고 및 「아동 매매,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책임의정서」에 관한 1차 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가 아동보호사업의 진전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본 공약의 국제의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3.5억 아동인구를 가진 발전도상국으로서 여전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전 및 참여 등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부서

중국국무원은 1993년 부녀자아동협조위원회를 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로 개명하여 국무원의 부녀자아동사업에 대한 협의 및 의사기구로 비준하였다. 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는 정부조직 중에서 발전개혁위, 중앙선전부, 외교부, 교육부, 과기부, 국가민위, 공안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주택도농건설부, 수리부, 농업부, 상무부, 문화부, 위생부, 인구계획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전기총국,

신문출판총서, 체육총국, 통계국, 임업국, 법제사무실, 전국총공회의 28개 기관과 공청단중앙, 전국부녀자연합회, 중국장애인연합회, 중국과학협회의의 4개 비정부조직이 연합하여 구성된 기구이다.

○ 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의 주요기능

- 국가 부녀자아동발전 중장기 계획 편제 및 조직편성, 감독, 평가
- 부녀자아동발전강요 실시를 위한 국무원 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 소속 33개 성원 부서 간 업무 조율 및 추진
- 부녀자아동발전을 위한 중요문제 연구조사
- 전국부녀자아동공작회의를 대표하여 국무원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 전체회의, 토론회, 교류모임과 표창사업 처리
- 성급 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 판공실 지도
- 기타 일상행정사항
- 유니세프와의 합작사업 추진

○ 주요 추진사업

- 국무원의 「중국부녀자발전강요(1995-2000년)」, 「90년대 중국아동발전계획강요」, 「중국부녀자발전강요(2001-2010년)」, 「중국아동발전강요(2001-2010년)」 제정 및 반포
- 부녀자아동강요 실시를 위한 정부 유관부서간 기능 조율 및 추진사항 협조 등 전반적인 부녀자아동사업 추진
- 부녀자아동강요계획 실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국가단위 모니터링 실시
- 중서부 빈곤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의 아동교육 및 모자위생, 수질개선 및 화장실개선 등 중점과제 추진, 중서부지역의 부녀자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개선사업
- 정부지도자에 대한 아동강요계획 관련교육 실시
- 부녀자아동강요 실시, 부녀자아동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협조

(2) 중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이에 따른 개선 노력

①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안에 아동발전계획을 포함시켜 아동사업과 경제 사회발전 병행 추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강요」(이하 줄여서, 十一五)에 부녀자아동발전과 관련 있는 교육, 위생, 문화, 인구소질 분야 등을 중요 추진계획으로 포함시켰으며 ‘부녀자아동권익보장에 관한 장’을 특별히 신설하여 부녀자아동발전과 사회경제발전을 일치시켜 진행시키고 있다.

② 법률 및 정책 보완을 통한 아동의 합법적 권익 보호 노력

2002년 중국은 「<아동권리협약>중 아동매매,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책임의정서」, 「<아동권리협약>중 무장 충돌 시 아동투입에 관한 책임의정서」, 국제노동기구 제182호 공약인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즉각 행동」에 상호 비준하였으며 교육, 보건위생, 아동보호, 지역격차 및 성불평 등해소에서 아동발전을 위한 강제력이 있는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였다. 「헌법」, 「형법」, 「민법통칙」, 「혼인법」, 「교육법」, 「의무교육법」, 「장애인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범죄예방법」, 「부녀자권익보장법」, 「모자보건법」, 「전염병방지법」, 「수양(가정위탁)법」, 「인구와계획출산법」 등 일련의 부녀자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전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체계를 기본적으로 완비하였고, 2001년 이래로 「헌법」, 「전염병방지법」, 「부녀자권익보장법」, 「의무교육법」, 「미성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인보장법」을 개정 중에 있다. 2001년 이래로 부녀자아동과 관련 있는 법규 및 정책성문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원의 기초교육 개혁 및 발전에 관한 결정」

「도시생활근거지가 없는 유랑거지인원에 대한 구조관리방법」

「법률원조조례」

「가정위탁관리일시시행방법」

「아동사회복지기구기본규범」

- 「혼인등기조례」
-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
- 「중국공산당중앙국무원의 미성년자 도덕사상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
- 「농촌교육의 강화를 위한 결정」
- 「도시노동자의 자녀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
- 「유아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
- 「국무원판공실의 초중학교, 유아원 및 소년아동에 대한 안전관리와 정비 계획 실시에 대한 의견」
- 「빈곤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한 의견」
- 「‘흥변부민(兴边富民)²¹⁾’추진을 위한 행동의견」
- 「아동완구에 대한 강제성 국가표준」
- 「국가완구기술규범」
- 「유랑미성년자에 대한 의견」
- 「‘미래를 위해 복역 중인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행동’전개에 대한 통지」
- 「생활이 빈곤한 AIDS 환자, 환자 가족, AIDS 고아에 대한 구제 강화에 대한 통지」
- 「도농의 특수빈곤미성년자의 교육지원 강화에 대한 통지」
- 「CD출판관리방법」
-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실시의견」
- 「농촌음용수 안전위생에 대한 평가지표」
- 「고아구제 강화에 대한 의견」
- 「미성년자 활동장소 건설계획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 「농촌 위생 강화에 대한 결정」
- 「태아성별감지 및 성별선택을 통한 인공유산수술 금지에 관한 규정」
- 「출생인구의 성비차이 종합관리에 대한 의견」
- 「국무원의 농촌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경비지원체제 개혁에 대한 통지」

21) 1998년 국가민족위원회가 발의한 사업으로 낙후된 소수민족지역의 생활개선사업

이외에도 「유괴에 관한 국가행동강요」, 「영양개선조례」, 「대형위락시설 안전감독규정」 등을 마련 중에 있다.

③ 정부의 아동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범부처 연합체제 마련

중국국무원은 국무원부녀자아동공위의 참여 정부기관을 29개에서 33개로 늘렸으며 성급 정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의 부녀자아동공위 및 관공실도 체제를 한층 강화하여 인원편제 및 예산경비를 증가하였다. 국가와 각급 정부는 기관별로 아동발전을 위한 목표를 분담하는 목표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해당 정부의 부녀자아동공위에 아동강요목표의 실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④ 국가아동발전목표완성을 위한 지방계획 및 전문계획 수립

아동발전을 위한 전문계획으로 「중국AIDS억제 및 방지행동계획」, 「중국 농촌기초위생보건발전강요(2001-2010년)」, 「중국출생인구소질향상 및 결함 출생과 장애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중국 음식물과 영양발전 강요」, 「국가서부지구·양기(两基) 건설계획²²⁾」,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 「기초교육과정 개혁강요」, 「초중학생 심리건강교육지도강요」, 「전국가정교육 10차5개년계획」, 「전국9억농민건강행동계획」, 「전국결핵방지계획」, 「아동장애종합관리실행동계획(2003-2005년)」, 「중국0-5세영아영양개선계획(2005-2007년)」, 「2003-2010년 전국척수회백질염퇴치행동계획」, 「2006-2010년 전국B형간염방지계획」 등이 제정되었고, 서부빈곤지역의 일부 현의 아동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합작행동계획이 실시중이다.

⑤ 재정투입 증대를 통한 중점사항 해결 노력

a. 임산부 사망 감소

‘임산부 사망률 감소, 신생아과상풍 퇴치사업’은 중국이 90년대 아동발전 강요에서 실현하지 못한 목표로서 2000년부터 국무원부녀자아동공회, 위생부, 재정부가 연합하여 서부빈곤지역의 부녀자아동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까지 중앙과 지방정부는 현과 향진의 위생기구에 산

22) 중국국무원이 서부지역 국민소질향상과 동서부간 지역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9년 의무교육 보급과 청·장년문해 사업

부인과 설비 및 인원을 보강하였고, 현에는 임산부응급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현과 향과 촌을 순회하여 임산부가 입원하여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통로(绿色通道)’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중서부지역의 임산부사망률은 2001년보다 24.6%가 떨어졌다.

b. 아동영양상태 개선

2002년에는 「중국 음식물과 영양 발전강요(2001-2010년)」을 발표하여 아동들의 영양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에 대한 영양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등 영양지도와 건강교육훈련을 펼쳤다. 대대적으로 모유수유를 홍보하고 음식물에 대한 영양 강화 조치를 실시하여 부녀자와 아동의 철 결핍성 빈혈과 영양소 부족을 보완하였다. 요오드부족질병 퇴치는 2000년부터 단계적인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 이래로 매 2-3년마다 요오드부족질병 유행병학조사가 한차례씩 실시되고 있다.

c. 발전 불평등의 해소

농촌 특히 빈곤지역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의 보장은 중국 의무교육사업의 제1 과제이다. 중국국무원은 2003년 「농촌교육사업 강화에 대한 결정」, 2004년 「국가서부지구“양기(兩基)”건설계획」을 통해 2007년까지 서부지구의 “9년제 의무교육” 대상자가 85% 이상 확대되었고, 청장년의 문맹률도 5% 이하로 떨어졌다. 2005년에는 「국무원의 농촌의무교육 경비보장기제 개혁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농촌 의무교육경비 보장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 “제2차 국가빈곤지역 의무교육공정”, “농촌의 초중학교 위험교실 개조공정”, “서부지역 농촌기숙제학교 건설공정”, “농촌 초중학교 현대화원격교육공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 차이를 좁히는데 노력하였다. 각급 정부에서도 특별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의 의무교육 대상의 빈곤학생에 대해 ‘양면일보(兩免一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잡비와 교과서대를 면제해주고, 기숙사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희망공정(希望工程)’²³⁾을 통해 12000개소의 초등학교가 건설되어 280여

23) 1989년부터 중앙단과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에서 빈곤지역 학생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중인 공익사업

만명의 아동이 도움이 받았다.

d. 장애 아동의 보호

중국은 2001년 중국장애인연합회와 위생부,公安부, 국가통계국과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0-6세 장애아동에 대한 현황 표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발병률과 지역분포, 구성, 장애정도, 회복상황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는 장애아동 방지와 조기관리를 위해 장애아동 특히 농촌과 변경지역의 장애아동의 보건서비스와 입학 전 교육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국장애인연합회에서는 ‘복권공익금학비보조사업’, ‘장애학생학비보조사업’과 ‘중서부명인학교사업’을 통해 4만여명의 빈곤 장애 아동에게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e. 유랑아동의 보호

중국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공업화에 따라 도시화의 진전이 빨라지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되었다. 2000년 전국 제5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유동인구는 1982만명으로 전체유동인구의 19.37%를 차지하고 있다. 유동인구는 사람과 호구가 분리되어 있어 호구를 기초로 한 아동보호나 사회보장정책이 유동아동을 포함한 유동인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1998년 「유동아동소년의 취학일시시행방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에는 외래노동자에 대한 일시주거비등 7개항의 징수세를 감면시켰다. 2003년에는 「도시이주노동자자녀의 의무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도시이주노동자 자녀의 의무교육을 유입도시의 지역정부가 관리하게 하고, 초중학교의 전일제 실시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농민공관리경비의 재정예산지출 산입범위에 관한 통지」를 통해 전국 초중학생의 수업료를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하였다. 「아동강요(2001-2010년)」에서도 유동 아동의 취학문제와 유동 부녀자아동의 위생보건문제에 대한 기본조건을 제시하였다.

f. 아동의 학대, 착취 및 폭력에 대한 보호

중국은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반대하고, 아동이 폭력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폭력범죄에

대한 징벌, 아동유괴금지, 아동공의 사용금지, 학교 내 안전과 학교주변 치안환경에 대한 항목을 추가시켰다. 2004년에는 UN의 요구에 따라 중국아동 폭력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에는 아동폭력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아동권의 침해안전에 대한 보도매체를 이용한 감독 기능이 강화되었고, 공안과 검찰원, 법원 등과 협조하여 아동침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타당한 조치 및 보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공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제인 노동보장법률 감독원제도를 신설하여 각 기업의 노동고용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g. 여아의 보호

여아의 보호를 위해 4개의 중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첫째는 불법적인 태아성별감식과 성별선택을 위한 임신중절행위의 금지, 둘째 ‘여아사랑행동’을 통해 남녀평등과 적게 출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여아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개선하며, 셋째 여아의 취학률을 높이고, 퇴학 및 실학률을 감소시키며, 학업의 기회가 없는 나이가 많은 여아에게는 문화지식과 직업기술, 생존기술을 훈련시킨다. 넷째는, 정책결정자와 아동 관련 업무자, 학부모, 아동 및 사회 대중에게 여아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여 여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h. 부녀자아동의 유괴 등 범죄행위 예방 퇴치

1997년 「형법」을 개정하여, 부녀자아동 유괴죄, 유괴된 부녀자아동 매매죄 등을 신설하여 행정처벌책임을 강화하였고, 형량표준도 높였다. 그리고 유괴방지를 위해 정부와 비정부조직이 연합하고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유괴방지 및 유괴퇴치를 위한 ‘구제된 부녀자아동 회복훈련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아동이 부모를 다시 찾도록 하는 구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법제의 홍보 및 교육을 전개하여 유괴방지의식과 방어능력을 개선하고, 전 사회가 공통으로 참여하여 유괴방지를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i. 가정교육의 보급

전국부녀자연합과 교육부는 가정교육실천지도를 위한 대대적인 이론연구

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가정교육독본과 관련간행물을 제작하여 가정교육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였다. 2005년까지 전국의 29개 성과 332개 지, 1,929개 현 및 12,897개 향에 가정교육지도기관이 설립되었고, 전국의 성급 시범학부모학교 2,907개소, 학부모학교사업소 11,420개소, 유동인구학부모학교 1,410개소, 초중등 및 유아원 학부모학교 348,958개소와 25,558개의 구역에 111,128개의 다기능 구역가정교육지도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전국에 5개의 가정교육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부모학교의 가정교육지식과 지도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j. 에이즈 예방 퇴치 및 에이즈로 인한 고아 구제

중국정부는 국무원AIDS예방퇴치공작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에이즈 방지를 위해 매년 8억위안을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투입도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2006년 「AIDS예방치료조례」를 제정하고, 「중국 AIDS 예방 및 통제 중장기계획(1998-2010년)」 「중국 AIDS 억제 및 예방퇴치 행동계획(2006-2010년)」을 통해 ‘예방위주, 예방치료병행, 종합적 관리’를 주요 전략으로 확정하였다. 이어 「AIDS예방퇴치홍보개요」, 「전국AIDS 예방퇴치홍보지도방안(2004-2008년)」, 「AIDS확산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실시의견」, 「AIDS/HIV 백신치료 및 검사자문 지원방법」, 「학교의 AIDS예방교육 강화에 관한 통지」, 「생활이 곤란한 AIDS환자, 환자가족 및 환자고아에 대한 구제강화에 대한 통지」 등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에이즈 퇴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자문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집중적으로 AIDS가 발생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선별조사를 실시하여 엄마와 아기를 분리하여 치료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등 임신부의 AIDS/HIV 검사와 자문서비스를 28개 성 271개 현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교육홍보를 전개하여 AIDS환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를 없애고, 콘돔 사용을 확대하며 320개의 약물치료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AIDS환자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11월까지 백신치료자수는 31개 성의 862개 현 20,453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발생중점지역의 사망률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AIDS로 인한 고아 아동에 대해서는 생활보조금 지급, 학비면제 등 다

양한 형식의 구제정책들도 마련되고 있다. 비정부조직인 전국부녀자연합과 중앙공청단은 위생부와 협조하여 부녀자와 청소년에게 대면 교육을 통해 AIDS예방퇴치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농촌부녀자와 청소년의 AIDS예방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첫째,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아동발전 불평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2003년 말 전국 농촌의 절대빈곤인구는 2,900만명에 달하며 이들 중 대다수는 서부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2003년도 변경지구와 해안지역의 임산부 사망률의 격차는 5.8배이며, 영아사망률 격차도 4.4배에 이른다. 또한 농촌지역의 영아사망률은 도시에 비해 2.5배 이상이 높다. 농촌과 빈곤지역 아동의 영양불량 발병률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높고, 서부지역의 372개 현에는 아직도 9년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지역에 대한 공공위생, 교육,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유랑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시 호구 제도에서 빠져있는 유랑아동에 대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연약한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부녀자아동의 유괴나 영아방치, 아동공의 불법사용, 아동매춘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혼가정아동이나 한부모가정아동에 대한 보호대책, 아동의 의외의 사고에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결합 있는 출생발병률을 줄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80만에서 100만명이 아동이 결합을 가지고 출생하고 있다. 이들은 각 가정과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오므로 결혼 전 검진정책을 개선하여 혼전 검사율을 높임으로써 결합 있는 출생 발병률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아에 대한 경시와 출생성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전통적인 성 불평등의식과 노동방식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존재하며, 여아의 취학률과 영양건강상태는 남아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출생성비에 있어 남초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3차, 4차, 5차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출생성비의 격차를 보면 108.5, 111.3, 116.9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섯째, AIDS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AIDS 감염자수는 84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18세 이하 AIDS 고아도 39,000여명, 여성감염자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사회적으로 AIDS의 위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AIDS환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 유랑인구에 대한 AIDS예방교육을 통해 AIDS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법 제정 시 아동의 이익과 요구를 고려하는 아동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 문제에 있어 아동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일본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일본에서는 1994년 5월에 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되었다²⁴⁾. 이후 18세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주로 하도록 하였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에서 탈피하여 아동 스스로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와 양육받을 권리는 물론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일본에서 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지도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법과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되고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아동의 주체적 권리에 대한 의식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UN의 권리조약에 의해 시도되었던 일본사회에서의 아동의 주체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로 아동 스스로가 주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와 성인의 보호와 규제를 받는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제정되고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에 나온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의 아동의 권리조항들과 현실 속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수준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의 아동과 청소년이 처한 일반적인 환경들을 고찰하여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이 실

24) UN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것은 1989년이고 일본에서 이 조약이 비준된 것은 1994년이므로 5년간의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 1991년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비준본부’를 발족시켜 하루빨리 아동권리협약을 완전히 비준하도록 촉구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적인 권리를 소유한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체적으로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준비단계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상태에서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연합회가 정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

현되어야 할 실제적인 토양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본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정책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1) 청소년인구

일본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내각부의 ‘청소년 육성추진본부’가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정부의 기본 이념 및 중장기 시책을 제시한 ‘청소년 육성시책 대강’을 보면 청소년은 0세에서 30세 미만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시 아동기-사춘기-청년기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아동기는 의무교육연령에 도달하기까지의 유아기 및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학동기를 지칭하며, 사춘기는 중학생에서 18세까지, 청년기는 18세에서 30세 미만까지를 의미한다²⁵⁾. 2008년 일본 통계청 자료(<http://www.stat.go.jp>)에 의하면 일본의 현재 총 인구는 1억2천7백6십만명으로, 그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0세에서 30세 미만까지의 인구는 3천8백만명, 즉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2) 가족구성

일본은 핵가족이 대세를 이룬다. 2005년 국세조사(國勢調査)에 의하면 전체 1,720만 세대 중에서 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27.7%이고 부부와 자녀 세대가 11.8%, 한부모와 자녀세대가 9.2%를 점하고 있다. 일본의 이혼율은 선진국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은 1995년도에 98만세대, 2000년에 125만세대에서 2005년에 159만세대로 증가하였다.

맞벌이 가정은 전체의 46.4%이고, 남편은 직업이 있고 부인은 전업주부인

25) 와타나베 히데키(2006). 일본의 가족 및 가족 내 사회화 과정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p. 3.

가정은 31.5%이다²⁶⁾.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도 부인은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인 경우가 많아서 자녀교육은 부인이 담당하고 있다.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분담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 8대 2라고 대답한 사람이 29%이고 9대 1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29%에 달한다. 7대 3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21%로 나타나 자녀양육이 어머니들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제도

① 일본의 학교교육

일본의 학교제도는 <표 III-6>과 같다. 기본적인 학교기관인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이외의 학교기관들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수학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 나와 있는 학교 이외에 일정한 기준을 갖춘 교육시설을 지칭한다. 직업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거나 교양을 높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과정, 전문과정, 일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수학교」, 「전문학교」, 「고등전수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직업과 연관된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대부분 중학교 졸업정도를 입학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와 단기대학을 병행하는 수업 연한에 해당하는 5년(商船학과는 5년 6개월)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주로 공학과 기술계통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64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는데, 국립이 55개, 공립이 6개, 사립이 3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전문학교의 종류로는 공업고등전문학교의 수가 가장 많고, 商船고등전문학교, 전과공업고등전문학교, 항공공업고등전문학교 등이 있다. 취직률은 2005년을 기준으로 53%이고, 상급학교로의 편입학자가 증가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42.9%에 달하고 있다(대학 편입학을 65.2%, 고등전문학교 전공과 진학률 34.8%).

단기대학은 2-3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이다. 단기대학제도가 발족할 때부

26) 2007년도 취업구조기본조사

터 설치되어 있는 주요한 학과를 살펴보면 영문학, 일본문학, 보육학과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는 경제학과 공학 등의 학과이다. 1990년대부터는 간호학과와 복지학과가 신설되었고, 주간에도 공학을 설치하는 단기대학이 늘고 있다. 단기대학은 주로 여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현재도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1990년대 이후 단기대학에 진학하던 여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단기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후 학과 증설,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같은 재단이 소유한 4년제 대학으로의 흡수·통합 등과 같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표 III-6> 일본의 학교제도

교육단계	학교종류	교육내용	수업연한	학령. 연령
취학전교육	유치원	심신발달		3세이상 6세까지
초등교육	초등학교	초등보통교육	6年	6이상 12세까지
전기중등교육	중학교	중등보통교육	3年	12세이상 15세까지
후기중등교육	고등학교	고등보통교육 전문교육	3年	15세이상
	전수학교 (專修學校)	보통교육 전문교육	1년이상	15세이상
고등교육	고등 전문학교	일반교육 전문교육	5년- 5년6개월	15세이상
	대학(학부)	일반교육, 전문교육	4-6년 조기졸업은 3년	18세이상
	대학원	주로 전문교육	2-5년	22세이상
	단기대학	일반교육 전문교육	2-3년	18세이상
	전수학교 (전문과정)	일반교육 전문교육	1년이상	18세이상

2006년도를 기준으로 유치원을 포함해서 대학까지 모든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수는 2천만명이고, 이는 총인구의 15.8%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수는 718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명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학교에 관한 문부성의 통계조사가 시작된 1948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로 기록되었다. 중학생 수는 360만 2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 5천명 줄어들었다. 고등학생 수는 349만 5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11만 1천명 줄어들었다. 계속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학생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52.3%이며 이 중에서 남학생의 진학률은 53.7%(4년제 대학 52.1%, 2년제 대학 1.5%)이며 여학생의 진학률은 51%(4년제 38.5%, 2년제 12.4%)이다. 여학생의 진학률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에는 남학생을 능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여학생을 앞지르고 있다.

2006년도 고졸자 중에서 취업자는 18%이다. 이들 중에서 3차산업 취업자는 50.8%인데 10년전인 1996년에 비해 3% 저하되었다. 2차산업 취업자는 47.3%로 10년전에 비해 3.1% 증가하였다. 반면에 대졸 취업자의 경우에는 3차산업 취업자가 77.4%로 10년전에 비해 8.6% 증가하였다. 2차산업 취업자는 20.7%로 10년전에 비해 8.2% 저하되었다. 그러므로 대졸자는 3차산업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에 고졸자는 2차산업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② 고교입시와 고교 다양화 정책

1948년에 미국식 학교제도를 도입하여 단선형의 새로운 학제가 출발했던 시점에서는 全人教育이 강조되어 학교별 입학시험을 치지 않고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고도성장에 힘입어 고등학교 교육이 양적으로 대중화되는 가운데 학교별 입학시험이 부활되기 시작하여 학교 간 서열구조가 형성되었다. 학교 간 서열구조가 확립되는 가운데 본래 자신이 지망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보다 수준이 낮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학습에 대한 열의도 저하되게 되었다. 하위권 학교에는 학력수준이 낮고 학습태도가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만이 모이게 되어 수업자체가 힘든 상

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고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다양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학교현장에서 ‘특색있는 학과와 코스’를 개설되었다. ‘특색있는 학과와 코스’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들의 기본 방침과 설치학과를 살펴보면 네 가지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다. 먼저, 학생들의 장래 직업에 도움이 되는 특색화를 시도하는 경우로 항공, 정보, 레저 등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전문화하는 직업에 관련된 학과와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대응되는 특색화를 목적으로 스포츠, 음악, 연극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와 코스들을 설치하는 학교들이 있다. 셋째, 진학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색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문화, 인문 계열학과, 국제관련 상업계 학과, 어학에 중점을 둔 학과 등이 설치된다. 넷째, 새로운 시대흐름에 적응을 목표로 하여 복지, 연극, 레저 등 다른 학과의 차별성을 시도하는 경우이다²⁷⁾.

고교 다양화와 개성화 정책은 주로 학력수준이 중간이하의 고교에서 추진되어 왔다. 학력수준이 톱이거나 중간 이상의 고교에서는 여전히 대학입시를 목표로 진학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반면에 학력수준이 중간이하의 고교에서는 재학생들이 졸업이후에 대학진학 이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에 대응하는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다²⁸⁾.

고교 다양화와 개성화 정책이 전개되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중하위권 이하의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서 진로의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고교 다양화와 개성화 정책 이전의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입시 준비과정에 편중되어 있었고, 좋은 대학에 갈 정도의 성적을 얻지 못하는 중하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등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27) 飯田浩之外(2000)「高等学校の「特色ある学科・コース」における教育の特色化と生徒」筑波大学教育学系論集 24(2) pp33-48

28) 荒川葉(2002)「高校生の「将来の夢」と進路選択—多様化・個性化時代の進路形成—」教育社会学会大会発表k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애정보다는 성적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다는 자괴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특색있는 학과와 코스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이 과목들을 선택했다는 의식이 강하게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고교의 개성화와 다양화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이므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특색있는 학과와 코스를 신설하는 학교나 그 과목들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중하위권이고 그들이 신설된 과목이나 코스를 이수함으로써 유명대학이나 전문직과 같은 사회적 지위 경쟁의 궤도로부터 이탈하거나 그 궤도에 참가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²⁹⁾. 이는 일본의 고등학교가 형식적으로는 단선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복선형 체제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고정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1) 건강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사항을 보면 부모세대에 비해 체격은 향상되었으나 체력은 저하되었다. 이는 칼로리가 높은 서구형 식단의 보편화, 지방 및 당분의 과다섭취 등 식습관의 변화와 그에 반하는 운동량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① 청소년 비만

2007년도 일본 청소년 비만율은 아래 <표 III-7>과 같다³⁰⁾.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비만율은 5%에 달하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비만율은 그 두 배인 10%를 상회하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만율도 10-11%에 이른다. 1993년부터 1999년과 2005년에 걸쳐 중학생들의 체형과 체력을 측정

29) 荒川葉(2001)「高校の個性化・多様化政策と生徒の進路意識の変容—新たな選抜・メカニズム—」『教育社会学研究』第68集 pp167-185

30) 문부성 생애학습 정책국(2007) ‘학교보건 통계조사 보고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신장과 체중은 증가하여 체격은 좋아지고 있으나 1999년 이후로 비만 청소년과 마른체형의 청소년이 증가하여 체형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달리기 능력으로 측정한 체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³¹⁾. 비만은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불러와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비만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일본도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표 III-7> 일본 청소년의 비만 비율

(단위 : %)

학년	초등1학년	초등2학년	초등3학년	초등4학년	초등5학년	초등6학년
비만율	4.7	6.2	7.8	9.2	10.2	10.5
학년	중1학년	중2학년	중3학년	고1학년	고2학년	고3학년
비만율	11	9.9	9.5	11.7	11	11

출처 : 문부성 생애학습 정책국(2007) ‘학교보건 통계조사 보고서’

비만아는 비만도 20%이상을 의미

비만도=(실체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② 학교급식

일본에서는 학교급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본의 학교급식은 학교 단독으로 조리하는 방식과 학교가 외부회사에 위탁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조리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영양면에서 균형있고 질 높은 식사를 하고, 건강상태도 양호하며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의식도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³²⁾. 그러나 2006년도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21.3%가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31) 小原繁, 玉川明朗(2008) 現代の中学生に見る体型と体力:1993年から2005年の12年間の変化 体力科學 57(1),42, 日本体力医学会

32) 松本晴美, 深澤早苗(2007) 家庭の食生活環境と学校の給食調理方式が中学生の食意識・食行動,給食に対する評価および健康状態に及ぼす影響,日本家政学会誌 58(11), 日本家政学会

것이다³³⁾.

한편 학교급식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양 개선’에 중점을 두는 데에서 ‘식생활 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³⁴⁾. 아동과 청소년의 식사 습관이 불규칙해지고 인스턴트식품이 범람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식사의 소중함과 영양의 균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어 2005년에 ‘식생활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대적인 필요성에 대응하여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식자재의 생산자와 생산과정, 유통에 대한 지식과 식문화(食文化)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의 담당자인 영양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는데, 첫째, 영양관리, 둘째, 식생활교육에 대한 기획, 셋째,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지도, 넷째 지역과 가정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이다³⁵⁾.

(2) 가족관계와 가정생활

2007년도 국민생활백서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대답한 비율은 80%에 달하고 있으나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2000년과 2006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평일날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³⁶⁾, 먼저 아버지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6년도에 모두 30분정도라고 대답한 사람이 60%에 달하여 평일날 아버지와 자녀간에 보내는 시간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일날에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대답한 비율도 2000년에 14.1%에서 2006년에는 23.5%로 늘어나서 자녀와 평일날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1/4에 달한다. 또한 대도시권에 거주하

33) 時事通信社(2008) 2006年度学校給食実施状況等調査(上) 内外教育 (5796)

34) 学校給食法が初の抜本改定 「栄養改善」から「食育」へ 週刊農林 (2007),11, 農林出版社)

35) サンケイニュース 「給食`食育`重視への目的転換」 2007年11月25日

36) 総務省(2000) 「青少年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基本調査」 `内閣府(2006) 「低年齢少年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

는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출퇴근 시간이 길고, 자녀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가족끼리의 시간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중학교 진학단계에서 사립중학교의 학교별 입시가 실시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입시를 치른다. 이 때문에 일본의 사교육은 사립중학교를 지망하는 초등학교생과 고교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이 주를 이룬다.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2006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이 36.5%이고 중학교 2학년이 42.7%이다. 1982년도에 초등학교 4-6년생의 21.8%와 중학생 34.9%가 학원에 다녔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청소년들의 학원 수강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립학교 진학률이 높은 도쿄지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의 51.6%가 학원에 다니는데 그 중에서 진학학원 수강자가 30.5%, 일반학원 수강자가 14.1%³⁷⁾에 달한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조사해 보면 오후 7시 이후가 44.4%인데 그 중에서 오후 9시 이후는 27.6%로 1/3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밤 9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있는 시간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마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지낸다는 청소년들이 많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더욱 늘어나는데 집에서 지내는 시간 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초등학교생의 비율은 22.2%이고 중학생이 되면 49.3%로 늘어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60.8%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난다. 이들 중에서 집에 있어도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초등학교생은 3.6%이고 중학생은 20.8%이며 고등학생은 33%에 달한다. 청소년들이 집에서 혼자서 보내는 시간동안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부와 숙제(40.8%)이고, 그 다음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 접하기(20.9%)이다. 그 다음은 휴식(13.9%)과 취미나 오락 활동(9.5%) 등이다³⁸⁾.

아버지는 직장일 때문에 자녀는 학교와 학원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자체

37) 진학학원은 특정학교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원이고 일반학원은 과목별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원이다.

38) 総務省 (2001). 「社会生活基本調査」

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생에서 가족간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족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인간(예절)교육이 부족하다고 대답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정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조부모세대와 함께 살지 않은 것과 부모 자녀간에 함께 지내는 시간과 대화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3) 여가·문화활동

① 학교내에서의 클럽활동

일본에서는 한국의 특별활동을 部활동이나 클럽활동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특별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데 비해,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일본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많은 시간을 部활동이나 클럽활동을 하면서 보내며 휴일날에도 部활동이나 클럽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部활동에는 매우 다양한 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운동계열과 문화계열이 있다. 운동계열 部활동은 특정 스포츠의 기량을 높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선수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조직은 아니지만 시합이나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중요시한다. 운동부는 엄격한 상하관계와 질서를 중시하는 것은 물론 연습을 소홀히 하면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휴일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문화계열 部활동은 시합을 중시하는 운동계열 部활동에 비해 다양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즉, 대회나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학술이나 예술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도와가며 배우고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 상하관계는 운동부와 같이 엄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계열 部활동의 종류는 문예부, 과학부, 사회부, 외국어부, 신문부,

웅변부, 여행부, 영화부, 연극부, 꽃꽂이부, 장기부 등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部활동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部활동이 1970년대 초반부터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중학교는 2002년에 고등학교는 2003년에 필수사항이 아닌 과외활동의 일부분으로 전환되었다. 필수였던 部활동이 자유화됨에 따라서 部활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② 학교밖에서의 문화적 활동공간

일본정부의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3차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이 학교밖에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먼저 기존의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와 국립 청년의 집과 국립 소년자연의 집이 2006년부터 통합되어 국립청소년 교육진흥기구로 전환되었다. 이 기구는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교육적 연수활동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둘째, 일반인들의 사회교육 활동의 장소인 공민관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2005년 10월 현재 전국에 17,143개가 있다. 셋째,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실물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은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공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전국적으로 1,196개(2005년도)가 있다. 넷째 기본적인 문화공간인 도서관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에 2,979개(2005년도)가 있다.

일본 내에는 각 지역마다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회관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문화공연이나 전시물을 관람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는 장소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고 취미를 살리고 배울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농촌지역이나 소도시와 같이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한편 문화적 공간이 풍부한 대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흥

미를 직접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이용을 장려하기도 한다. 오사카 시내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창조Station(KOKO PLAZA)’가 그 실제적인 예로 이곳은 청소년들에게 음악이나 춤의 일상적인 연습장을 제공하고 있다.

③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근로청소년홈

근로청소년홈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근로청소년들이 문화적 교양을 습득하고 취미활동이나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를 보내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전국에 500여개가 있는데 인구가 적고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에는 그 지역 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화적 활동공간이자 상호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문화시설에 대한 청소년 우대조치

국공립 박물관과 사립박물관에서는 학생할인요금제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시설 이용에 혜택을 주고 있다. 2002년부터는 주요일제 완전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특별전을 제외한 상설전시장에의 청소년 입장이 무료로 전환되었다.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토요일에 초중고생의 입장을 무료로 하는 곳에 대한 세제우대조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4) 문제행동

① 폭력행동

2005년에 공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발생건수는 3만여건이다. 초등학교에서 2천여건, 중학교에서 2만 3천여건이고 고등학교에서 5천여건으로 중학교에서 폭력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내 폭력사건이 발생한 학교수는 5,720개교로 전체 학교 중 15%에 이른다. 분포를 보면 전체 초등학교의 3.2%인 725개교, 전체 중학교의 32.2%인 3,294개교, 전체 고등학교의 41.7%인 1,701개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청소년이 연관되어 학교 외에서 일어난 폭력행위 발생건수는 3천 7백여건이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 관

련이 158건, 중학생 관련이 2,681건이고 고등학생 관련이 896건이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를 보면 중학생이 일으킨 사건이 가장 많다.

폭력사건의 형태를 살펴보면 학생간 폭행사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물파손, 교사폭행과 학교외부인 폭력 순으로 나타난다. 가해학생 중에서 중학교 3학년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② 왕따

다음으로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이 주를 이루는 왕따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건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는 5천여건, 중학교는 1만 2천여건, 고등학교는 2천여건이다. 왕따가 발생한 학교수는 7,378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11%, 전체 중학교의 34%, 전체 고등학교의 30%에서 왕따가 발생하였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생율이 높아져서 중학교 1학년에서 5,967건으로 전체의 29%로 정점에 이른다. 왕따 문제에 대한 학교의 대응책으로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생회활동이나 학급활동’을 통해 지도하거나 상담체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우위를 점한다. 왕따 문제로 인해 전학한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125명, 중학교에서 253명으로 나타났다.

③ 등교거부

1년동안 30일 이상 등교를 거부한 학생은 초등학생이 2만 2천여명, 중학생이 10만여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의 수를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치가 증가하여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전체의 33%를 점한다.

등교를 거부하는 계기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본인 문제’가 가장 많고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순으로 이어진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이 가장 많은 계기를 제공하며 다음으로는 ‘본인문제’와 ‘가정생활’순으로 이어진다. 등교를 거부하는 증상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불안 등의 정서적 혼란’이 가장 많고 이어서 ‘복합적인 증상’과 ‘무기력’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한 학생 중에서 30%는 1년 이내에 다시 학교

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에 복귀하게 하는 학교측의 조치 중에서 효과적인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공통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학업이나 생활면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것’과 ‘학교에 복귀하도록 전화를 걸거나 데리러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상담 등의 전문적인 지도’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중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은 5만 9천여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1.6%를 차지한다. 등교를 거부하는 고등학생 중에서 36%는 자퇴를 하였다. 등교를 거부하게 된 원인으로는 ‘학교생활’과 ‘본인문제’가 각각 40%를 점하였고 나머지는 ‘가정문제’였다. 등교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로는 ‘무기력’이 가장 많았고 ‘불안 등의 정서적 혼란’과 ‘복합적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 중퇴자는 7만 6천여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2%에 해당한다. 중퇴하는 이유로는 ‘학교생활이나 학업에의 부적응’이 38%로 가장 많고 ‘진로변경’이 34%, ‘학업부진’이 6%의 순으로 나타난다. ‘학교생활과 학업에의 부적응’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래부터 고교생활에 의욕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많다. ‘진로변경’의 이유를 제시했던 중퇴자들은 ‘취직 희망’이나 ‘다른 고등학교로 입학희망’의 비율이 높다.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일수록 중퇴자가 많다.

(5) 참여

① 의견표명 권리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표명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적인 노력은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 130만명의 가와사키市에서 2004년 제정한 ‘가와사키市 아동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을 보면 아동의 의견표명과 참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하는 성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

를 위한 상담이나 구제활동에 아동의 의견표명과 참여의 통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한 市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방침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청소년의 의견표명 권리는 당위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일본공산당 소속인 이시이(石井) 의원은 2008년 4월 12일 중의원청소년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제연합측의 권고사항을 상기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즉,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의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 대해 2002년의 국제연합특별총회에서 제출된 ‘아동에게 알맞은 세계’라는 보고서의 관점에 입각하여 아동의 사회참여부분을 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이시이의원은 2002년 국제연합의 보고서에서 특히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연합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부측은 이제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은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하는 간담회를 주최하여왔고 그 자리에서 들은 의견들은 새로운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시이의원은 간헐적이고 부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아동과 관련된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⁹⁾.

② 자기결정권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참여권 중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성인의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특히 유해한 정보와 유해한 미디어 그리고 불건전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청소

39) 日本共産党 しんぶん赤旗

년들의 접근규제 문제와 性관계 규제가 논란의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2000년에 자민당소속 참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청소년 유해사회환경대책 기본법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립하여 법안통과가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두 번이나 무산되었다. 이 법안은 폭력이나 성과 관련된 과도한 표현이나 일탈행동을 촉발시킬 위험성을 가진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시행하고 각 미디어와 출판, 방송 등의 각 업계가 ‘청소년 유해사회환경 대책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성명과 운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공권력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만들며, 둘째 유해환경의 정의가 애매하여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며, 셋째 공권력이 유해환경을 규정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판단능력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2000년에 법안이 공포되었을 때는 출판과 방송 등의 문화산업 관련업계(일본잡지협회, 일본서적출판협회, 일본도서관협회,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팬클럽, 일본저널리스트회의, 미디어종합연구소)와 일본변호사연합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반박성명이 나왔다. 2002년 들어서는 개별 작가와 저널리스트는 물론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서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2008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인터넷상의 위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인터넷규제법’이 통과되었다. 법안은 범죄나 자살을 유인하는 정보, 과도하게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정보, 지나치게 잔혹한 정보 등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었다.

다음으로 성문제에 대한 규제와 자유를 둘러싼 대립을 살펴보면, 동경도(東京都)에서 1997년도에 원조교제로 검거된 소녀는 843명이었는데, ‘매춘처

별규정'을 도입하여 시행한 98년도에는 원조교제로 검거된 소녀의 수가 31명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윤락영업소 조사'와 '불건전성행위'로 검거된 소녀들의 수도 1997년도의 223명과 26명에서 1998년도에는 71명과 13명으로 줄어들었다. 매춘규제조례가 소녀들의 성적인 비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매춘에 대한 지나친 규제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인간과 성에 대한 교육연구협의회'의 대표인 야마모토(山本)는 '여고생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性を 팔고 있고 성폭력이나 성병감염의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지에 따른 여고생들의 매춘 그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매춘처벌규정'뿐만 아니라 '아동매춘과포르노처벌법', '만남주선사이트 규제법'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性を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법률과 조례들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성관련 법안들을 둘러싸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행동을 기르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③ 청소년의 참정권

근대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된 명치시대에 참정권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남자에게만 부여되었다. 대정시대의 민주개혁에 의해 참정권은 '25세 이상의 남자'로 확대되었고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성들도 참정권을 가지게 되고 참정권이 부여되는 나이도 20세 이상으로 낮추어졌다. 그 이후에 서구 여러 나라와 같이 참정권을 20세 이하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민법에 규정된 성인의 나이가 20세이므로 참정권 연령을 낮추려면 민법의 성인 나이를 함께 낮추어야 한다는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민법에서 성인의 나이를 낮추는 문제를 두고 하토야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 2008년 2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의견을 개진한 결과 보류가 11%, 찬성이 42.1%, 반대가 46.8%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개토론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링컨 포럼이 모태가 되어 젊은이들이 Rights라는 NPO를 조직하였다. 2002년 2월에는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선거권을 낮추는 문제를 생각하는 국회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월에는 ‘Youth Internship’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19명을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인턴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11월에는 ‘Rights 국제포럼 2002-정치를 매개로 연결되는 세계의 젊은이-’를 개최하여 호주와 스웨덴, 독일에서 활약하는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패널 토론회를 열었다.

참정권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아키타현의 이와키쵸(岩城町)에서는 2002년에 행정구역간의 합병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대상자를 18세로 낮추었고 나가노현의 히라야무라(平谷村)에서도 행정구역의 합병에 대한 투표에서 그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중학생에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2007년 5월에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인 선거에서도 18세로 참정권 연령이 낮추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권은 20세로 되어있다. 서구 대부분의 나라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알제리 등 세계 100여개 국가의 참정권 연령은 18세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의 참정권 연령 20세는 시대에 뒤떨어져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공직선거권의 연령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참정권 연령을 낮추자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NPO조직인 Rights는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은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사회에 참여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사회적 이슈와 정치문제에 대한 그들의 판단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핑계삼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권과 정치참여권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Rights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

은 정치에 대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많고 그들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사회의 정치교육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강화시켜서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판단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들의 참여공간을 늘리고 참여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 하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대책추진회의’를 1998년 7월에 새로이 개편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보건, 비행대책 등의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대책추진회의’의 멤버에 총무부, 경제기획부, 대장성, 국세청과 통상산업부의 관계국장들이 합류하여 ‘관계부처연락회의’에 참여하는 부서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의 청소년대책의 기본방침과 중점사항을 표명한 ‘청소년대책추진요강’을 개정하여 아동의 권리조약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기본방침을 천명하였다.

행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는 후인 2003년 6월에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전체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회의’를 만들어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행정부의 기본 이념과 중장기적인 시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2003년 12월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교육, 복지, 보건, 비행대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정하였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2008년에 들어서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 나온 세 가지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성인사회도 변화하여야 하고 청소년들 스스로도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은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전체의 책임이다.

위의 기본이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네 가지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립의 지원, 둘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셋째, 청소년들이 가진 능동성을 인정하는 관점의 도입, 넷째,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회풍토 배양 등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전담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청소년 육성추진회의’를 통해 각 부서의 연락 및 종합적인 조정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을 존중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1) 청소년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상담을 위한 정책

① 인권상담 기관 및 프로그램

정부차원에서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아동인권 전문위원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성에 설치된 인권옹호국에서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 가운데 1만 4천명의 인권옹호위원을 선정하여 풀뿌리 인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왕따, 체벌, 등교거부 등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아동인권 전문위원회’제도를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에 950명의 아동인권 전문위원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성 지방법무국의 인권옹호사무 담당직원과 함께 ‘아동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거나 해결하기 힘든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이다.

법무성내의 각 법무국과 지방법무국 혹은 지국에 상설인권상담소가 개설되어 있고 시정촌의 공공기관과 백화점, 주민회관인 공민관에 임시로 특설

인권상담소가 개설되어 있다. 법무성의 홈페이지에 인터넷 인권상담창구에서도 인권상담을 받고 있다. 2006년에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용지와 봉투가 들어있는 ‘아동인권 SOS미니레터’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언제라도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문부과학성은 왕따 문제로 고통을 받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야간과 휴일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왕따로 인한 고민을 상담하는 것이 가능한 전화상담(0570-0-78310)을 개설하여 2007년 2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교육위원회에서 24시간 왕따 상담전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은둔형 청소년과 등교거부 청소년을 위한 대책으로 문부과학성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등교거부 조짐이 있는 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교사와 교육지원센터 지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연대하는 지역단위의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스쿨링 씨포트 네트워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2006년부터 은둔형에 가까운 등교거부 청소년과 그의 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방문지도원을 각 지역에 배치하고 효과적인 방문상담을 위한 조사연구작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부터는 등교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 구축해온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체제를 활용하여 조사연구를 겸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② 청소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행사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법무성이 주최하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 첫째 ‘인권꽃 운동이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198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꽃의 씨앗이나 뿌리를 배포하여 아동들이 서로 협력하여 키우는 과정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체득하여 아동들의 인권의식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다 키운 꽃은 부모님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그림그리기 대회, 감상회를 개최하여 인권사상을 널리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전국 중학생 인권작문대회’이다. 법무성과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중에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작문을 하여 인권존중의 소중함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풍부한 인권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실시하였다. 2007년도에는 제27회 대회가 열렸고 전국의 7,235개의 중학교에서 841,558명이 응모하였는데 이는 전체 중학생의 60.5%에 해당한다. 그 작품들 중에서 ‘왕따’에 관한 작문이 29.6%로 나타나서 중학생들이 왕따 문제를 가장 가깝고도 중대한 인권문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2)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①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아동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여 이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낳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동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0년에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에는 인구가 5만에서 8만에 이르는 지역의 아동상담소에는 아동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자녀수 축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일환으로 생후 4개월까지의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환경을 파악하는 일명 ‘안녕 아가야 정책’을 펼쳐서 아기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서 아기가 있는 가정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아기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였다.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사가 재판소의 허가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부모가 거부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강화한다. 둘째,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40)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 홈페이지

에 대해 자녀에 대한 통신이나 면담 등의 접근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단체장에게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권한을 부여한다. 셋째,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벌칙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② 사회의 범죄나 사건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정책

유괴나 살해 등의 강력범죄에 의해 아동이 희생되는 사건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2005년에 내각관방 2차관보를 의장으로 하는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하였다. 노선버스를 이용한 통학의 안전대책 등의 긴급대처방안 6가지를 수립하였다.

경찰청에서는 2007년부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을 조속히 구출해 내기 위해서 경찰청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가 시민으로부터 익명으로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아서 경찰에 제공하는 ‘익명통보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자주방재조직으로 하여금 지방소방본부, 소방단, 경찰서,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부모단체, 노인클럽, 부인회, 방범협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공민관을 방재와 방범활동의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의 방재조직의 모범사례를 심포지움이나 강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청소년을 화재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거점을 충실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3) 사회적응 능력 촉진을 위한 정책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교에서 직업교육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2007년에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직업교육의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내각부, 특별담당장관, 문부과학성장관, 후생노동성장관, 경제산업장관으로 구성된 ‘직업교육추진회의’를 구성하여 ‘직업교육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정책추진의 청사진을 마

련하였다.

국세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조세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시키고 건전한 납세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세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각 지방에 국세관계자, 지방세관계자 및 교육관계자로 구성된 ‘조세교육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초·중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부교재의 작성, 배포작업과 조세교실을 운영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하고 세금을 주제로 작문을 모집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청에서는 2007년에 금융사고의 실제사례, 사고방지책, 상담처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금융지식을 보완한 ‘초보자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작성하여 전국의 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또한 ‘인터넷에서 배우는 우리들의 생활과 금융의 관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최근의 금융제도개정과 금융사고사례를 포함한 청소년 금융교육 교재를 중학생용과 고등학생용으로 각각 CD-ROM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4)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① 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2006년에 ‘다양한 기회가 있는 사회 추진회의’에서 재도전지원 종합계획을 작성하였는데 모자가정의 취업기회 증진을 위해 향후 5년 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장력 향상전략’이 수립되었다. 2007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취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모자생활지원시설을 퇴소하는 모자가정을 위해 신원보증인확보대책 사업을 전개한다. 둘째,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재택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모자가정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민간 기업에 대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신설한다. 넷째, 양육비를 조달하기 힘든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 상담 및 지원센터’를 만든다. 다섯째, 모자가정의 취업과 자립지원 센터에 양육비 전문상담원을 배치한다.

②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

문부과학성은 2006년에 전국의 16개 지역에 소재한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에서 지정학교를 선정하여 일본어지도교실을 설치하고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가정에 모국어를 구사하는 지도협력자를 배치하고 해당지역의 다른 학교에 순회 지도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청소년의 일본어 지도 및 적응지도를 도와주는 지역별 지원체제모델을 만드는 ‘귀국자녀 및 외국인 아동 및 청소년교육 지원체제모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학생의 모국 정부와의 교육분야에서의 협력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둘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교실을 설치하여 일본어 구사능력이 있는 외국인과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연수를 실시하고 실천적인 일본어 교육의 연구개발을 위한 ‘생활인으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외국인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을 촉진시키고 학교 측의 외국인학생을 수용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귀국자녀 및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수용능력을 촉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외국인 학생이 일본어로 학습하는 능력을 육성시키기 위해 JSL(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교육과정을 활용한 지도방법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JSL커리큘럼 실천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외국인의 생활환경적응 가속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장애 청소년을 위한 정책

문부과학성에서는 2005년에 중앙교육심의회에서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면서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는 LD(학습장애)와 ADHD(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를 장애의 범주에 추가하여 위의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2006년에 개정된 ‘학교교육법’에서는 종래의 한 가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맹학교와 농학교, 양호학교의 제도를 개편하여 중복장애가 있는 청

소년을 교육시킬 수 있는 특별지원학교 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특별지원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기존의 장애아동의 취학학교의 결정과정은 전문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장애아동의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였다.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에 일본사회 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추진본부’를 만들어 관련 부서간의 연락 및 업무 조정을 전개하는 한편 법무성에 인권 옹호국 내에 아동인권전문위원회제를 두고 있다.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아동매춘및아동포르노금지법’이나 ‘아동학대법’, ‘청소년인터넷규제법’ 등의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비준 10주년에서 오오쿠보 아사히신문편집위원이 발언하였듯이 많은 일본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는 존재라기보다는 부모의 책임 하에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위치지어져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협약에 나타난 네 가지 권리영역 중에서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에 대한 부분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참여권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왔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나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성인들의 보호와 규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과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진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 자신이 선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과 견해의 차이는 아동의 권리조약이 일본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로 발전되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유엔에서 결의된 아동권리협약을 추후적으로 비준한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이 일본사회에 아동권리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실제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일본 사회 내에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일본인들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와 NGO단체 및 NPO단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동인권관련 홍보 및 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인권조약에 나타난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 생활이나 업무와 밀착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행정부의 슬림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행정부서들이 통폐합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미국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⁴¹⁾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영속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도처에서 아동의 권리와 고결성을 침해하는 일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전세계의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다. 약 22억명의 전 세계 아동 및 청소년들 가운데, 약 19억명이 발전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1990년 이래로 약 150만명의 아동들이 국제적 분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18세 이하 아동들이 전체 인구의 약 25%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 약 1400명의 아동들이 매년 학대와 방임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8세 이하 미국 아동의 약 17% 또는 1290만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빈곤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비추어 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유엔의 인권관련 조약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논의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계 아동의 삶에 관한 현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지구상의 대부분의 주권국가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서명하고 비준하였지만, 미국만이 아직도 이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 남아있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도 비준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내전상태로 마땅한 정치권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만이 사실상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까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41) 이 절은 천정웅 연구위원(미국 캔사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집필하였다. 이 글에 대한 인용은 “천정웅, 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김영지 외.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Ⅲ -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pp.123-13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으로 한다.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아동권리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여 거의 모든 조항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인권현황과 인권활동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미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미국사회내의 몇 가지 논쟁들에 대해 소개하고 미국의 경우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맺기로 한다.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

사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개념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미국에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종과 성별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입법화를 촉진하는 종합적인 법적 계획이 있지만, 아직 아동의 권리를 정의하는 종합적인 법 계획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아동권리를 다른 취약계층과 같은 수준의 인권으로 보는 어떠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역사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온 것을 보면, 미국인들이 아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호에서 제공 그리고 참여로 이르는 진전 상태는 단속적인 것이며,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다. 노예제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의 경우는 다른 서구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갖는다. 미국 역사에서 반세기 이상, 아동의 노동이 권리 논의의 중심에 있었고, 아동의 많은 경우가 노예와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예컨대, 식민지 시기 전반과 초기 국가수립과정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아동의 노동력을 부모나 다른 성인들에게 가치있게 보이는 자산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하나의 경제적 범주로 간주되었다. 부모가 있는 아동들은 이른 나이에 일을 해야 했으며, 10세경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제로 맡겨졌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노예아동, 그리고 어린 하인들은 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부모

없이 도제하인으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는 대부분이 19세 미만이었다고 한다. 평균연령은 14세에서 16세였으며, 가장 나이 어린 경우는 6세도 있었다. 부모와 함께 들어온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부모를 잃게 되면 또한 이러한 도제하인으로 전락하였다.

‘아동권리’라는 개념은 당연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법에 언급된 유일한 권리는 가게 내에서 통제를 하고 완전한 보호권을 가진 아버지와 고용주의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아동들은 법에 의해 제한된 보호를 받았으며 제공권에 대한 일부 의무가 아버지나 고용주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보호권과 소위 제공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동은 자연아동, 도제, 불법아동 및 노예 등 각기 다른 지위를 가진 존재로 구분되었으며, 식민지 법정은 이들에게 차등적인 보호권과 제공권을 집행하였다.

아동의 교육, 직업훈련 및 도덕적 발달 등이 아버지의 법적 책임이었으며, 법적 계약에 의한 도제들은 고용주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친자에 대한 것보다는 제한적이었으며, 그나마도 제공권은 거의 없었다. 결국, 노예아동들은 수종의 노예와 다름없는 일종의 사유재산으로서의 소유권을 경험했다. 이는 살해될 수도 있으며, 고용주들은 마치 말을 팔고 사듯이 아동을 사용하고, 학대하며 사고 팔 수 있었다. 노예제도가 영국 대륙법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에 관련된 많은 법들은 미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시민전쟁은 그것이 미국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이로 인해, 노예제에 대한 구분, 궁극적으로는 계약제 노예제도가 사라졌다. 시민전쟁 이후의 아동에 관한 또 하나의 큰 진전은 서출에 관한 법안에서 나타났다. 19세기 말까지 거의 모든 주는 아동은 모계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친자와 똑같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미국에서의 아동인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 미국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권리논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와 상황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이제, 논의를 아동인권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에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논의로 옮겨보면, 아동인권과 구별되는 의미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하나의 사회운동이 1930년대 이후 대두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아동인권과는 달리 청소년인권은 주로 시민권과 세대 간 공평(equity)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미국 대공황시기에 청소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학생연맹(National Student League)을 통해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이들은 전국적으로 전미청소년의회(American Youth Congress)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의 많은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며 1930년대 말 미국에서 최초의 청소년담당 중앙행정부서인 국가청소년행정부(National Youth Administration)를 설치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청소년인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1960년대에 이르러 두 가지의 큰 연방대법원 판례를 갖게 된다. 그 중의 하나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킹커 대 데 모인(Tinker vs. Des Moines) 판례였으며, 다른 하나는 소년법원 절차상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적법절차의 권리를 갖게 한 골트(In re Gault) 판례였다.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할 것이지만, 이 두 가지 판례는 미국에서의 청소년권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1960년대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베트남전쟁 반대운동과 함께 청소년중심의 결사를 통한 권리운동이 다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연맹(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과 앤 아머 청소년해방단체(Youth Liberation of Ann Arbor)가 대표적인 단체였으며, 이들은 행동주의(activism)를 통해 청소년의 권한부여를 강조하였다.

1970년대에는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연령규제를 수정하는 움직임이 주 단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연령규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는 18세를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짓는 연령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주는 19세 또는 21세까지로 상향된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2004년 현재 미국 주별 성인연령구분

연령	주 명
18세	알래스카, 아리조나, 알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사스, 캔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타나, 뉴 햄프셔, 뉴 멕시코, 뉴 저지,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바니아,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다, 테네시, 유타,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19세	알라바마, 콜라라도, 네브라스카, 버지니아 등
21세	워싱턴 디시, 미시시피, 뉴 욕, 푸에르토리코 등

1980년대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움직임이 다소 주춤하게 되는데, 이는 보다 보호주의 지향적인 아동권리운동이 더욱 확산됨으로써 그 속으로 함몰해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1986년 3월에 전국아동권리동맹(National Child Rights Alliance)이 7명의 청소년과 성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아동기에 학대나 방임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단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출발한 아동인권단체였지만, 점차 청소년권리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청소년들이 이끄는 자기결정권리에 대한 운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지금 청소년권리운동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국청소년권리연합(National Youth Rights Association: NYRA)이 그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유아동 프로젝트(The Freechild Project)와 지구청소년행동네트워크(Global Youth Action Network) 등이 국제적인 청소년행동주의와 청소년목소리운동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미국에서의 아동 청소년인권 관련 사회적 배경은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 이 유사하면서도, 때로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아동인권은 노예제도의 역사와 관련된 오랜 보호주의적 관점이 적용되어 왔으며, 청소년인권 논의는 연령규정,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및 행동주의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아동 청소년인권 현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과 관련하여 고찰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호권과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은 주요한 인권운동 사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는 다음 절에서 고찰할 미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문제와도 연관되지만, 여기서는 미국에서의 주요한 인권활동을 판례와 인권운동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첫째, 20세기 초반까지 기본적 보호와 제공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대체로 각 주에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은 동등하게 취급되었으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란 개념이 소개되고 발달욕구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었다. 보호권이나 제공권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의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이라는 개념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동을 처음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주장된 근대적 기준이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시민적 마음을 가진 성인들의 한 연합체인 ‘아동-구제자(child-saver)’로 알려진 단체들을 중심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들에게 보통교육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법적 개혁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에는 아동 노동법, 의무학교교육, 소년법정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개념은 현대적인 것이며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아동이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견해를 표현할 권리, 모든 사법적, 행정적 절차과정에서 대변할 권리, 부모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

로 여겨질 권리 등은 미국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아동이 자신에 관한 참여권을 획득한 것은 1960년대의 시민권 운동 때에 이르러서이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틱커 대 데 모인(Tinker vs. Des Moines) 판례가 그것이다. 1965년에 미국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세 명의 학생들이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검은 팔뚝 띠와 리본을 단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196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명한 판례를 남기게 되는데, “공립학교는 전체주의의 섬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학교가 전달하기 원하는 것만을 수신하는 폐쇄회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학생들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면서 학교의 조치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할 것은 같은 연방대법원에서 1970년대에는 학교신문에 대한 검열권을 허용했으며 학생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1988년 Hazelwood vs. Kuhlmeier 판례 참조). 나아가 21세기에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 학생들의 약물복용여부를 검사하는 보다 넓은 권위를 학교에 제공하였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검색할 수 있는 조치를 학교구가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의 교육부 대 린드시 어얼(Board of Education vs. Lindsay Earls) 판례에서는 대법원은 학교구가 밴드부, 합창반, 또는 학력경시대회 등과 같은 교과 외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 전에는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의무검사를 법원이 허용한 바 있었다.

셋째, 아동의 참여권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한 법원의 판결은 소년사법부분에서였다. 1965년 베트남전쟁 반대를 위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일이 일어났던 같은 해에, 제랄드 골트(Gerald Gault)라는 15세 소년이 미국 아이오와 주의 데 모인(Des Moines)에 있는 이웃성인에게 익명으로 외설적 전화를 하였다. 법률가나 재판의 혜택도 없이 그는 소년교정시설에 21세까지 감금되는 선고를 받았다. 그 유명한 대법원의 골트 판례(In re Gault)에서 몇 가지 부수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 소년형사법에서 피의자가

되는 아동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적법 절차에 의한 보호가 어느 정도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속한 재판, 보석 및 배심제도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서에는 기본적 보호권에 대한 후퇴가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가 증가하자 주 입법은 소년범들을 더 어린 나이에 성인법정으로 보내지게 하였고 아동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형벌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14세가 살인을 할 경우 성인범과 같이 취급하였고, 16세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Thompson vs. Oklahoma, 1988).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호 측면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사형과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37조 참고).

다섯째, 대법원의 아동에 대한 제한적 참여권을 학교, 법원 및 기타 정부 기관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모들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아동 권리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우려의 많은 부분은 낙태와 관련된다.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 이후,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낙태 권리를 소녀에게도 확대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개별주들이 부모 동의법을 통과할 것을 결정했다. 아동권에 대해 이전에도 애매모호한 결정을 했던 것과 같이, 대법원은 소녀가 판사를 통해 부모동의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만일에 판사가 그녀를 성숙한 미성년자임을 선언하면 그녀는 혼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ellotti vs. Baird II, 1979 판례).

여섯째, 미국의 가족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옹호되는 기준인 이른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란 것은 친부모간에 아동의 보호권을 결정하는 법정의 공식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는 보호권이 결정되는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대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12조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에는 배치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선호여부는 대부분의 주에서 그 결정을 위해 고려되는 여러 요인 목록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고려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살

집을 선택하는 과정에 아동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소 혼동스럽지만, 미국 법원의 판례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으로서 취급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권리가 아동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를 포함한다.

끝으로, 미국의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활동은 인권운동과 판례 이외에도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동옹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 CDF)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미국의 비준 노력에 앞장서 왔다. 투표할 수 없고 로비할 수 없으며,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미국의 모든 아동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과 소수민족 가정의 아동, 그리고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동옹호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며 재단이나 회사 혹은 개인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미국아동의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법원 지정 특별 지원단(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CASA)'이 있는데, 이 단체는 법원에 의하여 위촉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자격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재판 전후에 봉사한다.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미국의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와 정책들은 미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과 관련한 논의와 같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지지적인 법률이 있는 동시에 동 협약의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의 법률도 있으며, 그러한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둘러싼 논쟁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그러면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초안 작업에는 깊이 참가했지만, 아직도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미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을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논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미국 내의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먼저, 미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준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아동을 다루어 온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아동의 많은 경우가 노예였거나 계약 노예상태였다. 이들은 고용주에 의해 통제를 받았으며, 가정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아버지들의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역사는 노예제가 없었던 근대 대륙유럽국가와는 직접적으로 대조되는 것이다.

오늘날 아동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법과 국가의 태도는 여전히 강한 부모적 권위를 반영하고 있고 통제 밖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며, 아동권리를 부모로부터 떼어내는 것에 대해 확고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했던 낙태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각 주정부는 아동 옹호론자들이 부모의 신체적 처벌(체형)권을 제한하려고 입법화하는 노력을 일상적으로 봉쇄해 왔던 것이다.

유럽의 최근 역사를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은 국내법과 관습에 대해 영향을 끼쳐 왔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전환적 논의에 대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맞추어, 영국은 1989년 아동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아동들에게는 모든 사법적·행정적 조치에서의 법적 목소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에 관한 조치를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아동 스스로 취하는 권리를 제공받게 되었다. 또한 초기적인 ‘아동참여’운동이 시작되었으며, 학교 교과과정과 운동장 설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실제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것은 분명하다. 이는 다른 연령집단의 시민권에 대해 그러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보호와 참여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분명한 이해관계와 개인적 목소리를 가진 하나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요인들을 다양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① 법체계가 각기 다른 주별 특성, ② 조약의 비준에 상원의 동의가 절대적

으로 필요한 미국 내 협약비준과정의 특성, ③ 협약 비준 후에도 협약의 이행은 주 수준에서 행해질 것이란 점, ④ 인권조약이란 국내법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며, ⑤ 조약자체가 직접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미국의 인권관련 조약을 보는 시각으로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법률적인 측면이 완전히 검토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 ⑥ 소송을 통해서 법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⑦ 권리는 사법적인 결정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지지된다는 사법적인 해석의 관점 등 여러 가지로 논의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유 중에서 특히 미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에 따른 찬반논의의 주요 논쟁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미국은 역사적으로 국제조약을 비준하는데 대체로 망설임이 많은 편이었다는 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그러한 것 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특히 인권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집단대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의 당사국이다. 그런데 이 국제협약은 1986년이 되어서야 비준을 받았는데 이는 유엔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협약을 승인한지 약 4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현재까지 국제적인 인권관련 조약이 약 70여개를 헤아리지만 미국의 비준기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미 상원의 일관된 주권에 관한 이슈와 관련된다. 주권이란 “다른 무엇과 공유할 수 없는 궁극적인 권위적 원천”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국제법의 영역에서는 주권이란 국가의 자주성을 의미한다. 즉, “주권이 없이는 국가는 자주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의 공동체 속에서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많은 국가들이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별적인 주권을 구체적인 특별한 경우에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대리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

초강대국(superpower)으로서 미국은 바로 이 점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미국인이 아닌 의사결정자들이 내린 어떤 규칙에 따르는 것은 결국 미국의 주권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려가 있고, 국제조약

들이 종종 의사결정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 구성원들은 미국인에 의해 선출되거나 지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정이 미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몇 가지 중요한 인권조약들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우려에 기인한 바가 크다.

셋째, 아동권리의 신장은 결국 부모들의 권리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우익단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반대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에는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국가로 전이시킨다”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부모들의 비용에 달린 아동의 권리를 아동의 손실로 인식한다. 달리 말하면,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권리를 고양하는 일은 그 부모들에게 손실을 주게 되는데 근본적 가족관계를 위협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들에게 전대미문의 많은 자주성을 부여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부모들의 역할들을 강조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들은 또한 전통적인 가족구조에 주정부 등의 역할이 투입됨으로써 가족의 사회적 응집성을 위협한다고 본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반대하는 논쟁은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제기되는데, 이 협약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드는 과정에는 다양한 문화, 이념, 가치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때로 아동을 위한 꼭 필요한 중요한 권리에 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 대표단과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서출 아동들에 대한 보호권, 의료실험으로부터의 보호권, 취학 전 아동의 교육권, 15~17세 아동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섯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협약의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전체주의 정권들이 아동을 군인으로 사용하거나 아동을 감옥에 넣거나 고문하는 등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으

면서 이를 개선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이 이 협약을 받아들이고 비준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권에 의한 협약의 비준은 매우 위선적인 것이며, 단지 세계 공동체를 위한 걸치레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 위원회 또는 다른 국제적 압력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아직도 관찰 중이지만, 동 협약의 효과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여섯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에 관한 주요한 논쟁의 다른 하나는 역시 미국의 연방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협약의 몇 가지 조항은 미국헌법과 실제로 충돌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일부 주의 법 집행과도 대립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국제조약들은 비준을 받으면 미국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각 조항들은 ‘이 땅의 최상의 법률’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조약법은 연방법과 동일한 비중을 갖는다. 조약의 조항이 주법과 충돌할 경우 조약은 우선권을 갖는다. 연방법이 조약법과 충돌하면,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이 우선한다. 예를 들면 일부 주들은 18세 이하의 아동의 사형이나 종신형을 금지하는 협약의 37조와 대립되는 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범법 당시 15세에서 18세 까지의 개인들은 살인의 경우, 사형이 집행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듯, 동 협약의 일부 조항과 일부 주법들 간에는 명백히 충돌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사유가 있으며, 노예제도를 가진 역사적 배경과 부모권리에 대한 강조의 전통 등 사회적 특수성이 있다. 연방제도에 따른 헌법과 개별 법 및 주별 법 집행에 따른 법적, 제도적 문제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동단체 뿐 아니라 교육자, 심리학자, 소아과 의사, 법률제정가, 지역정부, 그리고 변호사들을 포함한다. 협정비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수단체이거나 종교단체이다. 미국의

청소년인권관련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논의의 특징은 인격으로서 인정되는 아동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준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어떤 갈등도 사전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이 입법화를 통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하거나, 사형제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견해를 준수하면서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상황이나 사법적 결정 및 국제적 정치 환경 등은 모두 미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아동들의 보건과 발달 상태는 미국이 개별 아동들이 가진 본래적 인권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국 내 정치적 환경은 가까운 장래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권과 관련된 조약을 비준하는 일에 대해서 내켜하지 않는 미국의 오랜 전통 또한 이러한 전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미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님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미국은 협약의 초안을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80년 유엔 총회에서 협약을 채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이를 비준하는 일이 매우 더디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아동 청소년인권 현황과 활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제언을 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같이 논의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의 인권현황을 볼 때,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은 상호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또 각기 다른 역사적 발전과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인권에 대한 논의는 아동의 노동과 관련한 역사 및 학대, 방임 등 아동보호를 위한 관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보건, 복지 등 생존권과 보호권에 대한 주제가 많다. 청소년인권의 경우에는 세대 간 차별, 사회현안 참여, 선거권 연령 및 각종 연령규제에 대한 논의 등 참여와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인권은 보다 발달권과 참여권 중심의 특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인권논의도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책적 접근을 달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국 아동청소년인권 현황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전통적으로 아동의 자기표현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것 보다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것이 현재 강한 국내외적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부모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만, 법원의 판례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으로서 취급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그러한 방향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의 인권논의에서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에서 시대적 흐름을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미 비준했으며,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셋째, 미국의 아동 청소년 인권 현황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의 다른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있고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일반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화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지하는 법안도 제출되지만, 그 기준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도 또한 제출되고 있는 것이 미국사회인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도 보다는 많은 개인, 단체들이 아동 청소년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한국의 아동 청소년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넷째, 미국 아동청소년인권 현황을 통해 볼 때, 아동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판례들이 역사적 발전의 계기가 되어왔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인권운동을 전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그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나아가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고 신장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자질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별 특성에 맞고, 대상별 특성에 따라 특화된 다양한 인권교재의 개발과 보급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다섯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인권에 대해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전반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아동청소년전문가들의 의식수준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이해해야하며, 그 조항들을 지키는 노력은 물론, 자신들의 전문성을 각 조항들이 실행되는데 기여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해야 할 아동청소년전문가들의 역할은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아동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 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의 결과와 비교하는 일은 한국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줄 것이다.

5.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과제

1) 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배경⁴²⁾

스웨덴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분은 다양하다. 먼저 아동의 기준은 성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18세를 중요한 경계선으로 본다. 18세가 되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갖는 등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인정받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연령구분은 16세로서, 16세부터는 운전연습을 할 수 있고, 부모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즉 16세 이전까지만 부모의 양육권에 따라 아동의 권리, 의무 등이 부모의 책임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가족 및 사회정책 대상으로서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2005년 청소년 정책교서에서 규정한 13세에서 25세까지의 연령계층을 포함한다.⁴³⁾ 즉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까지를 아동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7학년부터 9학년까지인 13-15세, 그리고 고등학교기간인 16-18(19)세와 대학생 혹은 초기직장생활자를 포함하는 25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⁴⁾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스웨덴 전체인구 918만명 중 14.2%인 130만명이고, 13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계층은 15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스웨덴에서 청소년정책을 입안할 때 20대를 모두 포함하는 29세까지로 확대해서 구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학교 졸업 후 취업과 독립적 가정을 이룰 때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서 노동정책, 주택정책, 복지정책, 가족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청소년정책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학제는 1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원과정(Förskoleutbildning, 혹은

42) 이 절은 최연혁 교수(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가 집필하였다.

43) Proposition 2004/05:2

44) 고등학교가 4년제 직업교육기관일 경우 19세에 졸업하게 된다.

45) SCB (Statistiska Centralbyrån, Statistics Sweden),

http://www.scb.se/templates/tableOrChart___78315.asp. 2008-10-09.

Dagis), 6세 때는 기초초등학교과정(Förskoleklass), 7세부터 14세까지는 초등학교(Grundskolan), 15세부터 18세까지는 고등학교(Gymnasieskolan)로 구분된다. 1950년 이후 초등학교 9년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부터는 자율적으로 진학하고 있다. 초등학교 9학년을 마친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7.5%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년간의 의무교육과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은 완전무상으로 국가에 의해 지원된다. 1976년부터는 조기입학을 바라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525시간(주당 15시간)의 기초초등학교반을 제공하고 있다. 6세를 위한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코뮌(Kommun)에서는 0학년반 혹은 6세반을 운영하도록 1998년부터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책임소재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아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에서 담당하며,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일반소득세를 징수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학교 교육비를 자체 조달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지방교부세가 중요한 재원이 된다. 재정자립도는 수도권 스톡홀름, 제2,3 도시인 요테보리, 말뫼를 제외하고는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기초교육기관들은 기초지방단체 소관이지만 국가의 학교교육지침서(Läroplan, National Curriculum)에 따라 교과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으로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청(Skolverket)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육정책지침(Lpl)은 1985년 발효된 교육법에 따라 1994년에 작성된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평등과 자유를 균형있게 다루는 수업방식, 토론과 발표 위주의 쌍방적 교육방식,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교육내용, 학생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교육, 다문화교육, 비종교적 색채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2) 청소년 인권현황과 인권활동

(1)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정책 개요

스웨덴은 2007년 1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네 번째 국가보고서에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도달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개인의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동 개인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정부정책교서에 다짐하고 있다.⁴⁶⁾

스웨덴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정부정책교서(Skr. 2007/08:111)는 아동 및 청소년 인권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아동은 본인의 인종, 피부색깔, 국적, 민족 및 사회적 이념, 성, 종교, 기능장애와 유사한 이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정신은 정책입안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추구된다.
- 아동은 각각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성장, 발전하도록 하고 자신의 고유한 목표에 부합되도록 한다.

즉 스웨덴의 정책목표는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가족복지 범주 내에서의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이 가정의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누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동의 의사표현을 존중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학교 교육,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정부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는 아동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실현 가능하므로 학교정책,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가족복지정책 등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

46) Skr 2007/08:111, 3-4쪽, 29-33쪽.

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에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정책제언을 하는 아동옴부즈만이 설치되어 있다. 199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아동옴부즈만 제도는 아동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아동의 실태 파악과 문제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과의 실질적 대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의 연구보고서를 매년 출간함으로써 정부의 아동, 청소년 정책입안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실질적 아동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아동옴부즈만이 아동권리에 관한 사안에 직접 관여하여 정부정책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법안(Prop 2001/2:96)을 제출하여 아동옴부즈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현재 스웨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아동옴부즈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옴부즈만은 전국 학교를 직접 돌면서 학생들과의 상담 및 대화를 통해 취합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권실태의 정확한 자료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최근 아동옴부즈만은 아동들과 학급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Barnombudsmannen (2007). På lång sikt. Barnkonventionen i landstingen 2007. (장기적 시각. 아동협약과 지방광역 란스팅 2007).
- Barnombudsmannen (2008). På lång sikt. Barnkonventionen i landstingen 2007. (장기적 시각. 아동협약과 광역자치단체 2007).
- Barnombudsmannen (2008). Sverige äger. Barn och unga berättar om sitt land. 2008-års rapport. (스웨덴이 소유하는 것. 아동과 청소년이 본 스웨덴. 2008년 종합보고서).

스웨덴의 아동옴부즈만은 최근 2008년 연례보고서에서 스웨덴 아동의 권한은 많이 신장되었으나, 스웨덴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 아동, 외국인 부모를 둔 아동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스웨덴 부모를 둔 아동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외국이민자 아동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시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폭력, 청소년 범죄의 증가, 성폭력의 심각성, 음주, 흡연, 마약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유엔아동협약 내용의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 등을 당부하고 있다.⁴⁷⁾

(2)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현황

스웨덴에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총인구 대비 20% 수준에 이른다. 제일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초등학생으로서 전체 20% 중 13%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뒤는 5.6%로 고등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표 III-9>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참여(2008)

(단위 : 명)

	학교수	학생수	군단위별 학생수	학교별 학생수	총인구 대비 학생비율
유아원	3,907	93,393	325	-	1.34%
초등학교	4,826	935,869	3,227	194	13.47%
장애자 학교	722	13,884	49	19	0.20%
특수초등학교	8	514	73	64	0.01%
고등학교	889	390,058	1,403	439	5.61%
특수고등학교	265	8,693	49	33	0.13%
성인고등학교		4,990	23	-	0.07%
전체학생수	10,719	145,2767	-	-	20.90%

초등학교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총 학생을 여성, 남성 비율로 구분해 보면, 총 학생수 935,869명 중 남성이 51.2%를 차지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이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47) Barnombudsmannen (2008). Sverige äger. Barn och unga berättar om sitt land. 2008-års rapport. 150쪽.

비율은 90.8%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7,200명으로 전체 학생 중 9.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극히 적은 150명의 학생이 스웨덴의 북부지방에 걸쳐 있는 사미족이 운영하는 사미족 공립초등학교에서 다니고 있다.

<표 III-10> 초등학교 학생수 및 성별, 공립·사립별 구분(2008/2009학기)

(단위 :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총 학생수	비율 (%)
Total	94,685	91,813	93,223	93,758	98,395	105,951	114,122	119,205	124,717	935,869	100
여학생수	45,926	44,792	45,195	45,655	48,235	51,534	55,927	58,273	60,875	456,412	-
남학생수	48,759	47,021	48,028	48,103	50,160	54,417	58,195	60,932	63,842	479,457	-
여학생 비율	48.8	48.5	48.7	49.0	48.6	49.0	48.9	48.8	48.8	-	48.5%
남학생 비율	51.2	51.5	51.3	51.0	51.4	51.0	51.1	51.2	51.2	-	51.5%
공립	87,130	84,632	85,924	86,561	90,691	93,937	101,242	106,478	112,919	849,514	90.8%
여학생수	42,202	41,151	41,540	42,007	44,379	45,590	49,368	51,737	54,871	412,845	-
남학생수	44,928	43,481	44,384	44,554	46,312	48,347	51,874	54,741	58,048	436,669	-
여학생 비율	48.6	48.3	48.5	48.9	48.5	48.8	48.6	48.6	48.6	-	48.4%

남학생 비율	51.4	51.7	51.5	51.1	51.5	51.2	51.4	51.4	51.4	-	51.6%
사미족 학교	29	25	19	26	24	27	-	-	-	150	0.0%
여학생수	13	13	10	13	9	15	-	-	-	73	-
남학생수	16	12	9	13	15	12	-	-	-	77	-
여학생 비율	52.0	52.6	50.0	37.5	55.6	-	-	-	48.7	-	44.8%
남학생 비율	48.0	47.4	50.0	62.5	44.4	-	-	-	51.3	-	55.2%
사립학교	7,526	7,156	7,280	7,171	7,680	11,987	12,880	12,727	11,798	86,205	9.2%
여학생수	3,711	3,628	3,645	3,635	3,847	5,929	6,559	6,536	6,004	43,494	-
남학생수	3,815	3,528	3,635	3,536	3,833	6,058	6,321	6,191	5,794	42,711	-
여학생 비율	50.7	50.1	50.7	50.1	49.5	50.9	51.4	50.9	50.5	-	49.3%
남학생 비율	49.3	49.9	49.3	49.9	50.5	49.1	48.6	49.1	49.5	-	50.7%

출처 : Skolverket 홈페이지.

http://www.skolverket.se/content/1/c6/01/13/67/Grund_Elever_Riks_Tab5webb.xls

초등학생의 변화추이를 보면 1980년대 초에 100만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있었으나, 2005/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4/15년에는 90만명을 약

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만큼 스웨덴도 저출산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11> 학생수 변화추이(1980/81-2014/15)

(단위 :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전체 (1-9)
1980/81	110,970	112,067	113,751	108,789	107,772	113,330	120,742	122,537	122,006	1,031,964
1981/82	111,026	110,075	112,239	113,063	108,415	107,763	113,351	120,684	122,015	1,018,631
1982/83	105,041	110,339	109,911	111,602	112,734	108,500	107,388	113,150	120,309	998,974
1983/84	99,057	104,314	110,527	109,476	111,511	112,672	108,373	107,411	113,005	976,346
1984/85	96,414	98,797	104,190	110,072	109,462	111,570	112,784	108,460	107,383	959,132
1985/86	93,763	96,266	98,897	104,188	110,017	109,573	111,539	112,726	108,241	945,210
1986/87	96,498	93,614	96,697	98,719	104,420	110,174	109,644	111,759	112,822	934,347
1987/88	97,971	96,534	93,862	96,630	99,117	104,498	110,470	110,019	111,681	920,782
1988/89	95,434	97,952	96,768	93,703	96,805	99,537	104,601	110,795	110,009	905,604
1989/90	95,322	96,004	98,626	97,076	94,340	97,167	99,721	105,181	111,121	894,558
1990/91	94,852	95,558	96,534	99,169	97,388	94,858	97,655	100,211	105,298	881,523
1991/92	98,617	95,110	96,150	96,955	99,392	97,979	95,003	97,954	100,525	877,685
1992/93	105,386	99,063	96,059	96,810	97,566	100,007	98,537	95,558	98,339	887,325
1993/94	108,120	103,849	99,142	95,751	96,193	97,377	99,802	98,351	95,387	893,972
1994/95	112,497	107,299	105,037	99,950	96,655	97,292	98,188	100,657	99,086	916,661
1995/96	120,008	109,918	108,029	105,177	100,438	97,227	97,825	98,642	101,276	938,540
1996/97	124,099	117,094	110,032	107,711	105,494	100,623	97,146	98,006	98,767	958,972
1997/98	128,779	120,338	117,007	109,489	107,765	105,504	100,232	97,284	97,773	984,171
1998/99	126,014	126,617	120,156	116,397	109,782	107,947	105,338	100,536	97,440	1,010,227
1999/00	122,934	124,670	126,800	119,575	116,446	110,353	107,755	105,758	100,590	1,034,881
2000/01	118,692	122,621	125,094	126,160	119,766	116,539	109,876	107,828	105,353	1,051,929
2001/02	113,227	117,510	122,726	124,676	126,352	119,993	116,395	110,265	107,978	1,059,122

2002/03	105,405	112,503	117,626	122,814	125,075	126,717	119,958	116,934	110,193	1,057,225
2003/04	98,057	104,767	112,900	117,751	123,057	125,648	126,757	120,481	117,023	1,046,441
2004/05	93,749	97,464	104,948	112,823	118,069	123,379	125,728	127,036	120,528	1,023,724
2005/06	92,939	93,102	97,278	104,800	113,089	118,101	123,256	125,943	126,949	995,457
2006/07	91,436	92,555	93,235	97,775	105,378	113,573	118,456	123,833	126,108	962,349
2007/08	94,685	91,813	93,223	93,758	98,395	105,951	114,122	119,205	124,717	935,869
2008/09	95,300	94,700	91,800	93,200	93,800	98,400	106,000	114,100	119,200	906,400
2009/10	99,400	95,300	94,700	91,800	93,200	93,800	98,400	106,000	114,100	886,600
2010/11	102,300	99,400	95,300	94,700	91,800	93,200	93,800	98,400	106,000	874,800
2011/12	103,900	102,300	99,400	95,300	94,700	91,800	93,200	93,800	98,400	872,800
2012/13	103,800	103,900	102,300	99,400	95,300	94,700	91,800	93,200	93,800	878,200
2013/14	107,500	103,800	103,900	102,300	99,400	95,300	94,700	91,800	93,200	891,900
2014/15	107,800	107,500	103,800	103,900	102,300	99,400	95,300	94,700	91,800	906,500

주 : 2008/09-2014/15는 추정치

스웨덴의 100명 학생당 교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00/01년의 7.9명에 비해 2006/07년에는 0.9포인트 오른 8.8명을 기록함으로써 학생당 교사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스웨덴 정부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실질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I-12> 학생 100명당 교사수

(단위 : 명)

기 간	학생 100명당 교사수
2000/2001	7.9
2001/2002	8.1
2002/2003	8.3
2003/2004	8.4
2004/2005	8.5
2005/2006	8.6
2006/2007	8.8

출처 : Skolverket(교육청).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52쪽 재인용.

(3)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보건, 범죄현황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는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스웨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의 사망건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까지 포함하는 아동들의 사망건수는 15-19세의 청소년 그룹을 제외하고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10-14세에 속하는 아동그룹의 사망건수가 4년 전인 2000년에 비해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이 그룹의 10,000명당 사망자수는 4명에서 11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사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사회위원회(Socialstyrelsen)는 학생들간의 폭력 증가에서 찾고 있다. 즉 학교 내 폭력과 갈등으로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과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⁸⁾

<표 III-13> 10,000명 단위 아동사망자수(자살포함)

(단위 : 명)

	0-4	5-9	10-14	15-19
2004 남	10.97	10.33	11.3	33.13
2004 여	7.29	9.2	10.91	17.14
2003 남	4.12	5.06	3.74	24.61
2003 여	1.74	2.04	2.3	16.74
2002 남	4.21	2.23	5.94	28.16
2002 여	2.22	1.55	1.98	14.69
2001 남	5.54	1.71	4.24	29.51
2001 여	4.5	1.79	3.79	11.62
2000 남	4.21	3.27	4.4	33.43
2000 여	1.33	0.34	4.65	14.61

출처 :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22쪽.

위와 같은 현상은 일반치상, 강도, 살인 등의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0년과 2004년 사이의 변화에 대한 원인으로 사회위원회는 학교폭력과 학교 내 범죄, 그리고 학생들의 난폭화를 들고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려

48) 스웨덴 4차보고서, 21쪽.

주고 있다. 물론 10,000명 단위별 증가이기 때문에 매우 급격한 증가는 아니지만 스웨덴 사회에서 학생들의 점진적 난폭성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다.

<표 III-14> 10,000명 단위 아동사망자수(치상, 강도, 살인 등의 원인)

(단위 : 명)

	0-4	5-9	10-14	15-19
2004 남	0	0	0.94	9.66
2004 여	0	0	1.32	5.84
2003 남	0	0	0.31	7.38
2003 여	0	0	0.66	4.46
2002 남	0	0	1.25	9.14
2002 여	0	0	0.99	3.48
2001 남	0	0	0.65	5.68
2001 여	0	0	1.03	2.81
2000 남	0	0	0.34	8.07
2000 여	0	0	0.36	6.49

출처 :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22쪽.

포르노 음란영상물에 대한 정책은 2003년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음란물에 대한 정부정책을 통해 음란물 제작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책의 특징은 여성을 음란영상물의 희생자 혹은 약자로 보고 음란물에 대한 단속,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음란영상물을 불법 유포하는 15개 인터넷 포털을 봉쇄하고 약 30,000 회 정도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았다.⁴⁹⁾

청소년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알코올 경험률을 보면 스웨덴 청소년들의 음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초등학교 9학년 학생들의 알코올 경험률은 남녀 모두 2000년 76%에서 2006년에는 남학생이 66%, 여학생은 64%를 보이고 있어 점차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웨덴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건강을 위한 부모의 계도와 학교의 건강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02년 첫째 아이 중 2-10세 자녀를 둔 부모 중

49)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28쪽.

에서 아동건강 및 권익을 위한 특별교육에 참가한 비율이 전체 부모 중 2%에서 출발하여 2006년에는 7%로 늘어나 부모의 교육 참여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5> 2-10세 아동 부모의 특별교육 참가율

(단위 : %)

연도	참가율
2002	2
2006	7

출처 : 국가건강청.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29쪽.

<표 III-16> 9학년 학생의 알코올 경험률

(단위 : %)

	남학생	여학생
2000	76	76
2001	77	74
2002	72	72
2003	74	69
2004	72	67
2005	69	67
2006	66	64

출처 :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40쪽 재인용.

위와 같은 경향은 알코올 소비량 측정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1년 알코올 소비량이 5.3리터에서 2006년에는 3.6리터로 감소함으로써 음주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2000년과 거의 비슷한 2.8리터를 소비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알코올에 취약한 여학생이 더욱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임신 등을 경험할 여학생의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는 평가를 내 놓고 있다.

〈표 III-17〉 9학년 학생의 알코올 1년 소비량

(단위 : 리터)

	남학생	여학생
2000	2.9	5.3
2001	2.8	4.8
2002	3.1	4.1
2003	2.9	3.8
2004	3.0	4.1
2005	3.2	3.5
2006	2.8	3.6

출처 :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40쪽 재인용.

스웨덴 정부는 2002년 정부교서에서 마약퇴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노출과 의존을 대폭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책의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다. 1997년과 2005년의 청소년 마약 경험률 수치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1%, 여학생의 경우 2%의 감소만이 있었을 뿐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III-18〉 중3 학생들의 마약 경험률

(단위 : %)

	남학생	여학생
1997	8	7
2000	10	9
2005	7	5

출처 :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41쪽.

마약의 경험과 함께 여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15-19세의 낙태율을 보면 1,000명당 24.3명으로 임신 가능한 연령대의 여학생들이 이성친구들과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태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피임법에 대한 교육, 안전한 성관계 등의 학교 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임도구 무상지원, 간호사 상담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임신이 된 경우 낙태보다는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

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낙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흡연이 청소년의 건강에 매우 위협이 된다고 보고, 흡연학생에 대한 정책기금으로 2002-2004년 사이 90억 크로네를 학생들의 담배끊기 운동에 투입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교내 금연캠페인을 위해 양호실을 개방하여,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상자료를 열람하게 하고 금연 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학생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⁵⁰⁾

또 다른 청소년 보건 및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통계로 HIV/AIDS 감염률 수치가 있는데, 1995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한 통계를 보면 전체보균자 숫자가 큰 변화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19세의 연령층을 보면 2002년과 2004년 사이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잠시 증가했다는 점은 스웨덴 정부에서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그 동안 투자했던 시간에 비해 큰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청소년의 성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표 III-19> HIV/AIDS 감염

(단위 :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4	5	3	3	2	2	4		3	1	6	3
5-9	3	3	1	1	1	3		1	4	5	6
10-14		1		2	1	1	1	1	3	3	3
15-19	4	3	5	1	5	3	4	9	8	11	5

출처 : Smittskyddsinstitutet(전염병예방국).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46쪽 재인용.

스웨덴은 국제적으로 망명외국인에게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스웨덴이 망명객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정착보조금, 일자리 찾아주기 등의 정책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반영하듯이 정치망명객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쟁국가와 러

50)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43쪽.

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국민들이 불안한 정세를 피해 스웨덴으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으로 정치망명을 신청한 수를 보면 2000년에 395명에서 2006년 2배 이상이 증가한 820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치망명객의 증가를 통해 아동의 정치망명자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20> 아동정치망명자의 추이(성별구분)

(단위 : 명)

	남	여	합계
2000	131	264	395
2001	163	368	531
2002	191	359	550
2003	195	366	561
2004	163	225	388
2005	143	255	398
2006	175	645	820

출처 : 이민국 및 아동옴부즈만 자료.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56쪽 재인용.

아동을 상대로 한 포르노 영상물 범죄신고 건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2004년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하고는 있지만, 2000년 수준과 비교하면 개선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어른들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아동이 포르노 범죄에 계속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어디에 더욱 집중해야 할지가 명백해진다. 즉 인터넷에서의 포르노 사이트 폐쇄, 포르노 활동거점의 수사 및 단속 등의 꾸준한 노력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의 증가 등을 통한 사법적 제재 등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스웨덴 내에서 팽배하다.

<표 III-21> 아동포르노 범죄신고 건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아동 포르노범죄 신고건수	239	374	396	351	600	553	368

출처 : 범죄예방위원회.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62쪽 재인용.

청소년의 성관련 범죄율은 2000년대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경종을 울리고 있다.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 사건 수는 2000년의 52건에서 2006년 75건으로 증가하였고,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건수는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248건에서 2005년에 672건, 2006년에는 1059건에 이르는 등 스웨덴 청소년들의 성적 충동에 의한 강간 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들의 성관계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 차원에서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단속과 검거를 진행하여 구속률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범죄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성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잦은 파티와 음주, 마약경험 등의 탈선을 통한 성적접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성추행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포르노 등의 노출 건수도 계속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접근을 통한 포르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스웨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표 III-22> 성관련 범죄

(단위 :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성 이용목적촬영							22
15세 미만 유아강간미수	52	48	41	48	42	62	75
15세 미만 강간	248	285	346	418	437	672	1059
15세 미만 성희롱	1201	1192	1359	1480	1409	1201	1041
15세 미만 성추행	1265	1391	1404	1339	1378	1412	1428
포르노 이용 건수	812	942	936	1042	1085	1192	1140

출처 : 범죄예방위원회.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62쪽 재인용.

스웨덴의 일반 범죄율도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따른 재판건수는 지속적으로 5000건의 수준으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범죄와 연관된 격리사회시설 혹은 사회보호시설 송치 건수도 2002년보다 많아졌다. 청소년 범죄 건수는 2003년 잠시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4년에는 다시 대폭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이보다는 약간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스웨덴 정부의 청소년 범죄의 예방적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III-23> 청소년 범죄율 변화

(단위 : 건)

	2002	2003	2004	2005
재판건수	5001	4912	5014	5041
투옥	7	5	8	6
격리사회시설송치	95	98	115	98
사회보호시설송치	2428	2328	2416	2624
단순형량부과	4701	4750	5244	4964
청소년범죄건수	12323	12305	13147	12609

출처 : 범죄예방위원회. 2007년 UN 4차 국가보고서 67쪽 재인용.

3) 청소년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현황

스웨덴의 아동, 청소년 정책은 195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점차 확대되어왔다. 즉 이때부터 아동, 청소년 정책은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입안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까지 가사를 담당하던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의 건강·문화 활동, 체육활동 등 기존에 가족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던 활동영역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최연혁, 2006). 1936년부터 일부 극빈가족의 아동들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나 가족의 경제상황과 관계 없이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사민당 정권은 1948년부터 아동수당(Barnbidrag)을 도입하였고, 이 아동수당은 아

동들의 학교생활에서 발견되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아동수당은 일종의 용돈에 해당하는 보조수단으로 아동의 문화생활(영화관람 등), 의복, 군것질 등의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인당 1050 크로네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수에 따라 확대지급하고 있다.⁵¹⁾

스웨덴에서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은 정부부처인 교육부와 산하기관인 중앙교육청, 그리고 학교교육을 실행하는 코문으로 삼분화되어 있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는 교육부(Utbildningsdepartement, Ministry of Education)이며 교육 예산배정 및 감사 등의 기능과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중앙교육청(Skolverket,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전국 학교교육의 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수립, 수업방식연구 및 제안, 학교교육의 질적 평가, 인허가 등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최종시행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문으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장 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교사 임용은 학교장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이익에 관계하는 정책부분은 법무부와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건강 및 삶의 질, 복지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며, 산하 청소년위원회(Ungdomsstyrelsen,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가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연구 활동, 국제연계,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국가행정발전처(Statskontoret, Agency for Administrative Development)는 아동정책부서 업무의 중첩성과 감시, 통제 기능의 간결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아동정책의 정부기구 및 행정(Barnpolitikens myndighetsstruktur och styrning)” (Statskontoret 2007:15)을 통해 아동정책의 감사, 평가, 결산 등의 기능을 대폭 조정할 수 있는 정부정책부서의 기능통합 등을 제시하였

51) 16세 이후에는 같은 금액을 학비보조금(Studiebidrag)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⁵²⁾

또한 정부부처 산하 단체로서 건강보험국, 사회복지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통계수집, 국제공조 등으로 스웨덴의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객관적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국가통계국(Statistical Central Bureau, SCB)에서 아동 관련 보고서를 2-3년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아래의 통계자료 및 보고서는 스웨덴의 아동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

- 2002, Barnets del av kakan - Välstånd och fattigdom bland barn (아동이 차지할 파이의 크기 - 아동의 경제수준과 빈곤)
- 2004, Barnets tid med föräldrarna och familjeförhållanden (부모와 함께 하는 아동의 시간과 가족과의 관계)
- 2007, Barn, boendesegregation och skolresultat (거주의 소외차이와 아동의 학교성적).

스웨덴의 최근 아동정책의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는 정책교서 Skr 2007/08:111⁵³⁾에서는 2002년 제출된 3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 이후, 스웨덴 아동정책의 변화와 성취 내용, 개선 방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교서에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아동복지국가이지만 아직 아동의 10-15%는 정신적 건강상태가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수준에서는 유엔아동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실천하고는 있으나, 아동복지의 실천자인 코뮌 수준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사회 환경적인 변수가 아동복지 수준의 차이를 현격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감독, 제도, 그리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52) Skr 2007/8:111, 10쪽.

53) Skr 2007/08:111, 3쪽, 30쪽.

또한 아동들에게도 유엔아동협약의 내용을 학교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지시킴으로써 아동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아동옴부즈만이 실시한 10-15세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보면, 28%만이 아동협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21%가 내용의 일부를 잘 숙지하고 있으며, 14%만이 깊은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유엔 아동협약에 대한 학교교육, 미디어를 통한 국민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⁵⁴⁾ 스웨덴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권고사항에 충실하고 아동 정책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보고서 및 법안을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내용과 보고서를 요약하고 있다.

- 아동들의 차별대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일환으로 법안 (2007/8:95)을 의회에 제출
- 아동행정기구(Myndighetsstrukturkommitté)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 제출 (Fi 2006:08, dir. 2006:123).
- 행정기구위원회 (Förvaltningskommitté) 보고서 제출 (SOU 2007:107).
- 국가행정발전처(Statskontoret) 보고서 제출 (Statskontoret 2007:15).
- 학교행정기구(skolmyndighets kommitte) 위원회 법안제출 (prop. 2007/08:50).
- 사회위원회의 아동권익 증진을 위한 보고서 (SOU 2007:82).
- 국가감사원(Riksrevisionen)의 입법제안서 (framst. 2004/05:RRS19).
- 지방자치기구인 콤포문 단위별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실천 강화를 위한 부처보고서 (Ds 2007:9).

유엔 권고사항 중 인터넷, TV, 컴퓨터 게임 등의 폭력, 음란물 등의 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에 대해서 스웨덴 정부는 다양한 연구프로젝트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청소년과 미디어 프로

54) Skr 2007/8:111, 7쪽.

젝트를 시행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 주도로 아동 및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2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TV 폭력물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음란물은 예전의 잡지나 비디오보다는 인터넷의 음란영상물 소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4-2005년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여학생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여성이 광고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상업화되는지에 대한 자유토론 및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50,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버스 이동도서관, 이동대출창구, 학교 내 이동도서관 등 도서관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아동시민단체인 Bris(Barns rätt i samhället, The Childrens's Right in Society)는 그 중에서도 아동소외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⁵⁵⁾ Bris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육체적 아동폭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정신적 폭력은 아직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정에서 부모의 잦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소외, 물질사회 속에서의 부모의 무관심과 애정의 결핍,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의 집단따돌림 등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⁵⁶⁾ Bris가 제작한 집단따돌림 방지 TV 공익광고는 한 아동을 자살로 내모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아동들이 물질적으로는

55) Bris는 아동의 전화를 운영하면서 스웨덴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되었다. 현재 98,000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의 주된 목적은 유엔아동헌장의 실현을 위한 사랑의 전화운영을 통해 소외받는 아동을 상담하고 정신적 고통을 대화를 통해 공유하며, 아동문제를 사회에 고발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한다. 아동의 전화는 IT의 발전에 따라 아동의 전자 메일로 진화되어 전화상담과 전자메일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매년 아동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매년 21,000 회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상인 12,000회 정도가 전화상담으로 진행되고 9000회 정도가 전자메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매년 전자메일의 상담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www.bris.se

56) Bris 2008 Report.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만 정신적 폭력과 결핍의 심각성은 크게 대조된다고 하겠다.

4)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스웨덴은 세계에서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체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은 정부교서를 통한 지시, 지방교부금 등의 재정지원, 예산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동정책의 최종수행자인 코뮌(Kommun, 기초지방자치체)이 적절한 서비스의 질을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무엇보다도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아동이 용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아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지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아동복지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 (예를 들어, 탁아소, 유아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 개인별 아동수당, 방과 후 과외활동비, 청소년 문화방 등)을 각 코뮌에게 분배하면서 감시, 통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고, 코뮌들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부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종소비자인 아동이 얼마만큼 국가의 정책목표에 도달하여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아동서비스 정책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각 코뮌의 서비스의 질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코뮌의 아동서비스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질적 평준화를 이루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국가통계국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1998년부터 아동의 삶의 질과 연관된 통계를 매년 발간함으로써 코뮌이 제출하는 보고서와 얼마만큼 근접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함께 아동옴부즈만이라는 또 다른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즉 통계국의 자료가 객관적, 과학적, 정책

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준다면, 아동옴부즈만은 해당 아동들과 깊이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아동 개인의 주관적이고,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삶의 질을 평가하여 진정한 의미의 정책목표 도달을 위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 준다. 2003년 이후 아동옴부즈만의 역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동정책의 감시와 정책제언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의 정책에 바로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권고 사항이 2003년 정책에 바로 반영된다거나, 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유엔에서 권고하는 국제규약 등을 비준해 준다는지 하는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다. 즉 국제적으로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속하게 국제공조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된 내용보다 보다 높은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초과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과 연관된 정책의 끊임없는 연구와 국제공조를 통한 선순환적 아동정책개발이 눈에 띈다. 즉 청소년정책위원회의 활동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보고서 제출, 자체통계의 산출,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폭넓은 국제연계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의 산실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스웨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정책개발 및 사회적 의식고양에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창구의 일원화, 가정복지 차원에서의 재원의 확충, 아동 개인들의 실질적 권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아동옴부즈만제의 도입,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아동문제의 정치적 아젠더 설정, 정당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동·청소년의 연구, 정책개발 등의 총체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과 함께 인터넷에서의 폭력물·포르노 노출 등에 대한 종합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 비교

1. 조사개요
2. 청소년 생존권 실태
3. 청소년 보호권 실태
4. 청소년 발달권 실태
5. 청소년 참여권 실태

IV.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 비교

1. 조사개요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으로써. 조사 대상자는 학령기로 보면, 한국의 중1에서 고3까지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다. 엄밀한 국제비교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의 설정, 표집방법, 조사방법 등 모든 조사의 조건과 방법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지만, 2008년도 조사에서는 시간과 조사비용의 제약 때문에 이점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5개국 모두 전국 표집을 실시하였고, 스웨덴을 제외한 4개국은 중·고등학교를 표집한 후, 학급단위의 집단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스웨덴은 예외적으로 국민전산망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우편조사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한국

①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한국조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IV-1-1>은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대상 조사의 모집단 현황이다.

<표 IV-1-1> 모집단 현황

(단위 : 명)

구 분	서울	경기/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전체
중학교	375,937	611,412	209,943	225,947	554,419	59,834	2,037,492
일반계	288,069	375,730	135,847	135,303	369,081	29,849	1,333,879
전문계	67,124	142,503	50,427	65,017	136,834	24,655	486,560
전 체	731,130	1,129,645	396,217	426,267	1,060,334	114,338	3,857,931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연보.

조사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857,931명이며, 이 중 중학생은 2,037,492명, 일반계고 학생은 1,333,879명, 전문계고 학생은 486,560명이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2단계 비례층화추출법(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는 학교로,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는 학급으로 하였다. 또한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는 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표본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층화방법은 지역(서울시, 경기도(인천 포함), 충청도(대전 포함), 전라도(광주 포함),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 포함), 강원도 등 총 6개 지역)과 학교급별 유형(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18개 층을 구성하였다. 층화별 표본배분은 층화지역별 학생수의 비율에 근거하여 목표표본수를 할당하고, 할당표본수에 따라 추출 학교수를 결정하였다. 이 때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을 전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 학교수를 결정하였다. 층화지역별로 할당된 학교의 추출은 우선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을 적용하여 층화변수별로 중·고등학교의 리스트를 정렬하고, 층화변수별 중·고등학교 학생수를 누적시킨 다음, 층화변수별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을 결정하였으며,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를 추출하였다.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나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는 제외하였다.

지역별로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을 추출할 때에는 추출된 학교순서에 기초하여 첫 번째 학교는 1학년, 두 번째 학교는 2학년, 세 번째 학교는 3학년,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단,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였으며,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지역별·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추출

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의 학교 순으로 대체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의해 추출된 학급수는 총 85개 학급(중학교 43개 학급, 일반계고 29개 학급, 전문계고 13개 학급)이며, 각 층별 세부현황은 <표 IV-1-2>와 같다. 조사는 2008년 6월에서 7월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추출된 85학급으로부터 총 2,421명의 중·고등학생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한국 표본 수는 2,276명이다.

<표 IV-1-2> 중고등학교 조사대상의 각 층별 표본크기 현황

(단위 : 학급)

구 분	서울	경기/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전체
중학교	8	12	4	6	12	1	43
일반계	4	7	4	4	8	2	29
전문계	3	2	2	1	4	1	13
전 체	15	21	10	11	24	4	85

②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 조사대상자의 2,276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3>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161명으로 전체의 51.0%이며, 여학생은 1,115명으로 전체의 49.0%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133명으로 전체의 49.8%, 일반계 고등학생이 816명으로 전체의 35.9%, 전문계 고등학생이 327명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하였다. 출생년도별로는 1989-1990년생이 155명(6.8%), 1991년생이 490명(21.5%), 1992년생이 423명(18.6%), 1993년생이 342명(15.0%), 1994년생이 479명(21.0%), 1995-1996년생이 387명(17.0%)의 분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학생이 1,287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에 사는 학생이 683명으로 전체의 30.0%, 군지역에 사는

학생이 306명으로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학력별(아버지 학력기준)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61명(7.1%), 고등학교 졸업이 1,042명(45.8%), 전문대학 졸업이 90명(4.0%), 대학교 졸업이 689명(30.3%), 대학원 졸업이 199명(8.7%)로 고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V-1-3> 한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1161	51.0	
	여자	1115	49.0	
학교 급별	중학교	1133	49.8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816	35.9
		전문계 고등학교	327	14.4
출생별	1989-1990년생	155	6.8	
	1991년생	490	21.5	
	1992년생	423	18.6	
	1993년생	342	15.0	
	1994년생	479	21.0	
	1995-1996년생	387	17.0	
지역별	군지역	306	13.4	
	대도시	1287	56.5	
	중소도시	683	30.0	
아버지 학력별	중학교 졸업 이하	161	7.1	
	고등학교 졸업	1042	45.8	
	전문대학(2년제) 졸업	90	4.0	
	대학교(4년제) 졸업	689	30.3	
	대학원 졸업	199	8.7	
	무응답	95	4.2	
어머니 학력별	중학교 졸업 이하	141	6.2	
	고등학교 졸업	1279	56.2	
	전문대학(2년제) 졸업	103	4.5	
	대학교(4년제) 졸업	520	22.8	
	대학원 졸업	132	5.8	
	무응답	101	4.4	

(2) 중국

① 조사방법

중국의 청소년을 전국조사하기 위해 중국청소년연구센터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각 성청소재지 혹은 직할시중 한 곳을 선정하였다. 이후 그 도시에서 2개 지역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또 각 지역에서 1개 학교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곳은 흑룡강성, 섬서성, 호북성, 절강성으로 고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써, 중국청소년연구센터의 조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2008년 9월과 10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중학교 1,050개, 고등학교는 1,511개였고, 이중 2,545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중국청소년 표본은 총 2,437명이다.

②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IV-1-4>는 중국 조사대상자 2,437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표 IV-1-4> 중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1,035	42.5	
	여자	1,402	57.5	
학교 급별	중학교	989	40.6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747	30.7
		실업계 고등학교	701	28.8
출생별	1989-1990년생	367	15.1	
	1991년생	405	16.6	
	1992년생	409	16.8	
	1993년생	410	16.8	
	1994년생	449	18.4	
	1995-1996년생	383	15.7	
	무응답	14	0.6	

성별로는 남학생은 1,035명으로 전체의 42.5%이며, 여학생은 1,402명으로 전체의 57.5%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989명으로 전체의 40.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747명으로 30.7%,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은 701명으로 28.8%를 차지했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1989-1990년생이 367명(15.1%), 1991년생이 405명(16.6%), 1992년생이 409명(16.8%), 1993년생이 410명(16.8%), 1994년생이 449명(18.4%), 1995-1996년생이 383명(15.7%)의 분포를 나타냈다.

(3) 일본

① 조사방법

일본청소년의 청소년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위하여 일본청소년연구소는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이용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에서 남부지역까지 10개 지역을 무작위 추출하였고, 구체적으로 아오모리현,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시즈오카현, 효고현, 가나가와현, 사가현, 이시가와현, 동경도, 도치기현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무작위추출로 선정하였다. 조사협력의 가능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고등학교는 각 지역에서 고교 1개씩 10개교, 중학교는 오카야마현과 시즈호카현을 제외한 8개현의 8개교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조사는 2008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회수한 설문지는 총 2,031개였으나, 다. 일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분석에 사용된 일본의 표본 수는 1,909명이다.

②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본의 조사대상자 1,909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5>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030명으로 전체의 54.0%이며, 여학생은 879명으로 전체의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706명으로 전체의 37%, 보통 고등학교의 학생이 1,102명으로 57.5%, 종합 고등학교의 학생은 101명으로 5.3%를 차지했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1989-1990년생이 175명(9.2%), 1991년생이 406명

(21.3%), 1992년생이 504명(26.4%), 1993년생이 214명(11.2%), 1994년생이 338명(17.7%), 1995-1997년생이 272명(14.2.0%)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IV-1-5> 일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1030	54.0	
	여자	879	46.0	
학교급별	중학교	706	37	
	고등학교	보통 고등학교	1102	57.7
		종합 고등학교	101	5.3
출생별	1989-1990년생	175	9.2	
	1991년생	406	21.3	
	1992년생	504	26.4	
	1993년생	214	11.2	
	1994년생	338	17.7	
	1995-1997년생	272	14.2	

(4) 미국

① 조사방법

미국청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Idea Resource Systems에 조사를 위탁하였다. 미국의 동부, 서부, 중서부, 남부 등 가능한 모든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도시 규모에 따른 문화 차이를 고려하여 대도시와 소도시를 모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Durham(NC), DeWitt(NY), Tulsa(OK), Nashville(TN), Salem(OR), Indianapolis(IN), Charlotte(NC), Idaho Falls(ID), Liberty(MO), Elgin(IL), Watertown(NY), Gallup(NM), Eugene(OR), St. Paul(MN)로서, 이 지역에서 학생수가 2,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와 1,000명 이하의 작은 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총 50여개의 학교에 설문조사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 중, 고등학교 포함 총 15개교의 학교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들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9월과 10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질문지 배포수는 2,375개이며, 1,855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78.1%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일부 문제가 있는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850개였다.

②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미국의 조사대상자 1,850명의 일반적인 특성 <표 IV-1-6>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929명으로 전체의 50.2%이고, 여학생은 921명으로 전체의 49.8%로서 성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858명으로 전체의 46.4%, 고등학생이 992명으로 53.6%를 차지했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1988-1990년생이 121명(6.5%), 1991년생이 258명(13.9%), 1992년생이 374명(20.2%), 1993년생이 349명(18.9%), 1994년생이 385명(50.8%), 1995-1996년생이 363명(19.6%)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IV-1-6> 미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929	50.2
	여자	921	49.8
교급별	중학교	858	46.4
	고등학교	992	53.6
출생별	1988-1990년	121	6.5
	1991년	258	13.9
	1992년	374	20.2
	1993년	349	18.9
	1994년	385	20.8
	1995-1996년	363	19.6

(5) 스웨덴

① 조사방법

스웨덴 청소년의 설문조사는 남스톡홀름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연구소의 Research Forum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표집방법으로는 다단계 유층별 군집표집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스웨덴을 290개의 코뮌으로 구분한 뒤 남성과 여성 군집으로부터 인구비례로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2000명을 추출했다. 이 표본추출을 위해 스웨덴의 국민전산망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Data Info를 통해 공급받은 정보⁵⁷⁾를 사용하였다. 200명의 표본 중 이사 12건, 조사 참여 거부 5건, 입원, 자폐증 등의 건강 혹은 질병의 이유로 답할 수 없었던 2건 등 총 18건이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설문은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이다. 조사는 3차에 걸친 발송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발송 시, 설문조사의 중요성과 부모의 협조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함께 동봉하였다. 1차 발송에서 3차 발송까지 총 4주가 소요되었으며, 마지막 수거까지 2주의 시간을 주어 총 6주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지 배포결과, 18명의 system missing을 제외한 1,982명의 표본으로부터 508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25.6%의 회수율을 보였다⁵⁸⁾.

②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웨덴의 조사대상자 508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7>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08명으로 전체의 40.9%이며, 여학생은 300명으로 전체의 59.1%로 나타나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57) 스웨덴은 최근 국민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표본추출시 국가전산망을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 정보과에 학술목적의 자료만으로 사용한다는 각서를 쓰고 서명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58) 다른 4개국과는 달리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저조한 설문지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문조사방식이 학교를 통한 집단조사가 아닌 각 가정별 우편조사방식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조사주체인 Research Forum에서도 각 가정으로 우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명의로 설문지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적극성 여부가 회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87명으로 전체의 36.8%, 일반 고등학생이 288명으로 56.7%, 전문 고등학교의 학생이 25명으로 4.9%를 차지했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1990년생이 105명(20.7%), 1991년생이 105명(20.7%), 1992년생이 117명(23%), 1993년생이 60명(11.8%), 1994년생이 66명(13%), 1995년생이 55명(10.8%)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IV-1-7> 스웨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208	40.9	
	여자	300	59.1	
학교급별	중학교	187	36.8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288	56.7
		전문 고등학교	25	4.9
		기타학교	8	1.6
출생별	1990년생	105	20.7	
	1991년생	105	20.7	
	1992년생	117	23.0	
	1993년생	60	11.8	
	1994년생	66	13.0	
	1995년생	55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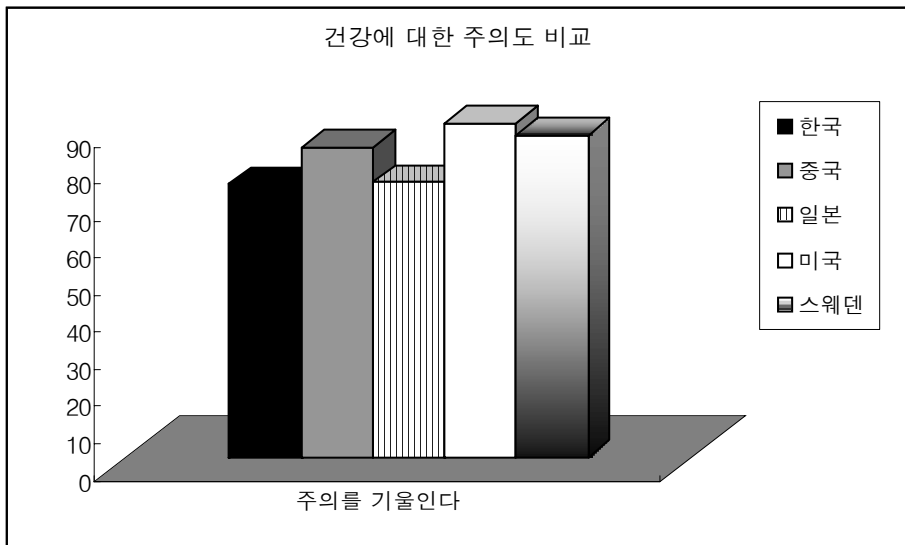
2. 청소년 생존권 실태

1) 신체적 생존권

청소년인권지표에 따라 생존권은 신체적 생존권과 질적 생존권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5개국 청소년들의 신체적 생존권을 비교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주의 및 건강관리, 운동하는 정도, 수면시간, 아침식사여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의식,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의식을 조사하였다.

(1) 건강에 대한 주의

신체적 생존권의 한 영역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5개국 청소년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림 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청소년의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와 ‘약간 주의를 기울인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중국,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 :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와 ‘약간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2-1] 건강에 대한 주의도

미국의 청소년들은 95.3%가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스웨덴청소년은 86.8%, 중국청소년은 83.5%가 건강에 대해 약간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의 청소년들의 응답 비율은 각각 73.9%, 73.7%로서 이들 국가 청소년보다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표 IV-2-1> 건강에 대한 주의도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26.0	24.3	13.4	49.3	52.4	29.1
약간 주의를 기울인다	47.7	59.2	60.5	46.0	34.4	52.4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24.0	15.4	20.7	3.8	12.2	16.1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2.3	1.1	5.4	0.9	1.0	2.3
카이제곱값	1047.289***59)					

성별과의 교차분석에서는 미국과 스웨덴을 제외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남자청소년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77.8%, 85.6%로써 여자청소년의 응답 비율인 69.4%와 81.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에 대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75.7%로 남자청소년(72.3%)보다 약간 높았다. 미국과 스웨덴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 없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여자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주의도를 5개국 비교하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여자청소년은 각각 81.3%, 75.7%, 95.1%, 88.3% 으로 나타나 한국의 여자청소년(69.4%) 들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9) 본문의 통계분석에서 유의도 수준은 $p < .05 = *$, $p < .01 = **$, $p < .001 = ***$ 으로 표기하였다.

<표 IV-2-2> 건강에 대한 주의도-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31.0	20.8	28.3	21.3	15.1	11.4	49.9	48.6	51.0	53.3
약간 주의를 기울인다	46.8	48.6	57.3	60.0	57.2	64.3	45.6	46.5	33.7	35.0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19.7	28.5	13.2	17.0	21.2	20.2	3.8	3.8	14.4	10.7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2.5	2.1	1.2	1.1	6.5	4.1	0.8	1.1	1.0	1.0
카이제곱값	41.335***		18.703***		14.120**		.792		51.619	

교급별로는 한국, 일본, 미국이 유의미한 수준⁶⁰⁾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70.5%)보다 중학생(76.9%)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고등학생은 각각 82.6%, 74.1%, 94.4%, 80.7%가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고등학생(70.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여자청소년은, 한국의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여자청소년보다 건강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있었고,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은 한국의 중학생보다, 그리고 다른 4개국의 고등학생보다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IV-2-3> 건강에 대한 주의도-교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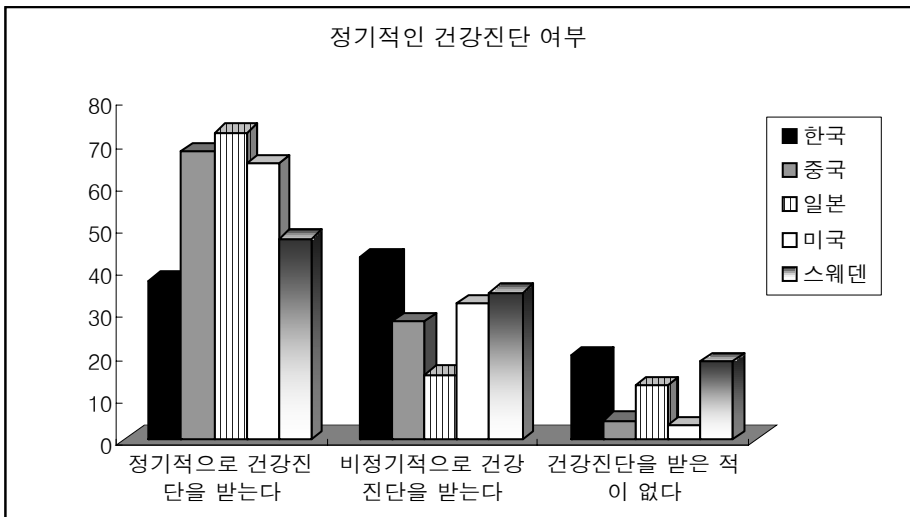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26.6	25.4	24.4	24.2	13.1	13.5	53.5	45.6	62.0	46.7
약간 주의를 기울인다	50.3	45.1	60.3	58.4	60.3	60.6	42.8	48.8	35.3	34.0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21.2	26.8	13.9	16.5	19.3	21.6	2.8	4.7	2.7	17.8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1.9	2.7	1.3	1.0	7.3	4.3	0.9	0.9	0.0	1.6
카이제곱값	12.579**		3.549		8.270*		13.634**		30.285***	

60) 스웨덴 역시, 교급별 차이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에서 중학생의 응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지, 5개국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과 함께, 학교를 통해, 혹은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청소년들의 37.4%만이 응답해, 중국의 67.9%, 일본의 72.3%, 미국의 65.2%, 스웨덴의 55.4%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V-2-2]).



주 : 부모님이나 학교를 통해, 혹은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는 모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로 계산함

[그림 IV-2-2]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데리고 간다'에 대한 응답은 미국에서 55.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스웨덴은 10.5%였으나, 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비율은 3% ~ 5% 내외로 매우 낮았다. '학교에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청소년은 각각 67.8%, 60.2%로 비슷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은 각각 약 29%, 미국청소년은 5.8%로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의 37.4%가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동일 문항에 대한 스웨

덴의 18.2%, 일본의 12.5%, 중국의 4.4%, 미국의 3.1%의 응답 비율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2-4>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부모님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데리고 간다	5.5	5.8	3.3	55.3	10.5	15.6
학교에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29.0	60.2	67.8	5.8	28.9	40.9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2.9	1.9	1.2	4.1	7.9	2.8
비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42.8	27.8	15.2	31.8	34.6	30.2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19.8	4.4	12.5	3.1	18.2	10.5
카이제곱값	4292.254***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대한 5개국 청소년의 응답을 성별과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부표 IV-2-1>), 한국청소년의 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님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데리고 간다’와 ‘학교에서 정기적인 진단을 받는다’는 응답은 중학생은 각각 8.2%, 31.4%의 비율을 보였으나, 고등학생은 2.8%, 26%에 불과해,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 중학생은 11.4%의 비율을 보였지만, 고등학생은 2배 이상인 28%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 4.7%, 일본 14.4%, 미국 3.6%, 스웨덴 23.3%로 나타나, 한국의 고등학생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아직 신체적 발달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대학입시와 취업 준비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평상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학교외에서의 건강검진은 추가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외에 생활수준변인이 유일하게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웨덴의 청소년들과 한국청소년들의 건강검진에 따른 생활수준별⁶¹⁾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표 IV-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나라 모두 생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데리고 간다’ 와 ‘학교에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생활수준⁶²⁾이 ‘상’인 경우 39.5%의 청소년이 응답한데 반해, ‘하’인 청소년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이 ‘상’인 청소년(13.1%)에 비해, ‘하’인 청소년의 비율은 25.9%로 나타나 약 2배수에 이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한국·스웨덴청소년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
- 생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부모님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데리고 간다	학교에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비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카이제곱값
한국	상	6.8	32.7	3.4	44.1	13.1	27.861**
	중	5.7	28.6	3.0	43.4	19.4	
	하	4.0	27.3	2.0	40.9	25.9	
스웨덴	상	13.6	22.7	13.6	27.3	22.7	16.433*
	중	13.7	29.8	6.3	32.3	17.9	
	하	4.2	29.5	9.6	39.8	16.9	

6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일본, 미국과는 설문지문항 합의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자살과 관련된 문항,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아르바이트관련 문항, 또한 배경변인으로써 생활수준, 학업성취수준, 부모학력 등의 문항은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을 위한 설문지에만 포함되었다.

62) 생활수준을 묻는 척도 중 ‘중간보다 잘 사는 편’, ‘매우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은 ‘상’, ‘중간수준’이라는 응답은 ‘중’, ‘매우 못사는 편’ 혹은 ‘중간보다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하’라고 리코딩 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다른 경향을 보여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문항에 대해 생활수준이 ‘하’인 청소년들의 응답이 가장 적었고, 대신 이들 청소년들의 상당한 비율(59.8%)이 비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학교를 통해서, 혹은 스스로 정기검진을 받는다는 항목에서는 생활수준이 ‘하’인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건강진단에 대한 이러한 생활수준별 차이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 적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정도

이와 더불어 한국과 스웨덴의 청소년에게 현재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⁶³⁾. 한국청소년의 경우 <표 I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0%를 넘고 있으나, 스웨덴청소년은 약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

구 분	한국	스웨덴	카이제곱값
전혀 하고 있지 않다	40.6	28.9	50.489***
일주일에 1-2회	34.1	33.9	
일주일에 3-4회	14.1	26.0	
매일한다	11.2	11.2	

특히 한국, 스웨덴 청소년 모두 성별, 교급별로 운동 여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자청소년의 70%이상이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해, 여자청소년의 45.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남자청소년(67.3%)보다 여자청소년(73.7%)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급별로는 한국고

6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정도에 대한 문항도 한국과 스웨덴설문지에만 포함되었다.

등학생의 48%가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중학생의 33.5%의 비율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나, 스웨덴의 중·고등학생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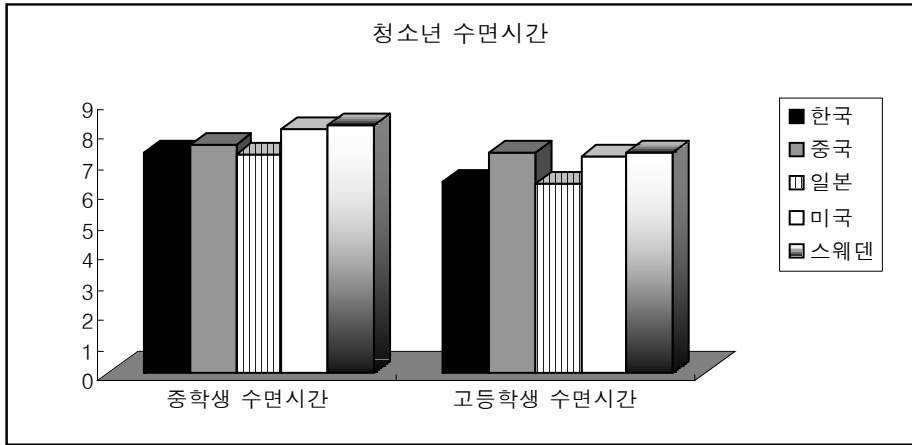
<표 IV-2-7> 한국·스웨덴청소년의 운동하는 정도-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매일한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	27.4	36.3	19.4	16.9	220.593***
	여	54.4	31.7	8.6	5.2	
	중	33.6	36.6	17.0	12.8	49.768***
	고	47.6	31.6	11.3	9.6	
스웨덴	남	32.7	23.6	32.7	11.1	18.862***
	여	26.3	41.0	21.3	11.3	
	중	33.2	31.0	28.9	7.0	8.284*
	고	26.5	35.5	24.3	13.7	

(4) 수면시간

충분한 수면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더불어 휴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5개국 비교한 결과 중,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의 [그림 IV-2-3]은 한국의 중, 고등학생이 일본학생들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보다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IV-2-3]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

또한 평균적인 하루 수면시간은 한국청소년은 7시간으로서, 4개국의 청소년중에서 일본청소년(6시간 45분)을 제외하곤, 중국 7시간 37분, 미국 7시간 39분, 스웨덴 7시간 44분에 비해 가장 적은 수면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등학생은 하루에 6시간 30여분의 수면을 취함으로써 중학생의 7시간 30여분보다 한시간 정도 적게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이들의 수면시간은 일본의 고등학생(6시간 23분)을 제외하면, 중국의 7시간 26분, 미국의 7시간 13분, 스웨덴의 7시간 26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교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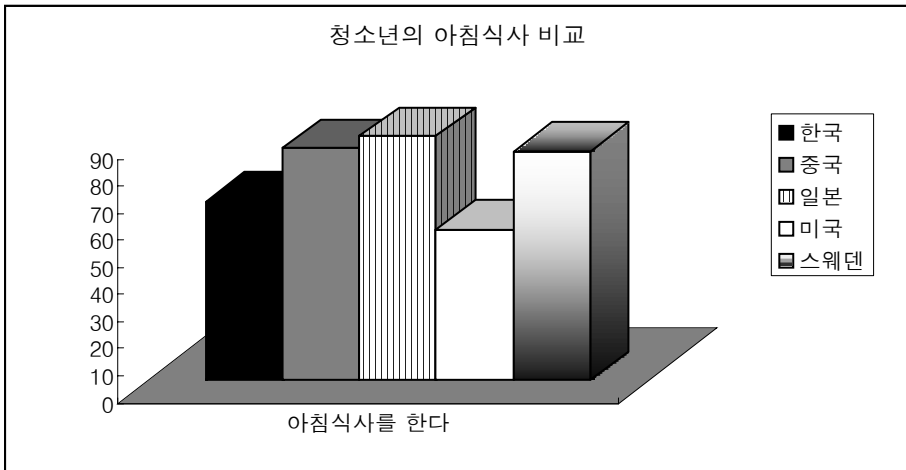
(단위/ 시:분)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학생	M	7:28	7:52	7:23	8:08	8:16
	SD	1:13	0:48	1:07	1:08	1:09
고등학생	M	6:31	7:26	6:23	7:13	7:26
	SD	1:33	1:01	1:04	1:04	1:16
전체	M	7:00	7:37	6:45	7:39	7:44
	SD	1:28	0:57	1:11	1:11	1:17

주 : M=평균값, SD=표준편차

(5) 아침식사 여부

규칙적인 식사는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아침식사는 학생인 이들의 두뇌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뿐 아니라,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신체적 생존권중 중요한 영역인 영양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아침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5개국 청소년들에게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IV-2-4]와 <표 IV-2-9>와 같다. 한국과 미국청소년은 각각 65.7%, 56%가 ‘아침식사를 매일 혹은 자주 먹는 편이다’ 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본 92.3%, 중국 85.6%, 스웨덴 8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각각 19%, 27%정도가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역시 중국의 4.5%, 일본의 3.9%, 스웨덴의 6.5%보다 훨씬 높은 아침 결식율을 보였다.



주: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다’와 ‘자주 먹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2-4]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여부

〈표 IV-2-9〉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빈도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매일 먹는다	52.5	59.8	82.5	36.2	68.6	58.4	1359.899***
자주 먹는 편이다	13.6	25.8	9.8	19.7	15.8	17.5	
가끔 먹는다	14.6	9.9	3.9	16.8	9.1	11.2	
거의 먹지 않는다	19.2	4.5	3.9	27.3	6.5	12.9	

특히 5개국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여부와 관련하여 성별, 교급별 변인을 가지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표 IV-2-2>), 교급별로는 한국과 중국, 미국 3개국 청소년에게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 중국, 미국청소년 중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비율이 각각 70%, 87%, 61.8%로 고등학생의 응답비율인 62.5%, 84.8%, 51%보다 더 높았으며,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먹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21.7%, 29.6%로 중학생의 응답비율(16.7%, 24.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고등학생보다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10〉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빈도- 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매일 먹는다	56.6	48.5	64.9	56.4	82.7	82.3	41.8	31.4	70.4	67.6
자주 먹는 편이다	13.3	14.0	22.1	28.3	10.1	9.6	20.0	19.5	18.8	14.0
가끔 먹는다	13.4	15.8	8.5	10.8	4.5	3.5	13.6	19.6	7.5	10.0
거의 먹지 않는다	16.7	21.7	4.5	4.6	2.7	4.6	24.6	29.6	3.2	8.4
카이제곱값	16.895**		19.128***		5.422		27.799***		7.495	

다음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정도’와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국 모두 두 항목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5개국에서 건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청소년은 아침식사도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11〉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와 아침식사 정도 상관분석

내 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아침식사 정도	.167**	.214**	.240**	.238**	.238**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의 2개 항목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식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웨덴을 제외한 4개국은 모두 10% 안팎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족 모두 아침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응답은 일본, 중국, 미국이 1~2%의 낮은 비율을 보인데 반해, 한국청소년의 비율은 1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아침식사 결식습관이 타 국가보다 한국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율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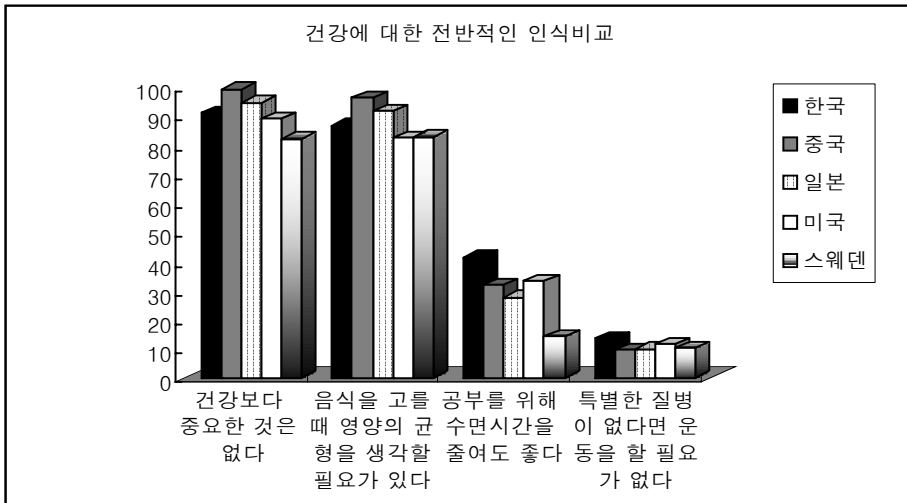
〈표 IV-2-1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늦게 일어나서	39.2	34.6	43.7	33.2	39.6
식사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9.5	13.3	9.4	11.8	1.1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35.5	36.9	35.9	37.4	56.0
가족 모두 아침식사를 하지 않아서	9.6	1.3	2.3	1.6	0.0
다이어트를 위해서	1.2	1.9	0.3	4.1	0.0
기타	5.0	12.1	8.4	11.9	3.3

(6) 건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이러한 신체적 생존권과 관련하여 건강, 음식, 수면시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들은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건강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청소년보다 낮은 비율(‘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보였으나, 반대로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개국 청소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주 :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2-5]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IV-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에 대해 한국청소년은 91.1%가 응답해, 미국(89.1%)과 스웨덴(82.3%)의 청소년보다는 높게 인식했지만, 중국(99.1%)과 일본(94.7%)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한국청소년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43.5%로 여학생(35.8%)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도 비슷하게 나타

났다 (<부표 IV-2-3>).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도 역시 중국(96.4%), 일본(91.5%)이 한국청소년(86.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미국과 스웨덴은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흥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부표 IV-2-4>), 한국과 스웨덴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음식을 고를 때 있어 영양의 균형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미국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음식의 영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3>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 음식, 수면시간, 운동) 인식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다	91.1	99.1	94.7	89.1	82.3
	그렇지 않다	8.9	0.8	5.4	10.9	17.7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86.9	96.4	91.5	82.4	82.9
	그렇지 않다	13.1	3.5	8.4	17.5	17.1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	그렇다	41.5	32.1	27.8	33.1	14.2
	그렇지 않다	58.5	67.9	72.3	66.9	85.8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	13.5	9.7	9.9	11.5	10.3
	그렇지 않다	86.5	90.2	90.1	88.5	89.7

주 :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값/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친 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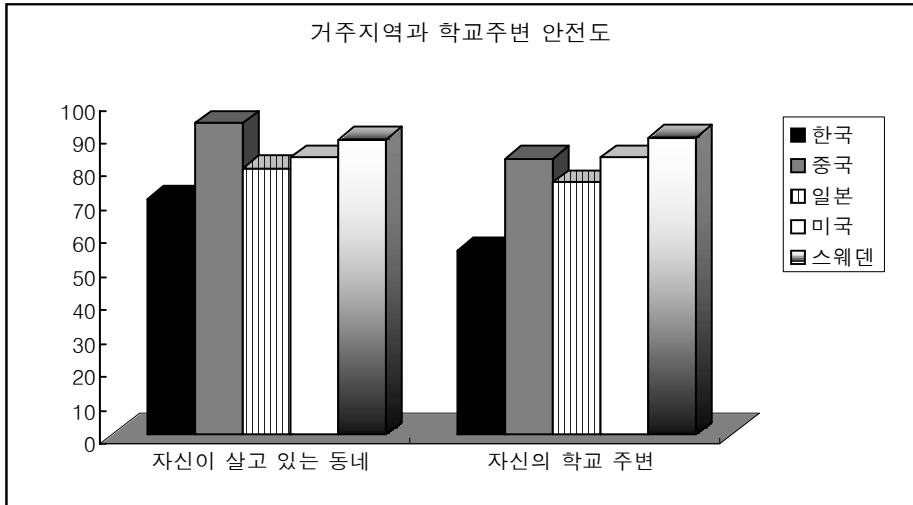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41.5%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중국(32.1%), 일본(27.8%), 미국(33.1%), 스웨덴(14.2%)의 청소년보다 수면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한국의 여자 청소년의 ‘그렇다’는 응답이 44.7%로서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중국(33.9%), 일본(26.2%), 미국(33.5%), 스웨덴(15.7%)의 여자청소년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부표 IV-2-5>). 공부에 대

한 부담은 중학생보다는 입시와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교급별 차이도 살펴보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중·고등학생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부표 IV-2-6>).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의 비율은 44.9%로 일본의 고등학생(29.5%)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자청소년보다, 또 한국의 고등학생은 한국의 중학생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들보다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라고 더 높은 비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한국청소년은 13.5%인데 반해, 중국은 9.7%, 일본은 9.9%, 미국은 11.5%, 스웨덴은 10.3%로 나타나, 한국의 청소년들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개국 모두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부표 IV-2-7>), 특히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한국의 여자 청소년이 13.8%로 나타나 다른 나라의 여자청소년(중국 11.6%, 일본 7.8%, 미국 10.1%, 스웨덴 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청소년, 특히 여자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운동의 대한 중요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거주지역과 학교주변 안전도

신체적 생존권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항으로써,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의 범죄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IV-2-6]은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이 비해 거주지역과 학교주변 환경이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 : ‘매우 안전하다’와 ‘대체로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것 기준

[그림 IV-2-6] 거주지역과 학교주변 안전도

<표 IV-2-14> 거주지역과 학교주변 안전도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안전하다	70.9	93.4	80.1	83.1	88.7
	안전하지 않다	29.1	6.6	19.9	16.9	11.3
자신의 학교 주변	안전하다	55.4	82.9	75.8	83.2	89.3
	안전하지 않다	44.7	17.2	24.2	16.8	10.2

주 : 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와 ‘대체로 안전하다’를 합친 값/ 안전하지 않다=‘별로 안전하지 않다’와 ‘전혀 안전하지 않다’를 합친 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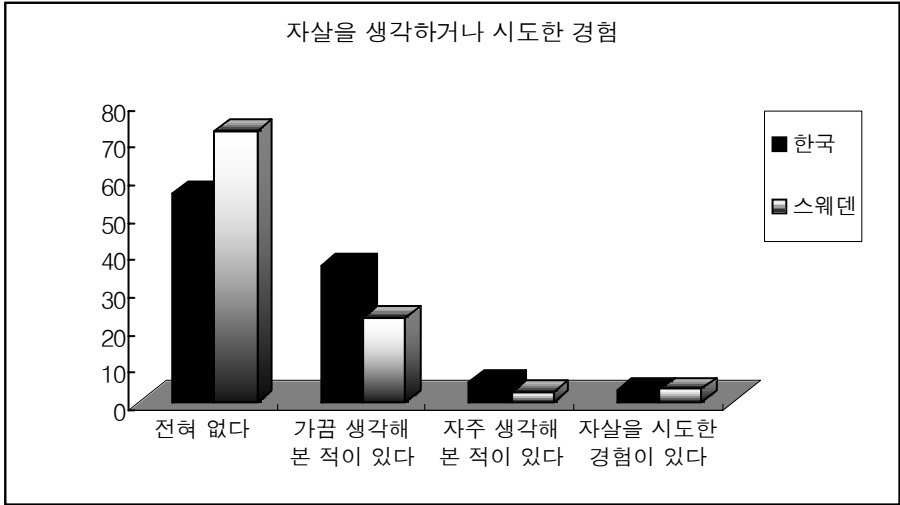
<표 IV-2-14>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은 70.9%가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93.4%, 일본 80.1%, 미국 83.1%, 스웨덴은 88.7%의 청소년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55.4%만이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해, 중국 82.8%, 일본

75.8%, 미국 83.2%, 스웨덴 89.3%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비교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거주지역이나 학교 주변이 범죄피해로부터 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학교주변의 안전도와 관련해서 성별차이를 살펴 보았는데, 모든 국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표 IV-2-8>, <부표 IV-2-9>). 특히 학교주변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은 단지 49.1%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남자청소년(61.5%)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의 범죄피해에 대한 안전도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 여학생의 안전도에 대한 응답비율(64.5%)이 남학생(77.0%)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범죄 피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여자청소년은 다른 국가의 여자청소년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학교주변이 범죄피해로부터 훨씬 덜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질적 생존권

질적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경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스웨덴청소년과의 비교만 이루어졌고, [그림 IV-2-7]과 <표 IV-2-15>는 한국과 스웨덴청소년의 비교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2-7]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IV-2-15>), 한국 청소년은 ‘전혀 없다’는 비율은 55.4%인데 반해, 스웨덴 청소년은 72.3%로 나타나, 스웨덴 청소년들은 한국청소년보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가끔 혹은 자주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한국청소년이 41.6%, 스웨덴 청소년의 24.4%로서, 한국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은 2.9%, 스웨덴 청소년은 3.4%로 스웨덴 청소년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IV-2-15>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단위 : %)

구분	한국	스웨덴	카이제곱값
전혀 없다	55.4	72.3	52.334***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6.4	21.8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2	2.6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2.9	3.4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경험에 대한 성별, 생활수준별, 그리고 학업성취⁶⁴⁾별 차이는 <표 IV-2-16>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은 자살에 대해 가끔 혹은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49.2%로 절반에 이르고 있어, 남자청소년의 34.2%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도 비록 한국 여자 청소년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30.4%의 여자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 가끔 혹은 자주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웨덴 남자 청소년의 15.6%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를 폭력적인 행동 등과 같이 겉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많다는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생활수준별로는 자살에 대해 가끔 혹은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한국청소년 중 생활수준이 ‘하’인 경우가 49%로 거의 절반에 이르렀고, 이는 생활수준이 높은 청소년(상 41.6%, 중 39%)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생활수준이 높은 청소년(45.5%)이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23.1%, 하 22%).

학업성취별 차이를 보면, 한국청소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취가 ‘상’인 경우에는 41%, ‘중’은 37.4%, ‘하’는 45.5%로 나타나 학업성취가 가장 낮은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 가끔 혹은 자주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취가 ‘상’인 청소년들이 ‘중’인 청소년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자살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웨덴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성취가 ‘상’인 경우(28.2%)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중 21.9%, 하 17.9%). 그러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과 스웨덴 모두 학업성취가 ‘하’인 청소년들이 응답이 각각 4.1%, 10.3%로서 학업성취

64) 학업성취를 묻는 질문에서 ‘상위권’ 과 ‘중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 ‘중위권’은 ‘중’, ‘중하위권’ 혹은 ‘하위권’이라는 응답은 ‘하’로 리코딩한 후 분석하였다.

가 더 좋은 청소년들의 응답비율(두 나라 모두 2% ~ 2.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16>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성별·생활수준·학업성취별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없다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카이제곱값	
한국	성별	남	63.5	30.2	4.0	2.3	62.422***
		여	47.2	42.8	6.4	3.6	
	생활 수준	상	55.0	35.7	5.9	3.4	23.680**
		중	58.6	35.0	4.0	2.5	
		하	47.6	41.3	7.7	3.4	
	학업 성취	상	56.5	35.9	5.1	2.4	19.692**
		중	60.3	33.6	3.8	2.2	
		하	50.4	39.1	6.4	4.1	
	스웨덴	성별	남	81.5	14.6	1.0	2.9
여			66.0	26.7	3.7	3.7	
생활 수준		상	40.9	36.4	9.1	13.6	35.764***
		중	74.5	20.6	2.5	2.5	
		하	75.6	21.4	.6	2.4	
학업 성취		상	69.3	24.9	3.3	2.5	10.048
		중	75.1	19.5	2.4	2.9	
		하	71.8	17.9	.0	10.3	

3) 요약

청소년의 생존권중 신체적 생존권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주의 및 건강관리, 운동하는 정도, 수면 시간, 아침식사여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의식,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 의식 등을 조사하였고, 질적 생존권을 위해서는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경험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이 중국,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여자청소년보다 건강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있었고,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은 한국의 중학생보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고등학생보다 건강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를 통해, 혹은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응답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37.4%가 응답해, 중국의 67.9%, 일본의 72.3%, 미국의 65.2%, 스웨덴의 55.4%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에 대해서 중학생은 11.4%의 비율을 보였지만, 고등학생은 2배 이상인 2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한 대학입시와 취업준비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보다, 건강진단을 가장 덜 받고 있었다. 또한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국청소년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 생활수준이 높은 청소년(13.1%)에 비해, 낮은 청소년의 비율은 25.9%로 나타나 약 2배수에 이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한국청소년은 스웨덴 청소년들보다 운동을 적게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은 운동을 더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인 수면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은 7시간으로서, 4개국 중

일본청소년(6시간 45분)을 제외하곤, 중국 7시간 37분, 미국 7시간 39분, 스웨덴 7시간 44분에 비해 가장 적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등학생은 하루에 6시간 30여분의 수면을 취함으로써 중학생의 7시간 30여분보다 한 시간 정도 적게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이들의 수면시간은 역시 일본의 고등학생(6시간 23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침식사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청소년의 아침 결식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다른 국가의 고등학생보다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개국 모두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라고 응답했으나, 한국청소년의 경우 ‘가족 모두 아침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건강, 음식, 수면시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청소년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건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청소년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반대로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항목에 대해서는 5개국 청소년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덜 고려하고 있었고,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또 한국의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들보다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라고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청소년들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은 앞서 조사한 실제 수면시간이 낮게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의 청소년보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여자청소년들이 특히 더 운동의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앞서 실제 운동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한국의 청소년, 특히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들의 운동에 매우 소홀히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의 범죄 피해로부터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보다 거주지역과 학교주변의 환경이 범죄피해로부터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보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여자청소년보다 훨씬 덜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질적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경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가끔 혹은 자주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한국청소년이 41.6%, 스웨덴 청소년의 24.4%로서, 한국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며, 생활수준과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생존권 실태를 국제 비교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상당히 낮았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동이나, 아침식사등 등 건강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역시 자녀의 건강진단과 아침식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취업준비 등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특히 고등학생과, 여자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과 관련한 잘못된 인식 등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의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체계적인 건강검진 지원시스템 등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조사결과는 지역사회와 학교주변의 안전도와 청소년자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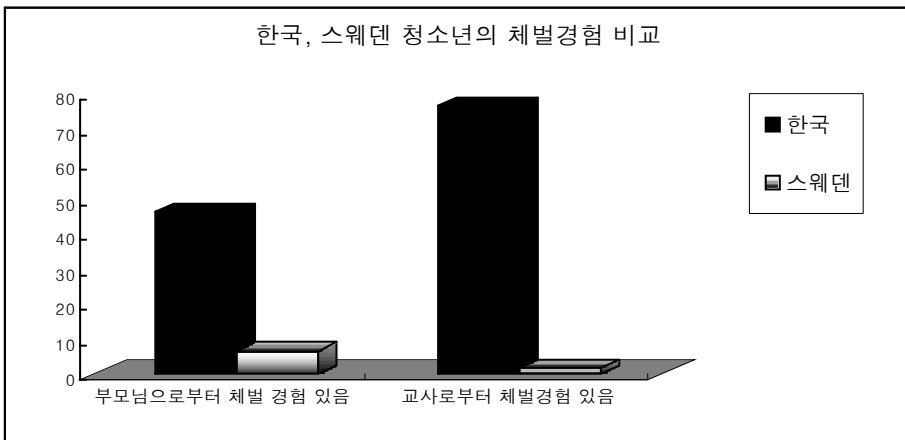
3. 청소년 보호권 실태

1) 학대 및 착취 경험

청소년인권지표에 따른 청소년 보호권 실태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여부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경험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한국과 스웨덴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1)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학교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그림 IV-3-1]과 같이 체벌 경험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지난 1년간 1회라도 체벌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그림 IV-3-1]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표 IV-3-1>에서 보듯이 한국청소년들의 46.2%는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가정에서 체벌을 경험하고 있었고, 교사로부터의 체벌 비율은 76.8%로서 더 높게 나타나, 학

교에서의 체벌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IV-3-1>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체벌 경험

(단위 : %)

구 분	한국		스웨덴	
	전혀없다	있다	전혀없다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53.8	46.2	93.5	6.5
교사로부터의 체벌	23.2	76.8	98.6	1.4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6.5%만이 부모로부터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교사로부터의 체벌도 1.4%의 청소년들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한국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체벌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IV-3-2> 한국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

(단위 : %)

구 분		전혀 없다	1-4회	5-9회	10회 이상	카이제곱값
성별	남	53.6	34.0	5.2	7.1	2.065
	여	54.0	35.5	4.7	5.9	
교급	중	45.8	40.0	6.2	8.0	58.433***
	고	61.7	29.6	3.8	5.0	
생활수준	상	52.0	35.0	6.1	6.9	4.746
	중	52.9	35.8	4.7	6.6	
	하	57.2	31.8	4.7	6.3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 이하	53.4	33.5	5.6	7.5	28.751**
	고졸	58.3	33.1	3.9	4.7	
	전문대(2년)졸	50.6	34.8	5.6	9.0	
	대졸(4년)	48.0	38.8	5.7	7.5	
	대학원졸	48.7	34.5	7.1	9.6	
어머니 최종학력	중졸 이하	58.2	31.2	5.7	5.0	24.906*
	고졸	56.6	33.5	4.2	5.7	
	전문대(2년)졸	48.0	41.2	2.9	7.8	
	대졸(4년)	47.2	39.6	6.2	7.0	
	대학원졸	46.2	36.2	7.7	10.0	
전체		53.8	34.7	5.0	6.5	

한국청소년의 이러한 체벌의 심각성과 관련해서, 여러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중 교급별로 그리고 부모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더 체벌을 받고 있었고, 이들 중 절반이상이 지난 1년간 1회 이상의 체벌을 경험하였으며, 8%의 청소년들은 10회 이상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아버지를 가진 청소년의 53.4%가 체벌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의 아버지의 경우 48.7%로 응답해 학력이 높은 아버지의 경우 체벌경험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대학원을 졸업의 아버지를 가진 청소년의 9.6%가 10회 이상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해 아버지의 학력과 청소년의 체벌경험 빈도와는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어머니 학력과 관련해서는 체벌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어머니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가 58.2%로 대학원 졸(46.2%) 보다 높았고, 10회 이상의 체벌에 대해서 대학원을 졸업한 어머니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10%가 경험 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어머니보다 학력이 높은 어머니를 가진 청소년의 체벌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한국청소년의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단위 : %)

구 분		전혀 없다	1-4회	5-9회	10회 이상	카이제곱값
성별	남	21.5	40.3	12.7	25.5	40.400***
	여	24.9	48.6	11.1	15.4	
교급	중	22.3	44.2	13.5	20.0	5.685
	고	24.0	44.5	10.3	21.1	
지역	군지역	27.9	40.2	10.3	21.6	13.875*
	중소도시	20.6	46.7	12.5	20.3	
	대도시	26.0	41.9	11.5	20.6	
학업 수준	상	21.8	46.3	12.5	19.4	22.219**
	중	23.0	47.5	13.2	16.2	
	하	24.6	40.3	10.4	24.7	
전체		23.2	44.4	11.9	20.5	

<표 IV-3-3>는 한국청소년의 지난 1년간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5회 미만의 체벌경험 대해서는 남자청소년(40.3%)의 응답이 여자 청소년의 비율(48.6%)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5회 이상의 체벌경험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38.2%, 여학생 26.5%가 응답해 남학생의 체벌경험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수준별로는 1회부터 9회까지의 체벌경험에서 학업수준이 ‘상’ 과 ‘중’인 학생들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10회 이상의 체벌 경험에서는 학업수준이 ‘하’인 청소년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 청소년들이 더 빈번하게 체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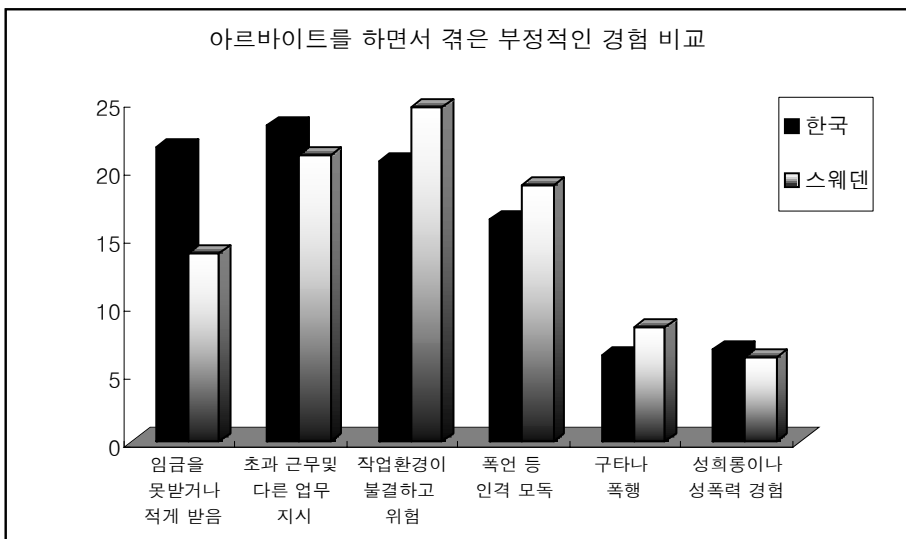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해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은 23.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반해, 스웨덴 청소년은 46.3%로 응답해 스웨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인 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스웨덴 모두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는데, 한국의 고등학생은 35.4%가 아르바이트를 해본데 비해, 스웨덴의 고등학생은 59.8%로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

구 분		한국		스웨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남자	22.6	77.4	42.8	57.2
	여자	24.0	76.0	48.7	51.3
	카이제곱값	.652		1.707	
교급	중학교	11.1	88.9	23.0	77.0
	고등학교	35.4	64.6	59.8	40.2
	카이제곱값	187.394***		64.433***	
전체		23.3	76.7	46.3	53.7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IV-3-2]과 같이 나타났다. 임금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이 스웨덴 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나,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폭언 등의 인격모독, 구타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스웨덴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이나 성폭력경험은 두 나라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주 : 경험한 적이 한번 이상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그림 IV-3-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의 21.6%가 한두 번 이상 경험하였으나, 스웨덴 청소년은 13.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초과시간 근무이거나 다른 업무를 지시 받은 경험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은 23.3%로 스웨덴 청소년보다(21.1%)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은 20.6%가 스웨덴의 경우에는 24.6%가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폭언 등의 인격모독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은 16.3%가 스웨덴 청소년은

18.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나 폭행에 대해서는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이 각각 6.3%와 8.4%의 비율로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6.7%, 6.2%)으로 나타났다.

<표 IV-3-5>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하면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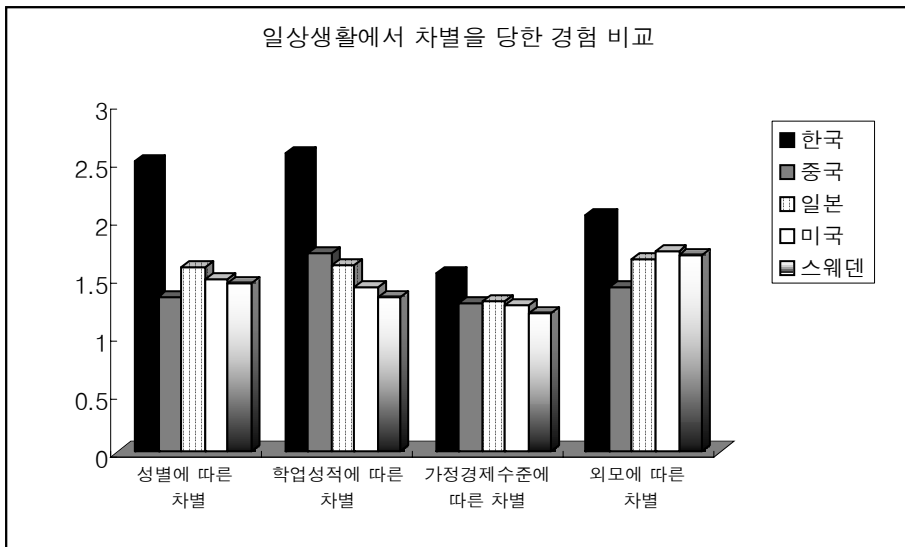
구 분	한국			스웨덴		
	없다	한두번	여러번	없다	한두번	여러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78.4	17.9	3.7	86.3	9.2	4.6
계약시간 초과 근무 및 다른 업무 지시	76.7	17.3	6.0	78.9	13.9	7.2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	79.4	15.0	5.6	75.4	15.4	9.2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음	83.7	11.6	4.7	81.3	12.5	6.3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93.8	4.5	1.8	91.7	6.7	1.7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	93.3	4.8	1.9	93.8	2.9	3.3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성별변인을 가지고 교차분석 (<부표 IV-3-1>)을 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만 살펴보면, 먼저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서 한국 남자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26.8%로, 여자 청소년 (1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청소년들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 남자청소년의 응답이 33.8%, 여자 청소년이 19.2%로 나타나 한국과 스웨덴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 보다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도 한국과 스웨덴 모두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폭언등의 인격 모독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소년은 22.5%가 경험한데 반해 여자청소년은 10.1%로 나타나, 남

차청소년이 두 배 이상 폭언이나 인격모독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

2)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그리고 외모나 체격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IV-3-3]은 5개국 청소년 중 한국의 청소년들이 4가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차별을 당한 경험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 : 평균값 기준

[그림 IV-3-3]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

<표 IV-3-6>는 4가지 모든 영역의 차별경험에 대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중에서 한국청소년의 평균값이 모든 영역의 차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차별경험에서는 한국청소년의 평균값(2.51)은 중국(1.34)보다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1.59), 미국(1.49), 스웨덴(1.45)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에 대해서도 스웨덴(1.34)보다 거의 2배에 달

하는 평균값(2.58)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외모에 따라서 다른 비교대상 국가의 청소년보다 훨씬 차별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6>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

구 분		한국 ¹⁾	중국 ²⁾	일본 ³⁾	미국 ⁴⁾	스웨덴 ⁵⁾	F	Scheffe 사후검증
성별에 따른 차별	M	2.51	1.34	1.59	1.49	1.45	814.046***	1>2,3,4,5
	SD	.854	.663	.796	.758	.724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M	2.58	1.72	1.62	1.43	1.34	634.393***	1>2,3,4,5
	SD	.915	.877	.799	.750	.699		
가정경제수준 에 따른 차별	M	1.55	1.28	1.30	1.26	1.19	89.056***	1>2,3,4,5
	SD	.695	.616	.558	.628	.508		
외모에 따른 차별	M	2.05	1.43	1.66	1.74	1.70	154.783***	1>2,3,4,5
	SD	.902	.754	.831	.942	.881		

주1 : M=평균값(Mean), SD=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주2 : 본 연구에서 모든 평균값 비교에 대한 Scheffe 검증결과는 한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와의 차이만 제시함. 해당되는 모든 문항들에 대한 한국을 제외한 4개 국가간의 차이는 부표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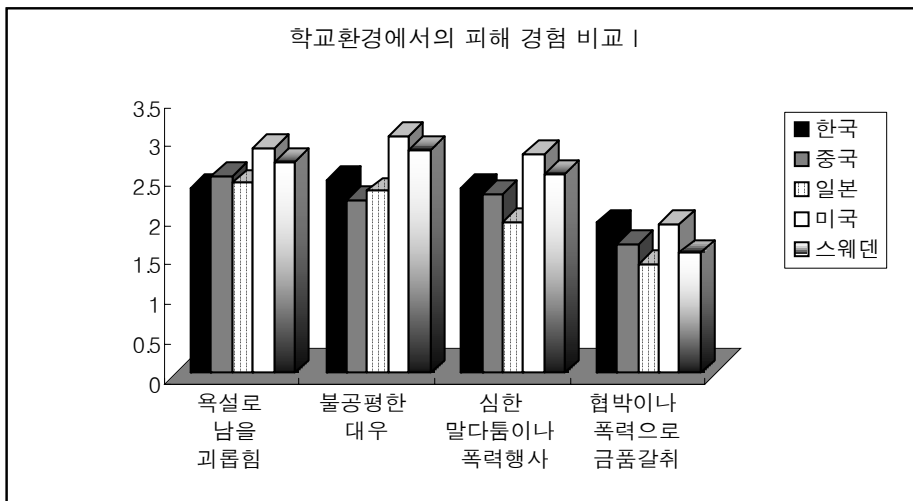
이러한 차별경험에 대해 성별로 살펴본 결과 (<부표 IV-3-2>),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약간 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4개국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 대체적으로 여자청소년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급별 차이에서도, 성별,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외모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중·고등학생의 응답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부표 IV-3-3>). 5개국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더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에서도 고등학생의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

제외). 또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정경제수준에 따라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리하면, 5개국 중 한국청소년들이,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이 차별이나 불공평한 대우를 더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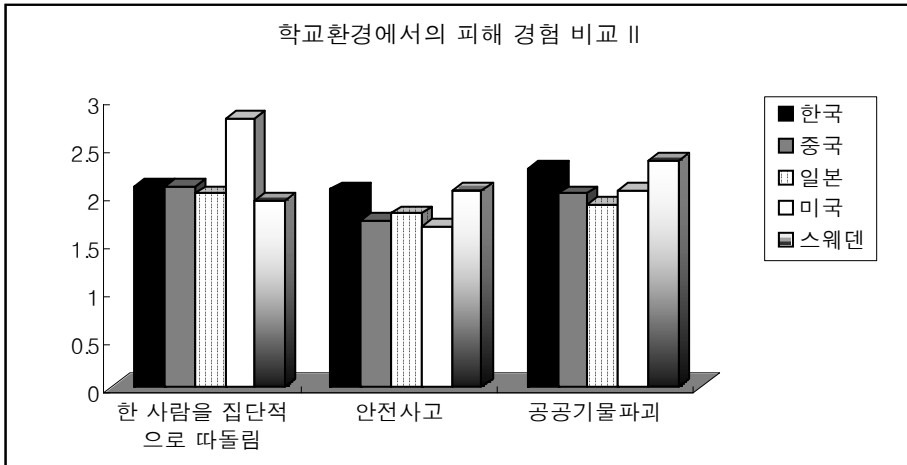
3) 비행·일탈행동으로부터의 피해

(1) 학교환경에서의 피해경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서 학교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또래에 의한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의한 피해는 청소년의 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해경험으로써 경멸이나 무시를 포함한 욕설, 불공평한 대우,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행사,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공공기물과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IV-3-4] 과 [그림 IV-3-5]에서와 같이, 한국의 학교에서는 ‘협박과 폭력으로 인한 금품갈취’,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다른 나라에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4]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 I



[그림 IV-3-5]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 II

<표 IV-3-7>는 학교에서의 이러한 각각의 피해경험들에서 5개국 간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Scheffe 사후검증은 각 국가 간의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교에서 욕설로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M=2.34)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일본(M=2.41), 중국(M=2.50), 미국(M=2.85), 스웨덴(M=2.67)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차이는(일본은 제외)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학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M=2.45)은 중국(M=2.19)과 일본(M=2.31)청소년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반면 미국(M=3.01)과 스웨덴(M=2.83)의 학교보다는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M=2.34)의 학교에서는 일본(M=1.91)보다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의 발생빈도가 더 높았으나, 미국(M=2.77)과 스웨덴(M=2.52)보다는 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M=1.90)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M=1.63), 일본(M=1.38), 스웨덴(M=1.52)의 학교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따돌림은 한국과 중국청소년의 학교에서 같은 수준(M=2.09)으로 발생했는데, 스웨덴(M=1.95)보다는 높고 미국(M=2.78)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한국과 스웨덴

이 비슷한 수준으로(M=2.05, M=2.04)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물파괴는 스웨덴을 제외하면 한국 학교(M=2.05, M=2.2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국, 일본, 미국과는 동일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7>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

구 분		한국 ¹⁾	중국 ²⁾	일본 ³⁾	미국 ⁴⁾	스웨덴 ⁵⁾	F	Scheffe 사후검증
욕설로 남을 괴롭힘	M	2.34	2.50	2.41	2.85	2.67	82.981***	1<2,4,5
	SD	.746	.995	.902	1.026	.843		
불공평한 대우	M	2.45	2.19	2.31	3.01	2.83	248.190***	1>2,3 1<4,5
	SD	.871	.958	.908	.917	.738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행사	M	2.34	2.26	1.91	2.77	2.52	213.522***	1>3 1<4,5
	SD	.869	.917	.904	.973	.780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M	1.90	1.63	1.38	1.89	1.52	141.724***	1>2,3,5
	SD	.834	.818	.654	.948	.701		
집단 따돌림	M	2.09	2.09	2.01	2.78	1.93	211.091***	1>5 1<4
	SD	.877	.967	.901	1.036	.830		
안전사고	M	2.05	1.72	1.80	1.66	2.04	86.530***	1>2,3,4
	SD	.779	.759	.743	.860	.765		
공공기물파괴	M	2.26	2.01	1.90	2.04	2.35	55.088***	1>2,3,4
	SD	.866	.912	.871	.992	.908		

이러한 학교에서의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성별차이를 살펴본 결과(<부표 IV-3-4>), 한국청소년의 경우 ‘욕설로 남을 괴롭힘’에 대해서만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욕설로 괴롭히는 일이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 차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 협박과 폭력으로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공공기물 파괴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 차이를 보면, <표 IV-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M=2.24)보다는 중학생(M=2.44)이 학교에서 심한 말다툼과 폭력이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에서도 교급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학생(M=2.31)이

고등학생(M=1.67)보다 학교에서 이러한 심한 말다툼과 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협박과 폭력에 의한 금품갈취’에 대해 한, 중, 일 3개국이 모두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역시 3개국 모두에서 중학생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의 교급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공공기물 파괴’에 대해서도 중학생(M=2.30)의 응답이 고등학생(M=2.21)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학생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교급별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욕설로 남을 괴롭힘	M	2.40	2.28	2.68	2.38	2.71	2.23	2.72	2.95	2.75	2.62
	SD	.738	.750	.977	.989	.888	.863	1.035	1.009	.819	.854
	t	3.246		7.312		11.530		-4.557**		1.736	
불공평한 대우	M	2.42	2.48	2.30	2.10	2.42	2.24	2.93	3.08	2.86	2.81
	SD	.863	.879	.965	.945	.929	.888	.942	.893	.777	.714
	t	-1.603		4.967**		4.183**		-3.401		.713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	M	2.44	2.24	2.40	2.16	2.31	1.67	2.73	2.81	2.56	2.50
	SD	.879	.849	.890	.924	.948	.786	.979	.968	.783	.779
	t	5.430**		6.267		15.885***		-1.693		.922	
협박과 폭력으로 금품갈취	M	2.03	1.78	1.72	1.56	1.41	1.36	1.73	2.01	1.51	1.52
	SD	.886	.758	.878	.767	.708	.619	.895	.969	.683	.713
	t	6.903**		4.783***		1.468**		-6.154		-.240	
집단따돌림	M	2.22	1.95	2.20	2.02	2.25	1.87	2.67	2.87	1.93	1.94
	SD	.918	.814	.983	.949	.963	.831	1.063	1.005	.817	.838
	t	7.137***		4.444***		9.168***		-4.137***		-.087	
안전사고	M	2.09	2.01	1.87	1.62	1.84	1.77	1.57	1.74	2.18	1.97
	SD	.781	.776	.767	.736	.770	.725	.835	.873	.752	.764
	t	2.247		8.017*		2.220		-3.941		3.017	
공공기물 파괴	M	2.30	2.21	2.20	1.87	2.03	1.82	1.80	2.22	2.48	2.27
	SD	.879	.851	.917	.882	.937	.821	.947	.987	.906	.902
	t	2.389**		8.969*		5.167***		-8.884		2.454	

한국청소년의 경우(<표 IV-3-9>), 특히 학교에서의 피해경험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공공기물 파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규모가 작은 지역보다, 대도시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협박이나 폭력에 의한 금품갈취’의 발생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 과 ‘공공기물 파괴’도 다른 지역보다 대도시의 학교에서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한국청소년의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지역별 비교

구 분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F
욕설로 남을 괴롭힘	M	2.31	2.35	2.34	.266
	SD	.741	.754	.743	
불공평한 대우	M	2.51	2.45	2.43	1.021
	SD	.881	.861	.873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	M	2.31	2.31	2.36	1.015
	SD	.879	.875	.864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M	1.83	1.84	1.96	6.214**
	SD	.783	.816	.851	
집단 따돌림	M	2.09	1.99	2.14	5.782**
	SD	.865	.846	.893	
안전사고	M	2.04	2.00	2.08	2.867
	SD	.830	.750	.781	
공공기물파괴	M	2.21	2.20	2.30	3.708*
	SD	.884	.841	.873	

결과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학교의 안전사고의 위험에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더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한국의 중학생은 학교에서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 협박과 폭력에 따른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공공기물 파괴 등을 고등학생보다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공공기물 파괴’등을 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2) 비행과 일탈행동 경험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른 또래들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14개의 다양한 일탈행동⁶⁵⁾에 대한 경험들을 조사하였다(<부표 IV-3-5>). 이 중 5순위의 일탈 및 비행행동에 대한 5개국의 비교한 결과를 보면 <표 IV-3-10>와 같다.

<표 IV-3-10> 비행 및 일탈행동 경험(복수응답)

(단위 : %)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1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59.3)	음주 (25.6)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33.7)	음주 (29.8)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55.3)
2	돈걸고 내기 하기 (52.9)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15.5)	음주 (25.7)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28.6)	학교수업 빼먹기 (51.0)
3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38.5)	학교수업 빼먹기 (13.4)	돈걸고 내기 하기 (23.7)	학교수업 빼먹기 (23.0)	음주 (51.0)
4	음주 (34.3)	폭력 휘두르기 (13.0)	폭력 휘두르기 (22.9)	폭력 휘두르기 (22.6)	성인사이트, 비디오, 잡지보기 (37.6)
5	성인사이트, 비디오, 잡지보기 (28.7)	흡연 (10.6)	학교수업 빼먹기 (16.2)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20.4)	돈걸고 내기 하기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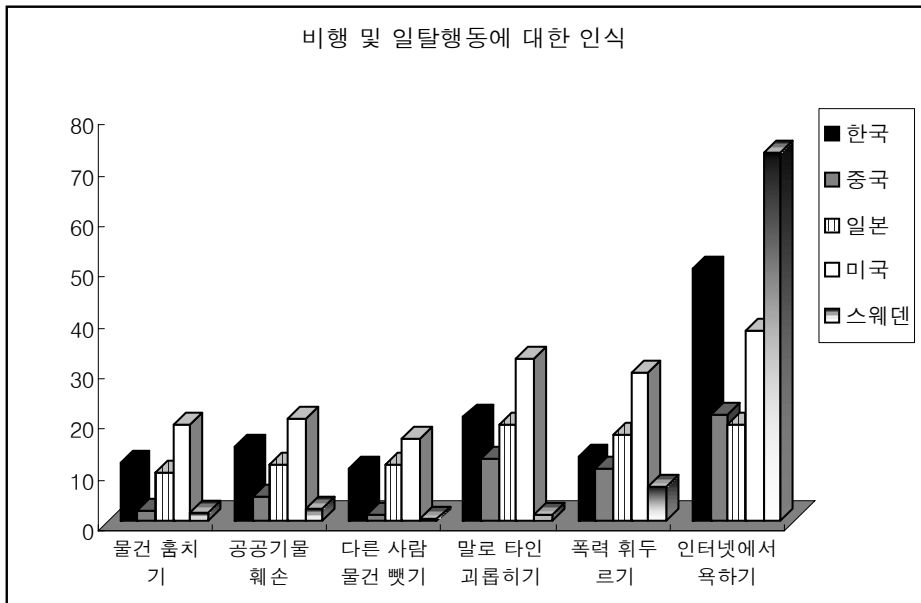
한국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일탈행동은 ‘인터넷상에서 욕하기’로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에서 한국의 청소년들도 그 중심에 있으며, 이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돈걸고 내기하기,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음주, 성인사이트, 성인비디오나 잡지보기의 순으로 일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역시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언어를

65) 가출, 흡연, 음주, 돈 걸고 내기하기, 물건 훔치기, 공공기물 훼손, 다른 사람의 물건 뺏기,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폭력 휘두르기, 성인사이트, 성인비디오나 잡지보기, 성매매, 인터넷성에서 욕하기, 학교수업 빼먹기, 환각제나 마약 사용 등 다양한 일탈행동의 예를 제시하였다.

통해 어떻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특히 인권과 관련된 행동으로서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폭력 휘두르기가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가 순위권에 기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5개국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비행 및 일탈행동 중에서 특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터넷과 실생활에서의 언어폭력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이들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비행과 일탈행동에 대한 청소년의식

앞서 언급한 다양한 비행·일탈행동들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부표 IV-3-9>). 그중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일탈행동에 대해 ‘각자의 자유에 속한다’는 청소년의 응답들을 5개국 비교한 결과, [그림 IV-3-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IV-3-6] 비행 및 일탈행동에 대한 인식

그림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5개국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욕하기’와 ‘말로 타인 괴롭히기’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웨덴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각각 72.7%와 49.7%가 인터넷으로 욕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37.5%), 중국(21.1%), 일본(19.1%)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각국의 청소년들은 말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미국청소년은 31.1%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한국(20.5%), 일본(19%), 중국(12.4), 스웨덴(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았는데, 미국청소년이 29.4%라고 응답했고, 일본 (17.2%), 한국(12.8%), 중국(10.3%), 스웨덴(6.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11> 비행 및 일탈행동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물건 훔치기	88.3	11.7	98.0	2.0	90.5	9.5	80.9	19.1	98.4	1.6
공공기물 훼손	85.4	14.6	95.1	4.9	88.9	11.1	79.6	20.4	97.6	2.4
다른 사람 물건 뺏기	89.6	10.4	98.7	1.3	88.8	11.2	83.6	16.4	99.6	0.4
말로 타인 괴롭히기	79.5	20.5	87.6	12.4	81.0	19.0	67.9	32.1	98.8	1.2
폭력 휘두르기	87.2	12.8	89.7	10.3	82.8	17.2	70.6	29.4	93.1	6.9
인터넷에서 욕하기	50.3	49.7	78.9	21.1	80.9	19.1	62.5	37.5	27.3	72.7

주 : ‘안됨’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자유’는 각자의 자유에 속한다는 응답 기준

전체적으로 한국청소년은 ‘인터넷에서 욕하기’와 ‘말로 타인 괴롭히기’에서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물 훼손, 폭력 휘두르기,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물건 뺏기 순으로 응답했다.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욕하기’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은 반면, 다른 일탈행동들에 대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의 응답을 보여 흥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미국의 청소년은 인터넷에서 욕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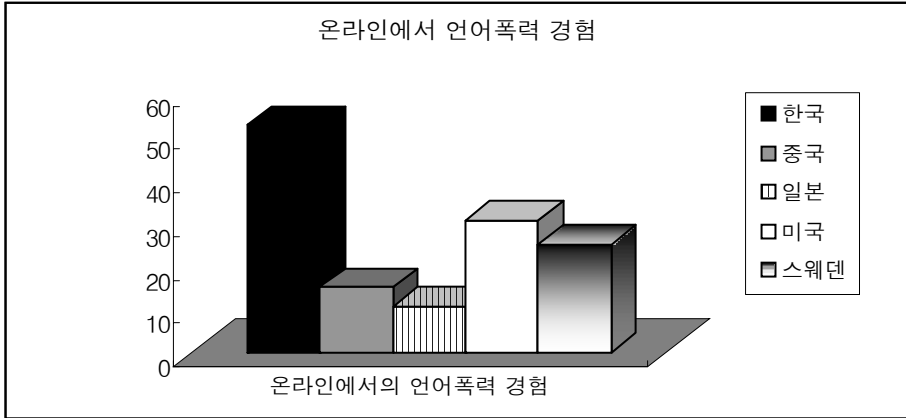
제외한 말로 타인 괴롭히기, 폭력 휘두르기, 공공기물 훼손, 물건 훔치기 및 뺏기에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욕하기, 말로 타인 괴롭히기, 폭력 휘두르기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과 미국, 스웨덴 청소년의 해당 항목의 응답 비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청소년의 ‘인터넷에서 욕하기’와 ‘말로 타인 괴롭히기’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성별, 교급별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에서 욕하기에 대한 성별차이만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46.9%)보다 남자청소년(52.4%)이 더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IV-3-10>).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보다 인터넷에서의 언어폭력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청소년의 ‘인터넷에서 욕하기’와 ‘말로 타인 괴롭히기’에 대해 얼마나 자유롭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만큼 타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청소년들이 크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온라인상에서의 언어폭력 경험

위의 분석 결과는 한국청소년을 포함한 5개국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욕이나 짓궂은 말 포함)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5개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궂은 말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IV-3-7]은 다른 국가 청소년에 비해 한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온라인상에서 욕이나 짓궂은 말과 같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 :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는 응답 기준

[그림 IV-3-7]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 경험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를 함께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은 52.2%가 경험하였고, 미국(30.5%), 스웨덴(25%), 중국(15.1%), 일본(10.6)순으로 나타나, 한국청소년들은 스웨덴청소년보다 2배, 그리고 일본청소년보다 거의 4배 이상으로 인터넷에서 욕이나 짓궂은 말 등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2>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 경험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자주 있다	11.9	1.1	1.9	4.5	7.7	5.1	1606.465***
가끔 있다	40.3	14.0	8.7	26.0	17.3	22.2	
별로 없다	26.5	26.7	15.8	23.4	22.6	23.4	
전혀 없다	21.3	58.2	73.7	46.1	52.4	49.3	

성별로도 5개국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부표 IV-3-12>),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이 경험한 비율이 각각 60.4%, 19.8%로 여자청소년보다(43.8%, 11.7%)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 미국, 스웨덴에서는 여

자청소년의 피해경험이(12.7%, 32.5%, 28.7%) 남자청소년(8.7%, 28.6%, 19.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써 ‘말로 대꾸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준다’는 항목에 대해서 미국 54.5%, 한국 52.1%, 스웨덴 26.6%, 중국 26.2%, 일본 17.2% 순으로 나타나,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의 절반이상은 말로 되갚거나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무시 한다’에 대해서는 일본은 63.5%, 스웨덴 59%, 중국 51.3%, 한국 42.6%, 미국 32.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청소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친구와 상의한다’ 또는 ‘부모와 상의한다’는 비율이 각각 1.6%, 1%로 매우 적었다. 반면, 중국 청소년은 각각 9.2%, 4.6%, 일본은 6.4%, 3.9%, 스웨덴은 5.8%, 2.9%로서 한국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들도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주변의 도움을 받는 등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표 IV-3-13〉 온라인에서의 욕이나 짓궂은 말을 들었을 때 대처방법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말로 대꾸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	52.1	26.2	17.2	54.5	26.6
무시 한다	42.6	51.3	63.5	32.3	59.0
친구와 상의한다	1.6	9.2	6.4	2.8	5.8
부모와 상의한다	1.0	4.6	3.9	2.8	2.9
메일주소를 바꾸거나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음	0.8	4.9	4.9	1.7	2.2
기 타	1.8	3.7	3.9	5.8	3.6

4) 요약

청소년의 보호권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차별, 그리고 범죄와 일탈행동의 피해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들의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46.2%)가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1회 이상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도 76.8%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의 체벌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경험이 매우 미미한 수치였는데(6.5%, 1.4%),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스웨덴과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한국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체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더 체벌을 받고 있었고, 또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은 23.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반해, 스웨덴 청소년은 46.3%로 응답해 스웨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인 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임금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들이 스웨덴 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나,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폭언 등의 인격모독, 구타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스웨덴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이나 성폭력경험은 두 나라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서 한국 남자 청소년의 경험비율이 26.8%로, 여자 청소년(1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도 한국과 스웨덴 모두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그리고 외모나 체격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청소년 중에서도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이 차별이나 불공평한 대우를 더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행 및 일탈행동 피해 및 인권침해 경험들에 대해 한국의 학교에서는 ‘협박과 폭력으로 인한 금품갈취’,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다른 나라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욕설로 괴롭히는 일이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학교에서 심한 말다툼과 폭력이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협박과 폭력에 의한 금품갈취’, ‘공공기물 파괴’에 대해서도 중학생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는 대도시(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공공기물 파괴’등을 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일탈행동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내기하기,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음주, 성인사이트, 성인비디오나 잡지 보기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어 언어를 통해 어떻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개국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비행 및 일탈행동 중에서 특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터넷과 실생활에서의 언어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이들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행·일탈행동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5개국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욕하기’와 ‘말로 타인 괴롭히기’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특히 한국의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욕이나 짓궂은 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다른 국가 청소년에 비해 한국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온라인상에서 욕이나 짓궂은 말과 같

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5개국 모두 ‘말로 대꾸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준다’ 혹은 ‘무시한다’고 응답했는데, 한국의 청소년은 다른 나라청소년에 비해 부모님과 혹은 친구와 상의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청소년들의 보호권 실태는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결과는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노력이 매우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근무조건(특히 근무시간과 임금관련)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성별,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외모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교육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결코 이러한 측면으로 손상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권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탈행동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가정과 사회가 인지하고 이러한 학교안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 할 수 있는 학교와 외부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언어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재인식시켜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청소년 발달권 실태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발달권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5개국의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발달권이란 ‘성장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발달단계와 능력에 따라 국가, 부모, 사회의 책임자들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양육,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및 여가 등의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이민희, 2008: 54-56).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청소년 발달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향후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근로자로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태도, 행동 그리고 기술의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인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최창욱 외, 2006: 118).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를 비롯해 사회, 국가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발달권의 세부 지표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인지적 발달), 여가를 즐길 권리(정서적 발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권리를 선정하였다. 인지적 발달은 다시 인지발달의 기회, 인지능력으로 세분화했고 정서적 발달 역시 정서발달 환경, 정서적 안정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발달은 사회성 발달기회와 사회성 발달정도로 세분화했으며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 직업능력으로 유형화했으며 신체적 발달은 신체발달의 기회와 신체적 능력으로 유목화할 수 있다(<표 II -3> 참조).

그러나 발달권의 5개 하위항목들을 중심으로 5개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한 지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거나 수많은 하위항목들의 조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인지발달의 인지능력, 사회성 발달의 사회성 발달 정도, 직업적 발달의 직업능력 그리고 신체적 발달은 국제 비교분석 지

표에서는 배제했으며 직업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은 한국청소년과 스웨덴청소년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4개의 관심영역, 5개의 세부관심영역, 13개의 조사문항 그리고 43개의 세부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구성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발달권의 세부지표 간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국청소년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정서적 발달권

정서적 발달권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발달권에서 강조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과의 관계이다(최창욱, 2006).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발달의 가장 강력한 변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부모의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양육은 향후 언어발달이나 인지 발달, 행동 적응과도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발달을 정서발달환경과 정서적 안정으로 구분한 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의 정서적 발달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1) 정서발달환경

가장 먼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표 IV-4-1>에 제시되어 있듯이 해당국가 청소년 모두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스웨덴(92.1%), 미국(84.5%), 한국(78.1%), 중국(77.3%), 일본(69.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스웨덴, 미국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국가의 청소년들, 특히 일본청소년의 경우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국가별로 청소년의 성별, 교급별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신들의 고민을

상담할 유의미한 타자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1> 상담할 사람 유무-성별·교급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성별	남자	70.0	65.6	57.2	78.2	95.6
	여자	86.5	85.9	83.0	90.9	89.6
	카이제곱값	90.091***	148.367***	158.442***	71.467***	5.918*
교급	중학교	75.6	77.7	63.2	83.9	89.6
	고등학교	80.6	77.0	72.6	85.0	93.6
	카이제곱값	8.106**	8.160*	24.095***	6.125*	2.566
전체		78.1	77.3	69.2	84.5	92.1

주1 : 고민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자료는 무응답 처리함.

주2 : 상담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만 제시하였음.

고민할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누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국가 청소년 모두 ‘동성친구’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고민을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과 스웨덴의 청소년 경우 ‘교사’에게 상담하는 비율이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의 경우 ‘이성친구’와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이 동양국가의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흥미로운 양상 중의 하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권 청소년들보다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에 응한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성별에 따라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의 성별에 차이가 나타나 여자청소년은 동성친구에게, 남자청소년은 이성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반면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이성친구보다는 동성친구에게 상담을 한다는 점이다.

<표 IV-4-2> 각 대상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비율-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아버지	40.0	20.1	26.1	16.1	28.0	11.5	50.1	33.3	55.7	51.2
카이제곱값	84.114***		27.173***		56.837***		44.805***		.910	
어머니	52.8	53.7	34.2	40.7	43.1	51.5	66.6	62.3	68.9	79.6
카이제곱값	.129		7.754*		9.208**		3.098		6.872**	
동성친구	65.3	84.9	67.0	85.4	68.9	78.9	52.2	78.2	69.9	78.8
카이제곱값	91.274***		85.784***		61.771***		116.677***		4.671*	
이성친구	26.7	23.2	35.8	24.9	28.5	27.6	50.9	53.3	51.5	54.1
카이제곱값	2.932		24.865***		.132		.878		.285	
선생님	21.4	15.7	7.8	6.2	12.0	10.1	15.0	12.5	23.0	23.6
카이제곱값	9.550**		1.695		1.148		2.063		.022	
전문상담가	5.6	3.2	2.7	1.9	1.4	.8	14.3	13.4	8.7	17.0
카이제곱값	5.877*		1.078		.935		.235		6.644*	
형제자매	25.1	30.1	21.5	23.3	12.8	20.9	37.2	40.2	31.1	43.2
카이제곱값	5.383*		.785		14.550***		1.495		6.956**	
채팅, 메일친구	10.1	7.6	21.9	16.9	5.6	5.7	19.3	22.9	17.9	10.4
카이제곱값	3.272		7.032*		.009		2.942		5.237*	

주 : 복수응답의 결과를 처리해 산출한 것임.

다음으로 조사대상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3가지의 고민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표 IV-4-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비교 대상국가 중 한국청소년이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으며 일본청소년이 고민거리를 가장 적게 갖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응답자의 60% 정도가 3개 이상의 고민거리를 갖고 있지만 일본청소년의 경우 3개 이상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하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고민거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고민 개수-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2개	48.1	30.8	52.0	51.6	70.1	56.0	61.0	47.4	62.5	44.3
3-5개	43.3	54.3	42.4	43.7	25.3	37.6	29.1	41.3	29.3	34.3
6개 이상	8.6	14.9	5.6	4.6	4.6	6.4	9.9	11.3	8.2	21.3
카이제곱값	73.674***		1.382		40.636***		36.149***		22.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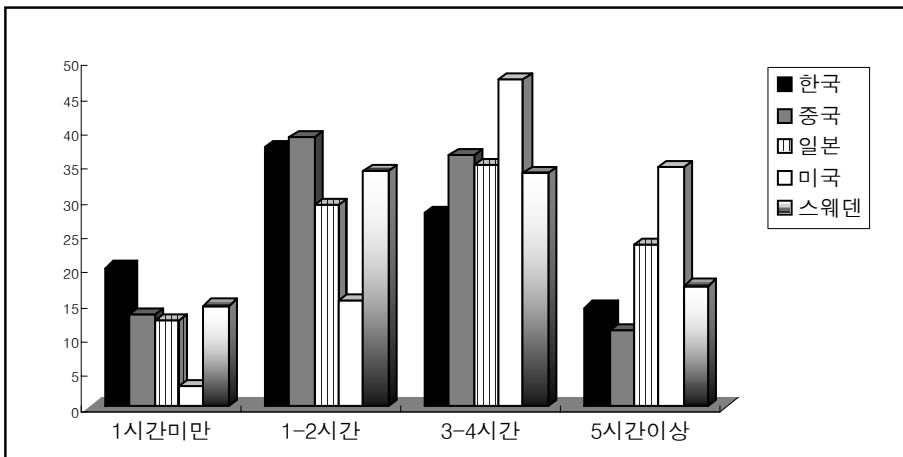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고민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표 IV-4-4>에 제시되어 있듯이 조사대상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얼짱’ 등의 담론이 유포됨에 따라 잘생긴, 잘난 외모가 그 개인의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도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겠다. 이외에 한국과 일본청소년은 ‘용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중국,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활용’, ‘부족한 친구와 사교시간’, ‘부족한 운동시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고민 유형

(단위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1순위	학업스트레스 (78.4)	학업스트레스 (62.7)	학업스트레스 (61.0)	학업스트레스 (49.2)	학업스트레스 (73.4)
2순위	외모스트레스 (38.7)	여가시간을 따분하게 보냄 (51.6)	외모스트레스 (32.1)	여가시간을 따분하게 보냄 (39.6)	친구와 사교시간부족 (38.2)
3순위	용돈스트레스 (34.2)	운동시간부족 (32.4)	용돈스트레스 (24.8)	친구와 사교시간부족 (35.0)	외모스트레스 (32.1)

그렇다면 청소년이 하루 평균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에게 질문한 결과, [그림 IV-4-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적었다. 한국청소년의 대부분이 하루 평균 ‘1시간 미만’과 ‘1-2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갖는 반면 미국, 스웨덴청소년 대부분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의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 하루 평균 여가시간

특히 한국청소년의 집단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1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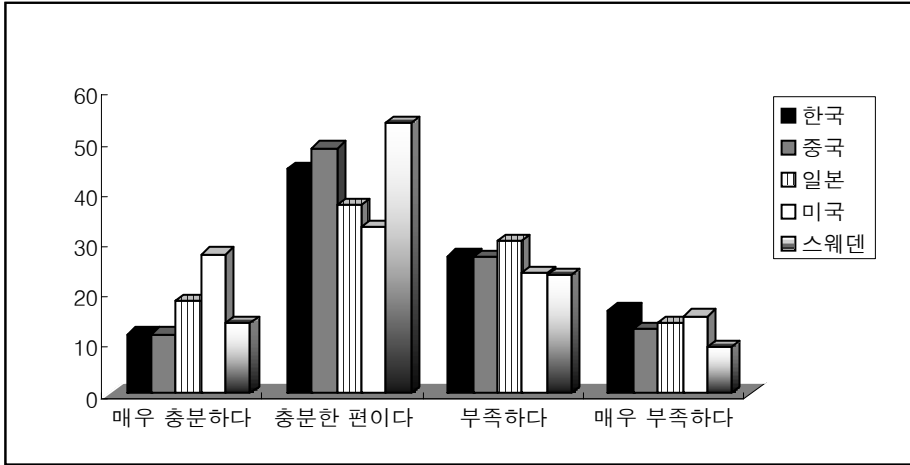
했을 때 여자청소년(25.5%)이 남자청소년(15.9%)보다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25.3%)이 중학생(14.8%)보다 여가시간이 적었고 지역별로는 군지역 청소년 중 26.1%가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표 IV-4-5> 한국청소년의 여가시간-성별·교급별·지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없다	1시간 미만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카이제곱값
성별	남자	2.6	13.3	37.1	30.2	16.7	35.445***
	여자	4.9	19.6	38.1	25.6	11.8	
교급	중학교	1.7	13.1	37.4	33.3	14.5	61.987***
	고등학교	5.7	19.6	37.8	22.7	14.1	
지역	군지역	4.9	21.2	38.9	22.9	12.1	19.814*
	대도시	3.4	16.7	40.8	25.7	13.4	
	중소도시	3.6	15.1	35.6	30.4	15.3	
전체		3.7	16.4	37.6	28.0	14.3	

절대적 시간과 상관없이 여가시간에 대한 상대적 느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상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림 IV-4-2] 에 제시되어 있듯이 스웨덴, 미국, 중국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청소년과 한국청소년은 여가시간의 부족을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청소년들의 절대적 여가시간과 상대적 여가시간 간의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림 IV-4-2] 청소년의 여가시간 충분여부

각 국가별로 성별차이도 뚜렷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4-6> 청소년의 여가시간-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충분	13.7	9.7	13.8	10.2	19.7	16.9	31.3	24.0	19.7	10.1
충분	48.4	40.5	45.5	51.1	38.4	36.5	31.5	34.6	52.4	54.4
부족	24.0	30.5	27.1	26.8	25.8	35.3	22.6	25.4	19.7	25.8
매우부족	13.9	19.3	13.6	12.0	16.1	11.3	14.7	16.0	8.2	9.7
카이제곱값	34.135***		11.970*		24.500***		11.936**		11.912*	

각 국가별로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방법을 조사한 <표IV-4-7>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여가방법이 동일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게임을, 여자청소년은 TV시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중국청소년은 공부를, 일본청소년은 운동을,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친구와 놀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청소년의 여가방법-성별 비교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게임 (31.6)	TV시청 (30.1)	공부 (38.1)	공부 (44.6)	운동 (23.9)	운동 (16.4)	친구와 놀이 (21.2)	친구와 놀이 (21.3)	친구와 놀이 (32.2)	친구와 놀이 (34.7)

주 : 설문조사에서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했으나 2순위, 3순위가 1순위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문에는 1순위 결과만을 제시함. 이에 대한 세부통계표는 <부표 IV-4-6>참조

현재의 여가방법과 달리 청소년들에게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질문을 한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은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는 다른 유형을 제시했다. 한국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은 현실에서는 개별적인 매체접속을 통해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중국청소년의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인터넷’ 활용을 더 선호했다. 일본청소년은 운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선호하는 여가방법은 ‘친구와 놀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8> 청소년의 희망 여가활동-성별 비교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게임 (26.5)	친구와 놀이 (23.3)	인터넷 (19.8)	인터넷 (16.4)	친구와 놀이 (27.0)	친구와 놀이 (40.0)	친구와 놀이 (23.2)	친구와 놀이 (24.9)	친구와 놀이 (46.7)	친구와 놀이 (56.8)

주 : 설문조사에서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했으나 2순위, 3순위가 1순위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문에는 1순위 결과만을 제시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는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인지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에 조사대상 국가들의 청소년들에게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해 본 결과가 <표 IV-4-9>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정도를 보면 미국청소년의 평균점수가 3.14로 가장 높다. 한국, 중국, 일본, 스웨덴의 평균 점수가 2점대인 것을 보면 이들 국가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따르는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하겠다. 한국 청소년(M=2.95)의 경우 일본청소년(M=2.72)과 스웨덴청소년(M=2.59)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높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있어서는 중국청소년(M=3.60)이 가장 많이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M=3.57), 스웨덴(M=3.41)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청소년(M=3.08)은 일본청소년(M=2.83)보다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정도가 높았다.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한다’에 있어서는 한국청소년(M=2.36)은 부모님에게 반항하지 않는 편이지만 중국(M=1.78)과 미국(M=1.99)의 청소년들보다는 높았다.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있어 자녀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해당국가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라는 문항에 일본(M=3.18), 미국(M=3.08), 스웨덴(M=3.08)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지만 한국(M=2.89)과 중국(M=2.67)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간섭 정도’를 질문한 결과 국가와 상관없이 대다수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M=2.79)은 중국청소년(M=2.33)과 일본청소년(M=2.72)보다는 부모의 간섭 정도를 약간 더 느끼고 있었다. 한편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국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런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M=3.26)은 상대적으로 미국(M=3.74)과 중국(M=3.65), 스웨덴(M=3.64)청소년들보다는 그렇다는 인식이 낮았다. 그리고 ‘가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에 대해 평균점수가 2점대이거나 1점대인 것을 보면 조사대상국의 대부분 청소년들이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M=2.29)과 일본(M=2.33)청소년들이 가출에 대해 생각해 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4-9>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F	Scheffe 사후검증
부모님의 의견에 따른다	M	2.95	2.95	2.72	3.14	2.59	134.253***	1>3,5
	SD	.592	.557	.672	.744	.672		1<4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M	3.08	3.60	2.83	3.57	3.41	480.807***	1>3
	SD	.672	.557	.837	.668	.607		1<2,4,5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한다	M	2.36	1.78	2.59	1.99	2.69	397.387***	1>2,4
	SD	.765	.670	.820	.950	.681		1<3,5
부모님과 자주 대화한다	M	2.89	2.67	3.18	3.08	3.08	115.630***	1>2
	SD	.786	.899	.816	.941	.731		1<3,4,5
부모님이 자주 간섭하는 편이다	M	2.79	2.33	2.72	2.81	2.76	120.007***	1>2
	SD	.773	.901	.819	.983	.735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M	3.26	3.65	3.22	3.74	3.64	256.257***	1<2,4,5
	SD	.646	.641	.730	.597	.649		
가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M	2.29	1.71	2.33	1.97	1.71	146.463***	1>2,4,5
	SD	1.000	.960	1.067	1.135	.932		
부모님은 나를 자주 격려해준다	M	2.89	2.75	2.63	3.24	3.27	167,702***	1>2,3
	SD	.761	.888	.850	.857	.709		1<4,5
부모님은 나를 자주 질책한다	M	2.25	2.33	2.71	2.27	2.06	107.236***	1>5
	SD	.838	.832	.857	1.008	.810		1<3
부모님은 내 공부에 관심이 있다	M	3.17	3.47	2.65	3.29	3.44	312.827***	1>3
	SD	.721	.728	.927	.865	.681		1<2,4,5
부모님은 내 친구관계를 잘 아신다	M	2.81	2.87	2.95	3.29	3.28	109.704***	1<3,4,5
	SD	.793	.906	.835	.865	.732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F	Scheffe 사후검증
부모님은 나의 학교생활을 잘 아신다	M	2.59	2.80	2.48	2.92	3.05	95.152***	1>3 1<2,4,5
	SD	.778	.860	.850	1.005	.767		
부모님은 나의 관심사를 알고 계신다	M	2.67	2.81	2.65	3.22	3.37	169.881***	1<2,4,5
	SD	.842	.959	.908	.901	.599		
부모님은 나의 귀가 후 활동을 아신다	M	2.88	3.08	2.84	3.28	3.24	92.574***	1<2,4,5
	SD	.761	.843	.873	.892	.716		
여가시간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M	2.40	2.73	2.73	2.34	2.01	120.449***	1>5 1<2,3
	SD	.830	.974	.964	.941	.850		
진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M	2.97	2.37	2.67	3.54	3.41	564.070***	1>2,3 1<4,5
	SD	.803	.972	.890	.760	.654		

‘부모님은 자주 격려해 주신다’라는 질문에 대해 스웨덴(M=3.27)과 미국(M=3.24) 청소년만 ‘그렇다’고 인식한 반면 한국(M=2.89), 중국(M=2.75), 일본(M=2.63)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쪽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님은 나를 자주 질책한다’를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경향을 보였다. 한편 중국(M=3.47), 스웨덴(M=3.44), 미국(M=3.29), 한국(M=3.17)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일본 청소년(M=2.65)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친구관계를 부모님이 알고 계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미국(M=3.29)과 스웨덴(M=3.28) 청소년들만 ‘그렇다’라는 응답경향을 보였고 한국(M=2.81), 중국(M=2.87), 일본(M=2.95)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스웨덴(M=3.37)과 미국(M=3.22) 청소년만이 ‘그렇다’는 응답 경향을 보였고 한국(M=2.67)과 일본(M=2.65) 청소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짙었다.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문항에서는 스웨덴 청소년

소년(M=3.05)만 긍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조사대상국의 청소년 들 대부분은 부모님이 자신의 여가시간에 관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있어서 미국(M=3.54)과 스웨덴(M=3.41)청소년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한국(M=2.97), 중국(M=2.37), 일본(M=2.67)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

부모-자녀간의 성별간 차이를 보면 <부표 IV-4-1>에 제시된 바와 같다.⁶⁶⁾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부모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스웨덴 여자청소년이 가장 부모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있어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했다. 한국, 미국, 스웨덴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부모님을 약간 더 존경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남자청소년이 약간 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한편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라는 문항에 있어 성별 간의 차이는 스웨덴청소년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간섭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남자청소년들이 자국의 여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간섭정도를 조금 더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문항에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집단에서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약간 더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가출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에 대해 미국의 청소년 집단에서는 성별간 차이가 유의미했는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출생각을 조금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자주 격려해 주신다’는 질문에 있어서는

66) 각 국가별 교급별 차이는 <부표 IV-4-2>제시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의견에 따른다’, ‘부모님이 자주 간섭한다’,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 ‘내 공부에 관심이 있다’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국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질책정도’를 질문하였는데 중국 청소년의 경우 성별간의 차이가 매우 유의미했는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는 부모의 질책을 약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스웨덴의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 일본 청소년의 남자청소년은 그 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님이 자신의 친구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스웨덴의 남자청소년은 그 반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일본의 남자청소년은 부모님이 잘 모르신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관심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 후 활동에 있어서 한국, 일본의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보다 부모님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 중 남자청소년들이 자신의 여가시간에 부모님의 관여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있어서 미국과 스웨덴청소년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한국, 일본, 중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

(2) 정서적 안정

각 국가별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정도를 알아보았다. 정서적 안정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학교생활에 평가로 하위항목을 설정하였다. 이에 자신에 대한 평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현재의 가치부여, 현실수용, 자신에 대한 평가, 주변사람들의 영향, 자신의 의지 등 총 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는 학교에의 적응정도로 측정하였다.

우선 각 국가별로 청소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나는 미래에 대해 불

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문항에 일본청소년(71.5%)과 한국청소년(69.1%)은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인 스웨덴청소년(36%) 보다 약 1.5배~2배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청소년(58%)과 중국청소년(48.7%) 역시 스웨덴청소년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10>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매우 그렇다	21.5	13.8	28.8	24.5	7.3	20.7
그렇다	47.6	34.7	42.7	33.5	28.7	39.2
그렇지 않다	23.2	34.3	21.4	22.0	46.5	27.0
전혀 그렇지 않다	7.8	17.1	7.2	19.9	17.5	13.1
카이제곱값	627.170***					

각 국가별 집단간 차이를 정리한 <표 IV-4-11>를 보면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73.1%)이 남자청소년(65.2%)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며 고등학생(79.9%)이 중학생(58.2%)보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청소년(73.9%)이 남자청소년(69.4%)보다, 고등학생(78.5%)이 중학생(59.7%)보다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더 느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성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남자청소년: 47.8%, 여자청소년: 41.8%) 교급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생(58.8%)이 중학생(33.6%)보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61.5%)이 남자청소년(42%)보다, 고등학생(62.1%)이 중학생(42%)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스웨덴청소년 집단 중에서는 여자청소년(44.4%)이 남자청소년(24%)에 비해 훨씬 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표 IV-4-11> 미래에 대해 불안감-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18.7	46.5	25.8	9.0	21.063***
	여자	24.3	48.8	20.4	6.5	
	중학교	15.0	43.2	31.0	10.8	139.333***
	고등학교	27.9	52.0	15.4	4.7	
중국	남자	14.1	33.3	34.5	18.1	2.179
	여자	13.6	35.8	34.1	16.4	
	중학교	9.7	23.9	36.4	30.0	238.671***
	고등학교	16.7	42.1	32.9	8.3	
일본	남자	28.7	40.7	21.3	9.3	15.748**
	여자	28.9	45.0	21.4	4.7	
	중학교	22.4	37.3	28.7	11.6	82.607***
	고등학교	32.6	45.9	17.1	4.5	
미국	남자	23.6	31.0	23.8	21.6	8.706*
	여자	25.5	36.0	20.2	18.3	
	중학교	19.9	33.0	24.7	22.4	19.543***
	고등학교	28.1	34.0	20.0	18.0	
스웨덴	남자	3.8	20.2	49.5	26.4	31.384***
	여자	9.7	34.7	44.3	11.3	
	중학교	7.0	26.2	48.1	18.7	1.127
	고등학교	7.5	30.2	45.5	16.8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들에게 ‘나는 보통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미국청소년(92.3%)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중국(85.5%), 한국(71.5%), 일본(53.5%), 스웨덴(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이 ‘보통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 결과

표만을 갖고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하지 못한다’는 문항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표 IV-4-18>참조) 일본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고 스웨덴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인식하는 편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청소년은 다른 조사대상국의 청소년들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2>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매우 그렇다	6.6	44.2	9.9	64.1	6.4	28.7
그렇다	64.9	41.3	43.6	28.2	21.4	44.2
그렇지 않다	23.7	9.5	35.9	4.9	44.9	20.0
전혀 그렇지 않다	4.8	5.0	10.7	2.8	27.3	7.0
카이제곱값	3160.248***					

이러한 결과에 있어 각 국가별로 성별, 교급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국가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신의 능력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 경우 남자청소년(73.9%)이 여자청소년(69%)보다 긍정적인 자기의미부여가 강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었듯이 남자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자주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 역시 남자청소년(86.6%)이 여자청소년(84.6%)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교급 간에서도 발견되는데 고등학생(85.7%)이 중학생(85.1%)보다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가장 낮은 의미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자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50%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남자청소년의 92.6%가 자신의 능력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비교해 42.6%p 차이가 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여자청소년(34.4%)이 남자청소년(18.8%)보다, 고등학생(28.7%)이 중학생(26.4%)보다 자신이 보통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4-13>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7.6	66.3	21.0	5.0	11.515**
	여자	5.6	63.4	26.4	4.6	
	중학교	7.6	66.3	21.7	4.4	8.472*
	고등학교	5.6	63.6	25.6	5.2	
중국	남자	48.7	37.9	7.4	5.9	25.084***
	여자	40.9	43.7	11.1	4.2	
	중학교	49.7	35.4	8.0	6.8	40.186***
	고등학교	40.5	45.2	10.6	3.7	
일본	남자	13.4	43.0	32.3	11.3	36.676***
	여자	5.7	44.3	40.0	10.0	
	중학교	12.5	41.8	32.3	13.4	20.155***
	고등학교	8.3	44.6	38.0	9.1	
미국	남자	64.1	28.5	4.4	3.0	.870
	여자	64.0	27.9	5.3	2.7	
	중학교	65.4	27.2	5.1	2.3	2.192
	고등학교	63.0	29.0	4.7	3.2	
스웨덴	남자	3.4	15.4	43.8	37.5	25.111***
	여자	8.6	25.8	45.7	19.9	
	중학교	5.9	20.5	53.0	20.5	9.353*
	고등학교	6.7	22.0	40.1	31.2	

한국의 경우 지역별 차이도 나타났는데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이 보통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군지역 청소년(63.8%)은 대도시지역 청소년(74%)이나 중소도시 청소년(70.4%)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가 낮았다. 이러한 지역간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도시거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

받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4-14> 한국청소년의 자신의 능력 인지정도-지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값
군지역	9.2	54.6	27.9	8.3	26.839***
중소도시	5.8	64.6	26.0	3.7	
대도시	6.7	67.3	21.4	4.6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가령 대학진학이라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실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을 해 본 결과 국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청소년의 81.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매우 뚜렷했으며 미국청소년(74.9%)과 스웨덴청소년(74.8%)은 현재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60.4%)과 일본(62.7%)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에 무게중심을 두는 편이긴 하지만 미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그것보다는 낮은 편이다.

<표 IV-4-15> 미래보다 현재에 가치 부여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매우 그렇다	14.7	5.7	26.5	32.6	19.4	18.5
그렇다	45.7	13.3	36.2	42.3	55.4	34.6
그렇지 않다	34.3	43.9	30.8	18.9	21.0	32.4
전혀 그렇지 않다	5.3	37.2	6.5	6.1	4.2	14.4
카이제곱값	2387.030***					

한국의 청소년들 중에는 여자청소년(62%)이 남자청소년(58.9%)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아시아국

가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현실 가치부여를 더 많이 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학생(62.6%)이 고등학생(58.2%)보다는 현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4-16> 미래보다는 현재에 가치 부여-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15.9	43.0	34.7	6.3	10.384*
	여자	13.5	48.5	33.8	4.3	
	중학교	16.3	46.3	32.1	5.3	7.439
	고등학교	13.1	45.1	36.4	5.4	
중국	남자	6.6	13.5	41.5	38.4	6.030
	여자	5.0	13.1	45.6	36.3	
	중학교	7.4	14.8	43.0	34.8	14.173**
	고등학교	4.5	12.2	44.4	38.9	
일본	남자	29.8	34.4	28.4	7.4	17.756***
	여자	22.6	38.2	33.6	5.5	
	중학교	33.3	35.4	24.5	6.8	34.443***
	고등학교	22.5	36.6	34.5	6.4	
미국	남자	33.6	42.8	17.6	6.1	2.216
	여자	31.7	41.9	20.3	6.1	
	중학교	39.5	38.9	16.7	4.9	29.104***
	고등학교	27.3	45.0	20.7	7.0	
스웨덴	남자	29.3	44.7	25.0	1.0	36.422***
	여자	12.5	62.8	18.2	6.4	
	중학교	21.6	48.6	28.6	1.1	17.830***
	고등학교	18.2	59.2	16.6	6.0	

중국의 경우는 현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 비율(19%)이 가장 낮았는데 성별차이보다는 교급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학생(22.2%)이 미래보다 현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고등학생(16.7%)보다 높았다. 일본에서는 성별간, 교급간 차이가 매우 뚜렷했는데 남자청소년(64.2%)이 여자청소년(60.8%)보다 그리고 중학생(68.7%)이 고등학생(59.1%)보다 현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성별(남자청소년: 76.4%, 여자청소년: 73.6%)보다는 교급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중학생(78.4%)이 고등학생(72.3%)보다 현실을 더 중시했다. 스웨덴의 경우 성별과 교급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75.3%)이 남자청소년(74%)보다, 고등학생(77.4%)이 중학생(70.2%)보다 현실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국의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각 국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미국청소년(58.5%)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57.8%), 한국(47.2%), 스웨덴(44.1%), 중국(40.2%) 청소년 순으로 나타나 한국, 스웨덴, 중국청소년들은 현실의 변화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편이라고 하겠다(성별, 교급별 차이는 <부표 IV-4-7>참조).

<표 IV-4-17> 현재 수용정도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매우 그렇다	8.8	12.7	15.7	24.1	8.6	14.3
그렇다	38.4	27.5	42.1	34.4	35.5	35.3
그렇지 않다	40.8	37.2	33.4	26.8	46.5	35.8
전혀 그렇지 않다	12.0	22.6	8.7	14.7	9.4	14.6
카이제곱값	498.468***					

다음으로 조사대상국의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일본청소년(62.9%)이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청소년(43.6%), 미국청소년(19.8%), 스웨덴청소년(14.9%), 중국청소년(12.1%) 순으로 나타났다(성별, 교급별 차이는 <부표 IV-4-8>참조).

<표 IV-4-18> 자신감 정도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매우 그렇다	8.1	2.9	22.5	6.8	4.3	9.3
그렇다	35.5	9.2	40.4	13.0	10.6	23.6
그렇지 않다	44.0	31.0	27.8	19.8	38.4	31.9
전혀 그렇지 않다	12.3	56.9	9.3	60.4	46.7	35.2
카이제곱값	2729.411***					

다른 국가의 청소년에 비해 일본청소년의 자신감 결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자신의 능력은 보통이다’라는 인식에서 일본청소년의 높은 부정적 응답율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한국청소년의 상당수가 매우 낮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및 경험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청소년의 55.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국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4-19> 주변사람의 영향 정도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매우 그렇다	12.2	11.1	21.8	11.6	2.6	13.3
그렇다	52.8	38.2	43.5	34.1	40.9	42.5
그렇지 않다	29.2	36.7	26.6	28.6	45.9	31.5
전혀 그렇지 않다	5.8	14.0	8.0	25.8	10.6	12.7
카이제곱값	686.449***					

한국청소년(65%)과 일본청소년(65.3%)의 과반수이상이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국청소년(49.3%)과 미국청소년

(45.7%), 스웨덴 청소년(43.5%) 중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수가 안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각 국가별로 청소년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IV-4-20>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개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이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더 쉽게 받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0> 주변사람의 영향 정도-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10.7	49.8	32.2	7.3	25.247***
	여자	13.7	56.0	26.0	4.2	
	중학교	10.9	49.3	32.5	7.3	26.357***
	고등학교	13.5	56.4	25.8	4.3	
중국	남자	10.3	36.8	36.4	16.5	9.489*
	여자	11.7	39.2	36.9	12.2	
	중학교	9.6	32.5	39.9	18.0	39.982***
	고등학교	12.1	42.0	34.5	11.3	
일본	남자	22.0	44.0	25.0	9.0	5.007
	여자	21.6	43.0	28.6	6.9	
	중학교	19.3	40.2	30.4	10.1	18.094***
	고등학교	23.3	45.5	24.4	6.8	
미국	남자	9.2	32.9	29.8	28.1	13.381**
	여자	13.9	35.3	27.3	23.4	
	중학교	12.2	30.0	29.5	28.3	10.222*
	고등학교	11.1	37.2	27.8	23.9	
스웨덴	남자	.0	41.8	47.6	10.6	9.311*
	여자	4.3	40.3	44.7	10.7	
	중학교	0	39.6	48.1	12.3	8.816*
	고등학교	4.0	41.7	44.5	9.7	

한국의 경우 성별간, 교급간 차이가 매우 뚜렷했는데 여자청소년(69.7%)이

남자청소년(60.5%)보다, 고등학생(69.9%)이 중학생(60.2%)보다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조사대상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성별차이보다는 교급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50.9%)이 남자청소년(47.1%)보다, 중학생(42.1%)이 고등학생(54.1%)보다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더 쉽게 받는 편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성별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남자청소년(66%)이 여자청소년(64.6%)보다 더 쉽게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교급 간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는데 고등학생(68.8%)이 중학생(59.5%)보다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편이었다. 미국에서는 성별과 교급 간에 인식의 차이가 뚜렷했는데, 여자청소년(49.2%)이 남자청소년(42.1%)보다, 고등학생(48.3%)이 중학생(42.2%)보다 주변사람의 영향을 더 쉽게 받고 있었다. 스웨덴 역시 여자청소년(44.6%)과 고등학생(41.8%)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의 질문과는 상반된 질문으로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국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스웨덴청소년(95.9%), 미국청소년(77.2%)과 중국청소년(76%)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한국청소년(67.2%)과 일본청소년(61.3%)의 긍정적 응답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V-4-21> 행동결정 시 본인의 의지 중요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매우 그렇다	12.5	25.4	16.0	32.5	33.6	21.9
그렇다	54.7	50.6	45.3	44.7	62.3	50.1
그렇지 않다	29.7	19.0	33.7	14.8	3.8	23.2
전혀 그렇지 않다	3.0	5.0	5.0	8.0	.4	4.8
카이제곱값	649.253***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이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 각 국가별로 청소년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IV-4-22> 행동결정시 본인의 의지 중요-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15.2	53.8	28.2	2.9	15.792**
	여자	9.8	55.7	31.2	3.2	
	중학교	12.8	52.3	31.5	3.4	5.951
	고등학교	12.3	57.2	27.8	2.7	
중국	남자	30.8	48.3	16.4	4.5	29.746***
	여자	21.4	52.4	20.9	5.3	
	중학교	29.4	46.2	17.2	7.3	36.689***
	고등학교	22.7	53.7	20.2	3.4	
일본	남자	18.6	41.6	33.9	6.0	19.991***
	여자	13.0	49.7	33.4	3.9	
	중학교	18.7	41.2	35.3	4.8	10.215*
	고등학교	14.4	47.8	32.7	5.1	
미국	남자	35.2	43.5	13.0	8.3	7.708
	여자	29.9	45.8	16.6	7.7	
	중학교	30.9	41.3	17.5	10.3	19.270***
	고등학교	33.8	47.3	12.8	6.2	
스웨덴	남자	38.0	58.2	2.9	1.0	6.543
	여자	30.5	65.1	4.4	.0	
	중학교	23.2	72.4	3.2	1.1	17.832***
	고등학교	39.6	56.4	4.0	.0	

한국의 경우 성별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남자청소년(69%)이 여자청소년(65.5%)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

(69.5%)이 중학생(65.1%)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이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경우 성별, 교급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79.1%)이 여자청소년(73.8%)보다, 고등학생(76.4%)이 중학생(75.6%)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이었다. 일본에서는 여자청소년(62.7%)이 남자청소년(60.2%)보다, 고등학생(62.2%)이 중학생(59.9%)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이었다. 미국에서는 성별(남자청소년: 78.7%, 여자청소년: 75.7%)보다 교급간 인식의 차이가 더 뚜렷했는데, 고등학생(81.1%)이 중학생(72.2%)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웨덴에서는 교급간 차이만 유의미했는데, 고등학생(96.0%)이 중학생(95.6%)보다 특정 행동을 결정할 때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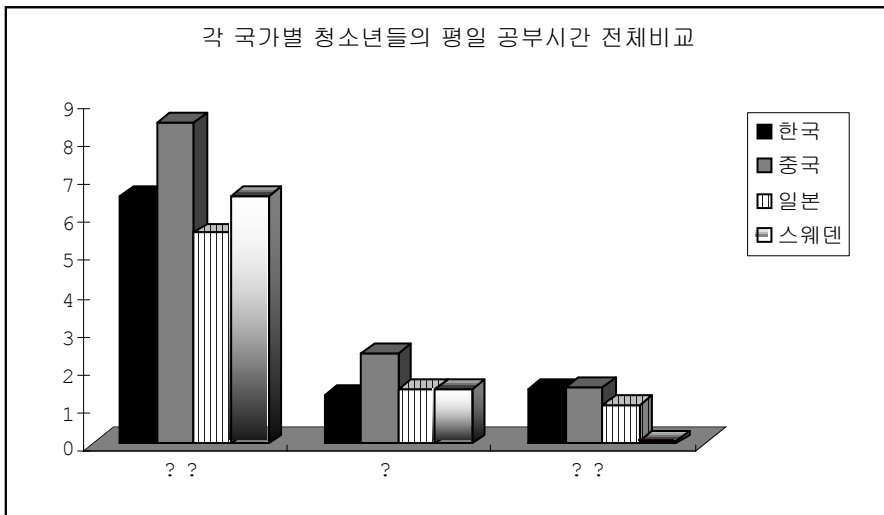
2) 인지적 발달권

인지적 발달이란 지식을 확장시키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의 발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적 발달은 다음에 살펴볼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각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인지능력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다.

(1) 공부시간

우선 한국, 중국, 일본, 스웨덴청소년들에게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IV-4-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청소년이 학교 안 밖 모두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한국청소년으로 일본청소년보다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 일본청소년은 한국청소년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다. 특히 한국청소년은 집보다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문제이다. 한국의 사교육시장 발달이 청소년들의 공부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집에서 하는 공부는 일본청소년보다 많거나 비슷했지만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주 : 미국청소년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만을 염두에 둔 관계로 다른 국가청소년들의 응답경향과 차이가 있어 미국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그림 IV-4-3] 평일 공부시간 비율

이를 국가별 청소년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성별간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은 학교와 학원에서의 공부시간이다.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남자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학교공부시간에서만 성별간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일본 역시 학교공부시간에서 성별간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집단 내 차이를 엿볼 수 없었는데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집이나 학원에서 약간 더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학교에서는 남자청소년이 더 많이 공부하고 있고 집과 학원에서는 여자청소년이 약간 더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3> 평일 공부시간-성별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학교	M	6.10	7.32	8.31	8.54	5.48	6.04	.50	.50	6.75	6.34
	SD	2.59	3.35	2.35	2.22	1.31	1.04	.59	.58	.86	1.24
	t	-9.618***		-3.598*		-2.662**		-.141		4.414**	
집	M	1.23	1.29	2.29	2.46	1.36	1.54	1.08	1.25	1.09	1.69
	SD	1.31	1.21	1.34	1.31	1.09	1.09	1.12	1.13	.82	1.05
	t	-1.446		-4.079		-3.430		-4.881		-7.095***	
학원	M	1.46	1.41	1.32	1.58	1.04	.59	.10	.11	.04	.10
	SD	1.48	1.43	1.58	2.7	1.01	1.37	.32	.33	.31	.63
	t	.993*		-4.512		1.372		-.555		-1.336	

또한 교급별로도 청소년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를 조사하였다. <표 IV-4-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교급별 공부시간의 차이가 뚜렷했는데 학교공부 시간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지만 집과 학원 공부시간에서는 중학생들이 더 높게 나왔다. 중국의 경우 교급별 공부시간의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중학생들이 많았다. 일본의 경우 집과 학원공부 시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중학생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학교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표 IV-4-24> 평일 공부시간-교급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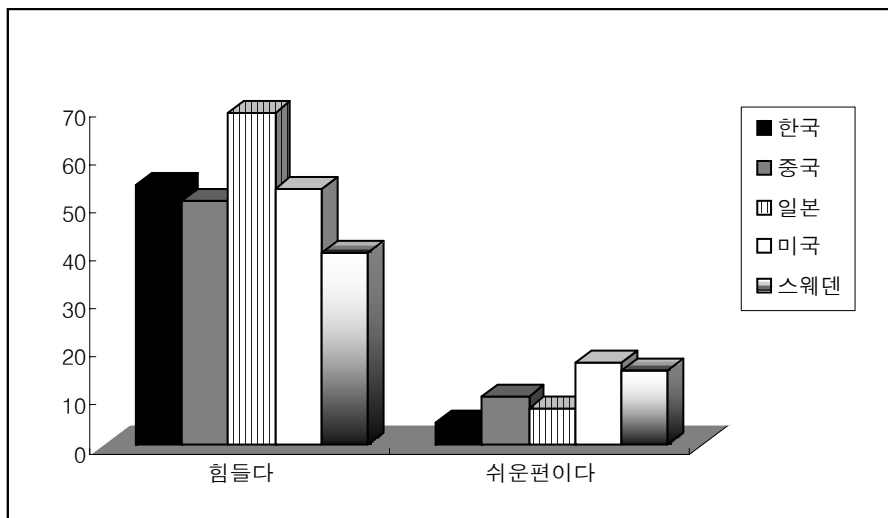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학교	M	5.46	7.54	8.32	8.52	5.49	5.59	.45	.55	6.66	6.42
	SD	1.52	4.07	1.48	2.48	1.12	1.23	.53	1.04	.82	1.25
	t	-15.598***		-3.210***		-1.746		-3.174***		2.540*	
집	M	1.37	1.15	3.06	2.20	1.29	1.52	1.07	1.24	1.38	1.48
	SD	1.30	1.21	1.35	1.26	1.03	1.12	1.04	1.19	.93	1.04
	t	5.807**		11.940		-4.311***		-4.940***		-1.062	
학원	M	2.20	1.02	2.34	1.12	1.30	0.46	.6	.7	.08	.07
	SD	1.47	1.28	2.09	1.47	1.07	1.30	.32	.32	.69	.40
	t	17.415***		15.175***		9.502***		-.637		.218	

한국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군지역,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시간이 더 많지만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면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대도시의 경우 사설학원 등 학교주변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중소도시나 특히 군 지역의 경우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4-25> 한국청소년의 평일공부 시간-지역별 비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학교에서 공부시간	군지역	444.53	221.49	6.69**
	대도시	397.79	195.53	
	중소도시	413.38	203.76	
학원에서의 공부시간	군지역	76.07	96.14	12.03***
	대도시	111.11	105.33	
	중소도시	101.35	107.54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의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림 IV-4-4]에 제시되어 있듯이 일본청소년(69.1%)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월등히 학교공부를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한국청소년(54%)이지만 일본청소년과는 15.1%p 차이가 난다. 스웨덴청소년(40%)은 중국(50.9%), 미국(53.5%), 한국, 일본청소년들에 비해 학교공부가 쉽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 : 그래프의 왼쪽의 '힘들다'는 청소년들이 '매우힘들다'와 '힘들다'라는 응답을 기준으로, 그리고 오른쪽의 '쉬운편이다'는 '매우 쉬운 편이다'와 '쉬운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함

[그림 IV-4-4]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이 청소년 집단 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의 경우 성별간 인식의 차이가 뚜렷했다. 여자청소년(61.1%)이 남자청소년(47.3%)보다 학교공부를 더 힘들어 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자청소년(61.2%)이 남자청소년(47.5%)에 비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을 보면 그들의 경험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중국청소년의 성별간 차이를 보면 남자청소년(52.3%)이 여자청소년

(49.8%)보다 학교공부를 힘들어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일본을 보면 여자청소년(71.6%)이 남자청소년(67.1%)보다 학교공부를 더 힘들어 하였다.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청소년(55.6%)이 남자청소년(51.2%)보다 학교공부를 더 힘들어 했다. 스웨덴 역시 여자청소년(44.7%)이 남자청소년(34.1%)보다 훨씬 더 학교공부를 힘들어 했다.

<표 IV-4-26>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힘들다	12.6	13.5	12.2	10.7	18.0	15.4	8.8	7.3	4.8	5.4
힘든 편이다	34.7	47.6	40.1	39.1	49.1	56.2	42.4	48.3	29.3	38.7
적당하다	46.0	36.4	35.3	42.1	23.8	22.5	29.1	29.6	52.4	39.1
쉬운 편이다	4.6	2.2	8.9	7.1	6.5	4.6	16.0	12.7	10.6	15.2
매우 쉬운 편이다	2.2	0.4	3.5	1.0	2.6	1.4	3.6	2.1	2.9	1.7
카이제곱값	60.250***		28.649**		13.560**		12.195*		10.808*	

교급간 차이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미국의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인식의 차이는 매우 뚜렷했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60.9%)이 중학생들(47.1%)보다 학교공부를 더 힘들어 했지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V-4-27>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매우 힘들다	9.7	16.3	10.4	12.0	11.3	20.0	5.7	10.1	5.3	5.0
힘든 편이다	37.4	44.6	44.7	36.1	43.6	57.5	41.6	48.7	31.6	36.8
적당하다	47.5	35.1	38.3	39.8	31.5	18.3	34.9	24.6	41.2	46.5
쉬운 편이다	4.0	2.8	5.3	9.6	9.5	3.3	14.4	14.3	17.1	11.0
매우 쉬운 편이다	1.4	1.1	1.4	2.5	4.2	0.8	3.5	2.3	4.8	0.6
카이제곱값	50.338		30.130***		122.382***		35.321***		14.484**	

중국청소년의 교급별 차이를 보면 중학생(55.1%)이 고등학생(48.1%)보다 학교공부를 더 힘들어 했다. 일본은 고등학생(77.5%)이 중학생(54.9%)보다 학교공부를 더 힘들어했으며 이는 미국(고등학생: 58.8%, 중학생: 47.3%), 스웨덴(고등학생: 41.8%, 중학생: 36.9%)에서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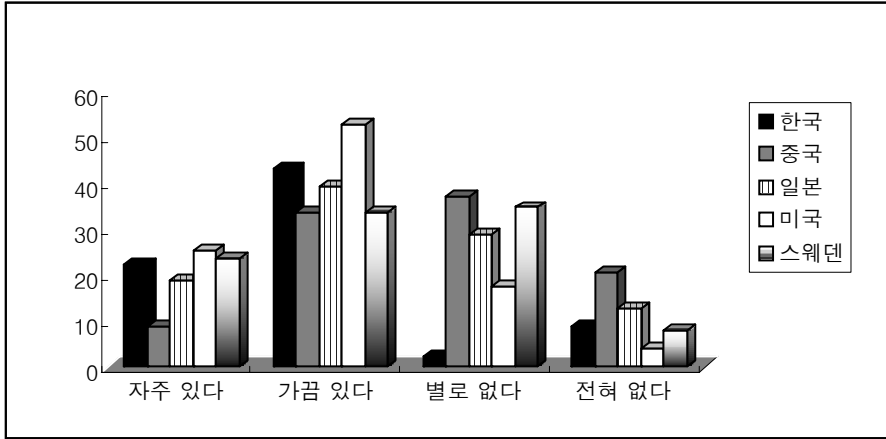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학업성취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중소도시(57.1%)와 군지역(56.6%)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도시(52%)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학교공부를 힘들어했으며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교공부를 힘들어 했다.

<표 IV-4-28> 한국청소년의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지역별 학업성취별 비교

(단위 : %)

구 분	지역			학업성취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상	중	하
매우 힘들다	15.5	13.1	11.8	9.9	10.0	18.3
힘든 편이다	41.1	38.5	45.8	31.0	44.4	48.4
적당하다	40.1	42.9	38.7	50.1	43.1	31.1
쉬운 편이다	1.3	4.3	2.7	6.9	2.0	1.2
매우 쉬운 편이다	2.0	1.2	1.0	2.2	.5	1.0
카이제곱값	19.368*			147.456***		

학교공부가 힘들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학교에 대한 거부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미국청소년(78.4%), 한국청소년(65.5%)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5] 학교거부에 대한 경험

청소년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74.1%)이 남자청소년(56.9%)보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남자청소년(43%)이 여자청소년(42.1%)보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느낀 적이 많았지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4-29> 학교거부에 대한 경험-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자주 있다	20.1	24.3	10.0	8.0	18.7	18.8	29.2	21.6	22.1	24.8
가끔 있다	37.3	49.5	32.9	34.1	34.0	45.9	49.1	56.9	33.7	33.6
별로 없다	30.7	20.2	35.7	38.0	31.7	25.8	16.8	18.1	37.5	32.9
전혀 없다	12.0	6.0	21.3	19.9	15.7	9.5	4.9	3.4	6.7	8.7
카이제곱값	70.883***		4.279		36.715***		18.842***		1.748	

한편 일본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64.7%)이 남자청소년(52.7%)보다 자주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성별간의 차이가 미국청소년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의 78.5%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했

는데 이는 남자청소년(38.3%)과 40.2%p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교급간 차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71%)이 중학생(59.6%)보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적이 더 자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경우 고등학생(52.9%)이 중학생(27.3%)보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많았으며 일본 역시 고등학생(60.6%)이 중학생(54%)보다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도 고등학생(82.1%)이 중학생(74.2%)보다 자주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스웨덴 역시 교급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고등학생(60.8%)이 중학생(51.3%)보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적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30> 학교거부에 대한 경험-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자주 있다	18.4	25.9	6.8	10.3	15.7	20.5	22.6	27.9	20.3	25.7
가끔 있다	41.3	45.2	20.5	42.6	38.3	40.1	51.6	54.2	31.0	35.1
별로 없다	29.7	21.5	44.5	31.8	29.0	28.9	21.0	14.4	30.5	37.3
전혀 없다	10.6	7.4	28.1	15.2	16.9	10.5	4.8	3.6	18.2	1.9
카이제곱값	34.471***		165.935***		20.898***		18.513***		43.235***	

한국의 경우는 지역과 학업성취 간의 차이 역시 나타났다. 군지역 거주 청소년(71.4%)이 중소도시(66.4%)나 대도시(63.2%) 거주 청소년들보다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을 갖고 직접적인 상관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학교공부가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자청소년, 고등학생, 군지역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더 높다고 하겠다. 학업성취별로 보면 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상위권 학생들보다 자주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이 학업성적으로 청소년 개인을 판단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에 대한 거부와 학업성적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표 IV-4-31> 한국청소년의 학교거부에 대한 경험-지역별·학업성취별

(단위 : %)

구 분	지역			학업성취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상	중	하
자주 있다	21.1	21.0	24.9	18.9	18.5	28.5
가끔 있다	50.5	42.6	41.2	41.9	45.7	42.8
별로 없다	21.8	26.3	25.8	29.1	26.7	20.9
전혀 없다	6.6	10.1	8.0	10.1	9.0	7.8
카이제곱값	14.153*			36.913***		

한편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과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인식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해 본 결과 <표 IV-4-32>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 두 문항들 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학교공부에 대해 힘들어하는 경우 학교에 가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IV-4-32>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과 학교거부 경험 상관분석

내 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학교 공부에 대한 인식	학교 공부에 대한 인식	학교 공부에 대한 인식	학교 공부에 대한 인식	학교 공부에 대한 인식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	.293***	.136***	.235***	.104***	.295***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 조사대상 국가별 청소년들에게 ‘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지’를 조사해 보았다(전체 항목별 순위는 <부표 IV-4-12>참조). 조사결과 한국청소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22%)’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어서(18.8%)’,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18.1%)’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경우 ‘학교규율이 매우 엄격해서(20.1%)’,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어서(16.8%)’,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15.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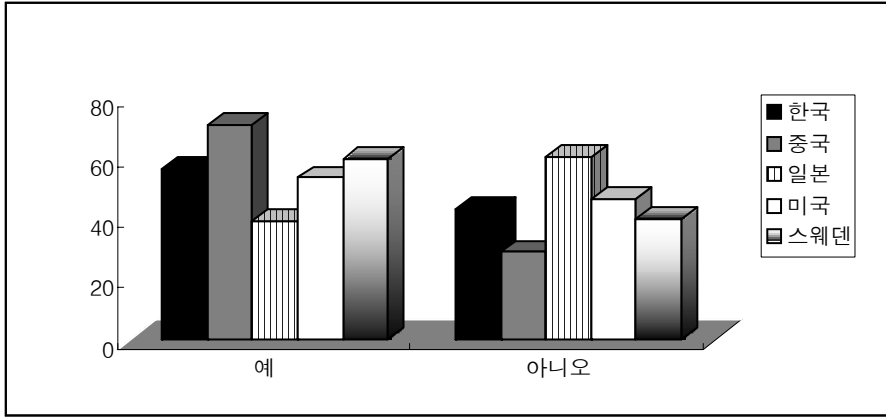
어서(21.9%),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17.1%)’,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어서(15.8%)’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수업이 재미없어서(59.7%)’,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52.3%)’,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49.7%)’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웨덴 역시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62.6%)’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미없는 수업’과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할 경우 학교에 가고 싶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에서 이른 등교시간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의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등교시간의 조정은 한 번 고려해 볼만한 문제이다.

<표 IV-4-33>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1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66.8)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43.0)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58.3)	재미없는 학교수업 (59.7)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62.6)
2	재미없는 학교수업 (56.9)	성적이 좋지 않다 (37.5)	공부하는 것이 싫다 (45.5)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52.3)	재미없는 학교수업 (48.0)
3	공부하는 것이 싫다 (54.8)	재미없는 학교수업 (35.8)	재미없는 학교수업 (42.1)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49.7)	공부하는 것이 싫다 (44.6)
4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33.8)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33.8)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40.9)	공부하는 것이 싫다 (34.6)	교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 (13.3)
5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32.1)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31.0)	성적이 좋지 않다 (23.3)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17.9)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11.9)

한편 해외유학에 대한 생각을 질문해 본 결과 [그림 IV-4-6]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 한국, 스웨덴청소년의 유학선호도는 매우 높았으며 미국, 일본청소년의 유학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청소년의 유학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그림 IV-4-6] 유학 선호

유학선호에 있어 성별간, 교급간 차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여자청소년, 고등학생이 유학을 더 선호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여자청소년, 중학생 집단이, 일본은 여자청소년, 고등학생이 그리고 미국과 스웨덴은 여자청소년, 고등학생이 유학을 더 선호했다.

<표 IV-4-34> 유학 선호 여부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성 별	남	46.3	53.7	62.8	37.2	32.7	67.3	45.4	54.6	48.5	51.5
	여	67.7	32.3	77.1	22.9	47.0	53.0	61.7	38.3	67.9	32.1
	카이제곱값	103.718***		58.352***		40.213***		48.175***		18.681***	
교 급	중	48.0	52.0	84.7	15.3	36.6	63.4	50.0	50.0	53.3	46.7
	고	65.8	34.2	61.6	38.4	40.9	59.1	56.6	43.4	64.0	36.0
	카이제곱값	148.486***		150.280***		3.357		7.964**		5.469*	

한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학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졸인 청소년 집단이 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표 IV-4-35> 한국청소년의 유학선호도-부모의 학력별 비교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카이제곱값
아버지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6.8	53.2	25.898***
	고등학교 졸업	54.4	45.6	
	전문대학(2년제) 졸업	64.3	35.7	
	대학교(4년제) 졸업	64.4	35.6	
	대학원 졸업	57.4	42.6	
어머니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2.1	57.9	28.697***
	고등학교 졸업	57.2	42.8	
	전문대학(2년제) 졸업	66.0	34.0	
	대학교(4년제) 졸업	63.4	36.6	
	대학원 졸업	47.3	52.7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이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보다 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 아버지의 학력이 유학 선호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에게 ‘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 청소년들은 ‘언어공부에 유리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장래 취직에 유리해서’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전체 항목에 대한 순위는 <부표 IV-4-14> 참조).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언어공부에 유리해서(55.8%)’,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아서(50.3%)’,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49.5%)’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언어공부에 유리해서(73.6%)’,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73.2%)’,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아서(59.4%)’ 유학을 선호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71.5%)’, ‘언어공부에 유리해서(53.7%)’, ‘장래 취직에 유리해서(25.4%)’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청소년 역시 일본 청소년과 같은 이유로 유학을 선호하고 있었다. 스웨덴청소년의 경우는 ‘언어공부에 유리해서(81.9%)’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하기 위해서(80.9%)’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유학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15.2%나 되었다.

〈표 IV-4-36〉 유학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1	언어공부에 유리 (55.8)	언어공부에 유리 (73.6)	다른 문화 이해 (71.5)	다른 문화 이해 (74.8)	언어공부에 유리 (81.9)
2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50.3)	다른 문화 이해 (73.2)	언어공부에 유리 (53.7)	언어공부에 유리 (62.4)	다른 문화 이해 (80.9)
3	다른 문화 이해 (49.5)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59.4)	장래 취직에 유리 (25.4)	장래 취직에 유리 (42.0)	장래 취직에 유리 (51.9)
4	장래 취직에 유리 (47.7)	장래 취직에 유리 (43.1)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10.5)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16.8)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19.3)
5	자국 진학경쟁 치열 (34.9)	외국 생활수준 높음 (35.0)	유학 잘모름 (7.4)	유학 잘모름 (10.7)	유학 잘모름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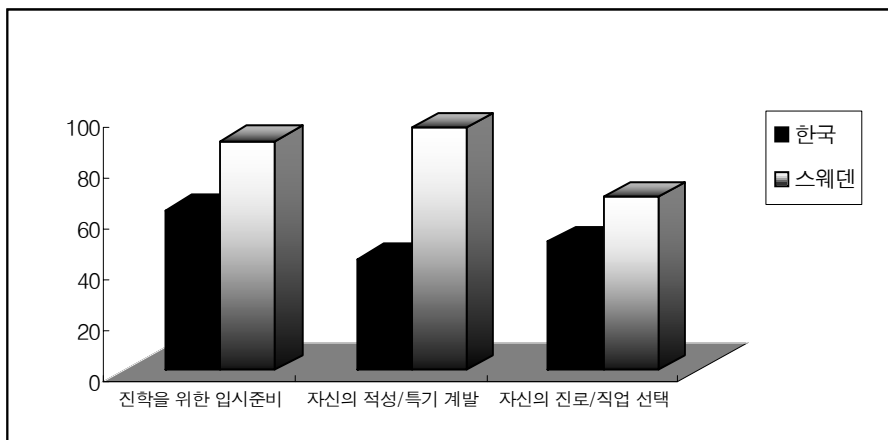
3) 직업적 발달권

직업적 발달은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서 제도권 교육 안에 청소년들의 직업교육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직업적 발달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들을 준비시킨다는 점에서도 국가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형성(진로의식),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자신에게 적합한 적극적인 직업 탐색과 구체적 준비를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조사대상 국가의 청소년들 모두에게 직업적 발달권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조사 여건 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스웨덴의 청소년들에게만 직업적 발달권을 측정해 보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진로기회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태도, 기술이 건강

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 및 훈련, 자기계발 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발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IV-4-7]에 제시되어 있듯이 진학, 적성 및 특기, 진로 및 직업선택 세 측면 모두에서 스웨덴청소년이 한국청소년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그림 IV-4-7] 한국·스웨덴청소년의 학교내용 유용성 분야에 대한 인식

세부항목별로 국가간 차이를 보면 학교공부가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한국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62.9%이며, ‘자신의 적성 및 특기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이보다 낮은 43.6%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의 50.3%이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자신의 적성 및 특기계발보다는 입시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겠다. 스웨덴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강했으나 ‘자신의 적성 및 특기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한국과 비교

했을 때는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하겠다.

<표 IV-4-37>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학교 내용 유용성 분야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한국				스웨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11.3	51.6	27.3	9.9	38.0	52.1	9.1	0.8
자신의 적성/특기 계발	9.3	34.3	35.6	20.7	34.8	60.4	4.8	0.0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	10.3	40.0	32.3	17.4	22.5	45.3	24.5	7.8

이러한 응답경향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것이 <표 IV-4-38>이다. 결과를 보면 자신의 적성 및 특기계발 측면과 진로 및 직업선택에 있어서만 성별간, 교급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V-4-38> 한국청소년의 학교내용 유용성에 대한 인식-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값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성별	남자	12.4	51.1	26.3	10.2	4.041
		여자	10.1	52.1	28.3	9.5	
	교급	중학교	11.4	51.3	28.9	8.3	7.771
		고등학교	11.2	51.8	25.6	11.4	
자신의 적성/특기 계발	성별	남자	10.6	40.2	31.8	17.4	48.466***
		여자	8.0	28.4	39.6	24.1	
	교급	중학교	12.0	41.0	32.4	14.6	92.805***
		고등학교	6.6	27.7	38.8	26.8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	성별	남자	11.4	45.5	28.0	15.1	41.019***
		여자	9.2	34.3	36.8	19.8	
	교급	중학교	12.4	44.1	30.7	12.7	49.609***
		고등학교	8.2	35.9	33.9	22.1	

남자청소년(50.8%)이 여자청소년(36.4%)보다, 중학생(53%)이 고등학생(34.3%)보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적성 및 특기계발에 도움

이 된다고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여자청소년 집단과 고등학생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면서도 자주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집단이라는 점과 연관시켜 본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교공부가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56.9%)이 여자청소년(43.5%)보다, 중학생(56.5%)이 고등학생(44.1%)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지식의 유용성에 대한 스웨덴청소년의 집단 내 차이를 보면 <표 IV-4-39>와 같다.

<표 IV-4-39> 스웨덴청소년의 학교내용 유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값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성별	남자	35.1	55.3	9.6	0.0	4.396
		여자	40.1	49.8	8.8	1.3	
	교급	중학교	37.4	58.3	4.3	0.0	12.186**
		고등학교	38.4	48.4	11.9	1.3	
자신의 적성/특기 계발	성별	남자	40.4	55.8	3.8	0.0	5.104
		여자	30.8	63.7	5.4	0.0	
	교급	중학교	34.8	64.2	1.1	0.0	9.236*
		고등학교	34.8	58.2	7.0	0.0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	성별	남자	30.8	45.7	23.6	0.0	38.510***
		여자	16.6	45.1	25.1	13.2	
	교급	중학교	24.6	49.2	22.5	3.7	8.244*
		고등학교	21.2	43.0	25.6	10.1	

스웨덴의 경우 남자청소년, 중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학교 공부가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계발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4) 사회적 발달권

사회적 발달은 청소년이 부모와 형제, 동료, 교사 그리고 다른 성인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떠나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서 청소년들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범주를 벗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김현철 외, 2005). 청소년기에 사회적 능력의 기본 요소를 개발하지 못하면 향후 반사회적 행동이나 동료의 거절, 학업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능력은 주의와 정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기통제와 함께 순종,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다. 사회적 능력은 높은 지능지수와 긍정적인 자존감 그리고 훌륭한 정신건강을 포함한 긍정적인 발달결과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역량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다양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최창욱 외, 2006). 조사대상 국가 모두의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자료조사의 여건상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기회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스웨덴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장 먼저 한국청소년에게 현재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발달이 개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동아리활동은 타인과 성공적,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조사결과 스웨덴청소년(48.8%)이 한국청소년(41.6%)보다 동아리활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동아리활동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동아리활동이 문화, 체육 등과 관련되어 교내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스웨덴의 청소년동아리활동은 사회참여, 정치활동 등과 관련이 있다. 이들 단체의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자선단체, 청소년기독교회, 정당청소년회 등을 들 수 있다.

<표 IV-4-40> 한국·스웨덴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여부

(단위 : %)

내용	한국	스웨덴
동아리 활동 하지 않음	58.4	51.2
동아리 활동 하고 있음	41.6	48.8

이러한 동아리활동의 성격 차이는 동아리활동 유형에 있어서도 국가간 차이를 유발하였다. 한국과 스웨덴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한국청소년들 중 67.7%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사이버 동아리(13.0%), 학교 밖 동아리(19.3%)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비중은 낮았다. 반면 스웨덴청소년의 활동공간을 보면 사이버 동아리(65.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밖 동아리(22.1%), 학교 내 동아리(12.8%)로 한국청소년의 동아리 유형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스웨덴청소년들이 학교내외 사회단체에 가입해 주로 정치 및 사회참여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41>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유형(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한국	스웨덴
학교 내 동아리	67.7	12.8
사이버 동아리	13.0	65.1
학교 밖 동아리	19.3	22.1

동아리 활동여부에 있어 한국청소년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39.7%), 고등학생(41.9%)집단이 더 많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여자청소년(53.7%)과 고등학생(48.9%)이 남자청소년(38.5%)과 중학생(44.9%)보다 더 많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2> 한국·스웨덴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유무-성별·교급지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스웨덴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성별	남자	39.7	60.3	38.5	61.5
	여자	35.3	64.7	53.7	46.3
카이제곱값		4.601*		11.389**	
교급	중학교	33.1	66.9	44.9	55.1
	고등학교	41.9	58.1	48.9	51.1
카이제곱값		18.917***		.754	

한국의 경우 지역간 차이도 나타났는데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45.9%)이 동아리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지역의 청소년의 동아리활동비율이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한 가지가 사교육시장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4-43> 한국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여부-지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다	안한다	카이제곱값
군지역	45.9	54.1	
중소도시	35.9	64.1	
대도시	36.3	63.7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역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에 좌우되기 보다는 학교교육 환경이나 청소년 정책 등 공공의 개입과 노력을 통해 육성될 수 있는 성취과제임을 알 수 있다.

5) 요약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의 발달권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발달권이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발달의 정도는 청소년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짊어 져야 할 책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5개국 청소년들의 발달권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서양 청소년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보다는 개별 국가간 차이가 더 뚜렷했다.

우선 정서적 발달측면에서 보면 스웨덴, 미국보다는 낮지만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한국청소년의 상당수(78.1%)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사람을 갖고 있었으며 상담 대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머니, 동성친구, 아버지, 형제자매, 이성친구였다. 이 외에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교사’에게 상담하는 비율이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미국과 스웨덴의 청소년의 경우 ‘이성친구’와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이 동양국가의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조사대상국 중 한국청소년이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학업, 외모, 용돈이었다. 하루 평균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한국청소년이 가장 적었는데 특히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 군지역 거주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적었으며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43.5%였다. 다른 국가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놀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과 달리 한국 남자청소년들(31.6%)은 게임으로, 여자청소년들(30.1%)은 TV시청으로 보냈다. 한국 청소년의 부모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나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거나 대화하는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등 동양권국가들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친구관계(M=2.81), 관심분야(M=2.67), 학교생활(M=2.59), 귀가 후 활동(M=2.88), 여가시간(M=2.40)보다는 공부(M=3.17)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진로(M=2.97)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정서적 안정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69.1%)이 일본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고, 특히 여자청소년(73.1%)과 고등학생(79.9%)의 불안도가 심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응답 청소년의 71.5%가 보통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청소년의 43.6%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감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비교대상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한국청소년의 60.4%가 미래보다 현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이는 미국, 스웨덴, 일본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의 47.2%만이 현실을 수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중국청소년 다음으로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었으며 일본청소년들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영향(65%)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웨덴, 미국, 중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행동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지적 발달측면에서 한국청소년은 중국청소년 다음으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집, 학원 등에서의 평일 공부시간이 3시간 정도이며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한국청소년의 54%가 학교공부를 힘들어 했는데 이는 일본청소년(69.1%)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여자청소년(61.1%), 중소도시(57.1%) 및 군지역(56.6%) 거주 청소년, 가장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지닌 청소년들(66.7%)이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경우도 한국청소년의 65.5%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해 미국청소년(78.4%)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과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것 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0.293^{***}$).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로는 5개국 청소년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학교수업이 재미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서인지 유학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중국과 스웨덴보다는 낮지만 응답 청소년의 과반수(56.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여자청소년, 고

등학생의 유학선호비율이 높았다. 또한 부모의 최종학력이 대졸인 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유학을 더 많이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발달권 문항은 한국과 스웨덴청소년들만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한국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적성 및 특기 계발(43.6%)이나 진로 및 직업선택(50.3%)보다는 입시준비(62.9%)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진로 및 직업선택(67.8%)보다는 적성 및 특기 계발(95.2%)이나 입시준비(90.1%)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발달권 역시 한국과 스웨덴청소년들만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국청소년의 41.6%, 스웨덴청소년의 48.8%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여부에 있어 한국청소년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39.7%), 고등학생(41.9%)집단, 군지역거주 청소년(45.9%)이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여자청소년(53.7%)과 고등학생(48.9%)이 남자청소년(38.5%)과 중학생(44.9%)보다 더 많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양 국가 간에 동아리활동의 성격이 달라서 동아리활동 유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상당수가 학교 내 동아리활동(67.7%)을 하고 있었으며 사이버 동아리(13.0%)나 학교 밖 동아리활동(19.3%)을 하고 있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스웨덴청소년의 경우 학교밖 동아리활동(65.1%)이 가장 활발했으며 학교내 동아리활동(12.8%) 비율은 매우 낮았다.

조사결과, 청소년의 발달권 신장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을 친구와 상담한다는 점을 볼 때 또래 상담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차원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할모델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여가활동 유형도 제한적이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 및 특기에 맞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 참여권 실태

1) 자기결정권

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은 크게 종교결정권,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교육 및 진로결정권, 문화여가활동 결정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 중에서 종교결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권리주제와 관련된 7개의 문항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실태를 알아보았다.

(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 5개국 전체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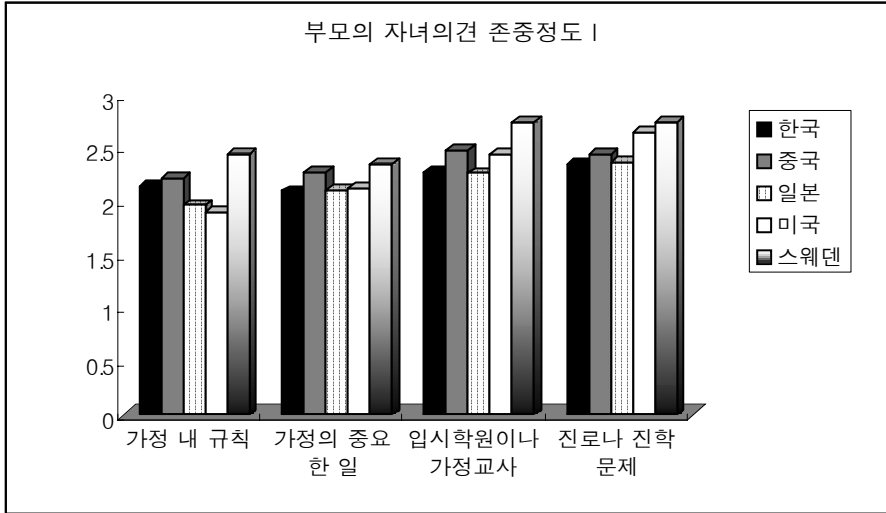
먼저,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으로 ‘가정 내 규칙’과 ‘가정의 중요한 일(고가의 물건 구입이나 이사 등)’을 결정할 때 부모님이 자녀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아보았다. 교육 및 진로 결정권과 관련하여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및 ‘진로나 진학문제’를 결정할 때 의견존중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문화여가활동 결정권과 관련하여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및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결정 시 의견존중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IV-5-1> 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평균 비교

구 분		한국 ¹⁾	중국 ²⁾	일본 ³⁾	미국 ⁴⁾	스웨덴 ⁵⁾	F	Scheffe 사후검증
가정 내 규칙	M	2.14	2.22	1.97	1.90	2.44	98.984***	1>3,4
	SD	.614	.721	.594	.695	.557		1<2,5
가정의 중요한 일	M	2.10	2.28	2.11	2.13	2.36	30.782***	1<2,5
	SD	.670	.675	.650	.753	.589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M	2.28	2.48	2.27	2.45	2.74	61.142***	1<2,4,5
	SD	.634	.614	.610	.643	.539		
진로나 진학문제	M	2.36	2.45	2.38	2.65	2.75	95.293***	1<2,4,5
	SD	.645	.626	.589	.557	.484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M	2.15	2.49	2.31	2.59	2.79	182.642***	1<2,3,4,5
	SD	.686	.644	.609	.580	.448		
내 생활용품 구입	M	2.26	2.50	2.32	2.22	2.61	87.089***	1<2,5
	SD	.636	.600	.586	.621	.598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M	2.20	2.38	2.12	2.22	2.63	89.330***	1>3
	SD	.637	.640	.594	.659	.533		1<2,5

먼저 가정사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가정규칙’ 결정 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는 스웨덴(M=2.4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2.22), 한국(2.14), 일본(1.97), 미국(1.90) 순으로 존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중대사’ 결정 시에는 스웨덴(2.36), 중국(2.28), 한국(2.10) 순으로 존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과 미국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부표 IV-5-1>).

진로 및 교육결정권과 관련하여 먼저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 역시 스웨덴(2.7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2.48), 미국(2.45), 한국(2.2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나 진학문제’ 결정 시에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웨덴(2.75)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2.65), 중국(2.45), 한국(2.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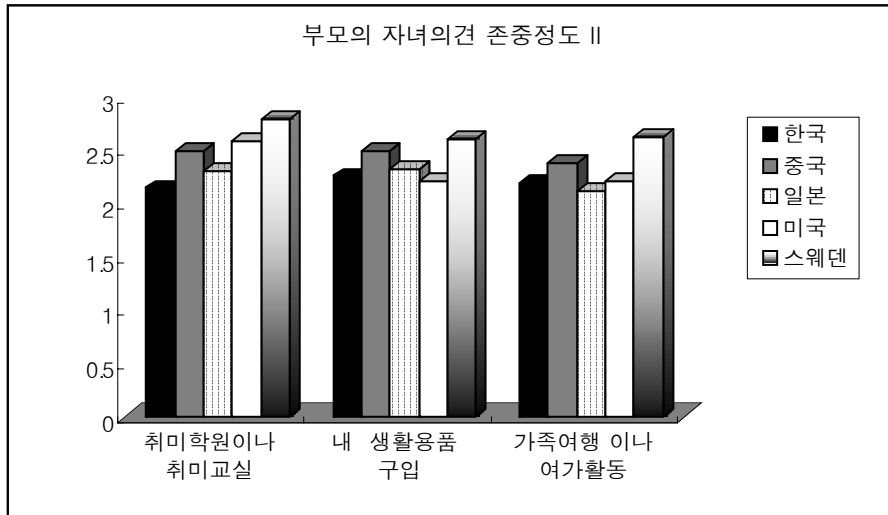
[그림 IV-5-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I

문화·여가활동 결정권과 관련하여 먼저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는 스웨덴(2.79), 미국(2.59), 중국(2.49), 일본(2.31), 한국(2.1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 생활용품 구입’ 시에는 스웨덴(2.61), 중국(2.50), 한국(2.26) 순으로 나타났고 일본과 미국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결정 시에는 스웨덴(2.63)의 자녀의견 존중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2.38), 한국(2.20), 일본(2.1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스웨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한국의 경우 ‘가정규칙’과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자녀의견 존중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동양적인 부모-자녀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자녀의 결정권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내 생활용품 구입’ 등 개인의 문화·여가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존중받는 정도가 낮아 한국사회의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5-2]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II

(2)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5개국 변인별 차이

먼저 의견존중 정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다(<부표 IV-5-2>). 한국의 경우 ‘가정의 중대사(남 2.03, 여 2.17)’,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남 2.21, 여 2.34)’,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남 2.11, 여 2.19)’,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남 2.12, 여 2.27)’에 관한 문항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네 가지 항목 모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남 2.42, 여 2.53)’,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남 2.44, 여 2.52)’, ‘내 생활용품 구입(남 2.46, 여 2.54)’에 관한 문항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가정 내 규칙(남 1.94, 여 2.01)’, ‘가정의 중대사(남 2.06, 여 2.17)’,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남 2.05, 여 2.20)’ 문항에서, 미국의 경우 ‘진로나 진학문제(남 2.62, 여 2.69)’와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남 2.56, 여

2.62)’ 문항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여자청소년의 응답률이 높았다.

스웨덴의 경우 ‘내 생활용품 구입(남 2.52, 여 2.66)’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진로나 진학문제(남 2.79, 여 2.72)’와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남 2.65, 여 2.61)’ 항목에서는 남자청소년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로나 진학문제’에 있어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남녀 모두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평균값이 각각 2.79, 2.72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가 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모든 항목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가정에서 딸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현상을 반영하는 측면 외에도 응답자 의식과 사회적 기대수준의 성별 차로 인한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딸의 경우 차별적 성역할 습득으로 아들에 비해 부모에게 본인의 주장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거나 부모와 충돌하는 주장을 제시하는 정도가 약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도 딸에 대해서는 아들에 비해 자녀의 인생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도가 낮아 딸에 대해서는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의 교급별 차이를 보면, ‘가정규칙’ 결정 시 일본(중 1.94, 고 1.98)은 고등학생이, 스웨덴(중 2.54, 고 2.38)은 중학생의 경우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결정시에는 한국의 경우에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생(2.34)의 경우 중학생(2.21)보다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결정 시 한국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평균 2.15로 같았고, 중국(중 2.51, 고 2.47)과 미국(중 2.64, 고 2.56) 모두 중학생이 존중받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 생활용품 구입’ 시 스웨덴의 경우 고등학생(2.63)의 존중도가 중

학생(2.55)보다 높았다.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결정 시에는 일본(중 2.16, 고 2.10)과 스웨덴(중 2.72, 고 2.57) 모두 중학생이 더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부표 IV-5-3>).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취미·여가’ 관련 결정 시에는 중학생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3) 한국의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7개의 세부 문항 중에서 현재 한국청소년의 삶과 특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3개 문항에 대해 몇 가지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해당 문항은 교육 및 진로결정권과 관련된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진로나 진학문제’ 결정시 의견존중 정도와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결정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 내 규칙’ 결정과정에서의 존중정도에 대한 것이다.

<표 IV-5-2> 한국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지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반드시 존중해 주신다	가끔 존중해 주신다	전혀 존중해 주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이 없어 잘모르겠다	카이제곱값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군지역	33.4	40.3	8.2	18.0	17.280**
	중소도시	33.8	46.3	8.2	11.7	
	대도시	32.1	47.7	10.3	9.9	
진로나 진학문제	군지역	43.5	42.5	8.5	5.6	12.928*
	중소도시	45.6	42.1	8.6	3.7	
	대도시	38.6	48.2	9.9	3.2	
가정 내 규칙	군지역	26.9	54.4	11.5	7.2	10.570
	중소도시	26.2	53.9	11.3	8.7	
	대도시	20.5	58.8	13.0	7.7	

먼저, 지역별 차이로는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및 ‘진로나 진학문제’ 결정 시 의견존중 정도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정 내 규칙’ 결정 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시학원

이나 가정교사' 및 '진로나 진학문제' 결정시 그리고 '가정 내 규칙' 결정 시 모두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한다'는 응답만 보면 중소도시(33.8%)가 가장 높고 대도시(32.1%)가 가장 낮았다. '반드시 존중한다'와 '가끔 존중한다'를 합한 값을 보면 여전히 중소도시(80.1%)가 가장 높고 군지역(73.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5-3〉 진로·진학문제 결정시 한국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
학업성취·부모학력별 비교

(단위 : %)

구 분		반드시 존중해 주신다	가끔 존중해 주신다	전혀 존중해 주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이 없어 잘모르겠다	카이제곱값
학업성취	상	49.9	40.7	6.8	2.6	54.841**
	중	45.0	44.7	8.2	2.0	
	하	35.9	46.2	11.6	6.3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이하	30.0	46.9	14.4	8.8	52.31***
	고졸	41.4	47.4	7.5	3.6	
	전문대졸	46.1	43.8	9.0	1.1	
	대졸	50.4	39.7	7.9	1.9	
	대학원졸	44.9	38.9	11.6	4.5	
어머니 최종학력	중졸이하	32.9	52.1	7.1	7.9	37.738***
	고졸	43.9	44.1	8.4	3.5	
	전문대졸	44.0	45.0	8.0	3.0	
	대졸	47.6	42.7	8.2	1.6	
	대학원졸	39.7	36.6	16.8	6.9	

'진로·진학문제'와 '가정규칙' 결정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에 대한 성적과 부모학력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진로·진학문제' 결정 시에는 세 가지 변인별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가정규칙' 결정 시에는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진로·진학문제' 결정 시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의견

을 존중해 준다는 응답이 많으며, 부모의 학력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대졸 학력까지의 경우만 그러하며 대학원 졸업 학력의 경우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음).

자세한 통계수치를 보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반드시 존중’과 ‘가끔 존중’) 응답한 비율이 학업성취도 상위권 학생의 경우 90.6%, 중위권은 89.7%, 하위권은 82.1%였으며, 아버지 학력(중졸 이하 76.9%, 고졸 88.8%, 전문대졸 89.9%, 대졸 90.1%)과 어머니 학력(중졸 이하 85%, 고졸 88%, 전문대졸 89%, 대졸 90.3%) 모두 높을수록 존중도가 높았다.

‘가정규칙’ 결정 시에는 어머니의 학력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 수준에 따라 일관되게 증감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대졸 학력 어머니의 경우 존중한다는 응답(‘반드시 존중’과 ‘가끔 존중’)이 81.3%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 학력 어머니의 경우 74.2%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부표 IV-5-4>).

2)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지표항목에는 ‘사적취향의 표현’과 관련하여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개의 개별지표가 있고, ‘학생으로서의 의견표현’과 관련하여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현황, 교내 징계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학생으로서 의견표명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3개의 개별지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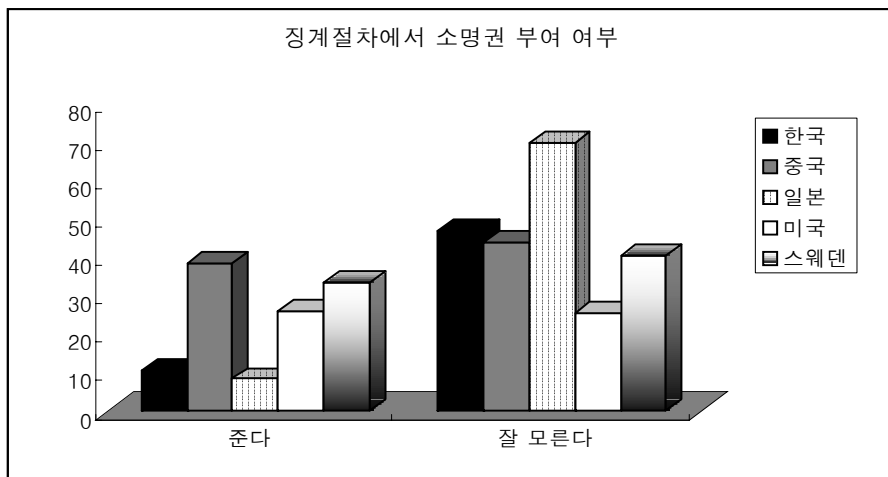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5개 국가 공동설문지를 개발했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에 대한 문항만을 조사할 수 있었다.

〈표 IV-5-4〉 징계절차에서 소명권 부여 여부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준다	10.6	38.7	8.3	26.0	33.7
별로 주지 않는다	21.4	11.7	8.9	31.9	6.3
전혀 주지 않는다	17.9	4.2	5.7	16.0	8.1
잘 모른다	47.0	44.1	70.1	25.6	40.7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한 적이 없다	3.1	1.4	7.0	0.6	11.1

조사결과, 소명권을 부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 38.7%, 스웨덴 33.7%, 미국 26.0%, 한국 10.6%, 일본 8.3% 순으로 중국과 스웨덴의 응답이 높았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 ‘준다’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응답률도 38.7%에 그친 것을 볼 때 모든 국가의 소명권 부여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최저 25.6%(미국)에서 최고 70.1%(일본)까지 사이로 높게 나타나 학생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교칙이나 교육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5-3] 징계절차에서 소명권 부여 여부

한국의 경우, ‘준다’는 응답이 10.6%에 그쳤고, ‘전혀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7.9%), ‘잘 모른다’는 응답도 5개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47.0%) 징계절차에서 학생의 소명권을 보장해 주는 수준이 낮고 이와 관련한 권리의식과 인식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표 IV-5-5>).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경우 남자청소년이(각 12.2%, 10.9%, 28.0%, 37.0%) 여자청소년보다(각 9.0%, 5.3%, 24.0%, 31.4%) ‘소명권을 준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은 반대로 여자청소년이(40.4%) 남자청소년보다(36.3%) ‘소명권을 준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급별로는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모두 중학생의 경우(각 12.2%, 9.6%, 28.3%, 40.1%) 고등학생보다(각 9.1%, 7.7%, 24.2%, 30.0%) ‘소명권을 준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중국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는 학교 내에서 교내 자치회, 학생자치회 등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는 영역과 학교 외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 가입 및 활동상황을 파악하는 영역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학생회 등 자치활동 참여 희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5개국 공통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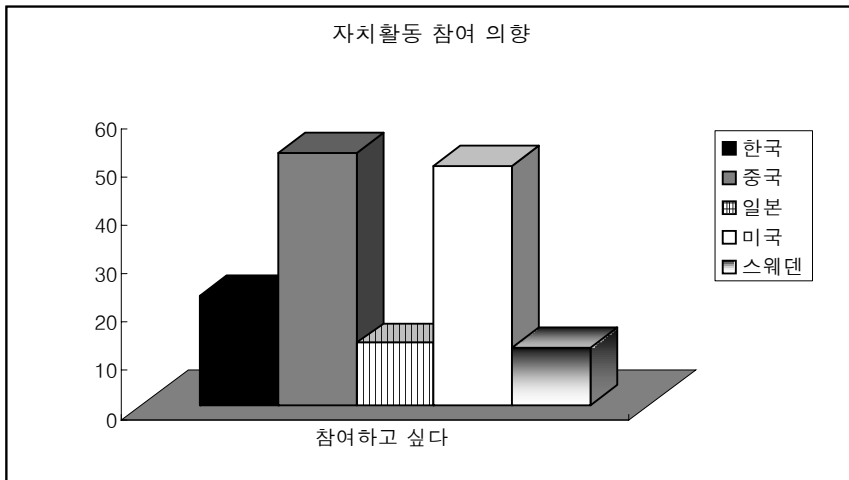
<표 IV-5-5> 자치활동 참여 의향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참여하고 싶다	22.5	52.1	12.7	49.4	11.9	33.2	1497.502***
참여하고 싶지 않다	39.1	10.7	30.1	28.6	47.7	27.8	
잘 모르겠다	38.4	37.2	57.2	22.0	40.4	39.0	

‘학생회 등 학교 내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5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49.4%, 한국 22.5%, 일본 12.7%, 스

웨덴 11.9%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2위인 미국의 절반 이하의 응답률로 세 번째 순위에 머물러 자치활동 참여의향이 낮은 편이었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스웨덴이 47.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39.1%로 두 번째였다. 일본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7.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무관심이나 판단유보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그림 IV-5-4] 자치활동 참여 의향

<표 IV-5-6> 자치활동 참여 의향-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20.7	41.4	37.8	6.252*
	여자	24.2	36.8	39.0	
	중학교	20.8	38.8	40.4	5.179
	고등학교	24.1	39.5	36.4	
중국	남자	50.6	12.5	36.9	6.731*
	여자	53.2	9.3	37.5	
	중학교	54.4	7.3	38.3	19.696***
	고등학교	50.5	13.0	36.5	
일본	남자	13.1	34.2	52.7	50.525***
	여자	12.4	25.2	62.5	
	중학교	15.7	30.0	54.4	8.610*
	고등학교	11.1	30.1	58.8	
미국	남자	41.2	34.7	24.1	47.154***
	여자	57.4	22.7	20.0	
	중학교	48.4	28.7	22.8	.642
	고등학교	50.1	28.6	21.4	
스웨덴	남자	10.6	55.8	33.7	9.284**
	여자	12.8	42.1	45.1	
	중학교	9.6	33.7	56.7	33.030***
	고등학교	13.2	56.0	30.8	

학교 자치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변인별 분석을 해본 결과, 5개국 결과 모두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보였으며 교급별 차이는 중국, 일본, 스웨덴에서만 의미있게 나타났다.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한국, 중국, 미국, 스웨덴의 경우 여자청소년이(각각 24.2%, 53.2%, 57.4%, 12.8%) 남자청소년보다(각각 20.7%, 50.6%, 41.2%, 10.6%)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만 남자청소년이(13.1%) 여자청소년보다(12.4%) 더 높은 참여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 중에 4개국의 경우에 여학생의 참여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의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중국, 일본,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하고 싶다’는 질문에 중국과 일본은 중학생이 각각 54.4%, 15.7%로 고등학생 50.5%, 11.1%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스웨덴은 고등학생(13.2%)이 중학생(9.6%)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V-5-7> 한국청소년 자치활동 참여의향-학교계열·지역·학업성취별 비교

(단위 : %)

구 분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값
학교계열별	일반계고	16.4	45.4	38.3	21.680***
	전문계고	27.2	37.1	35.7	
지역별	군지역	29.1	34.3	36.6	10.406*
	중소도시	22.0	39.2	38.9	
	대도시	20.4	41.3	38.3	
학업성취별	상	25.4	42.3	32.3	22.683***
	중	23.0	35.8	41.2	
	하	19.0	39.2	41.8	

한국의 경우 학교계열별, 지역별, 학업성취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전문계 고등학생(27.2%)이 일반계 고등학생(16.4%)보다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군지역(29.1%), 중소도시(22.0%), 대도시(20.4%) 순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작은 규모의 도시일수록 학교 자치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학업성취별로는 상위권 25.4%, 중위권 23.0%, 하위권 19.0% 청소년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적이 좋을수록 학교 자치활동 참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참여 및 참정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 영역의 세부 관심영역은 사회참여와 참정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참여’ 영역의 개별지표항목에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아르바이트 제재정도와 실업률 등 경제적 참여 항목, 청소년 정책참여활동 동아리 참여율 등이 있으며, ‘참정권’ 영역의 개별지표항목에는 학생 대표 피선출권 제한 현황, 교칙 제·개정 시 학생참여 허용 현황,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현황,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등이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문항으로 개발된 참여권 관련 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4개 문항에 대해 5개국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경험해본 참여활동 형태에 대한 1개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참정권’ 영역에서는 학교교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 여부와 학교발전예의 학생 의견 반영 여부를 알아보는 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1)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

사회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내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등 3개 문항에 대해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4개의 척도에 따라 응답을 하게 하였다.

①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변화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문항으로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소년들의 인식도를 조사해 보았다.

<표 IV-5-8>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변화 가능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매우 그렇다	11.6	18.4	7.5	17.5	14.3	13.9	818.612***
그렇다	56.5	42.7	25.9	51.9	57.0	45.2	
그렇지 않다	26.5	29.9	47.8	21.7	21.2	30.8	
전혀 그렇지 않다	5.4	9.0	18.8	8.9	7.5	10.1	

먼저,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포함)’는 응답률이 스웨덴의 경우 7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69.3%), 한국(68.1%), 중국(61.1%), 일본(33.4%) 순의 응답률을 보여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참여의 의의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참여 인식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의 경우 한국이 5.4%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66.6%(‘그렇지 않다’ 47.85, ‘전혀 그렇지 않다’ 18.8%)의 청소년이 사회참여 의의에 대해 회의적인 응답을 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낮은 의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의 경우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중국, 일본, 스웨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급별로는 일본과 미국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부표 IV-5-6>).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중국(남 62.8%, 여 60.0%)과 일본(남 38.2%, 여 27.8%)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이 더 많았고, 스웨덴(남 62.5%, 여 77.5%)의 경우는 반대로 여자 청소년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었다. 교급별 차이를 보면, 일본(중

학생 38.1%, 고등학생 30.6)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미국(중학생 64.9%, 고등학생 72.6)의 경우는 반대로 고등학생이 사회참여 의의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가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 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즉,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경우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29번 문항들 중 ‘가정규칙 결정 시 청소년의 의견존중’ 여부에 대한 문항과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IV-5-9> 가정 내 참여경험과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상관분석

내 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가정규칙 결정 시 청소년의 의견존중	가정규칙 결정 시 청소년의 의견존중	가정규칙 결정 시 청소년의 의견존중	가정규칙 결정 시 청소년의 의견존중	가정규칙 결정 시 청소년의 의견존중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142**	.050*	.140***	.030	.118**

그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스웨덴의 경우 이 두 문항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존중받고 참여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관련성이 크게 나타나 청소년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인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②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의지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문항으로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항목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표 IV-5-10>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매우 그렇다	6.8	6.4	11.0	8.6	7.2	8.0	656.840***
그렇다	33.3	19.0	40.7	25.4	33.8	29.4	
그렇지 않다	48.8	45.7	38.9	37.7	49.2	43.7	
전혀 그렇지 않다	11.2	28.9	9.4	28.3	9.8	18.9	

분석 결과,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일본의 경우 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41.0%), 한국(40.1%), 미국(34%), 중국(25.4%) 순으로 나타나 일본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사회참여에 대해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 청소년의 74.6%(‘그렇지 않다’ 45.7%, ‘전혀 그렇지 않다’ 28.9%)가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고 있어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많은 참여권 관련 문항에서 적극적인 응답을 보여주었던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이 문항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례적이며, 한국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60% 정도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셈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수준이라 볼 수 있겠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일본의 경우 성별 및 교급별 차이가 드러났으며, 미국의 경우 성별 차이만 의미있게 나타났고, 그 외 국가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부표 IV-5-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일본 여자 청소년의 경우 53.2%(‘매우’ 7.5%, ‘그렇다’ 45.7%)로 남자 청소년 50.4%(‘매우’ 13.9%, ‘그렇다’ 36.5%)보다 많았으며, 중학생(55.3%)이 고등학생(49.6%)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과 고등학생이 여자 청소년과 중학생에 비해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남자 청소년(35.7%)이 여자 청소년(32.2%)보다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나, 결국 여자 청소년

년의 사회참여 인식이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③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세 번째 문항으로 ‘내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표 IV-5-11> 개인은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 줄 수 없다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매우 그렇다	12.8	17.5	40.7	16.5	10.8	20.7	1310.599***
그렇다	41.7	23.2	39.1	26.9	37.9	33.0	
그렇지 않다	35.5	36.8	13.5	28.2	44.5	30.2	
전혀 그렇지 않다	10.0	22.5	6.6	28.4	6.8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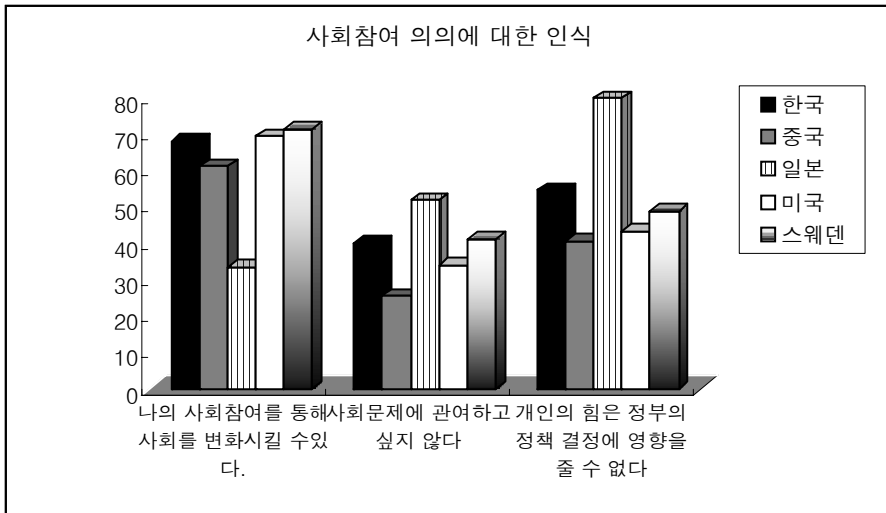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일본 청소년의 경우 79.8%가 ‘그렇다’(‘매우’ 40.7%, ‘그렇다’ 39.1%)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54.5%(‘매우’ 12.8%, ‘그렇다’ 41.7%), 스웨덴 48.7%(‘매우’ 10.8%, ‘그렇다’ 37.9%), 미국 43.4%(‘매우’ 16.5%, ‘그렇다’ 26.9%), 중국 40.7%(‘매우’ 17.5%, ‘그렇다’ 23.2%)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부정적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개인의 참여를 통한 정책개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청소년이 가장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은 가장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의견과 낙관적 의견이 50% 전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 청소년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절대적인 의견이 40.7%에 다다르고 약 80% 청소년이 ‘그렇다’(‘매우’와 ‘그렇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정책변화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에 대해 특히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 의미

있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차이는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부표 IV-5-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의 성별 차이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모두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높아 여자 청소년보다 참여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을 보면, 한국(남 57.3%, 여 51.7%), 중국(남 41.8%, 여 39.8%), 미국(남 43.9%, 여 42.8%)의 경우 여전히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높으나 일본(남 76.7%, 여 83.7%)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더 높게 변화하였다. 교급별 차이를 보면, 중국, 일본, 미국 모두 고등학생(각각 45.1%, 82.3%, 44.1%)이 중학생(각각 34.1%, 75.7%, 42.3%)보다 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값 기준

[그림 IV-5-5]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

(2)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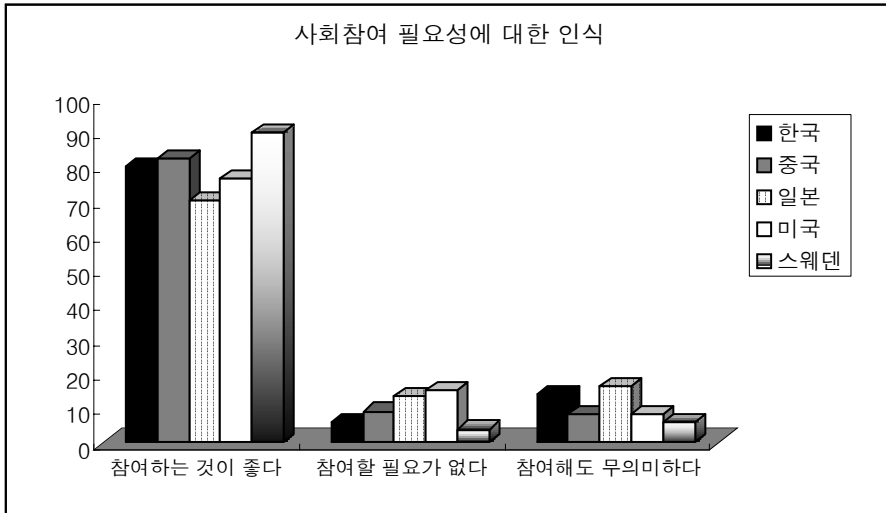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이에 대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참여해도 무의미하다’의 응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표 IV-5-12>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14.7	30.6	15.1	11.8	11.2	18.4	581.617***
참여하는 것이 좋다	65.5	52.0	55.1	64.6	78.9	60.1	
참여할 필요가 없다	6.0	9.2	13.5	15.3	4.0	10.2	
참여해도 무의미하다	13.9	8.2	16.3	8.3	6.0	11.3	

분석 결과, ‘참여해야 한다’(‘반드시’와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이 스웨덴의 경우 9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82.6%), 한국(80.2%), 미국(76.4%), 일본(70.2%) 순으로 나타나 한국은 중간 정도 순위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참여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적극적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참여해도 무의미하다’는 응답이 일본(16.3%)과 한국(13.9%)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에 대한 무력감과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와 ‘참여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값

[그림 IV-5-6]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인별 응답 차이를 보면, 모든 국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교급별 차이는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에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한국(남 76.7%, 여 83.7%), 중국(남 78.9%, 여 85.4%), 일본(남 65.9%, 여 75.2%), 미국(남 73.4%, 여 79.2%), 스웨덴(남 81.6%, 여 96.0%) 등 모든 국가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참여해야 한다’(‘반드시’와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차이 또한 중국(중 79.4%, 고 84.8%), 일본(중 65.0%, 고 73.2%), 미국(중 71.7%, 고 79.7%) 등 모든 국가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참여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13>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참여해도 무의미하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15.2	61.5	8.0	15.4	24.772***
	여자	14.1	69.6	4.0	12.4	
	중학교	13.6	64.6	7.2	14.6	7.736
	고등학교	15.7	66.3	4.8	13.2	
중국	남자	29.7	49.2	12.3	8.8	22.417***
	여자	31.3	54.1	6.9	7.7	
	중학교	29.0	50.4	11.4	9.2	12.569*
	고등학교	31.7	53.1	7.7	7.4	
일본	남자	18.0	47.9	14.8	19.3	46.901***
	여자	11.8	63.4	12.0	12.8	
	중학교	15.3	49.7	17.4	17.6	19.119***
	고등학교	15.0	58.2	11.2	15.6	
미국	남자	12.1	61.3	17.2	9.3	8.869*
	여자	11.4	67.8	13.4	7.3	
	중학교	8.7	63.0	18.9	9.3	21.471***
	고등학교	14.0	65.7	12.7	7.6	
스웨덴	남자	10.7	70.9	8.7	9.7	30.875***
	여자	11.5	84.5	.7	3.4	
	중학교	10.8	80.6	1.1	7.5	7.623
	고등학교	11.4	77.8	5.7	5.1	

<표 IV-5-14> 한국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학업성취별 비교

(단위 : %)

구 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참여해도 무의미하다	카이제곱값
학업성취별	상	17.4	66.4	4.3	11.9	30.544***
	중	14.7	68.1	5.8	11.4	
	하	12.0	62.8	7.8	17.5	

한국 청소년의 경우 지역별 및 학업성취별 차이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별 차이만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상위권 청소년(83.8%)이 중위권 청소년(82.8%)과 하위권 청소년(74.8%)보다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여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1년 여간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경험해본 참여활동 형태를 모두 고르게 하였다(복수응답). 이 문항은 한국과 스웨덴에서만 조사되었다.

<표 IV-5-15> 한국·스웨덴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

(단위 : 명)

한국 순위	한국	내용	스웨덴	스웨덴 순위
1	712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74	2
2	691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 등에 내 의견을 표현하였다	59	3
3	615	친구들과 토론을 하였다	255	1
4	205	거리집회나 촛불문화제 등에 참여하였다	22	4

한국 청소년이 참여해 본 활동형태들 중에서 경험이 많은 순서를 보면, ‘서명운동 참여’가 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현’ 601명, ‘친구들과 토론’ 615명, ‘거리집회나 촛불문화제 참여’ 205명 순으로 나타나 ‘서명운동’과 같은 정치적 행동 경험이 예상보다 높았으며 인터넷 세대로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는 과반수인 255명의 청소년이 ‘친구들과 토론’이라고 답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문화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참여는 세 번째 순위에 머물렀다.⁶⁷⁾

(4) 학교운영에 대한 청소년 참여

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측정권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으로 학교 참여와 관련한 두 개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규칙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여부와 학교발전예의 학생 의견 반영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①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스웨덴이 4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36.0%), 중국(23.8%), 한국(14.9%), 일본(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16>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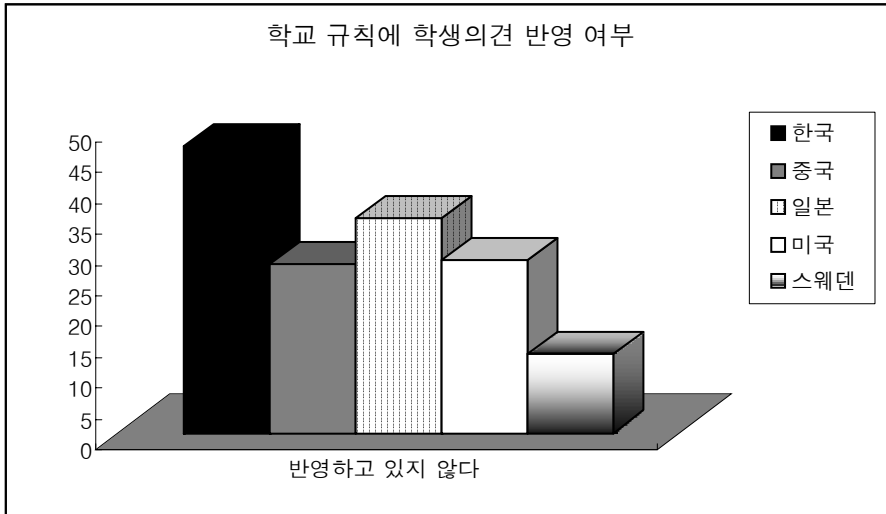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반영하고 있다	14.9	23.8	13.8	36.0	48.1	23.1	697.274***
반영하고 있지 않다	46.5	27.3	34.8	28.0	12.7	33.2	
잘 모르겠다	38.7	48.9	51.3	35.9	39.2	43.7	

한국의 경우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6.5%로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개국 모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최저 35.9%(미국)에서 51.3%(일본) 사이로 높게 나타났는데, 일본의 경우 이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많은 수치이다.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낮은 인식은 학생들의 학교 참여와 관련된 관심도와 권리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칙은 학생 인권

67) 한국 설문지의 ‘거리집회나 촛불문화제 등에 참여하였다’는 선택지의 경우, 촛불문화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시위문화로 스웨덴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으므로 스웨덴 설문지에서는 ‘최근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번역되었다.

수준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림 IV-5-7]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응답결과의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중국, 미국, 스웨덴의 경우 성별 차이가 나타났고 교급별 차이는 한국, 미국, 스웨덴의 경우에만 볼 수 있었다(<부표 IV-5-9>).

성별로는 한국(남자 14.7%, 여 15.1%)과 스웨덴(남 45.7%, 여 49.8%)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중국(남 24.1%, 여 23.6%)과 미국(남 37.0%, 여 35.0%)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급별로는 한국(중 17.6%, 고 12.2%), 미국(중 38.5%, 고 34.1%), 스웨덴(중 48.7%, 고 47.8%)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나 중학교의 경우 교칙에 대한 학생참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17〉 한국의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 학교계열별·지역별·학업성취별 비교

(단위 : %)

구 분		반영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값
학교계열별	일반계고	13.6	42.9	43.5	88.207***
	전문계고	11.7	59.3	29.1	
지역별	군지역	19.0	40.0	41.0	11.213*
	중소도시	15.3	46.5	38.2	
	대도시	12.2	49.3	38.5	
학업성취별	상	15.8	50.8	33.3	14.498**
	중	15.5	44.0	40.5	
	하	13.6	44.7	41.7	

한국의 경우 보다 세부적인 변인별 응답차이를 알아보았다. 앞에서 54.6%의 고등학생이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는데(<부표 IV-5-9>),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반영 11.7%, 반영하지 않음 59.3%)가 일반계 고등학교(반영 13.6%, 반영하지 않음 42.9%)보다 교칙에의 학생의견 반영률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반영도가 낮았고(군지역 19.0%, 중소도시 15.3%, 대도시 12.2%), 성적이 높을수록 ‘반영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상 15.8%, 중 15.5%, 하 13.6%).

② 학교발전에 학생의견 반영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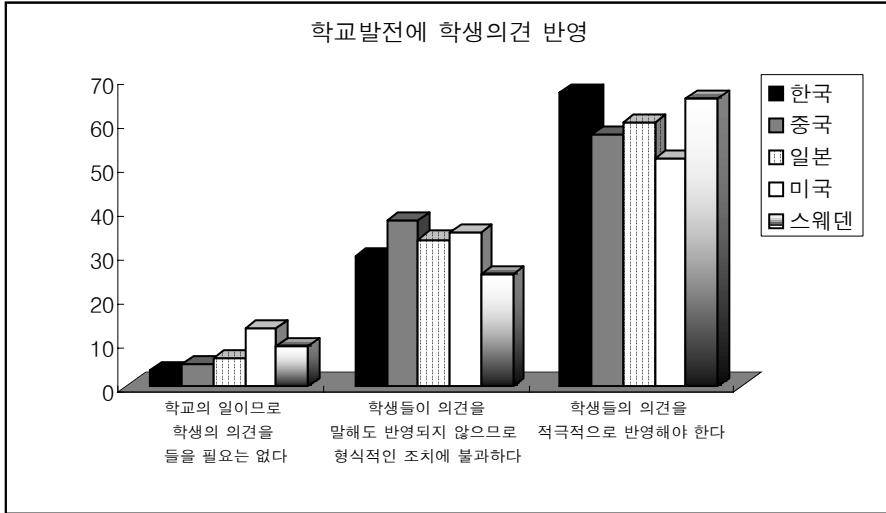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의 경우 6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65.5%), 일본(60.2%), 중국(57.3%), 미국(51.9%)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18〉 학교발전에 학생의견 반영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학교의 일이므로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3.7	4.8	6.4	13.0	8.9	6.7	220.611***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29.5	37.9	33.4	35.2	25.6	33.5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66.8	57.3	60.2	51.9	65.5	59.8	

한국 청소년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다른 문항들에서 대체로 참여 인식이 높았던 중국이 ‘학생의견을 말해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문항에 5개국 중 가장 높은 응답률(37.9%)을 보여 학교 참여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응답을 보이는 반면, 다른 문항들에서 소극적인 응답이 많았던 일본의 경우 학교 참여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적극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학생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중국 57.3%, 일본 60.2%).



[그림 IV-5-8] 학교발전에 학생의견 반영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남 64.8%, 여 68.8%), 중국(남 53.7%, 여 59.9%), 일본(남 56.0%, 여 65.1%)의 경우 모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생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급별로는 한국(중 71.3%, 고 62.4%), 중국(중 61.5%, 고 54.4%), 미국(중 52.9%, 고 51.1%) 등 3개국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한국 중학생의 71.3%가 5개국 교급별 집단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부표 IV-5-10>).

5) 참여권 수준 및 만족도

여기에서는 인권지표체계상의 실태과약을 위한 지표항목 외에 청소년의 주관적 만족도 및 권리 관련 인프라에 대한 인식 등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기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⁶⁸⁾

68) 권리수준 만족도(설문지 37번)와 청소년정책 인지도(설문지 38번)에 대한 문항은 지표체계상 참여권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권리 인프라나 만족도 영역과 같은 별도의 절로 구분하기에는 문항 수가 작아 편의상 참여권 부분에 포함시켜 기술하였다.

(1) 청소년참여권 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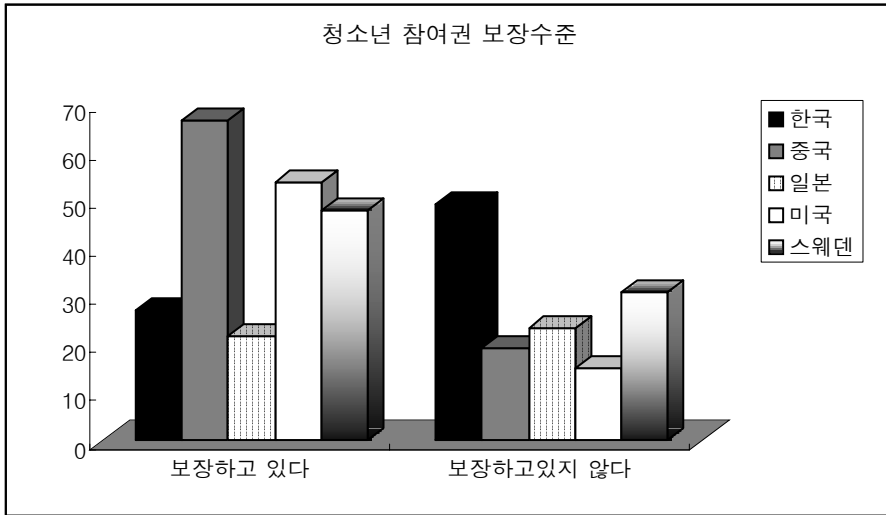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종합적 의견으로, ‘우리사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표 IV-5-19> 청소년참여권 보장 수준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보장하고 있다	5.5	15.6	4.5	11.6	10.9	9.6	1956.837***
보장하는 편이다	21.7	51.2	17.3	42.3	37.0	33.7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32.9	15.4	17.7	11.5	25.2	20.2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16.4	3.9	5.8	3.5	5.8	7.6	
잘 모르겠다	23.5	13.9	54.7	31.1	21.1	28.9	

그 결과, ‘보장하고 있다’(‘보장하고 있다’와 ‘보장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중국의 경우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47.9%), 한국(27.2%), 일본(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판단유보를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별로 보장하지 않음’ 32.9%와 ‘전혀 보장하지 않음’ 16.4%)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이며 참여권 보장수준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 : ‘보장하고 있다’는 ‘보장하고 있다’와 ‘보장하는 편이다’를 합한 값 /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를 합한 값

[그림 IV-5-9]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즉, 청소년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르면, 중국이 청소년의 참여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보장 수준이 낮은 편이다. 다른 문항들에서 참여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던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인식이 높은 만큼 기대치가 높아 현실에서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엄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5-20〉 청소년참여권 보장 수준-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보장하고 있다	보장하는 편이다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6.4	24.4	28.0	16.9	24.3	28.415***
	여자	4.6	18.9	37.9	16.0	22.6	
	중학교	6.5	25.2	27.5	12.5	28.4	79.918***
	고등학교	4.6	18.3	38.2	20.4	18.6	
중국	남자	16.7	48.9	16.1	5.5	12.7	17.147**
	여자	14.8	52.9	14.9	2.7	14.7	
	중학교	17.9	48.0	16.6	4.9	1.5	16.797**
	고등학교	14.1	53.3	14.6	3.3	14.8	
일본	남자	6.6	20.6	18.5	7.0	47.3	64.591***
	여자	2.0	13.4	16.9	4.4	63.4	
	중학교	5.0	17.2	12.6	6.0	59.1	20.883***
	고등학교	4.1	17.3	20.7	5.6	52.2	
미국	남자	13.6	41.0	11.8	4.8	28.8	17.771**
	여자	9.6	43.5	11.3	2.2	33.5	
	중학교	11.8	40.6	9.7	2.4	35.4	15.704**
	고등학교	11.4	43.5	12.9	4.3	28.0	
스웨덴	남자	14.4	34.6	19.7	7.2	24.0	11.555*
	여자	8.5	38.6	29.2	4.7	19.0	
	중학교	17.1	33.2	24.1	5.3	20.3	11.902*
	고등학교	7.3	39.2	25.9	6.0	21.5	

모든 국가에서 성별 및 교급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보장한다’(‘보장’과 ‘보장하는 편’ 포함)는 응답은 한국(남 30.8%, 여 23.5%), 일본(남 27.2%, 여 15.4%), 미국(남 54.6%, 여 53.1%), 스웨덴(남 49.0%, 여 47.1%)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고, 중국(남 65.6%, 여 67.7%)만 여자 청소년이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중국의 경우에도 ‘보장하고 있다’ 값만 볼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의 응답이 많아 5개국 전반적으로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 여자 청소년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교급별 차이를 보면, ‘보장한다’(‘보장’과 ‘보장하는 편’ 포함)는 응답은 한국(중 31.7%, 고 22.9%), 일본(중 22.2%, 고 21.4%), 스웨덴(중 50.3%, 고 33.2%)은 중학생이, 중국(중 65.9%, 고 67.4%)과 미국(중 52.4%, 고 54.9%)은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런데 ‘보장한다’는 응답값만 보면 모든 국가의 경우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2)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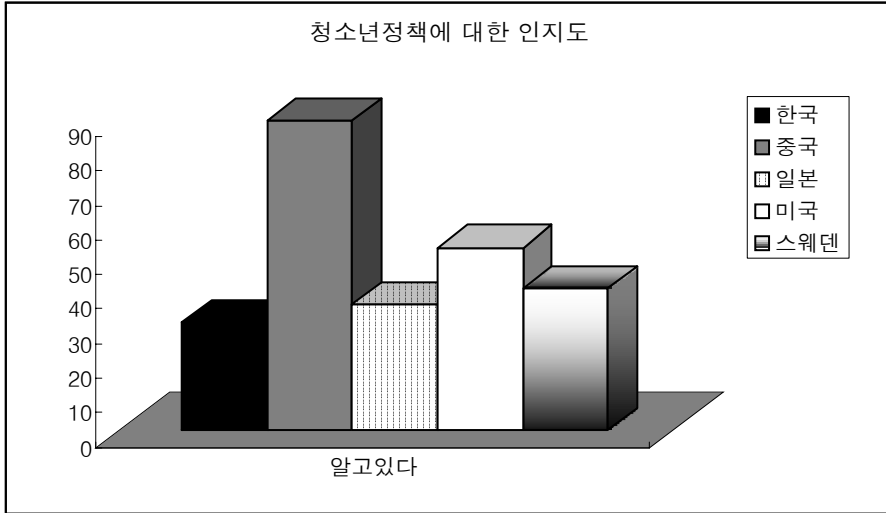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해 시행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알고 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표 IV-5-21〉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알고있다	4.5	9.8	5.0	11.6	6.1	7.5	2043.107**
약간 알고있다	26.9	80.1	31.7	41.5	34.9	45.9	
잘모른다	68.6	10.1	63.3	46.9	59.0	46.6	

그 결과 ‘알고 있다’(‘약간 알고 있다’ 포함)는 응답의 경우 중국이 8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53.1%), 스웨덴(41.0%), 일본(36.7%), 한국(31.4%)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청소년정책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즉, 한국 청소년의 7할 정도가 청소년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셈이다.



주 : '알고 있다'는 '알고 있다'와 '약간 알고 있다'를 합한 값 기준

[그림 IV-5-10]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성별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남 35.9%, 여 26.6%), 일본(남 39.7%, 여 33.1%), 미국(남 56.3%, 여 49.8%)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중국(남 87.5%, 여 91.7%)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알고 있다'('약간 알고 있다' 포함)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값만 보면 중국도 남자 청소년의 응답이 더 많아, 5개국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청소년정책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중국(중 92.7%, 고 8.0%)과 일본(중 38.9%, 고 35.4%)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두 국가 모두 중학생의 청소년정책 인지도가 더 높았다(<부표 IV-5-11>).

(3)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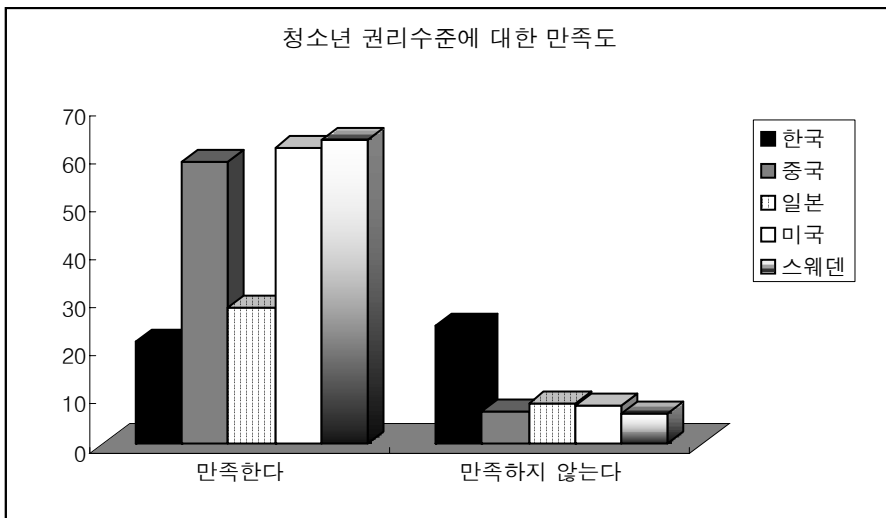
'당신의 권리수준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매우만족'과 '만족' 포함)는 응답이 스웨덴의 경우 63.2%로 가장 높았고 미국 61.7%, 중국 58.7%, 일본 28.3%, 한국 21.3%의 응답률을 보여, 한국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수준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경

우 ‘불만족스럽다’(‘매우’와 ‘불만족’ 포함)는 응답도 24.4%로 5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33.0%의 청소년이 ‘잘 모른다’고 응답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IV-5-22〉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카이제곱값
매우 만족한다	2.9	11.9	6.0	24.5	18.6	11.1	2075.083***
만족한다	18.4	46.8	22.3	37.2	44.6	32.2	
보통이다	39.9	29.1	30.3	17.6	28.7	29.9	
만족하지 않는다	16.3	3.1	5.1	4.1	4.2	7.2	
매우 불만스럽다	8.1	3.4	3.2	3.9	2.0	4.6	
잘 모른다	14.4	5.8	33.0	12.6	2.0	15.0	



주 : ‘만족한다’는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합한 값 / ‘만족하지 않는다’는 ‘만족하지 않는다’와 ‘매우 불만스럽다’를 합한 값

[그림 IV-5-11]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한 만족도

<표 IV-5-23> 청소년 권리수준에 대한 만족도-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불만스럽다	잘 모른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3.9	21.1	36.3	14.9	9.2	14.6	31.389***
	여자	1.8	15.7	43.6	17.7	7.0	14.1	
	중학교	4.0	21.9	40.3	11.9	6.9	15.1	55.720***
	고등학교	1.8	15.1	39.5	20.6	9.3	13.7	
중국	남자	12.5	46.5	28.0	2.9	4.6	5.5	9.450
	여자	11.4	47.0	29.8	3.3	2.5	6.0	
	중학교	15.3	45.8	26.7	3.0	3.8	5.4	20.775**
	고등학교	9.6	47.4	30.6	3.2	3.1	6.1	
일본	남자	7.8	22.7	31.3	5.6	3.9	28.7	29.266***
	여자	3.9	21.9	29.2	4.4	2.4	38.1	
	중학교	5.8	19.3	27.9	7.1	5.2	34.8	29.342***
	고등학교	6.2	24.1	31.7	3.9	2.1	32.0	
미국	남자	27.8	36.0	16.0	4.1	4.4	11.7	12.655*
	여자	21.2	38.5	19.2	4.2	3.5	13.5	
	중학교	28.4	34.5	17.5	3.6	2.5	13.4	17.821**
	고등학교	21.6	39.2	17.7	4.5	5.0	12.0	
스웨덴	남자	22.1	39.9	29.3	2.9	2.4	3.4	9.220
	여자	16.2	47.8	28.3	5.1	1.7	1.0	
	중학교	18.2	44.4	29.4	7.0	.0	1.1	12.779*
	고등학교	18.9	44.7	28.3	2.5	3.1	2.5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된 한국(남 25.0%, 여 17.5%), 일본(남 30.5%, 여 25.8%), 미국(남 63.8%, 여 59.7%) 모두 남자 청소년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한편, 모든 국가가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중 25.9%, 고 16.9%)과 미국(중 62.9%, 고 60.8%)은 중학생이, 중국(중 48.8%, 고 57.0%)과 일본(중 25.1%, 고 30.3%), 스웨덴(중 62.6%, 고 63.6%)은 고등학생이 ‘만족한다’(‘매우’와 ‘만족’ 포함)는 응답이 많았다.

6) 요약

청소년 참여권은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국제사회는 아동과 청소년 참여를 하나의 권리로 천명하고 국가와 세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이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듯이 청소년 참여는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 참여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세부관심영역에 따라 자기결정권(청소년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회참여 및 참정권 분야에 총 17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 현황을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스웨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한국의 경우 ‘가정규칙’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자녀의견 존중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동양적인 부모-자녀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자녀의 결정권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내 생활용품 구입’ 등 개인의 문화여가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존중받는 정도가 낮아 한국사회의 통제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진학문제’ 결정 시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응답이 많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성별 차이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대부분 항목에서 딸의 의견이 더 존중받고 있었고, 교급별로는 일관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취미·여가’ 관련 결정 시에는 중학생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실태를 알아본 결과, 중국과 스웨덴이 ‘부여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한국(10.6%)과 일본의 경우 낮게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중국의 응답률도 38.7%에 그쳐 대부분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모든 국가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학생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교칙이나 교육관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명권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7.9%), ‘잘 모른다’는 응답도 5개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47.0%) 징계 절차에서 학생의 소명권을 보장해 주는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권리의식과 인식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학생회 등 자치활동 참여 희망 여부’를 알아본 결과,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율은 중국이 5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49.4%, 한국 22.5%, 일본 12.7%, 스웨덴 11.9%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2위인 미국의 절반 이하의 응답률로 세 번째 순위에 머물러 자치활동 참여의향이 낮은 편이었다. ‘일본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7.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무관심이나 판단유보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5개국 중에 4개국의 경우에 여학생의 참여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의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전문계 고등학생(27.2%)이 일반계 고등학생(16.4%)보다 더 많았고, 소규모 지역에 사는 청소년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학교 자치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4개 문항에 대해 5개국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경험해본 참여활동 형태에 대한 1개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3개 문항 중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포함)는 응답률이 스웨덴의 경우 7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69.3%), 한국(68.1%), 중국(61.1%), 일본(33.4%) 순

의 응답률을 보여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 청소년의 과반수가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참여의 의의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참여 인식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의 경우 한국이 5.4%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식을 보여주었다.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항목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매우’와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일본의 경우 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41.0%), 한국(40.1%), 미국(34%), 중국(25.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인 60% 정도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셈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청소년의 과반수가 사회참여에 대해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중국 청소년은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일본 청소년의 경우 79.8%가 ‘그렇다’(‘매우’와 ‘그렇다’ 포함)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54.5%, 스웨덴 48.7%, 미국 43.4%, 중국 40.7%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부정적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개인의 참여를 통한 정책개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청소년이 가장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은 가장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참여해야 한다’(‘반드시’와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이 스웨덴의 경우 9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82.6%), 한국(80.2%), 미국(76.4%), 일본(70.2%) 순으로 나타나 한국은 중간 정도 순위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참여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적극적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참여해도 무의미하다’는 응답이 일본(16.3%)과 한국(13.9%)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에 대한 무력감과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정권 영역에서는 학교교직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 여부와 학교발전예의 학생 의견 반영 여부를 알아보는 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스웨덴이 4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36.0%), 중국(23.8%), 한국(14.9%), 일본(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6.5%로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의 경우 6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65.5%), 일본(60.2%), 중국(57.3%), 미국(51.9%)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소년 인권수준과 인권관련 인프라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 참여권 보장수준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보장하고 있다’와 ‘보장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중국의 경우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47.9%), 한국(27.2%), 일본(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판단유보를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별로 보장하지 않음’ 32.9%와 ‘전혀 보장하지 않음’ 16.4%)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이며 참여권 보장수준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

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약간 알고 있다’ 포함)는 응답의 경우 중국이 8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53.1%), 스웨덴(41.0%), 일본(36.7%), 한국(31.4%)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청소년정책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즉, 한국 청소년의 70% 정도가 청소년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청소년정책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권리수준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매우만족’과 ‘만족’ 포함)는 응답이 스웨덴의 경우 63.2%로 가장 높았고 미국 61.7%, 중국 58.7%, 일본 28.3%, 한국 21.3%의 응답률을 보여, 한국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수준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매우’와 ‘불만족’ 포함)는 응답도 24.4%로 5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국가에서 남자 청소년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5개국 비교 결과, 한국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매우 미흡하였으나 참여 의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전형성이 일관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스웨덴과 중국의 참여권 수준과 의식이 높았으며 한국과 일본은 낮게 나타났는데, 한국이 참여 실태와 수준이 낮은 것에 비해 일본은 인식과 의식면에서 참여에 대해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을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2006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3차년도 과제로서,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 지표체계(안)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5개 국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생존권 실태

청소년들의 생존권에 대한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건강에 대한 주의도, 건강진단 여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아침식사, 수면 시간,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여자청소년과 고등학생, 또 생활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이러한 신체적 생존권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상당히 낮았을 뿐 아니라 한국의 부모 역시 자녀의 건강진단과 아침식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전환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 특히 여학생은 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 생존권을 측정할 자살에 대한 생각에서도 상당비율의 청소년들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자살시도 경험이 많게 나타나 한국의 청소년의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보호권 실태

한국청소년들의 보호권 실태는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결과는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노력이 매우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근무조건(특히 근무시간과 임금관련)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성별,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외모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데, 가정과 학교교육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결코 이러한 측면으로 손상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권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탈행동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가정과 사회가 인지하고 이러한 학교안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와 외부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언어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제 인터넷에서의 언어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재인식시켜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청소년 발달권 실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청소년의 발달권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정서적 발달권을 보면 한국청소년이 5개국 청소년 중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5개국 청소년 대부분이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동성친구와 어머니였다. 5개국 청소년 모두 학업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스웨덴, 미국, 중

국 청소년은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미국, 스웨덴 청소년들과 달리 한국, 중국 청소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나 대화의 빈도는 낮았으며 진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과 스웨덴 청소년은 부모와의 빈번한 대화를 통해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친구관계, 관심사, 귀가 후 활동에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진로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일본청소년은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의견을 따르는 편은 아니었지만 5개국 청소년들 중 가장 많이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었고 한국과 중국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서적 안정면에서 한국과 일본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일본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가장 높았다. 한국청소년과 중국청소년은 일본,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들보다 현재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현실을 수용하기보다는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편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청소년들은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반면 스웨덴, 미국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인지적 발달권을 보면 한국, 일본 청소년들이 학교공부를 부담스러워했으며 특히 한국 청소년의 65.5%가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해 미국청소년(78.4%) 다음으로 높았다. 5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학교수업이 재미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해외유학에 대한 생각을 질문해 본 결과 중국을 비롯해 한국, 스웨덴청소년의 유학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일본청소년의 유학선호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적 발달권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한국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적성 및 특기 계발이나 진로 및 직업선택보다는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스웨덴 청소년은 입시준비, 적성계발, 진로선택에 있어 학교공부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발달권에 있어서는 한국청소년의 41.6%만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상당수가 학교 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사이버 동아리나 학교 밖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편, 스웨덴 청소년의 48.8%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동아리활동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교급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동아리활동 비율이 높았다.

(4) 청소년 참여권 실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상 참여권 분야 주요 관심영역인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참여 및 참정권 관련 청소년의 의식과 실태를 알아보았다.

5개국 비교 결과, 한국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매우 미흡하였으나 참여 의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전형성이 일관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스웨덴과 중국의 참여권 수준과 의식이 높았으며 한국과 일본은 낮게 나타났는데, 한국이 참여 실태와 수준이 낮은 것에 비해 일본은 인식과 의식면에서 참여에 대해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을 보였다. 결과 차이에 있어 동서양 또는 대륙별 차이보다는 인권 선진국인 스웨덴과 사회주의 정치체제 특성을 가진 중국 등 개별 국가단위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가 5개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가정에서의 참여수준이 매우 낮았다. 징계과정의 소명절차로 본 표현의 자유 수준과 학교 자치활동 참여의향도 낮은 편이었으며, 학교 규칙이 학생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한국이 가장 많게 나타나 학교에서의 참여수준 또한 낮았다. 참여권 보장수준과 전반적인 권리수준 만족도에 있어서도 5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희망적인 것은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욕구는 높은 편이었다는 점이다.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 가능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 참여 필요

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5개국 중 중간 정도 수준에서 긍정적인 의식을 보여 주었다. 특히, 학교운영에 학생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반면 정책변화를 위한 개인의 참여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내어 가장 밀접한 생활의 장인 학교관련 참여의지는 높은 반면, 생활체감도가 낮은 정책 참여에 있어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2. 정책제언

정부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에 기초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5개국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인권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실증되었다.

변화된 정책환경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인권정책 인프라를 확대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권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⁶⁹⁾

1) 청소년 인권정책 활성화를 위한 일반이행조치

(1) 아동·청소년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담당부서인 아동청소년권리과가 탄생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적인 인권정책 대상으로 고려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과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아동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통합된 주무부서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69) 제언내용에 인용된 일부 법조항들은 2008년 12월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로 이분화되어 수행됨으로 인해 가장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분야가 바로 ‘인권’정책 분야였다는 점에서 부처통합이 이루어진 2008년은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종합적·적극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은 새롭게 수립될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의 큰 틀과 맞물려 아동·청소년 인권영역들을 한 축으로 두고 연령단계별, 그리고 대상집단별 세부 인권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아동·청소년정책이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핵심 이념으로 삼아 인권관점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행하며 제반 삶의 영역에서 차별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하위영역인 아동·청소년인권정책 또한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권리과는 그 동안 분리되어 시행되어 왔던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국제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을 신장시키기 위한 ‘아동·청소년인권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⁷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고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 중장기계획에는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정책 실행주체와 기간, 자원과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실질적인 이행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중장기계획은 향후 제출할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장기적인 준비작업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70)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생애 전기(前期)를 통합한 아동·청소년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의 국가기본계획인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12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의 한 영역으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중장기계획은 기본계획 상의 인권정책사업과 연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등 인권분야 주요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수립한 ‘청소년인권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인권정책로드맵(2006~2010)’이 실천되지 못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Action Plan으로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 연령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다. 아동과 청소년정책 통합으로 모든 인권증진 관련 사회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통합될 필요는 없다.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책대상인 아동과 청소년 연령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고 전문화된 인권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기에는 보호와 복지 관련 권리가 강조되는 반면 청소년기에는 과도한 보호보다는 자율적 존재로서 자기결정권과 참여적 권리가 더 강조되고 노동권이나 정치참여 관련 권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세부 정책과제별로 초등학생 연령, 중등학생 연령, 대학생 연령 등 연령특성별 권리욕구와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인권협약 수준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법령 제·개정

부처통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법령 통합·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적 관점이 법 전반에 견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협약과 상충되는 법조항 제·개정, 국제적 수준으로 관련법 내용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인권관련 자원과 추진체계를 효과적으로 통합·재정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장단점과 효과, 현실적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법률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앙단위에서는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 단위에서는 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구 단위에서는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 권리사업 추진주체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들 기구의 현재 자원과 역량이 인권전문기관으로서 충분한지 검토해야 하며, 2008년 시범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인권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역할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 관련법 개정 기회에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주요 참여기구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참여

위원회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어왔다.⁷¹⁾ 세부 내용은 지역조례로 정하더라도 기본법령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⁷²⁾

(3)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총괄 및 범부처적 협력네트워크 강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권리과)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 관련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법무부 등 다양한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연계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영역에서 인권마인드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에서 운영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와⁷³⁾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⁷⁴⁾ 등 관련부처간 인권이슈 협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며 인권정책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주류화

71) 2008년 10월 27일 입법예고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9조(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 보장)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참여보장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참여기구에 대해서는 동조항 제2항에서는 아동총회와 청소년특별회의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4조(아동·청소년운영위원회)는 아동·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72) 2003년 청소년관련법개정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03년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개정안 검토회의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청소년분야에서 새롭게 제안된 ‘청소년특별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이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관철시키는 대신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항은 전체 삭제된 바 있다.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없어짐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관련 근거조항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해소될 당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삽입했어야 하나 실기한 셈이다.

73) ‘학교인권교육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교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인권교육을 확산시키고, 각 기관간 학생인권 관련 정책의 상호 조정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74)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갖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통합과 내실화를 통해 관련 부처들 간에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헌 법개정 논의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로 일원화될 예정).

인권은 분리될 수 없고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모든 인권영역이 동등하게 중요하므로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정책영역에서 인권증진 노력을 총체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아동청소년권리과는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이슈를 주도하고 의견을 모아 나가며 관련정책과 프로그램을 총괄·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⁷⁵⁾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교환하고 청소년 인권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⁷⁶⁾ 관련 부처간 협력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협력네트 워크 강화를 위해서 각 정부기관, 단체 등간의 다자간 사회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

75) 정부차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는 ‘정책자문위원회’ 1기 위원 18명 중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가 위촉되지 않았다. 다행히 2007년 12월 위촉된 2기 위원에는 3명의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가 위촉되었고(이배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이사장,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학교인권교육전문위원회에도 아동·청소년 권리 전문가 3명이 위촉되어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00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수행을 위해 인권연구팀을 전담부서로 정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76) 양 기관은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당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인권관련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시 협력,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시 협력, 청소년인권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협력,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개발시 협력, 기타 청소년인권교육 등에 있어서의 협력 등이다.

단체 등과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사회에서 관련기관·단체 등과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독립적인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설치와 운영

‘국가아동권리위원회’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독립성을 갖는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 설립·운영을 위한 장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일반논평이 제시한 지위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즉, 독립성, 권한, 전문성, 아동인권의 관점 등이 필요하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여론 확산으로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적이 있으나, 이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라기보다는 아동정책 조정·자문기구에 가까웠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증진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2007년부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권한을 가진 모니터링 활동보다는 자문활동을 하는 기구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맨과는 그 권한과 역할 및 기능에 있어 차이가 크다.⁷⁷⁾⁷⁸⁾

77)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성인 21인, 아동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은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은 일반아동 뿐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장애 아동, 기초수급대상 아동 등 다양한 환경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 협약 이행상황의 모니터링,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하고 있다(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p.10)

78) 2008년 10월 27일 입법예고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0조(아동·청소년권리의 모니터링)는 아동·청소년권리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있다. 위 조항이 시행될 경우 실천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활동을 통해 독립 모니터링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독립 국가인권기구들은 협약 이행에 중요한 수단이 되며, 그러한 기구의 설립은 협약 이행을 위한 실천활동의 하나이자 아동권리의 보편적 실현을 확인하는 것’이라 밝히고 독립적 기구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2001년 우리사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까지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오랜 노력이 필요했듯이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자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인 사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인권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인권 전문가가 인권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독립적인 인권모니터링 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⁷⁹⁾

일단 현실적 과도기적 단계로 독립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인권신장에 필요한 조사 및 권고활동을 활성화하며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발생 시 상담 및 진정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및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인적자원과 시설자원들에 인권위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에서 제안되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아동·청소년 친화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안내책자와 설명자료 등을 개발·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 1994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한 지 15년이 되어

7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국가인권위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인의 아동권리 전문가를 두거나 아동권리에 대한 소위원회를 둘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과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제34차 보고서 심의를 준비하는 지금, 과거 제1, 2차 보고서를 작성하던 시기보다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행 노력도 심화,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 작성 의제를 보다 범부처적인 과제로서 위상과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정책 위상과도 관련되는 것이며, 국제적 권고에 따른 이행노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정책 주류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보고서 작성은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제반 사회적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정책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보고서는 국제기구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당사국은 국내에서 인권의 효과적 보호정도에 대한 자체평가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국내적 차원에서 인권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정부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계획을 기획하고 이행하도록 돕는다. 다수의 국가들은 조약 보고 절차 이행,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구상, 국가개발계획의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의 연계는 인권이 국가전략 계획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보고서 준비에서 권고안에 대한 답변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고 절차는 시민사회내 인권에 대한 국내적 토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인권지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역, 2007: 60).

(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인권지표 생산

이는 뒤에서 별도로 제시한 청소년인권지표 생산을 위한 과제와 관련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는 각 클러스터마다 지난 5년간의 후속조치, 모니터링, 자원 배분, 통계데이터,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CRC/C58/Rev.1).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국가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적·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제시하되 단순 나열이 아니라 그러한 수단들의 목표 및 일정계획표와 그것들이 실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현실과 일반 조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아동분야 연간예산(%)과 연령, 성, 도시/농촌, 소수집단/원주민집단, 민족성, 장애, 종교 등 세부범주별로 통계데이터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수행된 아동권리지표, 청소년인권지표, 청소년백서, 청소년통계, 청소년패널, 청소년개발지표 등 아동청소년 분야의 통계데이터 생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재정미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⁸⁰⁾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2009년도 후속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인권지표 체계화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뒤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아동청소년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고 있어 주기적·지속적 아동청소년 관련 기초통계자료 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무적이다.⁸¹⁾

(7) 인권의식과 감수성 확대를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활성화

청소년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권고사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눈높이의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와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인권상황과 개선실태 등을 담은 인권백서와 사례집 발간·보급, 인권문화행사·프로그램 및 각종 대중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80) 아동과 청소년정책 분야 통합으로 기존의 청소년백서는 아동·청소년백서로 통합되어 12월 발간 예정이다.

81)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내용 중 인권지표 생산과 관련이 깊은 문항은 청소년활동부분의 정책참여활동,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청소년의 4가지 권리 인식도 및 보장수준, 참여의식 등이다.

(김경준 외, 2005). 또한 TV, 방송 언론매체와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인권에 대한 감수성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유치원에서부터의 인권교육이 중요한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처음으로 유치원감(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동권리, 장애인인권, 이주민인권 주제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9년부터 적용되는 초·중등 학교의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인권내용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어 학교 인권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⁸²⁾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이 열악한 데에는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이 큰 데 원인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성인대상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를 비롯하여 경찰,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 등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한편,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와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학부모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8) 하위집단별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다각적 노력

82)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에 의거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교과서의 집필과정에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학교 교과서에 인권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2008.2.9.보도자료).

최근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지속적 인권실천 활동의 결과, 인권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2월 14일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 조항이 포함되었다. 애초 학생인권법안의 이름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제안된 많은 인권조항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통과되어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학생인권 신장노력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⁸³⁾ 아동청소년의 대다수가 학생이며 인권침해의 많은 사례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신장 노력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2007년 3월 30일 한국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장차법)’ 제정 및 2008년 4월 10일 시행,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및 2008년 5월 26일 시행 등의 변화된 상황이 장애아동청소년 인권신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 2008년 3월 21일 공포된(시행 2008년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 신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2008년 3월 14일 공포,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인권관점에서 이의 적용을 모니터해야 하겠다.

아직 법 조항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출발선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신장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법 조항별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세부 전략들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학생청소년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로 대변되고 있듯이 심각하다. 조사결과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체벌금지, 아동청소년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 경쟁적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

83) 법 제18조 2(재심청구)는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해 의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했듯이 학생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홍보와 실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9) 인권조례 제정 등 지역단위 풀뿌리 아동청소년 인권개선활동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삶의 터전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정책 수립·시행이 중요하다. 일본 가와사키市の 아동권리조례 제정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사례와 가와니시市 아동인권옴부즈퍼슨 조례 제정사례 등이 국내에 소개된 바 있고,⁸⁴⁾ 국내에도 군산시, 광주광역시, 부천시 등이 아동청소년권리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⁸⁵⁾ 이러한 인권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보급할 필요가 있다.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만들기(Child and youth friendly city : CFC)사업이나 유네스코의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Cities : GUIC) 프로젝트의 시범적용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과 전인적 발달이 보장되는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대다수 아동청소년이 학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교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지역의 학생인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체벌, 두발 및 복장, 학생 자치활동, 학교생활 제·개정 등 학생인권 업무 활성화에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⁸⁶⁾

84) 일본은 1993년 이후 인권조례·현장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 742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9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을 제정하고 있다(2007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개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관련 외부초청 토론회’ 보도자료)

85) 군산시 청소년인권 조례(안),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아동권리조례(안)의 내용은 ‘김영지 외(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볼 수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당시 조례제정에 성공하지 못하여 2008년 광주아동청소년권리센터를 비롯한 지역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작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86) 일례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08년도 인권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학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할

(10)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신장과 협약이행과정에서의 참여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신장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의 핵심은 이들의 참여확대이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자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와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협약 제12조가 밝히고 있듯이 아동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총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를 내실화하고 청소년의 일상적 삶속에서 실질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 중 ‘참여프로그램’ 분야 지원액을 확대하고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청소년 직접 지원 공모분야를 신설·운영하도록 한다. 참여기구 청소년들의 지역단위 일상적 참여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또한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⁸⁷⁾

많은 청소년이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하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자치기구로서 단위학교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 학생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청소년의 목소리를 모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현장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지원팀’은 장학사, 교총,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변호사, 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 징계 시 소명 및 재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우리학교의 인권온도(human rights temperature) 측정하기’ 사업을 통해 인권인식 제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충청남도 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08학년도 인권교육 추진계획’).

87)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참여기구 활동 청소년들은 법·제도 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사회집단 구성원 간 관계개선 등 지역사회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스스로 결성한 자치단체 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 보장의 측면에서 2008년 국가보고서나 민간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와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200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보고서 검토회의에 아동청소년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⁸⁸⁾

2) 청소년 인권영역별 정책과제⁸⁹⁾

올해 연구의 주목적과 범위는 5개 국가의 인권실태 국제비교로서, 청소년 인권영역별 세부 정책과제는 2009년도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제안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2008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시안적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생존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첫째, 청소년의 신체적 생존권 신장을 위해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사는 아동청소년의 영양증진을 위해 영양 간식비를 제공하고 빈곤·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성장기의 칼슘 보충을 위해서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우유’에 대해서 면세 혹은 일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낮은 가격으로 특별 공급한다. 또한 0교시를 폐지하여 아침 결식을 줄여야 하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청소년에게 체계적으로 교육

88) 영국의 경우 ‘제네바 프로젝트(Get ready for Geneva project)’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이 직접 아동 눈높이에서 아동권리협약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사전회의 토론에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2008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89) 이 부분은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워크숍(10.17)’을 개최하여 논의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는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 한서대학교 방은령 교수, 평택대학교 이민희 교수, 중앙대학교 최윤진 교수 등이다.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에 측정하고 식단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한 예로 과체중과 비만인 청소년의 특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수첩을 배부하여 본인의 신장, 체중의 변화 등을 체크하도록 하고, 이를 학교 보건소 등에서 전산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소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식단에 맞는 간단한 음식 조리법 교육을 실시하여 컵라면 등의 인스턴트식품 대신 밥과 간단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학교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스스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계기를 주도록 한다(이용교, 2008).

둘째, 청소년의 신체적 생존권 신장을 위해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인 기생충 감염, 간염,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건강 특성을 가르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사춘기에 겪는 일반적인 건강문제를 미리 예방하게 하며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증(예, 여드름, 생리불순 등)을 줄이고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게 한다. 또한 올바른 성교육 부재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성병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성병을 치료할 때까지 무료 치료 및 특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성생활을 할 때에는 콘돔 등 성병예방기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교육시킨다. 불건강 습관인 음주 및 흡연이 건강에 미친 나쁜 영향을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음주·흡연 및 성교육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활용하여 교육과 상담활동을 진행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력 단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별·연령별에 적합한 운동도구를 갖춘 체력 단련실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치과관리의 체계화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진을 받을 때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고 충치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치과진료를 선진화시킨다. 그리고 학교 교실의 조도를 높이고, 친환경 조명기구를 써서 근시를 줄여야 하며 이미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6개월에 1회 이상 시력검사를 통해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도록 장려한다. 또한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지정하여 꾸준히 이용하도록 한다. 10대 청소년의 인공 임신 중절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모색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미혼모 보호시설 서비스를 혁신하여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음 편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자살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춘다.

셋째, 청소년의 신체적 생존권 신장을 위해 안전 관련 교육의 강화도 요구된다. 현재 대도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 앞 자동차 안전지대(스쿨존)를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알리고 헬멧 등의 보장구 착용을 강조하여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는 법을 가르친다. 또한 제철 음식을 사용하여 방부제, 환경호르몬 등에 노출된 음식을 최소화시켜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을 없애야 하고 정수기 등을 설치하여 위생적인 물을 마시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무모함으로 자주 발생하는 익사, 추락사, 교통사고사 등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상의 청소년의 생존권 신장을 위한 영양, 건강, 안전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영양, 건강, 안전 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매년 백서로 만들어 보급하고,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영양, 건강, 안전과 특별히 관련이 높은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존권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 내용을 교사교육과정 및 교사 재교육(연수)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영양, 건강, 안전과 관련이 높은 사항을 부모에게 가르쳐서 부모가 청소년의 생존권 향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한

다. 특히 비만에 대해서는 비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줄이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중요하다.

(2) 청소년 보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첫째,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보호권의 범주를 제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 다루어진 청소년보호권의 범주는 국제아동권리협약내용을 기초로 하고, 국내 청소년보호법에 기준하여 그 범주를 정하고 있다(1, 2차 연구과제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짐). 따라서 일부 보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권내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의 생활권을 오프라인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청소년의 생활권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온라인에서의 생활범주를 규정하고 보호관련 영역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즉,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착취와 학대, 위기상황과 응급상황, 유해 환경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온라인에서의 생활 특성상, 정의와 범주에 대한 재구성이 연속적으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온라인 생활권내에서의 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방은령, 2008).

둘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보호권이 규정되면 이에 대한 행정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현행 제도권 내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관련 업무 전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피해 내용에 따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들의 피해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 약관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약관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강제적 동의 조항을 없애야 한다. 다음은 무차별 유해정보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휴대폰, 메신저, 전자메일, 인터넷 사이트 배너 등으로부터 유

입되는 유해정보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부모가 등록하여 미성년자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휴대폰 신규 가입 시 실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광고를 전송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배너광고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는 금지해야 하고, 성인이 로그인 할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여 포털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해서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재검토와 성적의 사결정권을 가진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여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유형에 대한 현재의 규정(사이버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성차별적·성적대적 플래임, 사이버매매춘, 사이버음란물 등) 재검토와 청소년 적용범위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관련된 법률로는 형법,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⁹⁰⁾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친고죄적용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청소년이라는 발달특성상, 온라인에서의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해당사항에 대한 친고죄 적용보다는 반의사불벌죄나 반의사처벌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제도에서의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친고죄보다 강화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의 경우, 대상에 아동과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스토킹행위의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보다 가중적인 처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죄에서 동포르노그래피의 매수자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전한 사이버 문화정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

90) 성폭력특별법 제14조(자기 또는 사람의 性的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제11조 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親告罪’를 규정하고 있다.

여 모든 포털에서 책임있고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의 자체 규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사이트, 기사에 대한 댓글허용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개별적 기사에 대한 무분별한 댓글달기 프로그램 통제,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수렴방식 확대, 토론방을 통한 의견 수렴 방안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예절 교육에 대한 내용 구성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공교육과 오프라인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예절 교육 실시,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언어생활 교육, 발달단계별 교육내용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실천내용을 확인하는 교육 방안 등이 요구된다. TV, 영화관을 통한 공익광고 확대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에서의 피해로 인한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메신저, 개인카페, 이메일, 휴대폰 문자, 쪽지로 전달되는 악성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대처 방안 및 전문적인 심리치료 공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련 활동, 집단상담활동, 체험활동 등과 같은 집단 활동을 통한 치료방안도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관련 행정전달체계에서의 전문성 확보 및 고유 업무체제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이버 관련 청소년보호체계에서의 전문 인력 확보 및 보수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행정전달체계에서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고유업무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속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 전달체계에서의 관계망 확대 및 시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보호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과 함께 민간단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지킴이 제도, 온라인 멘토링, 온라인 사회지원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3) 청소년 발달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청소년은 고민거리가 많고 학업스트레스가

많으며 학교공부의 의미도 입시준비에서 찾는 경향이 크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 편이며 동아리활동 경험이나 여가시간도 적은 등 발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발달권 신장을 위해서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상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008년의 한국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부모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50% 안팎이라(아버지와는 40%정도) 부모들이 더욱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이민희, 2008).

둘째, 또래 상담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동성 또래 친구들과의 상담은 평균 75%의 높은 상담이 이루어지며 대다수 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을 동성 및 이성 친구에게 상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래상담체계를 만들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상담가의 상담 체계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들의 고민을 전문 상담가와 거의 상담하지 않는 것으로 설문결과가 나타났으므로 (95%) 국가와 전문 상담가는 이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부모와 학교 당국의 학업스트레스 경감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으로 학업스트레스(78.4%)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타국가의 청소년보다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하고 있다. 제대로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현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이후로 더욱 스트레스가 초등학생부터 가중될 상황이므로 청소년들이 즐거워하고, 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확대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차별 의식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성차별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의 적극적인 의식 개선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은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게임, TV시청 등 여가활용 방법도 다양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인격을 발달시키는데 제약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확보되고 그 방법 역시 다양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활동이나 지역단위 학교밖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등 여가문화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일곱째,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학업으로부터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외로움을 느끼고, 여가시간을 TV시청으로 대부분 보내고 있으므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학교 교과과정에도 점차 늘려서 선진국의 교육평가 제도처럼 가점제 제도를 만들고, 여가 시간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여덟째, 진로의 다양화를 위한 직업 및 취업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정도가 높고, 자신의 능력을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자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 및 취업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은 학교공부가 입시준비에만 도움이 될 뿐 진로 및 직업선택, 적성 및 특기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권이 지나치게 인지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은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현장에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탐색을 통해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가출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므로 가

출의 위험성과 위험상황 대처 요령, 관련 제도와 시설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열 번째, 가정차원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할모델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을 어머니에게 특히 미국, 스웨덴청소년의 상당수가 자신의 고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고 있고 그러한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역할은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이 공부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자녀의 여가 생활 등 공부 이외의 것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부모 관심의 편중현상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인으로 온전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학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모 자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정례화를 위한 학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정과 생활영역별 성장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단위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 참여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본 연구의 참여권 관련 부문 설문 조사 결과들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하는 욕구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문30(학생회 등 학교 내 자치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문33(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34(34-2: 나의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문35(청소년이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등의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일관되게 참여와 참여를 통한 사회 변화 기대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는데 반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자신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문31, 문36),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32, 문38). 셋째, 참여 방식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표현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문39). 넷째, 참여 정도에 관한 집단 간 비교 결과를 볼 때,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 집단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이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문39).

위와 같은 주요 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청소년 참여 정책은 청소년 참여 기회의 확대, 참여를 위한 교육 기회의 확대, 청소년 참여의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 확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이 낮은 남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 등을 위한 참여기회 프로그램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최운진, 2008).

조사결과에 따른 청소년 참여권 신장과제를 가정, 사회, 학교의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가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이 높을수록 참여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에서의 민주적 참여 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 대상의 인권감수성 교육, 성인 대상의 다양한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을 권리주체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내 학생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이 있어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국제적으로도 한국 상황이 매우 심각함이 증명되었다. 학생의 의견표명권,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참여, 학생회 등 자치활동 활성화, 징계과정에서의 소명권 보장 등 학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헌법과 국제조약 및 교육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정치적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적·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킨다는 취지 아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정책참여 효과에 대한 청소년의 무기력감이 보여주듯이, 청소년 정책참여 수준은 명목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도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참여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장치들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듯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청소년정책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화로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청소년의 역량을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 사회 변화의 추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양상 및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을 감안 할 때, 참여권은 점점 더 청소년의 인권 영역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참여권 보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 및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실질적 사회 인프라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참여의 의미 및 의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성(citizenship), 청소년 시민성(youth citizenship),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 등의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며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새롭게 지각하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 사회 참여의 의미가 단순히 기성세대 중심의 사회 운용 과정에 청소년들이 일부 관심을 갖는다든지 성인의 요구와 허용 범위 내에서의 수동적이고 소극적 참여 수준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성세대와 대등하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미래세대로만 간주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차원의 교육과 정책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청소년 삶의 과정 자체가 시민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가는 행로로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참여권을 행사하고 보장받아야 할 공간 중에는 실제 공간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참여권 행사와 체험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합 정체성 경험을 통한 자아의 발견,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 문제 해결 경험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 나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관심, 의견 개진과 토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서 민주시민 역할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을 깨끗하고 건강한 청소년 참여의 장으로 만드는데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참여권은 투표권 행사 등의 정치영역 중심의 사회 참여 범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의 참여 체험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취향과 감수성 등에 걸맞은 예술, 스포츠 분야 등 문화 활동 및 정책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 참여의 경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사회 단위의 생활 과정에서부터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지역단위의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 운용 과정에 성인들과 대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과 청소년의 공동 작업 및 협동 경영의 모델들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점차 큰 단위의 사회, 국가 등 전체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이 시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⁹¹⁾

3) 청소년인권지표의 보완 및 효율적 생산·활용 과제

마지막으로 2009년도 후속연구를 위해 청소년인권지표의 보완과 효율적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인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에 대한 수정·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2차년도에는 조사도구 개발과 한국 조사 실시, 3차년도에는 국제비교 조사라는 당해연도의 연구목표 또한 달성해야 했기에 지표체계와 항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⁹²⁾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지표개발을 위한 분류체계와 개별지표를 개발하는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개별지표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⁹³⁾

다행히 3개년 연구계획 연장으로 2009년도에도 청소년인권지표 후속연구가 추진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인권지표의 지속적·체계적 활용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1·2차년도에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온 청소년인권지표의 수정·보완과 효율적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과제는 유효하다 하겠다. 후속연구를 위한 핵심적 과제를 선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최창욱·박영균 외, 2006;

91) 참여권 신장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 일환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개최한 ‘아동·청소년 참여권’ 주제의 학술대회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92) 2006년도에 설계된 3개년 연구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는 현재의 지표체계(안)에 따라 국제조사 항목을 구성하여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시간적으로 개별지표항목 보완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93) 사회지표 조사가 보편화되어 정책 개발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서구사회의 경우, 단일 지표체계를 개발하는데 대략 3~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인권지표체계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발되었고 개별항목의 수가 150여개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회지표로서의 현실적합성과 타당성, 측정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2~3년 정도의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원 외, 2007: 222).

이종원·장근영·김형주 외, 2007).

청소년인권지표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 실태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OECD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인권·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인권지표의 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인권지표의 수요자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지속적인 지표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인권지표가 주기적·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지표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조사체계와 연구수행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으로 청소년인권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표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기별, 지역별, 집단별로 자유로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표산출의 모체는 실지 조사를 통해 얻은 1차 데이터이지만, 지표산출의 과정에서 원자료의 많은 부분을 생략한 채 가공 처리된 결과만을 수록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집락 군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 원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인권지표를 위한 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성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소될 것이며,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및 지표항목의 첨가가 필요하다. 청소년인권지표는 많은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정부부처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연계되어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모든 통계정보를 단일 기관에서 조사·산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비용 면을 고려할 때, 단일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정교한 조사 설계와 대규모표집을 실시하는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분산형 조사, 집중형 관리’에 따라 각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존 통계조사에 새로운 항목을 첨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DB화된 원자료들을 연계하여 청소년인권지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이라는 분명한 타겟그룹을 설정하고 있고, 실제 청소년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전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청소년인권지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청소년인권지표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인권관련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기타 청소년인권지표의 주요 수요자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청소년인권지표의 타당성, 적시성, 실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인권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첨삭이나 수정이 필요한 지표와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개발의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인권지표 조사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연계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이들 기관에서 조사된 관련통계들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자료수집에서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문의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인

권지표개발의 주관부처일 경우 지표개발을 위한 통계자료의 수집, 조사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지표 산출, 청소년인권지표 책자발간 및 배포 등 실무업무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다.

여섯째,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환경 실태를 평가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인권관련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되어야 하며, 선진외국과도 밀접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OECD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인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만을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의 인권논리 변화 추세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표를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주요 국가들과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지표는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 청소년인권·환경의 수준은 어떠한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집약시켜 줌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청소년인권정책목표의 달성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활용주체별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첫째,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사항의 이행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국가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판단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취약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인권·환경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인권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인권지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환경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인권관련 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투자우선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역청소년인권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는 첫째,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인권관련 단체 및 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순원·임현묵·이재분(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 강현아(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경화(2007). 차기정부 아동정책의 방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편,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제16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를 위한 전국대회 자료집). pp. 109~122. 서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구로건강복지센터 외(200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04).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조사·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5).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 I.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주)한국리서치.
- 국가인권위원회(2006a). 학생인권 관련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 교육 토론평의(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6b).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7).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국가인권위원회(2008).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역(2007). 유엔인권조약제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무조정실(2002).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서울: 관계부처합동.
- 국제아동복지연맹홍콩지부·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훈련교재.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회.
-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 길은배·이미리·임영식·이용교(200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2004).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2005).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승권(2008). 국제적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황. 한국아동권리학회 편,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서비스, pp.18-51.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신영·임지연(2007).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Ⅱ - 발달지표 결과부문.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2008). 보편적 권리로서 아동권리 실현방안 - 아동청소년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편, 아동권리와 아동복지서비스, pp. 82-117.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임지연(1999).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김경준·이혜연(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김세진(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김세진(2004).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인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제4권 제1호, pp. 81-92.
-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호·김경화·한상철·임성택·박정배(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진호·김진화·송병국·오해섭·윤명희·이택선·임영식·정효진(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철·김신영(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Ⅱ -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대한민국정부(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정부(2003). 제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 CRC/C/Q/REPKO /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 대한민국정부(2007).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07~2011). 서울: 대한민국정부.
- 대한민국정부(2008.11).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안). 서울: 대한민국

국정부.

- 대한변호사협회(2004). 인권보고서 - 2003년도 제18집.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 도종수·고성혜·전명기(2002). 청소년보호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류은숙(2003). 한국의 인권운동의 성과와 과제. 세계헌법연구, 제7호, pp. 81-95.
- 문진경(2001).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향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2호. pp. 103-120.
- 방은령(2008). 청소년의 보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p. 45-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경내(1998).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동인(1992). 시민사회의 개념: 사상사적 접근. 서울: 한울.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조애저·박세경·안현애(2004).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평가 및 아동백서 발간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아시아의 인권교육-호주·인도·홍콩 편. 서울: 사람생각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역(2002).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3.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역(2008).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8.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윤수미(2005). 학교연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옹호태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김성경·김현주·박병식·이봉주(2005).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범(1997).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행방안.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pp. 23-34.
- 이기범(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pp. 69-83.
- 이민희(2008). 청소년의 발달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p. 54-5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외(2006a). 2006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이봉주 외(2006b). 중장기 아동정책과 국가행동계획.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

소·보건복지부.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pp. 99-127.
- 이수광(2000).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교(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교(2008). 청소년의 생존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p. 39-4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박창남·이중섭(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Ⅱ-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용교·이명목·안경순·정경은·정민기(2006).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광주: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용교·천정웅·안경순(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화(2005). 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1997). 각 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실천 상황.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pp. 5-20.
- 이재연·이용교·강현아·김덕순·김영지·노경주·손병덕·연홍숙·황혜원(2005).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
- 이종원(2003).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장근영·김형주(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Ⅱ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중섭·박혜석(2006).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창수·윤영철·김영욱(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서울: 새사회연대·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역(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 임지연·김신영·김정주(2007).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Ⅱ - 발달지표 종합부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원기·전명기·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2008).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p. 63-6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윤진·이해주·이미리(2004). 청소년인권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통계개발원(2008). 2008 청소년통계. 대전: 통계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0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아동권리학회(2002). 아동권리 모니터링 -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상범(1991). 인권: 민중의 자유와 권리. 서울: 교육과학사.
- 호리오 테루히사(1999). 인권사상의 발전과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황옥경(2002).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황옥경(2003).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수립방안. 아동권리연구, 제7권 1호, pp. 1-24.
- 황옥경·정준미(2006).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Ben-Arieh, A., Kaufman, N. H., Anderws, A. B., Goerge, R. M., Lee, B., & Aber, J. L. (2001). *Measuring and monitoring children's well-being*. Norwell:Kluwer Academic Publisher.
- Brown Margot ed(1996). *Our World, Our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 Council of Europe(1996). *The rights of the child - a European perspectiv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ynthia, P. C. (1996). Monito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 Non-party state: *The United States.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475-490.
- Detrick, S.(1999).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Donnelly, J. & Howard, R.(1988). *Assessing national human rights performance: A*

- theoretical framework. *Human Rights Quarterly*, Vol. 10. pp. 214-248.
- Fache, W. (1996). How to Develop a anticipatory, Comprehensive and Coherent Youth Policy? *Monitoring Children's Rights*, pp. 263-279.
- Franklin, Bob and Hammarberg, Thomas(Eds.)(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el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Hodgkin, Rachel-Newell, Peter(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ully revised edition. New York: UNICEF.
- Hodgson, D.(1994). The child's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2, pp. 369-394.
- LeBlanc, L. J.(1995).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lawmaking on human right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Nowak, M.(2005). *Article 6: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In A.Alen, J. Vande Lanotte, E.Verhellen, F. Ang, E., Berghmans, & M Verheyde (Eds.).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 Co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O'donnell(1996). *Children's Ombudsmen and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Radda Barenen: Stockholm.
- Rayner, Moira(1995). Childrens' rights in Australia. In Bob Franklin(Eds.),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pp. 188-199). New York: Routledge.
-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any.
- Sengupta, A.(2000). The Rights to Development as a Human Right. http://www.hsph.harvard.edu/fxbcenter/FXBC_WP7--Sengupta.pdf(검색일 2006. 8.14)
- The World Bank(2006).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 Development and the Next Gener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The World Bank-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Tisdall, E. K. (1997). *The Children (Scotland) Act 1995*, Edinburgh : HMSO.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www.unhcr.ch/html/menu2/6/crc/doc/session32.htm.
-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United Nations.
- UNICEF(1998). *A Human Rights Approach to UNICEF Programming for Children and Women*. New York: UNICEF.
- UNICEF(2007).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2~2008*. New York: UNICEF.
- United Nations(1995).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A/RES/50/81).
- United Nations(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2004a). Making Commitments Matter: a Toolkit for young people to evaluate national youth policy.
- United Nations(2004b). *World youth report 2003 - The global situation of young people*. New York, NY: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ited Nations(2005). *World youth report 2005 - Young people today, and in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ited Nations(2007). *World Youth Report 2007 - Young people's transition to adulthood : progress and challenge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Van Bueren, G.(1998).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Walker, Nancy E.,Brooks, Catherine M. and Wrightsman, Lawrence S.(1999). *Childr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 In search of a national policy*. California-London-New Delhi: SAGE Publications, Inc.
- Winter, Micha de(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New York: Radcliffe Medical Press.

[중국]

- 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2007). 中国儿童发展纲要(2001-2010年)实施情况中期评估报告.
- 중국국무원부녀자아동공작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wccw.gov.cn>
- 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tieth session, CRC/C/CHN/CO/2, 2005.11.
- 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2007). 中国执行联合国千年发展目标 and 儿童问题特别会议“适合儿童的世界”行动计划国家报告(2001-2005年).

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2005). 中国儿童发展状况国家报告(2003-2004年).

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2001). 中国九十年代儿童发展状况报告.

[일본]

外務省 (1996) 「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 第一回日本政府報告」

(2001) 「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 第二回日本政府報告」

(2008) 「児童の権利に関する条約 第三回日本政府報告」

「学校給食法が初の抜本改定「栄養改善」から「食育」へ」『週刊農林』2007,11, 農林出版社

小原繁 `玉川,明朗(2008)「現代の中学生に見る体型と体力:1993年から2005年の12年間の変化」『体力科学』 57(1),42, 日本体力医学会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児童生徒課 (2005) 「生徒指導上の諸問題の現状について」

時事通信社(2008)「2006年度学校給食実施状況等調査(上)」『内外教育』 (5796)

サンケイニュース「給食 `「食育」重視への目的転換」2007年11月25日

生涯学習政策局 調査企画課(2007)「学校保健統計調査報告書」

内閣府 (2006) 「低年齢少年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

内閣府 国民生活局(2004) (2007) 「国民生活白書」

松本晴美,深澤早苗(2007)「家庭の食生活環境と学校の給食調理方式が中学生の食意識・食行動,給食に対する評価および健康状態に及ぼす影響」『日本家政学会誌』 58(11),日本家政学会

丸岡里香(2006)「高校生の自尊感情と健康行動に関する調査」『浅井学園大学短期大学部研究 紀要』 44,浅井学園大学短期大学部

総務省(2000)「青少年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基本調査」

(2001) 「社会生活基本調査」

(2005) 「国勢調査」

(2007) 「平成19年就業構造基本調査」

김현철·김은정(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외(2001). 미국, 일본, 중국, 홍콩의 청소년 정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와타나베 히데키(2006). 일본의 가족 및 가족 내 사회화 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아미 외(2007). 선진 각국의 청소년 조직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자료집.

[미국]

천정웅(1999). 국제기구의 청소년인권 발전노력과 주요국 동향. 최윤진 외, 청소년인권정책연구, pp. 79-114.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천정웅·김영자·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할 인권이야기.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Alaimo, K. & Klug, B.(2002). *Children as equals : Exploring the rights of the child*.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Ben-Arieh, A. & Goerge, R. M.(2006).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Understanding their role, usage and policy influence*. Dordrecht: Springer.

Calciano, E. M.(199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ill it help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ositional Law Review*, Vol. 15, pp. 515-534.

Detrick, S.(1999).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wyer, J. G.(2006). *The relationship rights of childre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nklin, B.(2001). *The new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NY: Routledge.

Garbarino, J.(1990). The child's evolving capacities. In C. P. Cohen & H. Davidson (Eds.), *Children's rights in America: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pared with United States law*. (pp. 12-32). Washington, DC: American Bar Association.

Gordon, D., Pantazis, C. & Townsend, P.(2006). *Child rights and chil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Summary report to UNICEF*. Bristol: University of Bristol.

Guggenheim, M.(2005). *What's wrong with children's right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art, S. N.(1991). From property to person status: Historical perspective on children's rights. *American Psychologist*, Vol. 46, pp. 53-59.

Hodgkin, R. & Newell, P.(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v. ed.). New York, NY: UNICEF.

Kaufman, N. H.(1990).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senate: a history of opposition*.

-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eBlanc, L.J.(1995).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imber, S. P. & Flekkoy, M. G.(1995).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s Relevance for Social Scientists. *Social Policy Report*, Vol. 9, No. 2, pp. 1-15.
- Mason, M. A.(2005).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hildren's rights crusade: Leader or laggard?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38, No. 4, pp. 955-963.
- Mason, M. A.(1994). *From father's property to children's rights: The history of child custod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Nowak, M.(2003).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Pereznieto(2005). *Transla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to national policies with real impact on childre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hildhoods 2006, Oslo: Norway.
- Rutkow, L. & Lozman, J. T.(2006). Suffer the children?: A call for United States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19(Spring), pp. 161-190.
- Sealand, J.(2003). *The failed century of the child: Governing america's young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CEF(2005).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 Excluded and invincible*. New York, NY: UNICEF.
- UNICEF(2008).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8: Child survival*. New York, NY: UNICEF.
- UNICEF(2007). *Protecting the world's children: Impac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diverse legal system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ker, N. E., Brooks, C. M. & Wrigsman, L. S.(1999). *Childr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In search of a national policy*, London: Sage Publication.

[스웨덴]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연혁(20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Barnombudsmannen(2007). På lång sikt. Barnkonventionen i landstingen 2007(장기적 시각. 아동협약과 지방광역 란스팅 2007).
- Barnombudsmannen(2008). Sverige äger. 2008-års rapport(스웨덴이 소유하는 것. 2008년 종합보고서).
- Barnombudsmannen(2008). Sverige, enligt barn och unga. Barnombudsmannens kontaktklasser berättar vad de tycker är bra och dåligt med att leva och bo i Sverige. Resultatställning till årsrapporten “Sverige äger”(아동과 청소년이 본 스웨덴. 아동옴부즈만의 학급대회에서 나타난 스웨덴에서의 삶에 대한 장단점 분석. 종합보고서 “스웨덴이 소유하는 것”의 자료).
- Barnombudsmannen(2008). På lång sikt. Barnkonventionen i landstingen 2007(장기적 시각. 아동협약과 광역자치단체 2007).
- Bris(2008). Bris Report. Stockholm.
- Proposition 2004/05:2. 정부법안.
- Regeringens skrivelse 2007/08: 111. Barnpolitiken - en politik för barnets rättigheter(아동 정책 -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정책). 2007/8년 의회보고용 정책교서.
- SCB(2002). Barnets del av kakan - Välstånd och fattigdom bland barn(아동이 차지할 파이의 크기 - 아동의 경제수준과 빈곤). Örebro.
- SCB(2004) Barnets tid med föräldrarna och familjeförhållanden(부모와 함께 하는 아동의 시간과 가족과의 관계). Örebro.
- SCB(2007). Barn, boendesegregation och skolresultat(거주의 소외차이와 아동의 학교성적). Örebro.
- Skr 2007/08:111. 정부정책교서.
- Statskontoret(2007), Barnpolitikens myndighetsstruktur och styrning(아동정책의 정부기구 및 행정). 국가 행정위원회 보고서 2007:15.
- Sveriges regering(2007). Sveriges fjärde rapport till FN:s barnrättskommitté(스웨덴의 유엔권리위원회에 4차 보고서).
- http://www.scb.se/templates/tableOrChart____78315.asp.
- www.bris.se
- http://www.skolverket.se/content/1/c6/01/13/67/Grund_Elever_Riks_Tab5webb.xls

부 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
2. 2008년 국제비교조사용 설문지
3. 아동·청소년참여권 학술대회 일정표
4. 설문분석결과 부표

I. 연구계획에 대한 의견 :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등

1. <첨부 1. 연구계획서 요약> 자료를 보시고 3차년도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내용과 방법이 타당한가, 이를 위해 고려하거나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 특히 ‘청소년인권’의 ‘국제비교’ 연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최종보고서 목차에 대한 의견

II. 연구에 참고할 만한 정보와 자료

2.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자료수집 경로, 국내외 전문가 정보와 관련하여 알고 계신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한 선행 연구 현황
- 각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각국의 행정통계나 국제통계 명칭과 수집방법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인권 현황과 과제” 주제의 원고를 집필할 수 있는 국가별 전문가 정보(국내외)
 - 특히 국가별 청소년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발표를 의뢰할 수 있는 각국의 현지 전문가 정보(이름, 소속, 연락처 등)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주기적인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아동청소년 인권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정보
 - 한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국외출장이나 관련

전문가 초청을 통해 정보 공유의 장을 갖고, 인권분야 전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자 하니 관련 홈페이지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 각국의 청소년 인권관련 실태와 정책 현황의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국가별로 적어 주십시오.

III. 국제비교를 위한 설문지 검토 의견

4. 2차년도에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올해 국제비교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도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가별 조사기관이 검토를 할 예정이나 전문가 여러분께서 조언을 주시면 검토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첨부 2. 설문지>를 보시고 설문지 문항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첨부 3.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설문문항> 자료는 1차년도에 개발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2차년도에 개발한 설문문항이 해당 하는 영역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권지표 항목들 중 2차년도인 2007년도에 조사한 지표들은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국제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조사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수정해야할 문항과 수정안
- 핵심적인 비교문항을 중심으로 문항수를 줄인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항
- 쉽지 않은 국제비교 조사 기회를 통해 꼭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새롭게 추가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문문항 신규 제안 (제안하신 문

항이 <첨부 3.> 자료의 인권지표체계에서 어떤 지표와 관련되는지 지표 번호 제시)

5. 5개 국가의 설문지 조사결과 데이터는 10월경에 모두 취합·분석될 예정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 분석할 때 유의사항이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IV. 후속 연구 및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제언

6. 2008년, 그 동안 서로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던 아동과 청소년 인권정책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실의 아동청소년권리과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비전은 어떠한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주기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후속연구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아동청소년 인권분야에 필요한 연구과제 주제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2009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발굴과정에 추천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연구주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명, 연구의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V. 기타 의견

8. 그 외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과 조언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첨부자료

1. 연구계획 요약문
2. 설문지
3.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설문문항

부록 2. 2008년 국제비교조사용 설문지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의식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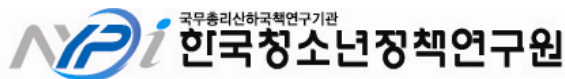
설문지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따로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자동 전산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와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아래의 응답요령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주관 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임 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박사
실사대행 기관	마켓비전 컨설팅그룹	책임자	마켓비전 컨설팅그룹 김부용 차장, 조송환 조사팀장 02-515-7114



(실사) 마켓비전 컨설팅그룹 (121-130)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01-26 이성빌딩 4층
(전화) 02-515-7114, 팩스 02-716-3291, 메일: epoll@paran.com

※ 다음은 청소년이 적절한 영양과 건강을 누리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세요.

문1.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까?

1.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2. 약간 주의를 기울인다
3.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4.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문2.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1.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에 데리고 간다
2.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3.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4. 비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다
5.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문3. 현재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고 있는 운동(단,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은 제외)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1. 전혀 하고 있지 않다
2. 일주일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3~4회 정도
4. 매일한다

문4. 평일 날(토·일요일 제외)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 4-1. 일어나는 시간 (대략 오전 시 분)
- 4-2. 잠드는 시간 (대략 오후 시 분)

문5. 아침식사를 합니까?

1. 매일 먹는다
2. 자주 먹는 편이다
3. 가끔 먹는다
4. 거의 먹지 않는다

5-1 (3번과 4번에 대답한 사람만)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늦게 일어나서
2. 식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3.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4.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5. 다이어트를 위해서
6. 기타(구체적으로)

문6.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1	2	3	4
6-2.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2	3	4
6-3.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	1	2	3	4
6-4.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1	2	3	4

문7.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학교주변은 범죄의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안전하다	대체로 안전하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7-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1	2	3	4
7-2. 자신의 학교 주변	1	2	3	4

문8.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문9.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용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9-1. 남자(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9-2. 공부를 못 한다(또는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9-3.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9-4. 외모(생김새)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문10. 지난 1년간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여기서 ‘체벌’이란 회초리 등의 물리적 도구 또는 손과 발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함)

내 용	전혀 없다	1~4회	5~9회	10회 이상
10-1.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1	2	3	4
10-2.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1	2	3	4

문11.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문12로 가시오)

11-1. (1번에 대답한 사람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용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11-1-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3
11-1-2.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키거나 처음하기로 한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1	2	3
11-1-3.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1	2	3
11-1-4.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11-1-5.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11-1-6.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문12.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2-1. 욕설로 남을 괴롭힘(경멸이나 무시 포함)	1	2	3	4
12-2. 불공평한 대우	1	2	3	4
12-3.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행사	1	2	3	4
12-4.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1	2	3	4
12-5. 한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림	1	2	3	4
12-6. 안전사고	1	2	3	4
12-7. 공공기물파괴(창문을 깨거나 기물을 파괴)	1	2	3	4

문13. 다음의 행동 중 경험한 것에 대해서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 | | |
|------------------|------------------------------|
| 1. 가출 | 2. 흡연 |
| 3. 음주 | 4. 돈 걸고 내기하기 |
| 5. 물건 훔치기 | 6. 공공기물 훼손 |
| 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 8.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
| 9. 폭력 휘두르기 | 10. 성인사이트, 성인비디오, 성인잡지를 보는 것 |
| 11. 성매매 | 12.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
| 13. 학교수업 빼먹기 | 14. 환각제나 마약사용 |

문14.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자유에 속한다
14-1. 가 출	1	2
14-2. 흡 연	1	2
14-3. 음 주	1	2
14-4. 돈 걸고 내기하기	1	2
14-5. 물건 훔치기	1	2
14-6. 공공기물 훼손	1	2
14-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1	2
14-8. 말로 다른 사람 괴롭히기	1	2
14-9. 폭력 휘두르기	1	2
14-10. 성인 사이트 보는 것	1	2
14-11. 성인비디오, 성인잡지를 보는 것	1	2
14-12. 성매매	1	2
14-13.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1	2
14-14. 학교수업 빼먹기	1	2
14-15. 환각제나 마약사용	1	2

문15. 당신은 인터넷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궂은 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있다
2. 가끔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3, 4번은 문16으로 가시오)

문15-1(1번과 2번에 대답한 사람만) 위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1. 말로 대꾸하거나 똑같이 해 준다
2. 무시한다
3. 친구와 상의한다
4. 부모와 상의한다
5. 메일주소를 바꾸거나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6. 기타

문20. 휴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개를 고른 후 그 순위를 기록해주시시오.

- | | | | |
|-------------------------|---------------|------------------|-------|
| 1. 공부 | 2. 학교공부 외의 독서 | 3. TV 시청 | 4. 게임 |
| 5. 인터넷 | 6. 친구와 놀기 | 7. 음악, 회화 등 취미활동 | |
| 8. 문화, 예술 관람(영화, 음악회 등) | 9. 운동 | | |
| 10. 휴대폰으로 대화 | 11. 쇼핑 | | |
| 12. 집에서 휴식 | 13. 기타 | | |

20-1. 당신은 휴일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20-2. 당신은 휴일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문21. 현재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동아리인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활동하고 있지 않다
2. 학교 내 동아리
3. 학교 밖 동아리(사이버가 아닌 현실 동아리)
4.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문22.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1. 나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1	2	3	4
22-2. 나는 보통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1	2	3	4
22-3.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22-4. 현실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22-5.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22-6. 주변사람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다	1	2	3	4
22-7.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문23. 다음은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3-1. 부모님의 의견에 따른다	1	2	3	4
23-2.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1	2	3	4
23-3.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한다	1	2	3	4
23-4. 부모님과 자주 대화 한다	1	2	3	4
23-5. 부모님이 자주 간섭하는 편이다	1	2	3	4
23-6.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1	2	3	4
23-7. 가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	2	3	4
23-8. 부모님은 나를 자주 격려해 준다	1	2	3	4
23-9. 부모님은 나를 자주 질책한다	1	2	3	4
23-10. 부모님은 내 공부에 관심이 있다	1	2	3	4
23-11. 부모님은 내 친구관계를 잘 아신다	1	2	3	4
23-12. 부모님은 나의 학교생활을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23-13. 부모님은 나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1	2	3	4
23-14. 부모님은 내가 귀가 후에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23-15. 부모님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1	2	3	4
23-16.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1	2	3	4

문24. 평일에(주말, 공휴일 제외) 하루 평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십니까? 학교, 집, 학원 등에서의 공부시간을 적어주십시오.

- 24-1. 학교에서의 공부시간 ()시간 ()분
 24-2. 집에서의 공부시간 ()시간 ()분
 24-3. 학원에서의 공부시간 ()시간 ()분

※ 다음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표명하고 가정·학교·사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해 주세요.

문29. 다음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까?

내 용	반드시 존중해 주신다	가끔 존중해 주신다	전혀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	해당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29-1.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1	2	3	9
29-2.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1	2	3	9
29-3. 진로나 진학문제	1	2	3	9
29-4. 내 생활용품 구입	1	2	3	9
29-5. 가정 내 규칙	1	2	3	9
29-6.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1	2	3	9
29-7. 가정의 중요한 일(고가의 물건구입이나 이사 등)	1	2	3	9

문30. 학생회 등 학교 내 자치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31.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규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1. 반영하고 있다 2. 반영하고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32.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해당 학생에게 전후사정을 발언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1. 준다 2. 별로 주지 않는다 3. 전혀 주지 않는다
4. 잘 모른다 5.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한 적이 없다

문33.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학교의 일이므로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2.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3.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문34.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4-1.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그 가정의 사생활이므로 다른 사람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	1	2	3	4
34-2.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1	2	3	4
34-3.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1	2	3	4
34-4. 내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2	3	4

문35.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2. 참여하는 것이 좋다
3. 참여할 필요가 없다
4. 참여해도 무의미하다

문3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보장하고 있다
2. 보장하는 편이다
3. 별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4.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문37.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신의 권리 수준에 만족합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다
5. 매우 불만스럽다
6. 잘 모르겠다

문6. 당신의 가족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분을 V 표시
해 주십시오.

___ 6-1. 아버지

___ 6-2. 어머니

___ 6-3. 형제 또는 자매

___ 6-4. 조부모님(또는 두 분 중의 한분)

___ 6-5. 친척

___ 6-6. 기숙사 생활로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고 있다

___ 6-7. 기타 (구체적으로)

문7.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7-1. 아버지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2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졸업

5. 대학원 졸업

7-2. 어머니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2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졸업

5. 대학원 졸업

문8.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아동·청소년 참여권 학술대회 일정표

○ 주제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 소주제 : 1부.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2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인식과 실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년 11월 28일(금) 9:30-4:30
- 장소 :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 101호

○ 목적 및 의의

- 아동과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현황진단과 과제 모색
- 한국과 일본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학술교류
- 한국아동권리학회와의 공동주최를 통해 학계와의 교류협력 강화
- 2008년도 인권실태 국제비교 조사결과 발표를 통한 NYPI 연구 홍보
- 유엔아동권리협약채택 19주년(11. 20), 세계인권선언 60주년(12. 10),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국가보고서 제출(12. 19) 등 주요 인권기념일을 전후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아동권리학회 공동주최

초대의 말씀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이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모두를 위해 더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시민들입니다(유엔 어린이가 살기좋은 세상).”

“청소년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동력이다. 우리사회의 진보는 미래를 건설하고 설계하는 데에 얼마나 많이 청소년을 참여시키느냐에 달려있다(유엔 세계청소년 행동프로그램).”

국제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하나의 권리로 천명하고 국가와 세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이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진일보된 협약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구성원이자 참여의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국정과제인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은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3, 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중요한 해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 명명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시기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공동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의 참여 증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분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1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명숙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안동현

○ 세부일정

9:30-10:00 등록

제 1 부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사회 : 손병덕 교수(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 안동현 회장(한국아동권리학회)

인사말 : 이명숙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0-11:00 기조강연 :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과제

발표자 : 안동현 교수(한양대학교 소아정신과)

11:00-11:20 휴식

11:20-11:50 주제발표 1.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
발표자 : 천정웅 연구위원(칸사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1:50-12:30 주제발표 2. 일본 아동의 참여권과 참여지원
발표자 : 하마다 신지 교수(세이까대학교 아동학과)
통역 : 김형욱 연구원(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12:30-13:30 중식

제 2 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인식과 실태
사회 : 박영균 정책연구본부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30-14:00 주제발표 3.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인식
발표자 :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4:00-14:30 주제발표 4. 아동과 청소년 권리실태의 국제비교
발표자 : 김영지·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30-14:50 휴식

14:5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 강현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영인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
임용운 장학사(전남교육청)
최윤진 교수(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부록 4. 설문분석결과 부표

<부표 IV-2-1>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 비교 - 성별·교급 비교

(단위 : %)

구 분		부모님이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데리고 간다	학교에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비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	5.4	29.3	3.3	42.7	19.3	1.824
	여	5.6	28.8	2.4	42.9	20.3	
	중	8.2	31.4	2.8	46.2	11.4	120.444***
	고	2.8	26.6	2.9	39.5	28.1	
중국	남	5.2	57.8	2.9	28.3	5.8	21.322***
	여	6.2	61.9	1.1	27.4	3.3	
	중	8.7	54.6	1.2	31.5	3.9	46.372***
	고	3.8	63.9	2.3	25.2	4.7	
일본	남	4.1	63.2	1.9	17.6	13.2	28.464***
	여	2.3	73.2	0.5	12.4	11.6	
	중	6.5	67.3	1.3	15.8	9.1	44.222***
	고	1.4	68.1	1.2	14.9	14.4	
미국	남	53.2	6.1	3.8	33.9	3.0	4.607
	여	57.3	5.6	4.4	29.6	3.1	
	중	60.0	10.0	1.4	26.1	2.5	98.838***
	고	51.2	2.2	6.4	36.6	3.6	
스웨덴	남	9.6	29.8	6.3	38.5	15.9	4.161
	여	11.1	28.2	9.1	31.9	19.8	
	중	17.6	46.0	5.3	21.4	9.6	74.084***
	고	6.3	18.8	9.4	42.3	23.2	

<부표 IV-2-2> 청소년의 아침식사 정도-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일 먹는다	55.1	49.9	58.5	60.8	80.5	84.7	41.6	30.7	70.4	67.6
자주 먹는 편이다	12.5	14.8	26.9	25.0	9.8	9.7	18.8	20.7	18.8	14.0
가끔 먹는다	13.6	15.6	9.7	10.0	4.3	3.4	15.4	18.2	7.5	10.0
거의 먹지 않는다	18.8	19.7	4.9	4.2	5.4	2.2	24.2	30.4	3.2	8.4
카이제곱 값	6.844		2.110		14.205**		24.724***		7.495	

<부표 IV-2-3>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그렇다	43.5	35.8	78.9	74.7	50.9	49.5	35.6	31.5	22.6	12.7
그렇다	47.5	55.4	20.2	24.4	42.5	46.6	53.1	58.0	58.2	70.7
그렇지 않다	7.5	7.8	0.6	0.6	4.8	3.2	8.0	7.8	15.9	12.7
전혀 그렇지 않다	1.5	1.0	0.3	0.2	1.8	.7	3.3	2.7	3.4	4.0
카이제곱값	16.522**		6.125		9.340*		4.793		11.194*	

<부표 IV-2-4> 음식을 고를 때 영양의 균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그렇다	22.8	17.3	60.6	62.4	41.9	49.0	26.5	33.1	15.4	11.7
그렇다	62.9	70.8	35.5	34.4	46.7	46.0	54.0	51.2	68.3	70.7
그렇지 않다	12.9	10.2	2.7	2.5	8.9	4.5	15.3	12.6	10.6	16.0
전혀 그렇지 않다	1.4	1.7	1.2	0.7	2.6	.6	4.2	3.1	5.8	1.7
카이제곱값	17.764**		1.952		29.670***		11.307*		10.188*	

<부표 IV-2-5>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그렇다	7.5	8.7	5.6	4.7	6.1	3.2	8.2	7.1	1.4	1.0
그렇다	30.9	36.0	24.0	29.2	23.0	23.0	24.6	26.4	10.6	14.7
그렇지 않다	43.9	37.9	40.0	42.4	41.4	50.4	37.3	38.0	60.1	58.0
전혀 그렇지 않다	17.7	17.5	30.3	23.8	29.5	23.4	29.9	28.6	27.9	26.3
카이제곱값	10.278*		16.950**		23.006***		1.640		1.986	

<부표 IV-2-6> 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여도 좋다-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매우 그렇다	8.2	8.0	5.3	4.9	5.6	4.3	6.2	8.9	1.6	0.9
그렇다	29.8	36.9	26.8	27.1	19.2	25.2	24.2	26.6	14.4	12.1
그렇지 않다	43.6	38.3	43.3	40.1	43.7	46.7	38.7	36.7	61.0	57.6
전혀 그렇지 않다	18.5	16.7	24.5	27.9	31.5	23.8	30.9	27.8	23.0	29.3
카이제곱값	13.358**		4.122		18.966***		7.229		2.881	

<부표 IV-2-7>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 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그렇다	3.1	1.6	3.1	2.8	4.4	1.6	5.2	2.5	3.4	0.7
그렇다	10.1	12.2	4.1	8.8	7.3	6.2	7.6	7.6	13.0	5.4
그렇지 않다	46.0	61.7	25.2	37.8	28.4	47.5	22.2	18.5	38.0	36.6
전혀 그렇지 않다	40.8	24.5	67.5	50.6	60.0	44.7	65.0	71.3	45.7	57.4
카이제곱값	79.642***		76.882***		78.292***		14.035**		16.611**	

<부표 IV-2-8>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안전하다	17.6	5.8	52.1	49.7	34.0	17.5	23.5	18.5	49.0	39.6
대체로 안전하다	59.4	58.7	42.8	42.6	49.1	59.1	58.8	65.3	39.8	49.0
별로 안전하지 않다	19.1	30.1	3.2	7.0	11.2	20.8	13.9	13.3	8.7	8.7
전혀 안전하지 않다	3.9	5.4	1.9	0.7	5.7	2.6	3.7	2.9	2.4	2.7
카이제곱값	98.660***		22.738***		95.710***		9.091*		4.798	

<부표 IV-2-9> 학교 주변-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안전하다	8.7	3.4	27.7	30.8	24.0	10.0	23.5	21.7	22.6	24.7
대체로 안전하다	52.8	45.7	52.4	54.1	55.7	61.2	57.3	64.0	68.3	64.3
별로 안전하지 않다	30.8	42.8	15.4	12.1	15.2	26.1	14.4	11.9	9.1	10.3
전혀 안전하지 않다	7.7	8.2	4.5	3.1	5.1	2.7	4.8	2.4	0.0	0.7
카이제곱값	54.482***		10.195*		90.019***		12.609**		2.076	

<부표 IV-2-10>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한국청소년의 거주지역별 비교

(단위 : %)

구 분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매우 안전하다	10.0	5.8	5.3
대체로 안전하다	44.9	51.2	49.3
별로 안전하지 않다	36.9	35.9	37.0
전혀 안전하지 않다	8.3	7.1	8.3
카이제곱값	11.432		

<부표 IV-3-1> 아르바이트하면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성별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스웨덴		
		없다	한두번	여러번	없다	한두번	여러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 보다 적게 받음	남	78.7	16.9	4.3	89.0	6.6	4.4
	여	78.2	18.8	3.1	84.6	10.7	4.7
	카이제곱값	.810			1.200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키거나 처음 하기로 한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킴	남	76.0	17.3	6.7	79.1	12.8	8.1
	여	77.3	17.3	5.4	78.8	14.6	6.6
	카이제곱값	.394			.301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	남	73.2	20.9	5.9	66.3	16.9	16.9
	여	85.4	9.2	5.4	80.8	14.6	4.6
	카이제곱값	14.065**			10.870**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음	남	77.5	15.8	6.7	80.9	12.4	6.7
	여	89.9	7.4	2.7	81.5	12.6	6.0
	카이제곱값	14.480**			.059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남	91.3	6.7	2.0	88.8	6.7	4.5
	여	96.2	2.3	1.5	93.4	6.6	.0
	카이제곱값	6.028*			6.918*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음	남	91.5	6.2	2.3	95.5	0.0	4.5
	여	95.0	3.4	1.5	92.7	4.6	2.6
	카이제곱값	2.640			4.744		

<부표 IV-3-2>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성별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별에 따른 차별	M	2.47	2.55	1.30	1.37	1.57	1.61	1.35	1.63	1.29	1.56
	SD	.908	.793	.652	.670	.833	.750	.660	.820	.626	.767
	t	-2.322***		-2.354**		-1.324**		-7.625***		-4.201***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M	2.51	2.65	1.78	1.67	1.60	1.63	1.48	1.37	1.38	1.31
	SD	.930	.895	.921	.841	.828	.763	.802	.690	.753	.659
	t	-3.698**		3.256**		-.726*		2.984***		1.236*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	M	1.55	1.56	1.31	1.26	1.30	1.29	1.27	1.25	1.20	1.18
	SD	.705	.685	.635	.600	.583	.528	.643	.613	.515	.503
	t	-.431		1.912**		.610		.737		.446	
외모(생김새, 체격)에 따른 차별	M	2.00	2.10	1.44	1.43	1.66	1.65	1.71	1.77	1.50	1.84
	SD	.904	.898	.763	.747	.853	.805	.940	.944	.758	.932
	t	-2.597		.049		.331		-1.383		-4.408**	

<부표 IV-3-3>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교급별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성별에 따른 차별	M	2.46	2.56	1.27	1.39	1.58	1.59	1.42	1.55	1.33	1.52
	SD	.882	.823	.638	.677	.838	.770	.710	.787	.670	.746
	t	-2.754**		-4.156***		-.430*		-3.648***		-2.900***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M	2.49	2.66	1.51	1.86	1.61	1.62	1.33	1.50	1.35	1.33
	SD	.968	.852	.821	.888	.846	.770	.690	.784	.674	.714
	t	-4.619***		-9.612**		-.082**		-4.764***		.222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별	M	1.43	1.68	1.18	1.35	1.27	1.31	1.17	1.33	1.11	1.23
	SD	.641	.725	.501	.676	.559	.558	.507	.699	.373	.567
	t	-8.629***		-6.632***		-1.377		-5.568***		-2.663***	
외모(생김새, 체격)에 따른 차별	M	1.95	2.15	1.33	1.51	1.64	1.67	1.67	1.79	1.57	1.78
	SD	.899	.894	.724	.766	.871	.807	.907	.965	.762	.937
	t	-5.447		-5.548***		-.553*		-2.723*		-2.678***	

<부표 IV-3-4> 학교환경에서의 피해 경험-성별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욕설로 남을 괴롭힘	M	2.35	2.33	2.51	2.50	2.45	2.35	2.78	2.92	2.64	2.69
	SD	.729	.763	.986	1.002	.913	.886	1.036	1.012	.874	.821
	t	.632*		.227		2.343		-2.781*		-.667	
불공평한 대우	M	2.38	2.51	2.18	2.19	2.34	2.26	2.91	3.11	2.78	2.87
	SD	.859	.879	.984	.939	.927	.883	.950	.872	.748	.730
	t	-3.559		-.453*		1.996*		-4.499**		-1.313	
심한 말다툼이나 폭력	M	2.38	2.29	2.25	2.26	2.10	1.68	2.74	2.80	2.48	2.55
	SD	.870	.867	.948	.894	.934	.811	.989	.957	.786	.777
	t	2.401		-.160*		10.362*		-1.260*		-.936	
협박이나 폭력으로 금품갈취	M	1.93	1.88	1.69	1.58	1.45	1.30	1.89	1.88	1.53	1.51
	SD	.856	.809	.878	.767	.707	.574	.969	.927	.722	.688
	t	1.532		3.118***		5.153***		.261		.425	
집단따돌림	M	2.04	2.13	2.05	2.12	1.99	2.04	2.68	2.88	1.89	1.97
	SD	.880	.873	.981	.956	.898	.905	1.042	1.020	.869	.800
	t	-2.425		-1.633		-1.119		-3.961**		-1.025*	
안전사고	M	2.06	2.04	1.74	1.71	1.82	1.76	1.70	1.63	2.07	2.03
	SD	.798	.759	.792	.733	.765	.715	.877	.843	.825	.722
	t	.523		.934		1.859		1.529		.588*	
공공기물 파괴	M	2.23	2.29	1.98	2.03	1.88	1.92	2.04	2.03	2.33	2.36
	SD	.882	.848	.942	.888	.898	.839	1.005	.979	.919	.901
	t	-1.694		-1.351*		-1.051**		.098		-.284	

<부표 IV-3-5> 비행 및 일탈행동경험 비교

(단위 : %)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1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59.3)	음주 (25.6)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33.7)	음주 (29.8)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55.3)
2	돈걸고 내기 하기 (52.9)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15.5)	음주 (25.7)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28.6)	학교수업 빼먹기 (51.0)
3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38.5)	학교수업 빼먹기 (13.4)	돈걸고 내기 하기 (23.7)	학교수업 빼먹기 (23.0)	음주 (51.0)
4	음주 (34.3)	폭력 휘두르기 (13.0)	폭력 휘두르기 (22.9)	폭력 휘두르기 (22.6)	성인사이트, 비디오,잡지보기 (37.6)
5	성인사이트, 비디오,잡지보기 (28.7)	흡연 (10.6)	학교수업 빼먹기 (16.2)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20.4)	돈걸고 내기 하기 (30.7)
6	공공기물 훼손 (23.4)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10.0)	공공기물 훼손 (15.3)	흡연 (20.0)	흡연 (28.7)
7	물건 훔치기 (22.8)	성매매 (9.4)	성인사이트, 비디오,잡지보기 (14.9)	성인사이트, 비디오,잡지보기 (19.8)	폭력 휘두르기 (18.3)
8	학교수업 빼먹기 (22.3)	가출 (8.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11.6)	물건 훔치기 (17.0)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 (18.1)
9	흡연 (17.8)	공공기물 훼손 (6.0)	가출 (10.3)	돈걸고 내기 하기 (15.9)	물건 훔치기 (15.7)
10	폭력 휘두르기 (15.7)	성인사이트, 비디오,잡지보기 (5.9)	흡연 (5.9)	공공기물 훼손 (14.3)	가출 (12.8)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1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13.5)	돈걸고 내기 하기 (4.2)	물건 훔치기 (5.5)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13.3)	공공기물 훼손 (10.0)
12	가출 (12.5)	물건 훔치기 (2.4)	인터넷상에서 욕하기 (5.4)	환각제나 마약사용 (10.9)	환각제나 마약사용 (6.9)
13	성매매 (1.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9)	만남사이트 이용 (2.3)	가출 (9.6)	성매매 (4.3)
14	환각제나 마약사용 (1.6)	환각제나 마약사용 (.7)	환각제나 마약사용 (.8)	데이트 웹 사이트 이용 (2.7)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기 (1.2)

〈부표 IV-3-6〉 일탈행동경험 횟수

(단위 : %)

횟 수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0 - 2회	47.5	82.4	69.7	64.8	45.5
3 - 5회	30.8	13.5	22.2	17.5	29.3
6회 이상	21.7	4.1	8.1	17.7	25.1

〈부표 IV-3-7〉 일탈행동경험 횟수 성별 비교

(단위 : %)

횟 수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 - 2회	37.7	57.8	70.9	90.9	61.1	79.7	63.1	66.4	38.5	50.5
3 - 5회	34.1	27.4	21.7	7.3	27.7	15.8	17.2	17.8	31.7	27.6
6회 이상	28.3	14.8	7.3	1.7	11.2	4.4	19.6	15.7	29.8	21.9
카이제곱값	102.981***		166.613***		80.640***		4.774		7.658*	

<부표 IV-3-8> 일탈행동경험 횟수 교급 비교

(단위 : %)

횟 수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0 - 2회	53.4	41.6	89.3	77.8	68.7	70.3	74.7	56.3	62.0	35.8
3 - 5회	30.4	31.2	8.6	16.8	23.5	21.5	14.4	20.3	24.1	32.4
6회 이상	16.1	27.2	2.1	5.5	7.8	8.2	11.0	23.5	13.9	31.8
카이제곱값	48.372***		54.629***		1.096		74.014***		35.441***	

<부표 IV-3-9> 일탈행동에 대한 의식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가출	53.7	46.3	71.5	28.5	23.0	77.0	55.0	45.0	56.3	43.7
흡연	67.8	32.2	81.9	18.1	72.3	27.7	67.0	33.0	58.1	41.9
음주	46.4	53.6	67.2	32.8	53.1	46.9	58.6	41.4	30.0	70.0
돈 걸고 내기하기	36.7	63.3	92.5	7.5	41.5	58.5	55.5	44.5	33.7	66.3
물건 훔치기	88.3	11.7	98.0	2.0	90.5	9.5	80.9	19.1	98.4	1.6
공공기물 훼손	85.4	14.6	95.1	4.9	88.9	11.1	79.6	20.4	97.6	2.4
다른 사람 물건 훔치기	89.6	10.4	98.7	1.3	88.8	11.2	83.6	16.4	99.6	0.4
말로 타인 괴롭히기	79.5	20.5	87.6	12.4	81.0	19.0	67.9	32.1	98.8	1.2
폭력 휘두르기	87.2	12.8	89.7	10.3	82.8	17.2	70.6	29.4	93.1	6.9
성인 사이트 보는 것	47.7	52.3	89.4	10.6	36.4	63.6	56.2	43.8	40.8	59.2
성인비디오, 잡지보기	53.6	46.4	90.2	9.8	34.6	65.4	55.3	44.7	31.6	68.4
성매매	89.1	10.9	95.2	4.8	74.4	25.6	77.6	22.4	83.7	16.3
인터넷에서 욕하기	50.3	49.7	78.9	21.1	80.9	19.1	62.5	37.5	27.3	72.7
학교수업 빼먹기	63.5	36.5	83.2	16.8	29.5	70.5	51.0	49.0	62.2	37.8
환각제나 마약사용	90.8	9.2	98.3	1.7	88.2	11.8	72.5	27.5	88.8	11.2

주 : ‘안됨’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자유’는 각자의 자유에 속한다는 응답 기준

<부표 IV-3-10> 일탈행동에 대한 의식-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가출	남	57.3	42.7	73.1	26.9	26.3	73.7	57.7	42.3	62.1	37.9
	여	49.9	50.1	70.4	29.6	19.1	80.9	52.2	47.8	52.2	47.8
	χ^2	12.320***		2.261		13.756***		5.346*		4.836*	
흡연	남	65.6	34.4	76.4	23.6	67.8	32.2	64.9	35.1	60.6	39.4
	여	70.1	29.9	86.0	14.0	77.6	22.4	69.1	30.9	56.4	43.6
	χ^2	5.060*		37.075***		22.483***		3.324		.868	
음주	남	49.9	50.1	61.9	38.1	52.3	47.7	56.9	43.1	33.0	67.0
	여	42.8	57.2	71.1	28.9	54.1	45.9	60.3	39.7	28.0	72.0
	χ^2	11.131**		22.802***		.587		2.145		1.459	
돈 걸고 내기하기	남	36.6	63.4	87.8	12.2	36.9	63.1	47.4	52.6	27.4	72.6
	여	36.8	63.2	95.9	4.1	46.9	53.1	63.5	36.5	38.0	62.0
	χ^2	.004		56.144***		19.357***		45.236***		6.176*	
물건 훔치기	남	86.2	13.8	97.0	3.0	86.5	13.5	78.0	22.0	99.0	1.0
	여	90.5	9.5	98.8	1.2	95.1	4.9	83.8	16.2	98.0	2.0
	χ^2	9.863**		9.925**		40.115***		9.437**		.855	
공공기물 훼손	남	83.1	16.9	94.4	5.6	85.5	14.5	75.2	24.8	94.2	5.8
	여	87.8	12.2	95.6	4.4	92.9	7.1	83.9	16.1	100.0	.0
	χ^2	10.124**		1.812		26.038***		20.358***		17.726***	
다른 사람 물건 뺏기	남	88.1	11.9	97.8	2.2	85.7	14.3	80.4	19.6	99.0	1.0
	여	91.3	8.7	99.4	.6	92.3	7.7	86.9	13.1	100.0	.0
	χ^2	6.292*		13.079***		20.643***		13.140***		2.896	
말로 타인 괴롭히기	남	78.4	21.6	84.6	15.4	76.0	24.0	65.0	35.0	98.1	1.9
	여	80.6	19.4	89.8	10.2	86.9	13.1	70.8	29.2	99.3	0.7
	χ^2	1.575		14.527***		36.155***		6.561*		1.661	
폭력 휘두르기	남	84.5	15.5	86.1	13.9	77.2	22.8	66.1	33.9	91.3	8.7
	여	89.9	10.1	92.3	7.7	89.5	10.5	75.1	24.9	94.3	5.7
	χ^2	14.639***		24.003***		50.365***		16.689***		1.709	
성인 사이트 보는 것	남	43.5	56.5	83.0	17.0	32.3	67.7	48.1	51.9	29.3	70.7
	여	52.2	47.8	94.1	5.9	41.3	58.7	64.3	35.7	48.8	51.2
	χ^2	17.065***		76.110***		16.541***		45.530***		19.185***	
성인비디오, 잡지보기	남	50.9	49.1	84.1	15.9	31.6	68.4	48.5	51.5	21.6	78.4
	여	56.7	43.3	94.6	5.4	38.2	61.8	62.1	37.9	38.6	61.4
	χ^2	3.814		74.093***		9.090**		32.165***		16.326***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성매매	남	86.1	13.9	91.3	8.7	67.4	32.6	73.0	27.0	76.0	24.0
	여	92.3	7.7	98.1	1.9	82.6	17.4	82.3	17.7	89.0	11.0
	χ^2	22.569***		59.207***		56.931***		21.364***		15.277***	
인터넷에서 욕하기	남	47.6	52.4	75.5	24.5	75.7	24.3	61.2	38.8	21.6	78.4
	여	53.1	46.9	81.4	18.6	87.0	13.0	63.9	36.1	31.3	68.7
	χ^2	6.876**		12.430***		38.894***		1.293		5.726*	
학교수업 빼먹기	남	69.1	30.9	82.1	17.9	33.7	66.3	51.0	49.0	62.5	37.5
	여	57.8	42.2	84.0	16.0	24.7	75.3	51.1	48.9	62.0	38.0
	χ^2	30.821***		1.418		18.384***		.002		.013	
환각제나 마약사용	남	89.6	10.4	97.3	2.7	83.7	16.3	69.8	30.2	88.9	11.1
	여	92.0	8.0	99.1	.9	93.4	6.6	75.2	24.8	88.7	11.3
	χ^2	3.940*		12.700***		42.452***		6.302*		.009	

<부표 IV-3-11> 일탈행동에 대한 의식-교급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가출	중	57.6	42.4	75.7	24.3	27.7	72.3	56.8	43.2	66.5	33.5
	고	49.8	50.2	68.7	31.3	20.2	79.8	53.5	46.5	50.5	49.5
	χ^2	13.418***		13.758***		14.025***		1.941		12.047**	
흡연	중	76.5	23.5	92.5	7.5	77.7	22.3	76.0	24.0	76.8	23.2
	고	59.1	40.9	74.7	25.3	69.1	30.9	60.0	40.0	47.3	52.7
	χ^2	78.100***		125.536***		16.450***		49.311***		41.645***	
음주	중	64.5	35.5	81.9	18.1	64.9	35.1	68.5	31.5	50.3	49.7
	고	28.5	71.5	57.1	42.9	46.2	53.8	50.8	49.2	18.2	81.8
	χ^2	292.573***		163.061***		61.468***		54.925***		57.750***	
돈 걸고 내기하기	중	44.8	55.2	95.5	4.5	47.1	52.9	60.8	39.2	43.9	56.1
	고	28.6	71.4	90.4	9.6	38.3	61.7	51.3	48.7	27.7	72.3
	χ^2	63.505***		22.013***		14.091***		15.675***		13.758***	
물건 훔치기	중	87.6	12.4	98.4	1.6	89.3	10.7	83.3	16.7	97.9	2.1
	고	89.0	11.0	97.8	2.2	91.1	8.9	79.0	21.0	98.8	1.2
	χ^2	1.126		1.063		1.674		5.153*		.608	
공공기물 훼손	중	86.1	13.9	95.0	5.0	87.2	12.8	80.3	19.7	97.9	2.1
	고	84.8	15.2	95.2	4.8	90.0	10.0	79.0	21.0	97.5	2.5
	χ^2	.744		.048		3.581		.478		.064	
다른 사람 물건 빼기	중	88.3	11.7	98.8	1.2	85.3	14.7	84.5	15.5	100.0	.0
	고	91.0	9.0	98.7	1.3	90.8	9.2	83.0	17.0	99.4	0.6
	χ^2	4.539*		.047		13.357***		.686		1.170	
말로 타인 괴롭히기	중	78.7	21.3	88.0	12.0	78.6	21.4	73.2	26.8	97.9	2.1
	고	80.2	19.8	87.3	12.7	82.4	17.6	63.8	36.2	99.4	0.6
	χ^2	.793		.279		4.055*		17.412***		2.327	
폭력 휘두르기	중	86.5	13.5	89.9	10.1	79.1	20.9	72.9	27.1	96.8	3.2
	고	87.9	12.1	89.5	10.5	85.1	14.9	68.8	31.2	91.0	9.0
	χ^2	1.010		.109		11.205**		3.421		6.251*	
성인 사이트 보는 것	중	59.5	40.5	95.2	4.8	50.8	49.2	67.0	33.0	60.4	39.6
	고	36.0	64.0	85.4	14.6	28.0	72.0	47.7	52.3	29.1	70.9
	χ^2	124.189***		59.315***		98.715***		64.246***		47.709***	
성인비디오, 잡지보기	중	64.2	35.8	95.5	4.5	49.8	50.2	65.8	34.2	42.8	57.2
	고	41.3	58.7	86.5	13.5	25.8	74.2	47.2	52.8	25.0	75.0
	χ^2	58.940***		53.589***		112.427***		59.347***		17.181***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안됨	자유
성매매	중	90.7	9.3	97.5	2.5	74.6	25.4	97.5	2.5	89.3	10.7
	고	87.5	12.5	93.7	6.3	74.2	25.8	93.7	6.3	80.4	19.6
	카이제곱값	5.972*		18.393***		.043		18.393***		6.895**	
인터넷에서 욕하기	중	51.2	48.8	83.3	16.7	80.8	19.2	83.3	16.7	42.7	57.3
	고	49.4	50.6	75.9	24.1	81.0	19.0	75.9	24.1	18.3	81.7
	카이제곱값	.712		19.217***		.008		19.217***		35.069***	
학교수업 빼먹기	중	72.2	27.8	89.4	10.6	40.9	59.1	89.4	10.6	80.7	19.3
	고	54.9	45.1	78.9	21.1	22.9	77.1	78.9	21.1	51.4	48.6
	카이제곱값	72.450***		45.988***		68.822***		45.988***		43.286***	
환각제나 마약사용	중	91.5	8.5	98.7	1.3	88.3	11.7	98.7	1.3	94.1	5.9
	고	90.1	9.9	98.1	1.9	88.1	11.9	98.1	1.9	85.7	14.3
	카이제곱값	1.261		1.109		.029		1.109		8.466**	

<부표 IV-3-12> 온라인상에서의 욕이나 짓궂은 말 경험-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자주 있다	16.7	7.0	1.5	2.3	2.2	.4	5.6	3.4	5.8	9.0
가끔 있다	43.7	36.8	7.2	10.4	17.6	11.3	23.0	29.1	13.9	19.7
별로 없다	21.9	31.3	15.9	15.7	27.9	25.9	23.6	23.1	18.8	25.3
전혀 없다	17.8	24.9	75.4	71.6	52.2	62.5	47.8	44.4	61.5	46.0
카이제곱값	83.236***		8.449*		45.573***		11.875**		12.009**	

<부표 IV-4-1>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성별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부모님 의견에 따른다	M	3.00	2.91	2.99	2.92	2.70	2.74	3.19	3.08	2.66	2.54
	SD	.605	.576	.590	.529	.723	.606	.730	.754	.646	.686
	t	3.660		3.402		-1.301***		3.196		2.043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M	3.11	3.05	3.61	3.59	2.75	2.93	3.60	3.54	3.43	3.40
	SD	.670	.674	.569	.548	.867	.790	.639	.695	.552	.643
	t	2.134*		.781		-4.738***		1.983**		.657*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한다	M	2.35	2.38	1.79	1.77	2.55	2.64	1.97	2.00	2.69	2.68
	SD	.761	.770	.689	.655	.818	.821	.937	.963	.566	.752
	t	-.868		.669		-2.277		-.600		.146***	
부모님과 자주 대화한다	M	2.83	2.96	2.58	2.74	3.07	3.31	3.06	3.11	2.98	3.15
	SD	.772	.794	.888	.902	.829	.781	.930	.951	.598	.805
	t	-3.859		-4.092		-6.393		-1.202		-2.529***	
부모님이 자주 간섭한다	M	2.81	2.77	2.43	2.26	2.76	2.68	2.80	2.82	2.74	2.78
	SD	.765	.782	.892	.901	.815	.821	.967	1.000	.749	.727
	t	1.536**		4.616*		2.047		-.252		-.546	
부모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M	3.25	3.27	3.63	3.67	3.13	3.33	3.73	3.74	3.61	3.65
	SD	.628	.663	.656	.629	.744	.696	.591	.604	.679	.628
	t	-.846*		-1.297		-6.182*		-.551		-.730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	M	2.21	2.36	1.75	1.69	2.23	2.45	1.82	2.12	1.53	1.84
	SD	.991	1.003	.978	.945	1.069	1.052	1.073	1.176	.792	.100
	t	-3.638		1.756		-4.575		-5.636***		-3.706***	
부모님은 자주 격려해 주신다	M	2.94	2.85	2.75	2.75	2.52	2.75	3.24	3.24	3.32	3.23
	SD	.756	.764	.884	.891	.839	.846	.855	.860	.714	.705
	t	2.895*		-.088		-5.936		.077		1.363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부모님은 자주 질책한다	M	2.30	2.19	2.44	2.24	2.72	2.70	2.29	2.25	2.00	2.09
	SD	.834	.838	.837	.817	.854	.860	.982	1.033	.786	.825
	t	3.352		6.081***		.363		.991		-1.278	
내 공부에 관심이 있다	M	3.17	3.17	3.52	3.43	2.59	2.71	3.30	3.27	3.54	3.38
	SD	.715	.727	.693	.750	.957	.886	.863	.867	.580	.737
	t	.266		2.985**		-2.829***		.663		2.727**	
내 친구관계를 아신다	M	2.73	2.88	2.74	2.96	2.84	3.07	3.25	3.32	3.36	3.22
	SD	.802	.776	.932	.874	.874	.770	.878	.851	.773	.698
	t	-4.568***		-6.149***		-6.084***		-1.732		2.063*	
내 학교생활을 알고 계신다	M	2.55	2.64	2.75	2.83	2.37	2.62	2.86	2.98	3.07	3.03
	SD	.767	.787	.863	.855	.837	.845	1.009	.998	.777	.760
	t	-2.758		-2.413		-6.514		-2.658		.539	
내 관심사를 알고 계신다	M	2.67	2.68	2.84	2.79	2.55	2.77	3.24	3.20	3.47	3.30
	SD	.841	.845	.972	.948	.927	.871	.874	.927	.572	.609
	t	-.323		1.327		-5.238***		.941*		3.102	
내가 귀가 후에 하는 일을 알고 계신다	M	2.83	2.92	3.06	3.09	2.76	2.94	3.25	3.30	3.20	3.28
	SD	.763	.757	.847	.840	.894	.836	.892	.893	.670	.746
	t	-2.766*		-1.018		-4.629***		-1.153		-1.207*	
내 여가시간에 관여하지 않는다	M	2.38	2.42	2.70	2.75	2.70	2.77	2.40	2.29	2.10	1.95
	SD	.862	.795	.990	.962	1.010	.906	.914	.965	.840	.853
	t	-1.226**		-1.125*		-1.501***		2.408		1.868	
진로에 대한 내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M	2.95	2.98	2.37	2.37	2.65	2.69	3.53	3.55	3.42	3.41
	SD	.786	.819	.994	.957	.898	.882	.759	.762	.616	.680
	t	-.742		.079		-.956		-.779		.196	

<부표 IV-4-2>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교급별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부모님의견에 따른다	M	2.98	2.93	3.01	2.90	2.70	2.73	3.19	3.09	2.81	2.46
	SD	.584	.600	.510	.582	.706	.651	.709	.770	.551	.702
	t	1.789*		4.833***		-.889**		2.708		5.877***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다	M	3.08	3.07	3.64	3.57	2.75	2.87	3.58	3.56	3.41	3.41
	SD	.689	.655	.535	.570	.879	.809	.650	.684	.592	.617
	t	.399		3.313***		-3.056***		.542		.010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한다	M	2.39	2.33	1.76	1.78	2.65	2.56	1.88	2.08	2.53	2.78
	SD	.770	.760	.697	.650	.857	.796	.945	.946	.682	.664
	t	1.991		-.712**		2.443*		-4.432		-4.040*	
부모님과 자주 대화한다	M	2.94	2.85	2.74	2.62	3.20	3.17	3.18	3.01	3.20	3.01
	SD	.799	.770	.927	.877	.852	.795	.908	.961	.603	.789
	t	2.563		3.257		.731**		3.734		2.823	
부모님이 자주 간섭한다	M	2.85	2.73	2.27	2.37	2.78	2.69	2.80	2.82	2.82	2.73
	SD	.766	.776	.921	.885	.826	.813	1.020	.953	.700	.754
	t	3.885*		-2.781		2.379		-.393**		1.445	
부모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M	3.28	3.24	3.76	3.58	3.16	3.26	3.81	3.68	3.74	3.58
	SD	.657	.634	.570	.674	.766	.705	.507	.658	.559	.690
	t	1.579*		7.197***		-2.953		4.732***		2.724***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	M	2.27	2.30	1.56	1.82	2.40	2.30	1.90	2.02	1.62	1.77
	SD	1.024	.975	.896	.987	1.109	1.040	1.129	1.138	.856	.971
	t	-.911*		-6.749***		1.961**		-2.200		-1.769*	
부모님은 자주 격려해 주신다	M	2.94	2.84	3.02	2.57	2.66	2.62	3.40	3.11	3.42	3.19
	SD	.764	.755	.907	.829	.899	.819	.759	.909	.612	.747
	t	3.227		12.396		1.053**		7.361**		3.543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부모님은 자주 질책한다	M	2.22	2.27	2.29	2.35	2.88	2.61	2.26	2.28	2.00	2.09
	SD	.851	.824	.846	.821	.834	.855	1.007	1.009	.748	.843
	t	-1.315		-1.663		6.613***		-.261		-1.171	
내 공부에 관심이 있다	M	3.26	3.08	3.59	3.38	2.61	2.67	3.33	3.25	3.56	3.38
	SD	.704	.726	.654	.763	.962	.906	.835	.888	.596	.719
	t	6.057**		6.993***		-1.320**		1.796*		2.828*	
내 친구관계를 아신다	M	2.86	2.75	2.97	2.80	3.04	2.89	3.37	3.22	3.36	3.22
	SD	.800	.783	.903	.902	.842	.827	.811	.903	.700	.746
	t	3.100		4.434**		3.727		3.590**		2.077	
내 학교생활을 알고 계신다	M	2.65	2.53	2.95	2.69	2.56	2.44	3.02	2.84	3.29	2.90
	SD	.788	.763	.858	.845	.869	.835	.976	1.023	.657	.791
	t	3.700		7.487***		2.937		3.738**		5.627	
내 관심사를 알고 계신다	M	2.70	2.64	2.99	2.68	2.68	2.63	3.35	3.12	3.47	3.31
	SD	.851	.833	.958	.939	.944	.886	.863	.919	.561	.614
	t	1.711		7.822*		1.126*		5.466		2.964	
내가 귀가 후에 하는 일을 알고 계신다	M	2.89	2.86	3.18	3.00	2.91	2.80	3.41	3.17	3.43	3.13
	SD	.786	.736	.861	.823	.888	.861	.816	.937	.621	.746
	t	.957		5.063***		2.774		5.759**		4.526	
내 여가시간에 대해관여하지 않는다	M	2.34	2.46	2.73	2.73	2.61	2.80	2.33	2.36	1.95	2.05
	SD	.847	.809	.988	.965	.957	.961	.924	.955	.847	.850
	t	-3.340		-.171		-4.161		-.749		-1.323	
진로에 대한 내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M	2.98	2.95	2.39	2.36	2.56	2.73	3.55	3.54	3.39	3.42
	SD	.794	.811	.976	.970	.937	.856	.742	.776	.650	.658
	t	.670		.914		-4.114***		.281		-.553	

<부표 IV-4-3> 부모님과의 관계-Scheffe 사후검증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의견따름	한국	중국	.005	.019	.999	-.05	.06
		일본	.232(*)	.020	.000	.17	.29
		미국	-.182(*)	.020	.000	-.24	-.12
		스웨덴	.363(*)	.031	.000	.27	.46
	중국	한국	-.005	.019	.999	-.06	.05
		일본	.227(*)	.020	.000	.17	.29
		미국	-.188(*)	.020	.000	-.25	-.13
		스웨덴	.358(*)	.031	.000	.26	.45
	일본	한국	-.232(*)	.020	.000	-.29	-.17
		중국	-.227(*)	.020	.000	-.29	-.17
		미국	-.415(*)	.021	.000	-.48	-.35
		스웨덴	.131(*)	.032	.002	.03	.23
	미국	한국	.182(*)	.020	.000	.12	.24
		중국	.188(*)	.020	.000	.13	.25
		일본	.415(*)	.021	.000	.35	.48
		스웨덴	.546(*)	.032	.000	.45	.64
스웨덴	한국	-.363(*)	.031	.000	-.46	-.27	
	중국	-.358(*)	.031	.000	-.45	-.26	
	일본	-.131(*)	.032	.002	-.23	-.03	
	미국	-.546(*)	.032	.000	-.64	-.45	
부모존경	한국	중국	-.520(*)	.020	.000	-.58	-.46
		일본	.250(*)	.021	.000	.18	.31
		미국	-.491(*)	.021	.000	-.56	-.42
		스웨덴	-.332(*)	.033	.000	-.43	-.23
	중국	한국	.520(*)	.020	.000	.46	.58
		일본	.770(*)	.021	.000	.71	.83
		미국	.030	.021	.741	-.04	.09
		스웨덴	.188(*)	.033	.000	.09	.29
	일본	한국	-.250(*)	.021	.000	-.31	-.18
		중국	-.770(*)	.021	.000	-.83	-.71
		미국	-.741(*)	.022	.000	-.81	-.67
		스웨덴	-.582(*)	.034	.000	-.69	-.48
	미국	한국	.491(*)	.021	.000	.42	.56
		중국	-.030	.021	.741	-.09	.04
		일본	.741(*)	.022	.000	.67	.81
		스웨덴	.158(*)	.034	.000	.05	.26
스웨덴	한국	.332(*)	.033	.000	.23	.43	
	중국	-.188(*)	.033	.000	-.29	-.09	
	일본	.582(*)	.034	.000	.48	.69	
	미국	-.158(*)	.034	.000	-.26	-.05	

* .05 수준에서 유의미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님에게 자주반항	한국	중국	.586(*)	.023	.000	.52	.66
		일본	-.232(*)	.025	.000	-.31	-.16
		미국	.376(*)	.025	.000	.30	.45
		스웨덴	-.325(*)	.039	.000	-.44	-.21
	중국	한국	-.586(*)	.023	.000	-.66	-.52
		일본	-.818(*)	.024	.000	-.89	-.74
		미국	-.210(*)	.025	.000	-.29	-.13
		스웨덴	-.911(*)	.039	.000	-1.03	-.79
	일본	한국	.232(*)	.025	.000	.16	.31
		중국	.818(*)	.024	.000	.74	.89
		미국	.608(*)	.026	.000	.53	.69
		스웨덴	-.093	.039	.236	-.21	.03
	미국	한국	-.376(*)	.025	.000	-.45	-.30
		중국	.210(*)	.025	.000	.13	.29
		일본	-.608(*)	.026	.000	-.69	-.53
		스웨덴	-.700(*)	.040	.000	-.82	-.58
스웨덴	한국	.325(*)	.039	.000	.21	.44	
	중국	.911(*)	.039	.000	.79	1.03	
	일본	.093	.039	.236	-.03	.21	
	미국	.700(*)	.040	.000	.58	.82	
부모님과 자주대화	한국	중국	.224(*)	.025	.000	.15	.30
		일본	-.287(*)	.027	.000	-.37	-.21
		미국	-.190(*)	.027	.000	-.27	-.11
		스웨덴	-.184(*)	.042	.001	-.31	-.05
	중국	한국	-.224(*)	.025	.000	-.30	-.15
		일본	-.511(*)	.026	.000	-.59	-.43
		미국	-.414(*)	.027	.000	-.50	-.33
		스웨덴	-.408(*)	.042	.000	-.54	-.28
	일본	한국	.287(*)	.027	.000	.21	.37
		중국	.511(*)	.026	.000	.43	.59
		미국	.097(*)	.028	.019	.01	.18
		스웨덴	.103	.043	.210	-.03	.23
	미국	한국	.190(*)	.027	.000	.11	.27
		중국	.414(*)	.027	.000	.33	.50
		일본	-.097(*)	.028	.019	-.18	-.01
		스웨덴	.006	.043	1.000	-.13	.14
스웨덴	한국	.184(*)	.042	.001	.05	.31	
	중국	.408(*)	.042	.000	.28	.54	
	일본	-.103	.043	.210	-.23	.03	
	미국	-.006	.043	1.000	-.14	.13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님이 자주간섭	한국	중국	.462(*)	.025	.000	.38	.54
		일본	.066	.027	.196	-.02	.15
		미국	-.020	.027	.967	-.10	.06
		스웨덴	.029	.042	.977	-.10	.16
	중국	한국	-.462(*)	.025	.000	-.54	-.38
		일본	-.396(*)	.026	.000	-.48	-.31
		미국	-.482(*)	.027	.000	-.56	-.40
		스웨덴	-.433(*)	.042	.000	-.56	-.30
	일본	한국	-.066	.027	.196	-.15	.02
		중국	.396(*)	.026	.000	.31	.48
		미국	-.086	.028	.057	-.17	.00
		스웨덴	-.037	.043	.945	-.17	.10
	미국	한국	.020	.027	.967	-.06	.10
		중국	.482(*)	.027	.000	.40	.56
		일본	.086	.028	.057	.00	.17
		스웨덴	.049	.043	.865	-.08	.18
스웨덴	한국	-.029	.042	.977	-.16	.10	
	중국	.433(*)	.042	.000	.30	.56	
	일본	.037	.043	.945	-.10	.17	
	미국	-.049	.043	.865	-.18	.08	
부모님이 관심을 가짐	한국	중국	-.390(*)	.019	.000	-.45	-.33
		일본	.041	.020	.388	-.02	.10
		미국	-.475(*)	.021	.000	-.54	-.41
		스웨덴	-.374(*)	.032	.000	-.47	-.28
	중국	한국	.390(*)	.019	.000	.33	.45
		일본	.432(*)	.020	.000	.37	.49
		미국	-.085(*)	.020	.002	-.15	-.02
		스웨덴	.016	.032	.992	-.08	.11
	일본	한국	-.041	.020	.388	-.10	.02
		중국	-.432(*)	.020	.000	-.49	-.37
		미국	-.517(*)	.022	.000	-.58	-.45
		스웨덴	-.415(*)	.033	.000	-.52	-.31
	미국	한국	.475(*)	.021	.000	.41	.54
		중국	.085(*)	.020	.002	.02	.15
		일본	.517(*)	.022	.000	.45	.58
		스웨덴	.101(*)	.033	.050	.00	.20
스웨덴	한국	.374(*)	.032	.000	.28	.47	
	중국	-.016	.032	.992	-.11	.08	
	일본	.415(*)	.033	.000	.31	.52	
	미국	-.101(*)	.033	.050	-.20	.00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가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음	한국	중국	.571(*)	.030	.000	.48	.66
		일본	-.046	.032	.715	-.15	.05
		미국	.317(*)	.033	.000	.22	.42
		스웨덴	.575(*)	.050	.000	.42	.73
	중국	한국	-.571(*)	.030	.000	-.66	-.48
		일본	-.618(*)	.032	.000	-.72	-.52
		미국	-.254(*)	.032	.000	-.35	-.16
		스웨덴	.004	.050	1.000	-.15	.16
	일본	한국	.046	.032	.715	-.05	.15
		중국	.618(*)	.032	.000	.52	.72
		미국	.364(*)	.034	.000	.26	.47
		스웨덴	.622(*)	.051	.000	.46	.78
	미국	한국	-.317(*)	.033	.000	-.42	-.22
		중국	.254(*)	.032	.000	.16	.35
		일본	-.364(*)	.034	.000	-.47	-.26
		스웨덴	.258(*)	.052	.000	.10	.42
	스웨덴	한국	-.575(*)	.050	.000	-.73	-.42
		중국	-.004	.050	1.000	-.16	.15
		일본	-.622(*)	.051	.000	-.78	-.46
		미국	-.258(*)	.052	.000	-.42	-.10
부모님이 자주겨려	한국	중국	.140(*)	.024	.000	.07	.22
		일본	.262(*)	.026	.000	.18	.34
		미국	-.348(*)	.026	.000	-.43	-.27
		스웨덴	-.378(*)	.041	.000	-.50	-.25
	중국	한국	-.140(*)	.024	.000	-.22	-.07
		일본	.122(*)	.026	.000	.04	.20
		미국	-.488(*)	.026	.000	-.57	-.41
		스웨덴	-.518(*)	.041	.000	-.64	-.39
	일본	한국	-.262(*)	.026	.000	-.34	-.18
		중국	-.122(*)	.026	.000	-.20	-.04
		미국	-.609(*)	.027	.000	-.69	-.52
		스웨덴	-.640(*)	.042	.000	-.77	-.51
	미국	한국	.348(*)	.026	.000	.27	.43
		중국	.488(*)	.026	.000	.41	.57
		일본	.609(*)	.027	.000	.52	.69
		스웨덴	-.030	.042	.971	-.16	.10
	스웨덴	한국	.378(*)	.041	.000	.25	.50
		중국	.518(*)	.041	.000	.39	.64
		일본	.640(*)	.042	.000	.51	.77
		미국	.030	.042	.971	-.10	.16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님이 자주질책	한국	중국	-.079	.026	.051	-.16	.00
		일본	-.464(*)	.027	.000	-.55	-.38
		미국	-.023	.028	.955	-.11	.06
		스웨덴	.192(*)	.043	.000	.06	.32
	중국	한국	.079	.026	.051	.00	.16
		일본	-.386(*)	.027	.000	-.47	-.30
		미국	.056	.027	.389	-.03	.14
		스웨덴	.271(*)	.043	.000	.14	.40
	일본	한국	.464(*)	.027	.000	.38	.55
		중국	.386(*)	.027	.000	.30	.47
		미국	.442(*)	.029	.000	.35	.53
		스웨덴	.657(*)	.044	.000	.52	.79
	미국	한국	.023	.028	.955	-.06	.11
		중국	-.056	.027	.389	-.14	.03
		일본	-.442(*)	.029	.000	-.53	-.35
		스웨덴	.215(*)	.044	.000	.08	.35
스웨덴	한국	-.192(*)	.043	.000	-.32	-.06	
	중국	-.271(*)	.043	.000	-.40	-.14	
	일본	-.657(*)	.044	.000	-.79	-.52	
	미국	-.215(*)	.044	.000	-.35	-.08	
부모님이 내 공부에 관심 있음	한국	중국	-.296(*)	.023	.000	-.37	-.22
		일본	.525(*)	.025	.000	.45	.60
		미국	-.115(*)	.025	.000	-.19	-.04
		스웨덴	-.274(*)	.039	.000	-.39	-.15
	중국	한국	.296(*)	.023	.000	.22	.37
		일본	.821(*)	.024	.000	.75	.90
		미국	.181(*)	.025	.000	.10	.26
		스웨덴	.022	.039	.989	-.10	.14
	일본	한국	-.525(*)	.025	.000	-.60	-.45
		중국	-.821(*)	.024	.000	-.90	-.75
		미국	-.640(*)	.026	.000	-.72	-.56
		스웨덴	-.799(*)	.040	.000	-.92	-.68
	미국	한국	.115(*)	.025	.000	.04	.19
		중국	-.181(*)	.025	.000	-.26	-.10
		일본	.640(*)	.026	.000	.56	.72
		스웨덴	-.159(*)	.040	.003	-.28	-.04
	스웨덴	한국	.274(*)	.039	.000	.15	.39
		중국	-.022	.039	.989	-.14	.10
		일본	.799(*)	.040	.000	.68	.92
		미국	.159(*)	.040	.003	.04	.28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님이 내친구관계를 잘알고있음	한국	중국	-.063	.025	.168	-.14	.01
		일본	-.142(*)	.026	.000	-.22	-.06
		미국	-.480(*)	.027	.000	-.56	-.40
		스웨덴	-.470(*)	.041	.000	-.60	-.34
	중국	한국	.063	.025	.168	-.01	.14
		일본	-.079	.026	.054	-.16	.00
		미국	-.418(*)	.026	.000	-.50	-.34
		스웨덴	-.408(*)	.041	.000	-.53	-.28
	일본	한국	.142(*)	.026	.000	.06	.22
		중국	.079	.026	.054	.00	.16
		미국	-.339(*)	.028	.000	-.42	-.25
		스웨덴	-.329(*)	.042	.000	-.46	-.20
	미국	한국	.480(*)	.027	.000	.40	.56
		중국	.418(*)	.026	.000	.34	.50
		일본	.339(*)	.028	.000	.25	.42
		스웨덴	.010	.042	1.000	-.12	.14
	스웨덴	한국	.470(*)	.041	.000	.34	.60
		중국	.408(*)	.041	.000	.28	.53
		일본	.329(*)	.042	.000	.20	.46
		미국	-.010	.042	1.000	-.14	.12
부모님이 내학교생활을 잘알고있음	한국	중국	-.205(*)	.025	.000	-.28	-.13
		일본	.109(*)	.027	.003	.03	.19
		미국	-.329(*)	.027	.000	-.41	-.25
		스웨덴	-.454(*)	.042	.000	-.59	-.32
	중국	한국	.205(*)	.025	.000	.13	.28
		일본	.313(*)	.026	.000	.23	.39
		미국	-.124(*)	.027	.000	-.21	-.04
		스웨덴	-.250(*)	.042	.000	-.38	-.12
	일본	한국	-.109(*)	.027	.003	-.19	-.03
		중국	-.313(*)	.026	.000	-.39	-.23
		미국	-.438(*)	.028	.000	-.53	-.35
		스웨덴	-.563(*)	.043	.000	-.70	-.43
	미국	한국	.329(*)	.027	.000	.25	.41
		중국	.124(*)	.027	.000	.04	.21
		일본	.438(*)	.028	.000	.35	.53
		스웨덴	-.125	.043	.082	-.26	.01
	스웨덴	한국	.454(*)	.042	.000	.32	.59
		중국	.250(*)	.042	.000	.12	.38
		일본	.563(*)	.043	.000	.43	.70
		미국	.125	.043	.082	-.01	.26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님이 나의관심사 알고 있음	한국	중국	-.135(*)	.026	.000	-.21	-.05
		일본	.025	.028	.934	-.06	.11
		미국	-.550(*)	.028	.000	-.64	-.46
		스웨덴	-.695(*)	.044	.000	-.83	-.56
	중국	한국	.135(*)	.026	.000	.05	.21
		일본	.160(*)	.027	.000	.08	.24
		미국	-.415(*)	.028	.000	-.50	-.33
		스웨덴	-.560(*)	.043	.000	-.69	-.43
	일본	한국	-.025	.028	.934	-.11	.06
		중국	-.160(*)	.027	.000	-.24	-.08
		미국	-.575(*)	.029	.000	-.67	-.48
		스웨덴	-.720(*)	.044	.000	-.86	-.58
	미국	한국	.550(*)	.028	.000	.46	.64
		중국	.415(*)	.028	.000	.33	.50
		일본	.575(*)	.029	.000	.48	.67
		스웨덴	-.145(*)	.045	.033	-.28	-.01
스웨덴	한국	.695(*)	.044	.000	.56	.83	
	중국	.560(*)	.043	.000	.43	.69	
	일본	.720(*)	.044	.000	.58	.86	
	미국	.145(*)	.045	.033	.01	.28	
부모님이 내귀가후생활 알고 있음	한국	중국	-.200(*)	.024	.000	-.27	-.13
		일본	.034	.026	.786	-.05	.11
		미국	-.400(*)	.026	.000	-.48	-.32
		스웨덴	-.367(*)	.041	.000	-.49	-.24
	중국	한국	.200(*)	.024	.000	.13	.27
		일본	.234(*)	.026	.000	.16	.31
		미국	-.200(*)	.026	.000	-.28	-.12
		스웨덴	-.167(*)	.041	.002	-.29	-.04
	일본	한국	-.034	.026	.786	-.11	.05
		중국	-.234(*)	.026	.000	-.31	-.16
		미국	-.434(*)	.027	.000	-.52	-.35
		스웨덴	-.401(*)	.042	.000	-.53	-.27
	미국	한국	.400(*)	.026	.000	.32	.48
		중국	.200(*)	.026	.000	.12	.28
		일본	.434(*)	.027	.000	.35	.52
		스웨덴	.033	.042	.961	-.10	.16
스웨덴	한국	.367(*)	.041	.000	.24	.49	
	중국	.167(*)	.041	.002	.04	.29	
	일본	.401(*)	.042	.000	.27	.53	
	미국	-.033	.042	.961	-.16	.10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님의 내여가시간 관여여부	한국	중국	-.328(*)	.027	.000	-.41	-.25
		일본	-.330(*)	.029	.000	-.42	-.24
		미국	.059	.029	.404	-.03	.15
		스웨덴	.391(*)	.045	.000	.25	.53
	중국	한국	.328(*)	.027	.000	.25	.41
		일본	-.002	.028	1.000	-.09	.09
		미국	.387(*)	.029	.000	.30	.48
		스웨덴	.719(*)	.045	.000	.58	.86
	일본	한국	.330(*)	.029	.000	.24	.42
		중국	.002	.028	1.000	-.09	.09
		미국	.389(*)	.030	.000	.29	.48
		스웨덴	.721(*)	.046	.000	.58	.86
	미국	한국	-.059	.029	.404	-.15	.03
		중국	-.387(*)	.029	.000	-.48	-.30
		일본	-.389(*)	.030	.000	-.48	-.29
		스웨덴	.332(*)	.046	.000	.19	.48
스웨덴	한국	-.391(*)	.045	.000	-.53	-.25	
	중국	-.719(*)	.045	.000	-.86	-.58	
	일본	-.721(*)	.046	.000	-.86	-.58	
	미국	-.332(*)	.046	.000	-.48	-.19	
부모님의 나의진로의견 존중여부	한국	중국	.594(*)	.025	.000	.52	.67
		일본	.297(*)	.027	.000	.22	.38
		미국	-.575(*)	.027	.000	-.66	-.49
		스웨덴	-.446(*)	.042	.000	-.58	-.32
	중국	한국	-.594(*)	.025	.000	-.67	-.52
		일본	-.297(*)	.026	.000	-.38	-.22
		미국	-1.169(*)	.027	.000	-1.25	-1.09
		스웨덴	-1.040(*)	.042	.000	-1.17	-.91
	일본	한국	-.297(*)	.027	.000	-.38	-.22
		중국	.297(*)	.026	.000	.22	.38
		미국	-.872(*)	.028	.000	-.96	-.79
		스웨덴	-.743(*)	.043	.000	-.87	-.61
	미국	한국	.575(*)	.027	.000	.49	.66
		중국	1.169(*)	.027	.000	1.09	1.25
		일본	.872(*)	.028	.000	.79	.96
		스웨덴	.129	.043	.060	.00	.26
스웨덴	한국	.446(*)	.042	.000	.32	.58	
	중국	1.040(*)	.042	.000	.91	1.17	
	일본	.743(*)	.043	.000	.61	.87	
	미국	-.129	.043	.060	-.26	.00	

<부표 IV-4-5> 여가시간-성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매우충분	13.7	9.7	11.7	13.8	10.2	11.7	19.7	16.9	18.4	31.3	24.0	27.6	19.7	10.0	14.0
충분	48.4	40.5	44.5	45.5	51.1	48.7	38.4	36.5	37.5	31.5	34.6	33.0	52.4	54.0	53.3
부족	24.0	30.5	27.2	27.1	26.8	26.9	25.8	35.3	30.2	22.6	25.4	24.0	19.7	25.7	23.2
매우부족	13.9	19.3	16.5	13.6	12.0	12.7	16.1	11.3	13.9	14.7	16.0	15.3	8.2	9.7	9.1
카이제곱 값	34.135***			11.970*			24.500***			11.936**			11.912*		

<부표 IV-4-6> 여가방법-성별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순위	게임 (31.6)	TV시청 (30.1)	공부 (38.1)	공부 (44.6)	운동 (23.9)	운동 (16.4)	친구와 놀이 (21.2)	친구와 놀이 (21.3)	친구와 놀이 (32.2)	친구와 놀이 (34.7)
2순위	게임 (19.7)	TV시청 (23.6)	인터넷 (17.3)	TV시청 (17.4)	TV시청 (16.9)	TV시청 (16.8)	친구와 놀이 (14.7)	문화예술 관람 (14.3)	친구와 놀이 (18.8)	친구와 놀이 (22.0)
3순위	TV시청 (19.9)	TV시청 (15.6)	TV시청 (14.5)	집에서 휴식 (19.3)	집에서 휴식 (16.7)	집에서 휴식 (23.2)	친구와 놀이 (12.0)	집에서 휴식 (13.5)	친구와 놀이 (21.2)	집에서 휴식 (15.5)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가장 높은 수를 각기 1순위로 함.

<부표 IV-4-7> 현재 수용정도-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 값
한국	남자	9.9	38.4	40.3	11.5	3.533
	여자	7.7	38.5	41.3	12.5	
	중학교	10.6	39.0	39.6	10.8	11.941**
	고등학교	7.0	37.8	42.0	13.2	
중국	남자	12.9	29.2	34.9	23.0	4.536
	여자	12.6	26.2	38.8	22.3	
	중학교	14.3	25.7	34.7	25.4	13.000*
	고등학교	11.7	28.7	38.8	20.8	
일본	남자	17.5	40.8	30.0	11.7	35.761***
	여자	13.7	43.7	37.4	5.2	
	중학교	18.4	42.9	30.1	8.6	8.932*
	고등학교	14.2	41.6	35.4	8.8	
미국	남자	22.4	34.7	27.6	15.3	2.816
	여자	25.8	34.0	26.1	14.0	
	중학교	29.6	37.9	20.2	12.4	46.688***
	고등학교	20.0	31.7	32.0	16.4	
스웨덴	남자	6.9	45.8	36.5	10.8	19.479***
	여자	9.7	28.5	53.4	8.4	
	중학교	11.5	34.4	42.1	12.0	6.269
	고등학교	6.9	36.2	49.1	7.9	

<부표 IV-4-8> 자기비관적 태도-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 값
한국	남자	8.2	33.7	44.2	13.8	6.738
	여자	8.0	37.4	43.9	10.7	
	중학교	8.0	33.9	44.7	13.5	4.405
	고등학교	8.3	37.2	43.4	11.2	
중국	남자	3.7	8.6	27.0	60.8	18.299***
	여자	2.4	9.7	33.9	54.0	
	중학교	3.5	7.8	24.4	64.4	44.424***
	고등학교	2.6	10.2	35.4	51.8	
일본	남자	22.8	39.3	26.5	11.4	13.078**
	여자	22.2	41.7	29.3	6.8	
	중학교	21.1	35.7	31.8	11.3	18.554***
	고등학교	23.4	43.1	25.5	8.0	
미국	남자	7.1	13.3	18.7	60.9	1.289
	여자	6.6	12.8	20.8	59.8	
	중학교	5.6	11.0	18.6	64.9	12.612**
	고등학교	7.8	14.6	20.7	56.9	
스웨덴	남자	3.8	7.2	28.4	60.6	27.912***
	여자	4.7	13.0	45.3	37.0	
	중학교	5.3	5.3	34.8	54.5	13.439**
	고등학교	4.3	10.6	38.4	46.7	

<부표 IV-4-9> 평일 공부시간 비교

(단위 : 시간)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학교	6.50	8.44	5.55	0.50	6.51
집	1.26	2.38	1.44	1.16	1.45
학원	1.43	1.47	1.02	0.10	0.08

<부표 IV-4-10> 학교공부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매우 힘들다	13.0	11.3	16.8	8.1	5.1
힘든 편이다	41.0	39.6	52.3	45.4	34.9
적당하다	41.3	39.2	23.2	29.4	44.6
쉬운 편이다	3.4	7.9	5.6	14.4	13.3
매우 쉬운 편이다	1.3	2.1	2.1	2.8	2.2

<부표 IV-4-11>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자주 있다	22.2	8.9	18.7	25.4	23.7
가끔 있다	43.3	33.6	39.5	53.0	33.6
별로 없다	25.5	37.0	29.0	17.4	34.8
전혀 없다	9.0	20.5	12.8	4.2	7.9

**<부표 IV-4-12>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순위별 내용과 비율**

(단위 : %)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1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66.8)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43.0)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58.3)	재미없는 학교수업 (59.7)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62.6)
2	재미없는 학교수업 (56.9)	성적이 좋지 않다 (37.5)	공부하는 것이 싫다 (45.5)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52.3)	재미없는 학교수업 (48.0)
3	공부하는 것이 싫다 (54.8)	재미없는 학교수업 (35.8)	재미없는 학교수업 (42.1)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49.7)	공부하는 것이 싫다 (44.6)
4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33.8)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33.8)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40.9)	공부하는 것이 싫다 (34.6)	교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 (13.3)
5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32.1)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31.0)	성적이 좋지 않다 (23.3)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17.9)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11.9)
6	성적이 좋지 않다 (28.4)	공부하는 것이 싫다 (10.0)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17.3)	성적이 좋지 않다 (14.7)	성적이 좋지 않다 (11.0)
7	교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 (12.8)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 (8.7)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 (14.6)	교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 (9.4)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 (8.7)
8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 (6.7)	교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 (8.7)	교사가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 (7.0)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5.2)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7.9)
9	괴롭힘을 당한다 (3.5)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6.7)	괴롭힘을 당한다 (2.8)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 (4.5)	학교규율이 엄격해서 자유롭지 않다 (7.6)
10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3.4)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5.9)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2.4)	괴롭힘을 당한다 (3.4)	괴롭힘을 당한다 (5.3)
11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3.3)	괴롭힘을 당한다 (3.6)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1.4)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3.3)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5.0)

<부표 IV-4-13> 유학 선호 여부

(단위 :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전체
예	56.8	71.0	39.3	53.6	60.0	56.5
아니오	43.2	29.0	60.7	46.4	40.0	43.5
카이제곱 값	442.402***					

<부표 IV-4-14>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복수응답)

순 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1	언어공부에 유리 (55.8)	언어공부에 유리 (73.6)	다른 문화 이해 (71.5)	다른 문화 이해 (74.8)	언어공부에 유리 (81.9)
2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50.3)	다른 문화 이해 (73.2)	언어공부에 유리 (53.7)	언어공부에 유리 (62.4)	다른 문화 이해 (80.9)
3	다른 문화 이해 (49.5)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59.4)	장래 취직에 유리 (25.4)	장래 취직에 유리 (42.0)	장래 취직에 유리 (51.9)
4	장래 취직에 유리 (47.7)	장래 취직에 유리 (43.1)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10.5)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16.8)	외국의 교육환경이 좋음 (19.3)
5	자국 진학경쟁 치열 (34.9)	외국 생활수준 높음 (35.0)	유학 잘모름 (7.4)	유학 잘모름 (10.7)	유학 잘모름 (15.2)
6	외국 생활수준 높음 (31.9)	자국 진학경쟁 치열 (34.0)	외국 생활수준 높음 (7.0)	자국 진학경쟁 치열 (8.1)	자국 진학경쟁 치열 (13.3)
7	외국 치안사정 좋음 (9.2)	외국 치안사정 좋음 (14.4)	외국 치안사정 좋음 (3.4)	외국 생활수준 높음 (6.6)	외국 생활수준 높음 (8.2)
8	유학 잘모름 (6.5)	유학 잘모름 (3.3)	자국 진학경쟁 치열 (3.0)	외국 치안사정 좋음 (3.7)	외국 치안사정 좋음 (.7)

<부표 IV-5-1> 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Scheffe 사후검증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가정내규칙	한국	중국	-.082(*)	.022	.009	-.15	-.01
		일본	.171(*)	.022	.000	.10	.24
		미국	.242(*)	.022	.000	.17	.31
		스웨덴	-.302(*)	.033	.000	-.40	-.20
	중국	한국	.082(*)	.022	.009	.01	.15
		일본	.253(*)	.024	.000	.18	.33
		미국	.324(*)	.024	.000	.25	.40
		스웨덴	-.220(*)	.034	.000	-.33	-.11
	일본	한국	-.171(*)	.022	.000	-.24	-.10
		중국	-.253(*)	.024	.000	-.33	-.18
		미국	.070	.024	.069	.00	.14
		스웨덴	-.474(*)	.034	.000	-.58	-.37
	미국	한국	-.242(*)	.022	.000	-.31	-.17
		중국	-.324(*)	.024	.000	-.40	-.25
		일본	-.070	.024	.069	-.14	.00
		스웨덴	-.544(*)	.034	.000	-.65	-.44
스웨덴	한국	.302(*)	.033	.000	.20	.40	
	중국	.220(*)	.034	.000	.11	.33	
	일본	.474(*)	.034	.000	.37	.58	
	미국	.544(*)	.034	.000	.44	.65	
가정의 중요한 일	한국	중국	-.175(*)	.021	.000	-.24	-.11
		일본	-.006	.025	.999	-.08	.07
		미국	-.027	.023	.860	-.10	.05
		스웨덴	-.257(*)	.035	.000	-.36	-.15
	중국	한국	.175(*)	.021	.000	.11	.24
		일본	.168(*)	.025	.000	.09	.24
		미국	.148(*)	.023	.000	.08	.22
		스웨덴	-.082	.035	.234	-.19	.03
	일본	한국	.006	.025	.999	-.07	.08
		중국	-.168(*)	.025	.000	-.24	-.09
		미국	-.020	.027	.966	-.10	.06
		스웨덴	-.250(*)	.037	.000	-.36	-.14
	미국	한국	.027	.023	.860	-.05	.10
		중국	-.148(*)	.023	.000	-.22	-.08
		일본	.020	.027	.966	-.06	.10
		스웨덴	-.230(*)	.036	.000	-.34	-.12
스웨덴	한국	.257(*)	.035	.000	.15	.36	
	중국	.082	.035	.234	-.03	.19	
	일본	.250(*)	.037	.000	.14	.36	
	미국	.230(*)	.036	.000	.12	.34	

* .05 수준에서 유의미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한국	중국	-.205(*)	.019	.000	-.26	-.15
		일본	.009	.021	.997	-.06	.07
		미국	-.176(*)	.026	.000	-.26	-.10
		스웨덴	-.465(*)	.046	.000	-.60	-.32
	중국	한국	.205(*)	.019	.000	.15	.26
		일본	.214(*)	.021	.000	.15	.28
		미국	.029	.025	.861	-.05	.11
		스웨덴	-.259(*)	.045	.000	-.40	-.12
	일본	한국	-.009	.021	.997	-.07	.06
		중국	-.214(*)	.021	.000	-.28	-.15
		미국	-.185(*)	.027	.000	-.27	-.10
		스웨덴	-.473(*)	.046	.000	-.62	-.33
	미국	한국	.176(*)	.026	.000	.10	.26
		중국	-.029	.025	.861	-.11	.05
		일본	.185(*)	.027	.000	.10	.27
		스웨덴	-.288(*)	.048	.000	-.44	-.14
스웨덴	한국	.465(*)	.046	.000	.32	.60	
	중국	.259(*)	.045	.000	.12	.40	
	일본	.473(*)	.046	.000	.33	.62	
	미국	.288(*)	.048	.000	.14	.44	
진로나 진학문제	한국	중국	-.091(*)	.018	.000	-.15	-.04
		일본	-.025	.019	.797	-.08	.03
		미국	-.297(*)	.020	.000	-.36	-.24
		스웨덴	-.394(*)	.030	.000	-.49	-.30
	중국	한국	.091(*)	.018	.000	.04	.15
		일본	.066(*)	.019	.014	.01	.12
		미국	-.206(*)	.019	.000	-.26	-.15
		스웨덴	-.303(*)	.030	.000	-.40	-.21
	일본	한국	.025	.019	.797	-.03	.08
		중국	-.066(*)	.019	.014	-.12	-.01
		미국	-.272(*)	.020	.000	-.33	-.21
		스웨덴	-.369(*)	.031	.000	-.46	-.27
	미국	한국	.297(*)	.020	.000	.24	.36
		중국	.206(*)	.019	.000	.15	.26
		일본	.272(*)	.020	.000	.21	.33
		스웨덴	-.097(*)	.031	.046	-.19	.00
	스웨덴	한국	.394(*)	.030	.000	.30	.49
		중국	.303(*)	.030	.000	.21	.40
		일본	.369(*)	.031	.000	.27	.46
		미국	.097(*)	.031	.046	.00	.19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취미학원 이나 취미교실	한국	중국	-.334(*)	.020	.000	-.39	-.27
		일본	-.155(*)	.021	.000	-.22	-.09
		미국	-.442(*)	.021	.000	-.51	-.38
		스웨덴	-.640(*)	.031	.000	-.74	-.54
	중국	한국	.334(*)	.020	.000	.27	.39
		일본	.179(*)	.021	.000	.12	.24
		미국	-.108(*)	.021	.000	-.17	-.04
		스웨덴	-.306(*)	.031	.000	-.40	-.21
	일본	한국	.155(*)	.021	.000	.09	.22
		중국	-.179(*)	.021	.000	-.24	-.12
		미국	-.287(*)	.022	.000	-.36	-.22
		스웨덴	-.485(*)	.032	.000	-.58	-.39
	미국	한국	.442(*)	.021	.000	.38	.51
		중국	.108(*)	.021	.000	.04	.17
		일본	.287(*)	.022	.000	.22	.36
		스웨덴	-.198(*)	.032	.000	-.30	-.10
	스웨덴	한국	.640(*)	.031	.000	.54	.74
		중국	.306(*)	.031	.000	.21	.40
		일본	.485(*)	.032	.000	.39	.58
		미국	.198(*)	.032	.000	.10	.30
내 생활 용품 구입	한국	중국	-.243(*)	.018	.000	-.30	-.19
		일본	-.054	.019	.096	-.11	.01
		미국	.042	.020	.355	-.02	.10
		스웨덴	-.343(*)	.033	.000	-.44	-.24
	중국	한국	.243(*)	.018	.000	.19	.30
		일본	.188(*)	.019	.000	.13	.25
		미국	.284(*)	.020	.000	.22	.34
		스웨덴	-.101	.033	.051	-.20	.00
	일본	한국	.054	.019	.096	-.01	.11
		중국	-.188(*)	.019	.000	-.25	-.13
		미국	.096(*)	.021	.000	.03	.16
		스웨덴	-.289(*)	.033	.000	-.39	-.19
	미국	한국	-.042	.020	.355	-.10	.02
		중국	-.284(*)	.020	.000	-.34	-.22
		일본	-.096(*)	.021	.000	-.16	-.03
		스웨덴	-.385(*)	.034	.000	-.49	-.28
	스웨덴	한국	.343(*)	.033	.000	.24	.44
		중국	.101	.033	.051	.00	.20
		일본	.289(*)	.033	.000	.19	.39
		미국	.385(*)	.034	.000	.28	.49

	(I) 국가	(J) 국가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가족여행이 나여가활동	한국	중국	-.186(*)	.019	.000	-.24	-.13
		일본	.074(*)	.020	.011	.01	.14
		미국	-.025	.021	.827	-.09	.04
		스웨덴	-.430(*)	.032	.000	-.53	-.33
	중국	한국	.186(*)	.019	.000	.13	.24
		일본	.259(*)	.020	.000	.20	.32
		미국	.160(*)	.021	.000	.10	.22
		스웨덴	-.245(*)	.032	.000	-.34	-.15
	일본	한국	-.074(*)	.020	.011	-.14	-.01
		중국	-.259(*)	.020	.000	-.32	-.20
		미국	-.099(*)	.022	.000	-.17	-.03
		스웨덴	-.504(*)	.032	.000	-.60	-.40
	미국	한국	.025	.021	.827	-.04	.09
		중국	-.160(*)	.021	.000	-.22	-.10
		일본	.099(*)	.022	.000	.03	.17
		스웨덴	-.405(*)	.033	.000	-.50	-.30
스웨덴	한국	.430(*)	.032	.000	.33	.53	
	중국	.245(*)	.032	.000	.15	.34	
	일본	.504(*)	.032	.000	.40	.60	
	미국	.405(*)	.033	.000	.30	.50	

<부표 IV-5-2> 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성별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정 내 규칙	M	2.11	2.17	2.13	2.30	1.94	2.01	1.88	1.91	2.48	2.42
	SD	.628	.598	.727	.708	.619	.560	.705	.685	.560	.554
	t	-2.215		-4.400		-2.228***		-.787		1.224	
가정의 중요한 일	M	2.03	2.17	2.26	2.29	2.06	2.17	2.12	2.14	2.39	2.34
	SD	.671	.662	.675	.675	.642	.654	.754	.753	.595	.584
	t	-4.706**		-.908		-3.021**		-.295		1.072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M	2.21	2.34	2.42	2.53	2.26	2.27	2.39	2.51	2.77	2.73
	SD	.636	.625	.648	.584	.623	.595	.664	.618	.556	.533
	t	-4.790**		-4.248***		-.272		-2.548		.571	
진로나 진학문제	M	2.30	2.42	2.41	2.48	2.34	2.42	2.62	2.69	2.79	2.72
	SD	.648	.636	.642	.613	.592	.584	.586	.525	.435	.514
	t	-4.369		-2.688		-2.920		-2.669***		1.393**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M	2.11	2.19	2.44	2.52	2.25	2.37	2.56	2.62	2.80	2.79
	SD	.668	.701	.663	.628	.618	.594	.602	.558	.447	.450
	t	-2.753***		-2.975**		-3.867		-2.179***		.332	
내 생활용품 구입	M	2.24	2.29	2.46	2.54	2.27	2.37	2.20	2.25	2.52	2.66
	SD	.638	.633	.616	.587	.592	.574	.622	.619	.678	.537
	t	-1.784		-3.191**		-3.466		-1.674		-2.374***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M	2.12	2.27	2.35	2.41	2.05	2.20	2.21	2.23	2.65	2.61
	SD	.631	.635	.642	.637	.595	.584	.652	.666	.478	.570
	t	-5.337***		-2.219		-5.099***		-.617		.886**	

<부표 IV-5-3> 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교급별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중	고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M	2.21	2.34	2.51	2.46	2.21	2.30	2.44	2.46	2.80	2.72
	SD	.618	.644	.593	.628	.619	.602	.615	.662	.483	.558
	t	-4.477***		1.663*		-2.872		-.476		1.011	
취미학원이나 취미교실	M	2.15	2.15	2.51	2.47	2.25	2.34	2.64	2.56	2.77	2.81
	SD	.665	.708	.628	.655	.628	.595	.549	.603	.472	.434
	t	.096**		1.549*		-3.033		2.818***		-.933	
진로나 진학문제	M	2.33	2.38	2.42	2.46	2.28	2.44	2.65	2.65	2.77	2.74
	SD	.649	.640	.639	.617	.612	.568	.548	.564	.488	.482
	t	-1.941		-1.602		-5.533		.027		.642	
내 생활용품 구입	M	2.24	2.28	2.51	2.50	2.29	2.33	2.24	2.21	2.55	2.63
	SD	.637	.635	.602	.600	.597	.579	.602	.636	.662	.565
	t	-1.516		.248		-1.454		.961		-1.338**	
가정 내 규칙	M	2.14	2.14	2.28	2.18	1.94	1.98	1.89	1.90	2.54	2.38
	SD	.625	.604	.691	.736	.631	.570	.692	.697	.500	.582
	t	.107		2.548		-1.292***		-.384		2.916*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	M	2.21	2.19	2.39	2.38	2.16	2.10	2.24	2.21	2.72	2.57
	SD	.643	.630	.638	.642	.606	.587	.648	.668	.450	.569
	t	.753		.499		1.874*		.856		2.991***	
가정의 중요한 일	M	2.10	2.11	2.29	2.27	2.11	2.11	2.15	2.12	2.51	2.28
	SD	.680	.660	.680	.672	.673	.635	.750	.756	.538	.600
	t	-.411		.395		.068		.876		4.027	

〈부표 IV-5-4〉 가정규칙 결정 시 부모의 자녀 의견존중 정도-한국
 학업성취·부모학력별 비교

(단위 : %)

구 분		반드시 존중해 주신다	가끔 존중해 주신다	전혀 존중해 주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이 없어 잘모르겠다	카이제곱 값
학업성취	상	26.3	55.5	10.8	7.4	10.470
	중	26.0	56.0	10.9	7.1	
	하	22.0	54.9	13.3	9.8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이하	23.8	48.8	17.5	10.0	17.806
	고졸	23.0	58.8	10.7	7.5	
	전문대졸	28.1	55.1	11.2	5.6	
	대졸	26.8	54.2	11.3	7.7	
	대학원졸	27.8	48.5	14.6	9.1	
어머니 최종학력	중졸이하	19.3	56.4	10.7	13.6	26.841**
	고졸	24.4	57.6	10.7	7.3	
	전문대졸	15.8	58.4	14.9	10.9	
	대졸	30.1	51.2	11.5	7.2	
	대학원졸	22.9	51.9	16.8	8.4	

<부표 IV-5-5> 징계절차에서 소명권 부여 여부-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준다	별로 주지 않는다	전혀 주지 않는다	잘 모른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한 적이 없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12.2	21.0	19.4	43.1	4.4	28.845***
	여자	9.0	21.9	16.5	51.0	1.7	
	중학교	12.2	20.3	12.2	51.6	3.7	60.030***
	고등학교	9.1	22.5	23.6	42.4	2.5	
중국	남자	36.3	16.4	5.8	39.8	1.6	55.875***
	여자	40.4	8.2	3.0	47.2	1.2	
	중학교	37.3	12.3	4.6	43.9	1.8	4.882
	고등학교	39.6	11.3	3.9	44.2	1.0	
일본	남자	10.9	10.7	8.3	63.6	6.6	59.995***
	여자	5.3	6.8	2.6	77.8	7.4	
	중학교	9.6	8.3	5.5	64.0	12.6	41.410***
	고등학교	7.7	9.2	5.8	72.9	4.5	
미국	남자	28.0	31.7	19.3	20.6	.5	30.890***
	여자	24.0	32.1	12.7	30.6	.7	
	중학교	28.3	31.9	13.2	26.4	.3	11.336*
	고등학교	24.2	31.9	18.1	25.0	.8	
스웨덴	남자	37.0	9.6	10.6	34.6	8.2	15.631**
	여자	31.4	4.1	6.4	44.9	13.2	
	중학교	40.1	10.7	10.2	31.0	8.0	23.301***
	고등학교	30.0	3.8	6.9	46.4	12.9	

<부표 IV-5-6>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변화 가능-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 값
한국	남자	11.9	55.7	25.9	6.6	6.970
	여자	11.4	57.4	27.1	4.1	
	중학교	11.8	55.6	27.3	5.2	1.098
	고등학교	11.5	57.4	25.6	5.6	
중국	남자	21.1	41.6	26.4	10.9	21.349***
	여자	16.5	43.5	32.4	7.6	
	중학교	17.8	42.0	30.1	10.1	2.579
	고등학교	18.8	43.2	29.7	8.3	
일본	남자	10.2	28.0	41.7	20.1	43.955***
	여자	4.4	23.4	55.0	17.2	
	중학교	8.9	29.2	43.3	18.6	12.490**
	고등학교	6.7	23.9	50.5	18.9	
미국	남자	18.9	50.7	20.3	10.1	6.697
	여자	15.9	53.1	23.2	7.7	
	중학교	16.9	48.0	23.7	11.5	14.902**
	고등학교	17.8	54.8	20.3	7.0	
스웨덴	남자	10.1	52.4	25.5	12.0	18.193***
	여자	17.2	60.3	18.2	4.4	
	중학교	12.8	58.3	23.0	5.9	2.026
	고등학교	15.1	56.3	20.1	8.5	

<부표 IV-5-7>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 값
한국	남자	7.8	34.7	46.8	10.6	7.271
	여자	5.8	31.7	50.7	11.8	
	중학교	7.5	34.5	47.8	10.3	4.582
	고등학교	6.2	32.0	49.7	12.1	
중국	남자	7.3	19.5	42.9	30.3	6.795
	여자	5.8	18.6	47.8	27.8	
	중학교	6.2	16.5	46.7	30.6	7.295
	고등학교	6.0	20.6	45.1	27.7	
일본	남자	13.9	36.5	37.5	12.0	44.590***
	여자	7.5	45.7	40.6	6.3	
	중학교	14.9	40.4	32.8	12.0	33.704***
	고등학교	8.7	40.9	42.5	7.9	
미국	남자	10.5	25.2	35.9	28.4	8.077*
	여자	6.7	25.5	39.5	28.2	
	중학교	8.8	24.4	35.8	31.0	4.825
	고등학교	8.5	26.1	39.1	26.3	
스웨덴	남자	8.7	34.8	46.9	9.7	1.598
	여자	6.1	33.1	50.9	9.9	
	중학교	8.6	33.5	49.7	8.1	1.738
	고등학교	6.3	34.0	48.9	10.8	

<부표 IV-5-8> 개인은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 줄 수 없다
-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카이제곱 값
한국	남자	15.4	41.9	32.4	10.3	18.995***
	여자	10.1	41.6	38.7	9.7	
	중학교	12.0	41.2	37.2	9.6	3.152
	고등학교	13.5	42.2	33.9	10.4	
중국	남자	19.3	22.5	33.8	24.5	11.114*
	여자	16.1	23.7	39.0	21.1	
	중학교	14.4	19.7	39.6	26.3	31.210***
	고등학교	19.5	25.6	34.9	20.0	
일본	남자	43.2	33.5	14.9	8.5	35.837***
	여자	37.9	45.8	12.0	4.4	
	중학교	40.2	35.5	15.9	8.4	13.644**
	고등학교	41.0	41.3	12.1	5.6	
미국	남자	18.6	25.3	26.5	29.5	8.381*
	여자	14.4	28.4	29.9	27.3	
	중학교	18.8	23.5	28.3	29.3	9.351*
	고등학교	14.8	29.3	28.1	27.8	
스웨덴	남자	12.5	32.7	48.6	6.3	5.004
	여자	9.6	41.6	41.6	7.2	
	중학교	12.6	35.0	46.4	6.0	2.018
	고등학교	9.7	39.6	43.4	7.2	

〈부표 IV-5-9〉 학교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반영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14.7	43.7	41.6	9.128**
	여자	15.1	49.3	35.6	
	중학교	17.6	38.2	44.2	61.769***
	고등학교	12.2	54.6	33.2	
중국	남자	24.1	30.1	45.8	8.618*
	여자	23.6	25.2	51.2	
	중학교	22.0	28.1	49.8	2.934
	고등학교	25.1	26.7	48.2	
일본	남자	15.5	34.7	49.8	5.520
	여자	11.9	34.9	53.2	
	중학교	12.9	34.8	52.3	.862
	고등학교	14.4	34.9	50.8	
미국	남자	37.0	32.4	30.6	24.986***
	여자	35.0	23.8	41.2	
	중학교	38.5	22.7	38.8	18.426***
	고등학교	34.1	32.1	33.8	
스웨덴	남자	45.7	17.3	37.0	6.712*
	여자	49.8	9.5	40.7	
	중학교	48.7	18.2	33.2	9.733**
	고등학교	47.8	9.5	42.7	

〈부표 IV-5-10〉 학교발전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학교의 일이므로 학생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5.1	30.1	64.8	13.004**
	여자	2.3	28.8	68.8	
	중학교	4.4	24.4	71.3	29.037***
	고등학교	3.1	34.5	62.4	
중국	남자	6.6	39.7	53.7	17.201***
	여자	3.5	36.6	59.9	
	중학교	5.8	32.6	61.5	20.292***
	고등학교	4.1	41.5	54.4	
일본	남자	8.3	35.7	56.0	22.245***
	여자	4.2	30.7	65.1	
	중학교	6.7	35.2	58.1	1.960
	고등학교	6.3	32.3	61.4	
미국	남자	14.4	36.4	49.2	5.559
	여자	11.5	34.0	54.5	
	중학교	15.5	31.5	52.9	11.581**
	고등학교	11.0	37.9	51.1	
스웨덴	남자	10.4	29.2	60.4	3.984
	여자	7.9	23.0	69.1	
	중학교	6.7	24.4	68.9	2.249
	고등학교	10.2	26.2	63.6	

<부표 IV-5-11>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성별·교급별 비교

(단위 : %)

구 분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카이제곱값
한국	남자	6.0	29.9	64.0	28.171***
	여자	2.8	23.8	73.4	
	중학교	4.8	27.8	67.4	1.548
	고등학교	4.1	26.1	69.8	
중국	남자	12.5	75.0	12.6	29.001***
	여자	7.9	83.8	8.3	
	중학교	10.8	81.9	7.3	14.916**
	고등학교	9.2	78.8	12.0	
일본	남자	7.2	32.5	60.3	26.179***
	여자	2.3	30.8	66.9	
	중학교	7.1	31.8	61.2	10.624**
	고등학교	3.7	31.7	64.6	
미국	남자	13.8	42.5	43.7	11.740**
	여자	9.3	40.5	50.2	
	중학교	12.6	41.3	46.2	1.330
	고등학교	10.8	41.7	47.5	
스웨덴	남자	8.7	32.7	58.7	4.126
	여자	4.4	36.4	59.3	
	중학교	5.3	31.6	63.1	2.074
	고등학교	6.6	36.8	56.6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덕순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총무
김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욱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남형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 과장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문병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사무관
박영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방은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안동현 한양대학교 의학과 교수·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양동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과장
이명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인권연구팀장
이민희 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이배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이사장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지연 통계청 통계연구과 사무관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성민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한길수 호주 모나쉬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집 필 진 ◆

- 이근진 경기도 현암고등학교 교육행정실장
천정웅 미국 캔사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구위원
최연혁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 교수

연구보고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743-7

ISBN 978-89-7816-742-0(세트)